

ISSN : 1975-390X

# 獨島研究

제27호

2019.12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이 학술지는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 차 례

### 일반논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국제법 학제간 연구   박병섭 .....	7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경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토교육용 학습자료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이상균·안동립 .....	73
‘안용복 밀사’ 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유미림 .....	123
거문도인의 독도 조업 - 김윤삼·박운학의 증언을 중심으로 -   정태상 .....	165
조선시대 대일사행과 울릉도·독도   정훈식 .....	203
독도의 지위 관련 연구 동향 - 미국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박찬호 .....	229
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의 함의와 독도   이해영 .....	261
일본 독도정책의 특징과 딜레마 -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박창건 .....	295
문학작품에 나타난 독도와 안용복   김권동·김병우 .....	325

안용복 형상화에 대한 구전적 상상력 | 남상권 · 박영식 ..... 359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독도교육을 위한 음악교과 활용

- 초등학교 6학년 8종 음악교과서 독도관련 노래와 국악곡을 중심으로 -

| 박정련 ..... 397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 현황과 문제점 | 심정보 ..... 437

**자료소개**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 도항금지의 건(朝鮮國蔚陵島二邦人渡航禁止ノ件)」

| 송취영 ..... 471

『독도연구』 제27호 편집위원회 ..... 503

논문투고규정 ..... 504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 규정 ..... 508

『獨島研究』 연구윤리 규정 ..... 511

# 일반논문





##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국제법 학제간 연구

박 병 섭\*

### 〈목 차〉

1. 머리말
2. '울릉도쟁계'에서의 외교 문서 교환과 '약식조약' 설
3. '거리관습' 설에 관한 검토
4. 독도에 대한 역사적·원시적권원과 권원의 유지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6. 맺음말

### 〈국문초록〉

17세기 조·일 양국 간 '울릉도쟁계'에서 교환된 외교문서는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는 박현진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중이다. 본고는 쟁점 중에서 일본의 구상서를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외교문서의 원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외교 기록 『동문휘고』 등을 활용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약식조약' 설에는 의문이 남는다. '거리관습' 설에 관해서는 조·일 양국은 먼저 울릉도(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며,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울릉도와 양국과의 근접성을 거론했으므로 '거리관습' 설이 성립될지 의문이다.

한편,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세웠으며, 이는 '광의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산도(독도)의 귀속을 판단하면 우산도도 조선 땅이 된다. 그 후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계속해 관찬서에서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귀속을 판단할 기회가 수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정부는 두 섬을 조선 땅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7세기의 판단기준대로였다. 그 판단기준은 양국에서 관습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일본 竹島=독도문제연구넷

그런데 조선에서는 해금정책으로 인해 한말에 우산도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었다. 이와 별도로 전라도 어민들에 의해 ‘독섬(독도)’이 발견되어 어렵에 이용되었다. 이 섬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石島’라는 한자 표기로 울도군 관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표시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므로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던 처사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위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원시적권원이 계속 확인되었더라도, 국제법원에서는 분쟁당사국의 주장에 따라 조약 및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결론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다.

**주제어:** 울릉도쟁계, 우산도, 다케시마, 약식조약, 광의의 국제법,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 1. 머리말

조·일 양국은 1693년 안용복 피랍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의 영유를 둘러싼 논쟁 ‘울릉도쟁계’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교환한 외교문서들에 대해 박현진은 현대 국제법의 관점에서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양국은 현대 국제법상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고 한다.<sup>1)</sup> 이는 ‘울릉도쟁계’에 대해 시제법의 관점을 떠나, 양국에서 교환된 외교문서는 현대 국제법이 말하는 약식조약의 필요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다고 본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최철영·유미림은 먼저 약식조약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음에 박현진이 지목한 교환문서 중에서 쓰시마(對島) 번의 구상서 등은 외교문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sup>2)</sup> 또한 최철영은 현대 국제법은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려면 원본이 필요하지만 박현진은

1) 박현진,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국제법학회총』 58권 3호, 2013, 131-152쪽.

2) 최철영·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63(4), 2018, 247-264쪽.

필요한 문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약식조약’설에 의문을 제시했다.<sup>3)</sup> 이들 비판에 대해 박현진<sup>4)</sup> 및 이성환<sup>5)</sup> 등이 반론하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검토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자료는 주로 쓰시마번의 『다케시마 기사(竹島紀事)』다. 이 자료 외에 박현진 등은 메이지(明治)시대 태정관 문서에 기록된 ‘다케시마 일건’(울릉도쟁계) 문서도 인용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다케시마 기사』의 일부를 복사한 것이다. 이 『다케시마 기사』는 2차 자료로서 ‘다케시마 일건’ 과정의 자료를 잘 정리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울릉도쟁계’와 관련된 중요 문서는 <표 1>과 같은데,<sup>6)</sup> 『다케시마 기사』에는 문서 ⑦이 빠져 있다. 또한 『다케시마 기사』는 표현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쓰시마번 봉행들이 작성한 중요 문서 ⑤-3인데, 이에 대해 최철영·유미림은 봉행들의 서명과 날인이 없었다고 보았으나, 이는 문맥상 모호하다. 또한 『다케시마 기사』는 일본 측 문서이며, 조선 측 문서와의 대조가 필요하다.

<표 1> 조·일 간 ‘울릉도쟁계’ 관련 문서

번호	작성 시기	사본 전달 (정본 전달)	발신인	수신인	정식 수령
①	1693.9	11.2 (12.10)	對馬州太守 拾遺 平義倫 서계(奉書)	예조참판 대인 합하 (閣下)	○

- 3) 최철영, 「『원록각서』·『죽도기사』·『죽도고』의 국제법적 해석」, 『독도연구』 22호, 2017, 73쪽, 주 13.
- 4) 박현진, 「17세기말 『울릉도쟁계』 관련 조·일 교환공문(사본)의 증명력(II)」, 『국제법학계논총』 63권 4호, 2018, 57-89쪽.
- 5) 이성환, 「울릉도쟁계의 조일 간 교환문서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독도연구』 26호, 2019, 205쪽.
- 6) 일람표 <표 1>은 최철영·유미림이 앞의 논문에 게재한 <표 1>(252쪽)에 대해 문서 ⑦을 추가하고, 문서 ⑤-3, ⑤-4를 수정하는 등 여러 개정을 했다.

②	1693.12	1694.1.15 (2.15)	예조참판 권해(權瑨) 서계(奉復)	對馬州太守 平公 閣下	○
③	1694.2	윤5월 (8.9)	對馬州太守 拾遺 平義倫 서계(奉書)	예조참판 대인 합하	×
④	1694.9	무 (9.22)	예조참판 이여(李畬) 서계(奉復)	對馬州太守 平公 閣下	×
	1696.1	(막부의 도해 금지령)			
⑤	1696.1	10월 구두전달	⑤-1 도해금지령 관련 구상지각 ⑤-2 조선인 소송 관련 구상지각		- -
	1696.10	10월	⑤-3, 4 對島島奉行 平眞顯 平成昌 橘眞重 平眞賢 平成次 平倫又	訓導別差 兩公旅榻下	○
⑥	1697.4	4.27	예조참의 박세준 서계(奉書)	刑部大輔拾遺平 公 閣下	×
⑦	1697.6	불명	대마도 봉행들	동래부사	○
⑧	1697.7	7.21	예조참의 박세준 서계(奉書)	刑部大輔拾遺平 公 閣下	×
⑨	1698.3	4.13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 서계(奉書)	刑部大輔拾遺平 公 閣下	○
⑩	1699.1	3.21	⑩-1 刑部大輔拾遺平 義眞 서계(奉復)	예조대인 각하	○
		3.21 구두전달	⑩-2 최종 해결 관련 구상지각		-

⑤-3은 ⑤-1을 요약, ⑤-4는 ⑤-2를 요약한 한문 문서

본고는 위의 문제점을 고려해 조선 측 자료로서 『동문회고(同文彙考)』를 활용한다. 또한 중요 문서 ⑤-3의 모호한 부분을 해명하는 자료로서 쓰시마번의 『역관기(譯官記)』 등을 활용하고, 아울러 논쟁으로 되고 있는 쓰시마번 ‘구상지각’ ⑤-1 등을 분석한다.

박현진은 앞의 ‘거리관습’에 대해, ‘울릉도쟁계’에서 조·일 양국 모두

당시 도서 영유권 귀속 주체의 판단에 있어서 지리적 거리 기준을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로 간주하는 법적 확신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고, 이 ‘거리관습’에 따라 당시 양국은 해상국경을 독도 남부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sup>7)</sup> 이 ‘거리관습’설을 포함해 ‘울릉도쟁계’의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의의를 고찰한다.

한편, 어느 영역에 대한 역사적·원시적권원이 증명되었더라도, 그 권원의 이후 계속 유지에 대한 증명도 중요하며, 아울러 분쟁당사국의 주장과 그 근거에 따라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조약 문건 등에 근거한 권원도 같이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2008년에 판결된 페드라·브랑카 사건의 경우 ICJ는 고래의 원시적권원이 말레이시아의 선행 국가인 조호르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ICJ는 조호르 정부가 싱가포르 식민지 정부의 주권자로서의 행위를 묵인했고, 또한 조호르 국무장관 대리가 “조호르 정부는 페드라·브랑카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서한을 싱가포르 정부에 보냈던 일 등을 중시하고, 이 섬에 대한 주권이 싱가포르에 이전되었다고 판결했다.<sup>8)</sup> 이처럼 ICJ는 대체로 과거의 원시적권원의 증명보다는 근대에 만들어진 법적 문서에 근거한 권원의 증명에 근거한 영유권의 귀속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강화조약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연구자들의 대표적인 견해는 대일강화조약에 독도를 일본에 편입한다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는 한 SCAPIN-677에서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독도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재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박관숙, 백충현, 김병렬, 김채현, 박현진 등 많은 한국인 연구자가 지지하고 조약은 한국의 독도 영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9)</sup>

7) 박현진, 앞의 글, 2013, 133쪽.

8) 許淑娟, 「主權者としての行為—ペドラ・ブランカ事件」, 『國際法判例百選』 第2版, 有斐閣, 2011, 62-63쪽.

9) 박관숙, 『獨島の法的地位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1968,

이에 대해 대일강화조약 초안 등에서 독도를 깊이 연구한 이석우는, “SCAPIN No.677, 즉, ‘일본으로부터 특정 외곽지역의 정부 및 행정상의 분리’에 대한 강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독도의 법적 지위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다시 말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해석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결코 바람직한 접근방안은 아니라고 본다”<sup>10)</sup>고 주장했다. 그는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국 국무차관보 러스크(Dean Rusk)가 이를 거부하는 서한을 한국에 보냈던 일을 중시해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이다.

이석우의 위의 글을 인용한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러스크 서한의 존재가 분명히 되었음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는 ‘竹島[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으로서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은 竹島[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sup>11)</sup>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기는 러스크 서한과 상관없이 조약 제2조에 대해 소위 ‘속도’론을 적용했다. 즉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독도의 법적 지위는 주도인 울릉도와 같으며, 제2조가 말하는 울릉도는 독도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인 근거의 하나로 심홍택 보고서를 들어, “보고서에 ‘본군소속 독도’라고 기술되어 있는바 ‘본군’은 울릉군 [원문대로] 즉 울릉도이므로 ‘본군소속’은 울릉도 소속을 뜻한다”라고 주

70-72쪽; 백충현, 「國際法上으로 본 獨島研究」, 『獨島研究』(韓國近代史料研究協議會), 1985, 438-439쪽; 김병렬, 「對日講和條約 第2條의 解釋」,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1호, 1998, 17-38쪽; 김재형,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3호, 2007, 103-124쪽; 박현진,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영유권」, 『국제법평론』 제12호, 2008, 125-126쪽.

10) 이석우,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국제법』, 집문당, 2007, 18쪽.

11)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267-268쪽.

장했다.<sup>12)</sup> 또한 1900년 칙령41호도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 가운데 최철영은 새 제안을 했다. 이는 ‘우티 포씨디티스’(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이다. 이는 라틴어이며 영역하면 ‘as you possess’이지만, 이 용어의 사용법이 변질되고 최근에는 ‘행정구획선의 승계’라는 뜻으로 사용된다.<sup>13)</sup> 이 원칙을 최철영은 ‘기존 행정관할경계유지’의 원칙이라고 의역했다. 그는 이를 독도문제에 적용할 가능성을,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하여도 원칙의 적용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전후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국총사령부는 일본과 한국 모두를 통치하면서 연합국총사령부의 명령(SCAPIN) 677과 1033을 통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행정관할권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sup>14)</sup>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본고는 이 원칙의 적용을 시도한다.

본고의 인용문에서 ( )안은 원문대로이며, [ ]안은 필자의 주다. 또한 본고에서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는 독도를 가리킨다. 이들은 일본 에도(江戸)시대의 명칭이다. 다만 ‘竹島’가 독도를 가리킬 때는 ‘竹島[독도]’라고 표기한다.

## 2. ‘울릉도쟁계’에서의 외교문서 교환과 ‘약식조약’설

### 1) 박현진의 ‘약식조약’설

조·일 양국 간 ‘울릉도쟁계’ 관련 문서의 국제법적 의의를 박현진은

12) 김명기, 「대일강화조약 제2조(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 독도 포함여부 문제의 검토」, 『독도연구』 제18호, 2015, 382쪽.

13) 許淑娟, 『領域權原論』, 東京大学出版会, 2012, 207쪽.

14) 최철영,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국제법원의 영토주권법리」, 『독도연구』 21호, 2016, 66쪽.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당시 조·일 간 확립된 외교관행에 따라 조선 조정과 일본 막부(幕府)가 1694년 8월과 1697년 2월 각각 교환한 왕복문서[표1의 ④와 ⑤]는 현대 국제법상 ‘교환공문’의 법적 성격·지위를 가지며, 조선의 1698년 4월 회답공문[⑨] 및 1699년 1월 최종 확인공문[⑩]은 기존 합의를 확인한 것이다. 즉 1694년 8월 조선의 공문[④]과 1697년 2월 막부가 대마도주를 통해 동래부에 전달한 서한[⑤]은 -ICJ가 확립하고 있는 현대 영토·해양경계 분쟁 관련 국제판례에 의하면- 양국 간 합의를 기초로 체결된 국제협정이며, ‘약식조약’을 구성한다.<sup>15)</sup>

현대 국제법에서, “교환공문이라 함은 비준을 요하지 않고 조약 체결권자의 서명 자체로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여 성립·발효하는 형식의 조약을 말한다”, “교환공문은 한 국가의 대표(국가원수, 외교장관 등)가 자국의 의사를 표시한 서한을 상대국에 전달하고 그 상대국의 대표가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동의하는 회답문서를 전달하여 성립되는 국제합의·협정을 말한다(1994년 카타르/바레인 사건 판결)”라는 것이다.<sup>16)</sup>

박현진은 ‘울릉도쟁계’에서 양국의 교환공문을 통상의 조약이 아닌 약식조약으로 본 이유를, “[조·일 교섭이] 처음부터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의사로 교섭에 임하여 양자합의를 기록한 문서에 양국 대표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 공문교환 과정에서 조선이 막부에 울릉도 영유권의 인정을 요구하고 막부가 이를 확인·인정하는 서한을 조선에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통상의 조

15) 박현진, 앞의 글, 2013, 141쪽. 인용에서 단어의 영문 표기 등은 생략했음. 이는 이하에서도 같음. 박현진이 말하는 연월과 <표 1>의 필자가 생각하는 연월에는 차이가 있음.

16) 박현진, 2013, 141쪽, 각주 45.

약체결절차와 다르기 때문”<sup>17)</sup>이라고 한다.

## 2) ‘약식조약’설에 대한 쟁점 정리

박현진의 ‘약식조약’설에 대해 최철영·유미림 등이 의문을 제시하고, 그 쟁점을 이성환이 요약했는데,<sup>18)</sup>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약식조약의 한계

‘울릉도쟁계’는 약식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 (ii) 이여(李畬)의 서계

‘약식조약’설은 1694년 이여(李畬)의 서계<표1>의 ④를 교환공문으로 보았지만, 이 서계가 일본 측에 수락되지 않았다면 이를 외교공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서계는 ‘거리관습’을 제시하지 않았다.

### (iii) 쓰시마번이 역관에게 보낸 문서

‘약식조약’설은 쓰시마번이 조선의 역관에게 보낸 문서 ⑤-3을 교환공문으로 보았지만, 이 문서의 형식이 구상서임 등 정식 외교문서가 아니며 교환공문으로 볼 수 없다.

### (iv) 왜관 관수가 건네준 문서

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울릉도의 조선주권 인정 사실은 형부대보의 서계에는 없고 형부대보가 관수를 통해 구상서로 전달한 내용에 담겨 있는데, 구상서라는 형식으로 약식조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v) 문서의 원본

‘약식조약’설은 양국에서 교환된 문서들을 『다케시마 기사』 등에서 인용했지만, 이는 교환공문 자체가 아니므로 조약법상 논리를 전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17) 박현진, 앞의 글, 2013, 141-142쪽, 각주 46.

18) 이성환, 앞의 글, 2019, 194-195쪽.

이런 비판의 당위성 및 비판에 대한 박현진의 반론<sup>19)</sup> 등을 다음에 검토한다. 또한 위의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조·일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들에 대해 그 경위 등도 자세히 보기로 한다.

### 3) 쟁점에 대한 검토

#### (1) 약식조약의 한계

최철영·유미림은, “울릉도쟁계는 기존 조약의 이행을 위한 것도 아니고, 현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또한 현대 국제법상 약식조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내용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울릉도쟁계’ 관련 조·일 양국 간의 외교문서는 현대 국제법의 약식조약으로는 다룰 수 없는 국경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sup>20)</sup> 이에 대한 박현진의 반론은 아직 없는 것 같다.

#### (2) 1694년 이여의 서계

박현진이 ‘교환공문’으로 보는 1694년 8월 문서는 예조참판 이여(李奮)가 쓰시마번 태수에게 보낸 개작 서계(<표 1>의 ④)이며, 실은 9월에 작성되어 쓰시마번에서 온 사자에게 전달되었다. 이 내용은 1693년 서계 ②와 달리 우리나라 강원도의 울진현에 속한 울릉도는 우리나라 서적 『여지승람』에 실려 있으며, 이 섬을 竹島라고 부르고 1도 2명임은 귀국도 알고 있다, 그런데 울릉도를 함부로 침범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어민들을 일본으로 잡아갔는데, 귀국 서계는 이런 잘못된 논하지 않고 우리나라 어선들이 울릉도로 들어갈 것을 금지하라고 한다, 이는 성신(誠信)의 도리에 흠이 있는 일이며, 이 일을 동도(東都, 막부)에 전보하여 다시 사

19) 박현진, 앞의 글, 2018, 57-89쪽.

20) 최철영·유미림, 앞의 글, 2018, 262쪽.

단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 등이었다. 이는 쓰시마번을 비난하는 한편 울릉도의 영유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 뜻밖의 서계를 본 쓰시마번의 사자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左衛門, 조선 이름은 굴진중)은 이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조선 조정과 논쟁에 들어갔다. 최종적으로 이 서계는 조선 정부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sup>21)</sup> 따라서 박현진이 주장하는 1694년 조선 측 교환공문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여의 서계를 둘러싸고 조·일 양국의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사이, 1694년 9월 쓰시마번에서는 제4대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가 별세했고, 11월 그의 아들 소 요시미치(宗義方)가 번주로 되었다. 그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의 조부이며 제3대 번주였던 형부대보(刑部大輔)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번주의 후견역(後見役)을 맡아 쓰시마번을 통치했다. 1695년 5월 형부대보는 다다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를 알리기 위해 조선에 파견되는 재판(裁判) 다카세 하치에몬(高勢八右衛門)에게 이여의 서계 ②에 대한 ‘의문 4조’<sup>22)</sup>를 제기할 것을 명했다. 형부대보의 명을 받은 다다는 6월 귀국하는 배에 타고 절영도에서 바람을 기다

21) 『竹島紀事』元祿十年(1697)四月初는, “지난 번 사자님이 [쓰시마로부터] 재차 왔을 때 조선의 서간이 관수에게 건네 놓여 있었는데 이를 [조선 조정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동래부에 말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받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판사가 말하므로 동래부로 건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기록하였다. 원문은, “先頃御使者再度被差渡候節 朝鮮ヨリ之書簡館守江被相渡置候を可返之由 東來江申談注進有之候 取請之候様申來候由 判事申=付 東來江相渡申筈=御座候”.

22) 쓰시마번이 말하는 ‘의문 4조’, 또는 조선 조정이 말하는 ‘힐문 4개조’는, 첫째, 서계에는 “때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 수검(搜檢)하였다”라는 글에 대한 의문, 둘째, 서계에는 “뜻밖에 귀국 사람들이 스스로 범월(犯越, 경계를 침범함)하였다”든가 “귀국 사람들이 우리 지경을 침섭(侵涉)하였다”라는 글에 대한 의문, 셋째, 서계에는 “1도2명(一島二名)의 실상은 다만 우리나라 서적에 적혀 있을 뿐 아니라 귀주(貴州) 사람들도 또한 잘 안다”라는 글에 대한 의문, 넷째, 82년 전 동래부사 박경업(朴慶業)이 보낸 서계와 1693년 서계 ②와의 모순 등이다.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65쪽.

렸다가, 마침 동래부로부터 ‘의문 4조’에 대한 회답서가 왔다. 이 내용에 만족할 수 없는 다다는 반론서를 쓰고 곧 출항했다.

다음 해 1695년 10월 형부대보는 에도(江戶)에 있는 쇼군(將軍)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올리기 위해 에도로 갔다. 이때에 그는 로주(老中)<sup>23)</sup>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에게 조·일 교섭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베는 조선의 서계가 말하는 ‘1도 2명’설을 확인하기 위해 다케시마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한 돗토리번에 문의했다. 그 결과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돗토리번에 소속된 섬이 아님을 알았다. 또한 다케시마·마쓰시마는 돗토리번에도, 일본의 어느 지방에도 소속하지 않은 섬임을 알았다. 막부는 작은 섬 하나를 다투어 조선과의 우호를 해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696년(겐로쿠(元祿) 9년) 1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 (3) 쓰시마번이 역관에게 보낸 문서의 성격

쓰시마번은 막부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곧 조선에 전하려 하지 않았다. 이 배경에는 막부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그때까지 쓰시마번은 막부의 명에 따라 조선에 대해 조선인의 다케시마 도해 금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논쟁을 벌여 왔는데, 이번 막부의 결정은 반대로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시마번의 노력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이처럼 그들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결정을 서계에 쓰고 조선에 보낸다면 외교상 부담이 되는 증거를 남기게 된다. 이 때문에 쓰시마번은 도해금지령을 곧 조선에 전달하지 않고, 조선에서 전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에 대한 조문 사자가 올 때를 기다리고 구두로 전하기로 작정했다. 본래 쓰시마번은 구상(口上)으로만 약속한 것은 훗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sup>24)</sup>

23) 로주는 3-5명으로 구성되며, 평상시는 막부의 최고 집권자들이다.

24) 『竹島紀事』 元祿8年(1695) 6月조에 다키 로쿠로에몬(瀧六郎右衛門)의 의견서에, “口上斗ニ而者後々之證據ニ不罷成”라는 글이 있다.

쓰시마번 형부대보는 이런 방침을 로주 아베 분고노카미에게 말했던 바 아베는 구상만으로 이쪽의 뜻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sup>25)</sup> 이쪽의 뜻이란 막부가 일본인의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했던 일에 대해 조선 측이 감사의 서한을 일본 측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서한을 얻을 수 있다면 예전에 막부가 ‘다케시마 도해면허’를 교부한 잘못을 덮을 수 있다. 그런데 쓰시마번이 막부의 도해금지령을 구두만으로 전달한다면 조선으로부터 서한 자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막부에 불만을 품은 형부대보는 도해금지령을 조선에 전달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아베의 뜻에 따르려 하지 않았다.

결국 형부대보의 방침을 로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막부와 쓰시마번은 수차례 협의를 거듭하고, 일본 측의 뜻이 잘 통하도록 조선에 전달하는 「구상지각」 ⑤-1을 수차례 수정해 준비했다. 동시에 쓰시마번은 조선인(안용복)들이 1696년 5월에 이나바(因幡)국으로 와서 소송을 제기했던 일에 항의하는 「구상지각」 ⑤-2도 작성했다.

쓰시마번의 전 번주에 대한 조문 사자 ‘문위역관(問慰譯官)’이 늦어졌지만 1696년 10월 예조참의의 「조례지서한(弔禮之書翰)」을 가지고 쓰시마번에 갔다. 그들에 관한 기록으로 『다케시마 기사』가 있으나, 이는 ‘다케시마 일건’이 끝난 지 수십 년 후 편찬된 2차 자료다. 이에 반해 쓰시마번의 기록 『역관기(譯官記)』<sup>26)</sup>는 ‘다케시마 일건’ 와중에 작성된 1차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문서 ⑤-1~4를 분석한다.

1696년 10월 16일 문위역관들에 대한 외교의례 절차 도중 막부에서 파견된 이테이안(以酏庵)의 윤번승(輪番僧)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부대보는 막부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관한 「구상지각(口上之覺)」 ⑤-1 및

25) 『竹島紀事』 元祿9年(1696) 1월.

26)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宗家文書 기록류 No. 1501. 원문의 부분적인 영인, 번각, 번역은, 김강일·윤유숙 역주, 『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I, 동북아역사재단, 2012, 97-153쪽에 있다.

조선인의 도일에 관한 「구상지각」 ⑤-2의 내용을 직접 전달했다.

문서 ⑤-1의 내용은 왜관에 파견한 사자로부터 다케시마(울릉도)에 관한 교섭 결과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그 취지를 에도에 있는 로주(老中)에게 보고한바, 로주는 다케시마는 이나바·호키에 부속된 섬이 아니고, 일본이 빼앗았던 섬도 아니며 단지 공도이므로 호키 사람들이 건너가서 어려움을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으므로, 소 쓰시마노카미(宗討馬守, 형부대보)가 근년 조선인도 다케시마로 도해하는데 양국 어민들이 섞이게 될 경우의 우려를 말하자, 다케시마는 조선까지의 도정이 가깝고 호키로부터는 멀기 때문에 이쪽 어민들이 다시 도해하지 않도록 쇼군 님이 결정하셨다, 위와 같이 뜻밖에 조선 측에 좋은 결과를 쇼군 님이 분부하셨으므로 조선 남궁(南宮, 예조)으로부터 감사의 서한을 이쪽으로 보내야 하며, 그렇다면 쓰시마번은 도부(東武, 막부)에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니 이 취지를 잘 조정에 전하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형부대보 자신이 직접 역관들에게 도해금지령 등을 알렸던 것은 그만큼 이번 일이 중대했기 때문이다. 본래라면 쓰시마번이 사자를 조선에 보내 서계를 전달해야 할 일이다. 훗날 쓰시마번은 특별히 막부에 사자를 보내 막부의 지시대로 다케시마 도해금지령과 인슈(因州, 돗토리번 동부)로 건너왔던 조선인의 일을 역관들에게 구상으로 전달했음을 보고했다. 아울러 예조참의의 「조례지서한」도 보고했다.

그런데 형부대보는 위의 「구상지각」 자체는 역관들에게 건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역관기』에 따르면, “[형부대보가] 이상과 같이 말씀하신 다케시마 및 인슈에 관해 구상만으로는 낙착을 보기 어려우므로 문서(書付)를 건네주시도록 양사(兩使)가 요청했으므로 도시요리(年寄)들이 진안(眞案)으로 쓰고 재판을 시켜 건네주었다”라고 한다. 진안은 진문(眞文)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문 문서를 의미한다. 또한 ‘도시요리’는 번의 가로(家老) 등 집권자들을 의미하며, 그들을 조선에서는 제봉행(諸奉行)이라고 불렀다.

위의 『역관기』의 문맥에서 판단하면, 형부대보는 일본어 「구상지각」 2통을 역관들에게 건네주지 않았고, 대신 도시요리들이 쓴 진안 2통을 건네주었던 것이다. 여태까지 필자를 포함해<sup>27)</sup> 이케우치 사토시<sup>28)</sup> 등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다케시마 기사』가 기록한, “[형부대보가] 언도하신(被仰渡候) 문서 2통은 다음에 기록한다”<sup>29)</sup>라는 글 중 ‘渡’자를 깊이 고찰하지 않고 형부대보는 일본어 「구상지각」 2통을 역관들에게 건네주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케시마 기사』에 확실히 건네주었다고 하는 글이 없는 한편, 「구상지각」 2통을 건네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글이 있다. 『다케시마 기사』 1697년 4월조의 기록은 도시요리들이 위의 진안 2통을 건네준 경위를, “역관들이 말하기를, 일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형부대보 님의 구두 전언 내용을 잘못 알아듣기라도 한다면 큰일 이므로 문서를 건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서를 준다는 것은 도부[막부]로부터 지시가 없으므로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역관들이] 우리들의 메모로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읽고 기억하여 도성에서 조정에 보고드릴 때는 오류가 없도록 하고 싶다고 하므로 제봉행이 내어준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쓰시마번은 막부를 핑계로 하지만, 쓰시마번은 훗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역관들에게 건네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만약 역관들이 「구상지각」 ⑤-1, 2를 받았다면, 일본어 통역 등을 직업으로 하는 그들은 그것만으로 자기들의 메모로서는 충분했을 것이다. 또한 예조의 조문 서한

27) 박병섭,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광의의 국제법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23호, 2017, 110쪽.

28) 池内敏, 앞의 책, 2006, 313쪽.

29) 『竹島紀事』 元祿 9년(1696) 6월 원문은, “兩使江被仰渡候御書付二通 左=記之”. 글 중 ‘仰渡’는 언도(言渡)의 존경어이며, 무언가 건네준다는 의미는 없다. 이는 바로 앞에 있는 글, “於江戶表=被仰渡候旨 兩使江天龍院公御直=被仰渡也”에서 분명하다. 또한, 다음 문헌들도 ‘被仰渡候’를 ‘말씀하신’이라고 해석 혹은 번역했다. 大西俊輝, 『第四部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2012, 594쪽; 경상북도 독도사료 연구회, 『竹島紀事 II』, 경상북도, 2013, 156쪽.

을 가지고 온 조선 사자들에게 쓰시마번이 일본어 문서를 건네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쓰시마번은 일본어 「구상지각」을 역관들에게 건네주지 않았고, 대신 도시요리들이 진안 2통을 역관들에게 건네주었다고 생각된다. 이 진안은 이하의 논의에서 중요하므로 앞의 『역관기』에 기록된 한문의 번역문을 다음에 제시한다.

도시요리들이 보낸 진안(眞案)

[문서 ⑤-3]

전 태수(宗義倫)가 다케시마의 일로 인하여 사신을 귀국에 파견한 것이 두 차례인데 사신의 일이 완료되지 않은 채 불행하게 일찍 별세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사절을 소환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형부대보]가 배에 올라 [에도로] 들어가 [로주를] 뵈었을 때, [로주가] 다케시마의 지형과 방향에 대해 질문하시기에 사실에 근거하여 대답했습니다. 이 섬은 본국과는 거리가 매우 멀고 귀국과는 도리어 가깝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뒤섞이면 틀림없이 잠통(潛通)과 사시(私市) 등 폐단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군 님이] 곧 명령을 내리시고 영구히 일본 사람들이 그 섬에 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불허하셨습니다.

무릇 틈은 미세한 데에서 생기고 재앙은 낮은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금의 공통된 병통이니, 미리 못하도록 막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백년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해야 할 것이니, 하나의 작은 섬을 대뜸 비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두 나라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궁[예조]에서 정성스럽게 글을 작성하시고 본주[對州]로 하여금 조선에서 보인 훌륭한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하게 한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역관들은 배를 돌려 귀국하는 날에 아뢰어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늙은 사신[형부대보]이 직접 위촉하신 것이 듣기에 편치 않을까 염려되어 위와 같이 글을 씁니다.

[문서 ⑤-4]

귀국 사람 11명이 올해 여름 이나바(因幡)로 건너와 호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중 생략]…

노사군(老使君, 형부대보)께서 면대(面待)하여 고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아마도 말이 통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 알아들었을까 염려되어 적은 것을 역관들에게 건넵니다. [이상]  
 위와 같이 은거(隱居)님이 말씀하신 구상서의 취지만으로는 낙착(落着)을 보기 어려우므로 가로(家老)들이 진안을 상세히 작성해 주기를 역관이 원했으므로 위와 같이 [진안을] 작성해서 도시요리 연명으로 주인(朱印)을 찍어 재판(裁判)을 통해서 건네주었던 것입니다.<sup>30)</sup>

쓰시마번 중신들이 연명으로 날인한 진문 ⑤-3과 ⑤-4를 받은 역관들은 1695년 12월 수령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도시요리 6명<sup>31)</sup> 연명으로 제출했다. 발신자는 “변동지(卞同知) 송판사(宋判事)”로 되어 있다. 일찍이 형부대보는 도해금지령을 구상으로만 전하겠다고 로주에게 말했으나, 조선으로부터 감사의 답서를 기어이 받아야 되는 쓰시마번은 결국 역관들의 강한 요청을 받아들여 번주 대신 도시요리들이 서명, 날인했던 문서를 역관들에게 건네준 것이다.

이들 문서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구상서 2통·진문 2통 모두 다 발신인이나 날짜가 없었으며, 정식 서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sup>32)</sup> 그러나 최철영·유미림은 둘째 진문, 즉 조선인의 소송을 비난하는 진문 ⑤-4에는 쓰시마번 도시요리들 6명의 연명, 주인(朱印)이 있었으나, 첫째 진문 ⑤-3에는 주인 등이 없었으므로 이 문서는 교환공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sup>33)</sup>

한편 송병기는, “이 한문 「구상서」는 「조선국훈도·별차양공여탑하(朝鮮國訓導·別差兩公旅榻下)」라는 수신인(受信人)과 발신년 월, 발신인(發

30) 마지막 부분의 원문은, “右 御隱居様仰渡候御口上書之趣計ニ而ハ 得ト難落着候付 家老中より眞案ニ委細御認被下候様ニ 譯官願出候付 則右之通相認 年寄中連名ニ而朱印押之 裁判を以相渡ス”.

31) 『竹島紀事』에 기록된 이름은, 杉村采女公, 樋口孫左衛門公, 多田與左衛門公, 平田直右衛門公, 但馬十郎兵衛公, 杉村三郎左衛門公.

32) 池内敏, 앞의 책, 2006, 313쪽.

33) 최철영·유미림, 앞의 글, 257쪽.

信人) 대마도 봉행(奉行) 평현진(平顯眞) 등 6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문으로 된 2통의 구상서는 정식 서한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34)</sup>라고 주장했다. 이를 『동문휘고(同文彙考)』<sup>35)</sup>에서 확인하면, “일본국 대마도 봉행 평진현(平眞顯) 등이 삼가 서신을 여행 중인 조선국 훈도·별차 두 공에게 보냅니다. …[도중 생략, 내용은 위의 문서 ⑤-3과 같다]… 元祿 九年 丙子[1696] 十月 日 對島島奉行 平眞顯 平成昌 橋眞重 平眞賢 平成次 平倫义”<sup>36)</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서한 2통을 받은 역관들은 수령서 2통의 수신자 이름을 위와 같이 조선 이름으로 썼다고 생각되지만, 『다케시마 기사』에는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다케시마 기사』의 편집자가 조선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생각된다.

문서 ⑤-3에 대해 최철영·유미림 및 이성환 등은 이들을 모두 서명도 없는 문서로 보고, 이들이 외교문서로 볼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쓰시마번의 제봉행들이 서명·날인하고 있었다. 제봉행들은 막부로부터 조선과의 공식 외교활동을 허용된 쓰시마번의 집권자들이다. 게다가 이 문서는 쓰시마번주가 역관들에게 말한 것을 요약한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쓰시마번과 막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구상지각」 ⑤-1의 내용을 요약하고, 역관들을 통해 조선정부에 전달하는 문서다. 따라서 문서 ⑤-3은 외교교섭에 따르는 공적 문서, 즉 일본국의 외교문서라고 볼 수 있다.<sup>37)</sup> 한편, 「구상지각」 ⑤-1 및 ⑤-2는 구두로 역관들에

34) 송병기, 앞의 책, 2010, 103쪽 각주.

35) 『동문휘고』는 외교 문서 담당 관청인 승문원(承文院)의 보존 기록 중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이후의 사대교린에 관한 외교 문서를 정리하여 출판한 것이며, 1788년(정조 12) 초편(初編) 60책이 출간된 후 여러 차례 속찬(續纂)을 거쳐 1881년(고종 18)에 속편(續編) 36책이 출간되었다. 출전: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2019.7.9).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203&levelId=rg\\_003\\_2440&ganada=&pageUnit=10](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203&levelId=rg_003_2440&ganada=&pageUnit=10)

36) 『同文彙考』 3, 國史編纂委員會 影印, 1978, 初編 중 附編 26 爭難, 「馬島奉行等以竹島漁採彼此禁斷事與任譯書」.

37) 이훈은 아래 문헌에서 현대 용어인 ‘외교문서’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쓰시마번주의 서계만을 외교문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본고는 ‘외교문서’를,

게 전달되었을 뿐 건네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외교문서가 아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위의 서한 ⑤-3 및 ⑤-4를 받은 역관들은 『다케시마 기사』에 따르면, 1697년 정월 쓰시마번 재판 다카세 하치에몬 등과 함께 조선으로 건너 갔고, 1월 10일에 조선에 도착했다. 다카세는 24일 상경하는 역관들에게 조정으로 하여금 감사의 답장을 바로 보내도록 독촉했다.<sup>38)</sup> 그렇다면 역관들은 24일쯤에 동래부를 출발하고, 늦어도 2월 초에는 조정에 상세히 보고했을 것이다.

#### (4) 조선의 대응과 왜관 관수가 건네준 문서

역관들이 가지고 온 문서들에 대해 예조참의 박세준은 4월 형부대보에게 서계 ⑥을 보냈다. 이 내용은 역관들이 가져왔던 귀주(貴州) 제봉행의 문자를 보고 사정을 잘 알게 되었다, 울도(鬱島)가 우리 땅임은 여도(輿圖)에 실려 있는바 문적(文蹟)이 분명하다, 그쪽과 멀고 이쪽과 가까운 것을 막론하고서도 강계(疆界)가 자별(自別)하다, 귀주에서 처음에 비록 잘못 알았으나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지금부터는 지난 일을 허물하지 말고 구호(舊好)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작년 천한 자들이 표류해 귀국에 들어가서 문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죄에 대해 그들을 처형하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서계에 대해 재판 다카세는, ‘제봉행의 문자’, ‘문적이 분명하다’ 및 ‘귀주의 잘못’ 등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이 ‘제봉행의 문자’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한 것은, 문서 ⑤-3을 작성한 이유는 역관들의 메모

---

“외교 교섭에 따르는 공적 문서. 조약·통첩·각서·선언·신임장·위임장·의정서 따위”(〈올인올 통합사전〉)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쓰시마번 봉행이 작성한 <표 1>의 문서 ⑤-3, ⑤-4, ⑦ 등은 외교문서가 된다.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 203쪽.

38) 『竹島紀事』 元祿10年(1697) 1月.

를 위한 것이며, 조정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sup>39)</sup> 또한 쓰시마번 봉행은 동래부사에게 보낸 문서 ⑦에서, 막부의 도해금지령을 도출한 형부대보의 공이 컸는데 조선의 서계가 이를 쓰지 않고 제봉행의 역할을 특기한 것은 마땅치 않으므로 조선의 서계를 예도로 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는 『동문회고』에만 기록되었으며, 『다케시마 기사』 元祿10년 4월조에는 “진문이 없으므로 이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여 문서를 기록하지 않았다.

쓰시마번의 서계 개작 요구에 대해 1697년 7월<sup>40)</sup> 예조참의 박세준은 서계 ⑧에서, ‘제봉행의 문자’라는 문구는 삭제하지 않고, 형부대보의 역할을 중시하여 “좌우(左右, [형부대보])께서 면대하시어 상세히 전하고 또 여러 봉행의 글에 접하여”라고 썼다. 예조의 입장으로는 ‘제봉행의 문자’가 있으므로 서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적이 분명하다’에 대한 요청은 무시하는 한편, ‘귀주의 잘못’이라는 표현은 개정하고, 귀주에서 울릉도와 竹島는 섬은 하나이고 이름은 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섬은 우리 땅이라는 내용을 썼다.

그러나 이 서계에 만족하지 못한 다카세는 한때 시위행동으로서 ‘왜관 난출사건’까지 일으켰다. 조정은 사건의 책임을 묻고, 책임자 다카세의 귀국을 확인한 후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의 1698년 3월자 개작 서계 ⑨를 쓰시마번에 보냈다. 이 서계에서 ‘제봉행의 글’은 다음과 같이 ‘귀주에서 보낸 글’로 바뀌었다.

#### [문서 ⑨, 이선부 서계]

지난번 역관이 귀주에서 돌아와 좌우[형부대보]께서 직접 부탁하신 말을 전해주고 귀주에서 보낸 글들을 보고는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39) 『竹島紀事』 元祿10年(1697) 5月 11日.

40) 서계의 날짜는 『동문회고』에서는 6월로 되어 있으나, 서계 정본(正本)은 수신자가 가지는 것이므로 일본의 기록 『竹島紀事』대로 7월로 한다.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여도에 실려 있으며 문적이 분명합니다. 물론 울릉도가 그곳과는 멀고 이곳과 가까우니, 강제는 자연히 갈라집니다. 귀주에서 이미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하나의 섬으로 이름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 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귀국에서 명령을 내려 영구히 사람들이 왕래하여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간곡하게 글을 써서 보였으니, 우호관계를 영원토록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sup>41)</sup>

이 서계 안에는 막부 및 쓰시마번이 기대했던 감사의 글은 없었다. 오히려 울릉도는 조선 땅이므로 일본이 도해금지령을 내렸던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였다. 이 서계에서 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울릉도가 여도(『輿地勝覽』)에 실려 있으며 문적에서 분명하다, 이쪽에서는 가깝고 그쪽에서는 멀기 때문에 경계가 자연히 갈라진다는 것, 울릉도가 다케시마섬은 쓰시마번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쓰시마번은 불만이 있었지만 특별히 문제시할 글이 없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 서계 ⑨를 박현진은 조선 측 ‘확인공문’으로 보았지만, 그가 조선 측의 ‘교환공문’으로 본 이여의 서계 ④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계 ⑨가 ‘교환공문’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선 측 ‘확인공문’은 없어지게 된다.

한편, 일본 측 ‘확인공문’으로서 박현진은 “막부의 1699년 서한” ⑩을 들었다. 서계 ⑩-1은 1699년 3월 21일 왜관 관수가 훈도 박첨지(朴僉知)와 별차 최판사(崔判事)에게 건넸다고 한다. 내용은, ‘다케시마 일건’이 해결되어 다행이다, 남은 것은 왜관 관수가 구두로 전하겠다는 것이며,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는 글이나 도해금지령에 관한 글은 없었다.

41) 『竹島紀事』, 元祿11年(1698) 4月条. 원문은 (前半省略) 頃因譯使回自貴州 細傳左右面託之言備悉委折矣 鬱陵島之爲我地、輿圖所載、文跡昭然無論 彼遠此近 疆界自別 貴州既知 鬱陵島與竹島爲一島而二名 則其名雖異 其爲我地則一也 貴國下令 永不許人往漁採 辭意丁寧 可保久遠無他 良幸良幸 (以下省略) .

이 서계가 말하는 왜관 관수의 '구두 전달'을 기록한 것이 일본어 「구상지각」 ⑩-2다. 이는 조선 측의 '잘못'에 대한 불만을 썼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은 다케시마를 오랜 세월 버려두고 관리하지 않았다, 그 간 80여년에 걸쳐 일본인이 어럽을 했다, 그러나 조선 어민들이 그 섬에 왔으므로 그들을 잡았으며, 쓰시마번은 막부의 지시에 따라 조선에 사자를 보내 그들을 돌려주고, 아울러 다시 조선인이 도해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조선 정부는 이를 양해하고 그 섬에 도해하는 어민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갑자기 조선 정부는 태도를 바꾸어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이는 문헌에 기재된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인의 '범월침섭(犯越侵涉)'을 비난했다, 우리 사자는 이 서계의 정식 수령을 거부했던 바 전 태수가 별세했기 때문에 그냥 귀국했다, 형부대보가 에도로 갈 기회가 있었으므로 막부에게 다케시마는 본래 조선의 울릉도이지만 조선이 오랫동안 버려 왔으므로 자연히 일본의 속도처럼 되었으며, 조선인의 도해금지를 요청했다, 이는 마땅한 일이지만 원래 이 섬은 조선 여도에 기재된 조성 땅이다, 따라서 양국 사이의 성신 통교를 고려해 일본이 도해를 금지하면 조선이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아뢰었다, 이로 인해 막부는 도해금지령을 내렸으므로 이 결정을 쓰시마로 온 역관에게 전했다, 이처럼 다케시마가 귀국 소유로 되고 잘 해결된 것은 형부대보가 힘썼기 때문인데 조선 측에서는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가지지 않은 채 단지 모든 일이 순리대로 제자리에 돌아갔다고 생각함은 잘못이다, 이 외에도 여러 의견차가 있으므로 장차를 위해 우리 의견을 분명히 하므로 이를 동래부 및 조정에 전달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었다.<sup>42)</sup>

이 구상서에 대해 최철영·유미림은 이를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성환은 형부대보의 서계에 “남은 것은 왜관 관수가 구두로 전달하겠다”라도 쓰고 있으므로, 서계는 공문의 본장(本狀)에 해당하고 「구상지각」은 공문 본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42) 『竹島紀事』, 元祿12年(1999)正月.

첨부 문서(添狀)이며, 두 문서는 “연결된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sup>43)</sup>

그런데 이 일본어 「구상지각」에는 발신자 이름이나 날짜 등이 없으며, 또한 이것이 조선 측에 제출되었다고 하는 기록도 없다. 『다케시마 기사』에 따르면 왜관 관수가 형부대보의 서계를 훈도 박첨지와 별차 최판사에게 건넸을 때 형부대보가 말한 구상서의 ‘취지’를 날날이 양 역관에게 전했다고 쓰고 있을 뿐이며, 문서 「구상지각」을 건네주었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26일 박첨지가 왜관에 가서 말하기를, 동래부사는 구상의 취지는 알았지만, 낙착(落着)이 어려우므로 박첨지가 들은 대로 자세히 써서 [동래부사에게] 잘 아뢰어야 할 것이라고 하므로, 도성(都城)으로 보낼 서장 등을 박첨지가 써서 서둘러 아뢰었다고 하였다. 이 문맥에서도 조선 측은 「구상지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본래 쓰시마번은 막부에게는 구두로 전한 말은 반드시 훗날 구상서로 기록하고 제출했지만, 조선에게는 앞에 쓴 것처럼 “구상으로만 약속한 것은 훗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증거가 될 수 없도록 구상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쓰시마번 봉행들은 조선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을 조선인이 부르기 쉽도록 ‘굴진중’ 등으로 칭하고 본래의 일본 이름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左衛門)’ 등을 쓰지 않았는데, 그런 일종의 사대(事大)의식을 가진 자들이 일본어 문서를 그대로 동래부 등에 제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동래부도 그런 일본어 문서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일본어 「구상지각」 ⑩-2는 조선 측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렇다면 서계 ⑩-2는 ⑩-1의 ‘첨부 문서’라는 이성환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상지각」은 외교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5월 4일 박첨지는 왜관 관수를 찾았는데, 「구상지각」의 내용에 대해

43) 이성환, 앞의 글, 2019, 212쪽.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쓰시마번 태수의 1694년 서계 ③ 및 이에 첨부된 별폭(別幅)에 기록된 선물은 받지 않기로 조정이 결정했으니 이들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관수는 이를 양해했다.<sup>44)</sup> 이로써 ‘울릉도쟁계’ 교섭은 끝났다.

1699년 10월 에도에 체재하는 쓰시마번의 가로 오우라 추자에몬(大浦忠左衛門)은 쓰시마번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형부대보의 서계 ⑩-1을 관수가 조선에 건네주고 아울러 「구상지각」 ⑩-2의 내용을 설명했으니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로주 아베 분고노카미에게 보고했다. 아베는 이를 쇼군에게 보고했다. 이 말을 듣고 형부대보는 아베에게 보낸 11월 21일자 서한에서 감사의 글을 쓰고 다케시마에 관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아베는 12월 그믐날 답장을 보내고 형부대보 신하에게 알렸듯이 쇼군 님에게 다케시마에 관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음을 보고했다고 썼다.

위와 같이 조·일 양국이 교환한 문서를 분석하면 조선 측은 명목상의 ‘다케시마’는 고사하고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시종일관 주장했다. 한편, 쓰시마번은 막부가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내린 후 다케시마(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구두로는 인정했으나, 외교문서에는 직접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유일하게 쓰시마번 제봉행의 서한 ⑤-3에서 막부가 일본인의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했다고 간접적으로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 쓰시마번은 처음에는 다케시마에 조선인이 도해할 것을 금지하도록 조선에 요구했기 때문에 훗날의 증거가 되는 문서에서 다케시마가 조선 땅임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 측이 다케시마를 조선 땅이라고 ‘간접적으로’ 인정한 외교문서는 있으나,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직접’ 인정한 외교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44) 『竹島紀事』 元祿12年(1699)10月.

## (5) 원본과 공인 필사본

박현진은 『다케시마 기사』 등에 기록된 조·일 간 교환공문을 바탕으로 ‘약식조약’설을 주장했는데, 앞에 쓴 바와 같이 최철영은 사서 『다케시마 기사』 등에 실린 교환공문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조약법상의 논리를 전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박현진이 지적했듯이, “일련의 교환공문의 원본(인증 또는 공인 필사본)이 아니라 이에 관해 기술·기록한 사서·사료(증거)는 국제판례(법) 상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거나 또는 그 증명력(신빙성)이 현저히 제한되며, 따라서 그러한 간접증거에 기초하여 전개된 법률적 분석·평가는 필연적으로 법적 타당성을 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sup>45)</sup>

특히 ‘약식조약’설은 시제법을 떠나 현대 국제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므로 형식적인 요건이 중요하며, ‘원본(인증 또는 공인 필사본)’의 제시가 중요하다. 그런데 가령 ‘원본’이 있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울릉도정계’ 관련 원본은 300년을 넘기 때문에 원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해야 되는데, 이는 고서화의 감정처럼 어려울 것이다. 특히 쓰시마번이 조선의 국서를 위조한 저명한 ‘야나가와(柳川)사건’의 예도 있었다. 이처럼 원본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면 원본보다 오히려 인증 또는 공인 필사본을 찾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런 필사본으로서 박현진은 신용하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표 1>의 공문 중 두 문서 ⑤-3과 ⑨를 제시했다.<sup>46)</sup> 신용하는 1877년 메이지(明治)정부 내무성이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한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질문서(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sup>47)</sup>(「질문서」라고 약칭)에 있는 문서들을 소개한 것이다.<sup>48)</sup> 이 자료에는 문서 ⑩-1과 ⑩-2도 실려 있다. 이들 중에서

45) 박현진, 앞의 글, 2018, 66쪽.

46) 박현진, 앞의 글, 2018, 60쪽, 각주 16.

47) 『公文錄』 内務省之部I(明治十年三月).

48) 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69쪽 및 124쪽.

한문은 읽기 쉽도록 보조적으로 일본어 가나(仮名)나 토(훈독 기호)를 달고 있는데, 물론 조선과 교환한 외교문서에는 그런 가나나 토는 없다. 이런 가나나 토를 포함해 내무성 「질문서」는 거의 『다케시마 기사』와 일치한다. 이들은 『다케시마 기사』를 베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본어 가나나 토를 달지 않은 공인 필사본으로서 내무성이 작성한 『이소타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를 들 수 있다. 이는 1875년 8월 내무성 지리료(地理寮) 지지과(地誌課) 직원인 나카무라 겐키(中邨元起)가 편집한 것이며, ‘다케시마 일건’에서 다케시마(별명 이소타케시마)의 소속을 결정하는 경위를 기록한 것이다. 혹시 이 문헌을 개인의 저서로 볼 경우에는 대신 내무성 지리국이 필사한 『이소타케시마 각서』를 공인 필사본으로 들 수 있다.<sup>49)</sup> 지리국은 1877년 1월 지리료가 명칭만 변경한 조직이다. 위의 두 문헌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전자에만 마지막에 “明治八年八月八日校正 中邨元起”라는 글과 나카무라의 날인이 있다.<sup>50)</sup> 이들 문헌은 아래와 같은 문서들을 기록하고 있다. 번호는 <표 1>의 번호다.

- ① ‘日本國對馬州太守 拾遺 平義倫 奉書’
- ② ‘朝鮮國禮曹 參判 權堦 奉復’
- ③ ‘日本國對馬州太守 拾遺 平義倫 奉書’
- ④ ‘朝鮮國禮曹 參判 李畚 奉復’
- ⑤-1 ‘譯官江申渡候口上之覺’
- ⑨ ‘朝鮮國禮曹 參議 李善溥 奉書’
- ⑩-1 ‘日本國對馬州太守 拾遺 平義倫 奉復’

한국 측 공인 필사본으로서 앞의 관찬서 『동문회고』에 실려 있는 서

49) 이들 『磯竹島覺書』와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진 문서로 『磯竹島事略』가 있다. 이 문헌의 내제(內題)는 『磯竹島覺書』이며, 문헌의 번각문은 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資料編)], 島根県, 2007, 1-25쪽에 있다. 이 『磯竹島覺書』의 번역은 아직 없는 것 같다.

50) 박병섭, 「池内敏의 『竹島- 또 하나의 일·한 관갯사』, 『독도연구』, 20호, 2016a, 260-261쪽.

계들을 들 수 있다. 이는 <표 1> 중 문서 ①-④, ⑤-3, ⑤-4, ⑥-⑧을 필사하고 있다. 그런데 『동문회고』는 본래 서계의 모두(冒頭)에 적혀 있는 발신자 및 수신자 이름 등을 간략하게 썼다.<sup>51)</sup> 한편 서계의 본문이나 말미에 있는 발신자 이름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약점은 있으나 『동문회고』에 실린 서계는 공인 필사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문서 중 ①-④, ⑥, ⑧은 『동문회고』와 『이소타케시마 각서』 양쪽에 실려 있는데,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다만 『동문회고』는 별폭(別幅), 즉 서계의 부속문서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선물의 목록이다. 이런 차이는 있으나 『동문회고』와 『이소타케시마 각서』의 필사는 신뢰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표 1>에 게재된 외교문서는 모두 공인 필사본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에 의해 ‘원본(인증 또는 공인 필사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또한 이들 필사본의 내용은 『다케시마 기사』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지만, 제봉행의 이름만 조선 이름인지, 일본 이름인지 차이가 있다. 이를 제외하면 <표 1>의 문서에 관한 한 『다케시마 기사』의 신뢰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 3. ‘거리관습’설에 관한 검토

박현진은 17세기 조·일 간 교환공문은 당시 양국이 울릉도·독도 영유권 귀속문제를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특수관습’으로 ‘거리관습’에 입각, 막부가 조선의 울릉도 영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또 조선의 독도 영유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양자 간 국제합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시 양국은 해상국경을 독도 남부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sup>52)</sup> 그는 ‘거리관습’ 합의에 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51) 예를 들면 문서 ③은 “島主爭辨蔚陵島書 禮曹參判前”이라고 기록했다.

조·일 교환공문의 문안과 용어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 당시 도서 영유권 귀속 주체의 판단에 있어서 지리적 거리 기준을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로 간주하는 법적 확신을 확인하고 있다. 일본 막부는 1697년 2월 교환공문에서 ‘이나바 주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160 리 정도인데 비해 조선에서는 40 리 정도로서 울릉도가 조선에 가까우므로 조선의 영토로 결정한다’고 쓰고 있다. 또 조선 조정 역시 1698년 3월 회답공문[⑨]에서 조선의 영유권의 근거로 지리적 원근을 명시적으로 원용함으로써, 당시 이를 양국 간 도서영유권 판단·결정에 관한 구속력을 가진 관습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53)</sup>

박현진이 말하는 ‘1697년 2월 교환공문’은 1696년 제봉행의 서한 ⑤-3 혹은 ⑤-1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들의 내용은 제2절에 밝힌 바와 같이 이 안에 ‘이나바 주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160 리 운운’이라는 글은 없다. 또한 박현진이 주장하는 “울릉도가 조선에 가까우므로 조선의 영토로 결정한다”라는 글도 없다. 단지 다케시마는 일본과는 거리가 매우 멀고 조선과는 도리어 가깝다, 이 섬에서 두 나라 사람들이 뒤섞이면 틀림없이 잠통(潛通)과 사시(私市) 등 폐단의 우려가 있으므로 쇼군이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하였다고 썼을 뿐이다. 이는 쓰시마변이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훗날의 증거가 되는 서한에는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했다고 쓴 것이다.

박현진이 거론한 울릉도까지의 거리에 관한 기록은 1696년 1월 9일 형부대보가 로주와 협의했을 때 로주 아베 분고노카미가 말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 「구상지각(口上之覺)」과 같다.

구상지각

다케시마에 관해 [돗토리번주] 마쓰다이로 호키노카미(松平伯耆守)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나바국이나 호키국에 부속된 섬이라는 것이 아

52) 박현진, 앞의 글, 2013, 133쪽.

53) 위의 글, 149쪽.

니었다···[도중 생략]

[이런 경위에서] 다케시마로 요나고 초닌(町人)들이 건너가서 어렵게 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섬을 일본이 취한 것도 아니다. [돗토리번에] 섬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니 조선에서는 40리 정도라고 한다. 또한 호키에서는 160리 정도라고 한다. 조선에서는 각별히 가깝기 때문에 조선의 경계에 있는 울릉도인지도 모른다. 아울러 이쪽이 취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혹은 섬에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제 와서 [조선에] 건네주기 어렵다. 그러나 이전부터 그런 일도 없는 것 같다. 이쪽에서는 다케시마의 일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어떨겠는가?<sup>54)</sup>

이처럼 아베는 먼저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다케시마를 조선의 울릉도로 생각하고 다케시마까지의 거리 관계나 잠통 등을 고려해 도해를 금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아베는 설령 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라 할지라도 일본인이 살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케시마를 조선에 건네주지 않겠다는 의지조차 보였다.

한편 조선의 서계도 먼저 조선 정부가 울릉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선부 서계 ⑨는 먼저 울릉도는 문헌 ‘여도’(『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조선 땅임을 지적한 다음, 지리적으로도 울릉도가 조선에 가까우므로 경계가 자연히 구분된다고 썼다. 이 문서도 결코 울릉도가 조선에 가까우므로 조선 땅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조·일 양국은 울릉도까지의 거리 관계 이전에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박현진이 말하는 ‘거리관습’설은 성립될지 의문이다.

54) 『竹島紀事』 元祿9년(1696) 1월 28일.

## 4. 독도에 대한 역사적·원시적권원과 권원의 유지

### 1) ‘울릉도쟁계’ 이전 독도의 귀속

‘울릉도쟁계’(다케시마 일건) 이전 조·일 양국의 우산도(마쓰시마)에 대한 영유의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정부의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는 『태종실록』(1431), 『고려사』(1451),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등 관찬서에 드러난다. 이 중에서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우산 울릉, 두 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므로 우산도를 독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산도의 위치나 크기, 방향 등은 알 수 없으므로 우산도를 확실히 독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태종실록』을 보면, “그 섬[우산도]의 호수는 15가구요, 남녀를 합치면 86명”이라고 하므로, 우산도는 독도라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산도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관찬서는 ‘울릉도쟁계’ 이전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팔도총도」뿐인데, 이 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있다. 또한 일설에 두 섬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자료에서 우산도를 독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조선정부가 말하는 우산도는 ‘울릉도쟁계’ 이전에는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 모호하다. 결국 조선정부는 동해에 울릉(무릉)도 외에 막연히 우산도라는 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을 뿐, 우산도에 대한 인식은 모호했다.

한편, 일본 어민들은 17세기 후반 마쓰시마(독도)에서 어업을 했으므로 마쓰시마를 잘 알고 있었다. 그 경위를 보면 그들은 에도 막부의 허가를 얻어 다케시마(울릉도)에서 어업을 했는데 다케시마에서의 강제잡이가 여의치 않게 되자 1660년경부터 부득이 어업 조건이 나쁜 마쓰시마에서 강제잡이를 시작했다. 이 어업의 국제법적 의의를 다이주도 가나에(太壽堂鼎)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7-18세기에 원용된 선점 법규에 따르면 영토권의 취득에 필요한 점유는 토지의 사용이나 정주 등 물리적 점유의 의미에 중점이 있었으며, 국가 기관이 구체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이 토지를 실제로 사용해 경영하고 정주하고 있었으면 충분했다. 실효적 점유의 중점이 국가의 지배권의 행사라는 사회적 점유로 확실히 전환한 것은 19세기에 있어서다. 竹島[독도]는 일본인에 의해 사용되어 경영되고 있었다. 정주는 없었지만, 竹島[독도]처럼 정주에 적당하지 않는 섬에는 그럴 필요는 없었다. 가령 竹島[독도]를 발견한 것이 한국인이 먼저라고 하였더라도 단순한 발견은 그 후 계속된 점유를 바탕으로 하는 권원에 이길 수 있는 우월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竹島[독도]는 17세기 당시 국제법의 기준에서도 일본 영토로서 인정될 것이다.<sup>55)</sup>

‘울릉도쟁계’ 이전 조선의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의 상황을 고려하면 위의 다이주도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은 17세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다이주도는 17세기 국제법이라고 말하지만, 유럽에서조차 근대 국제법이 성립된 시기는 19세기이며, 다이주도가 말하는 ‘17세기 당시 국제법의 기준’이란 있을지 의문이다. 가령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양의 국가 간 관계에는 무관하다.

한편, 다이주도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일본정부 주장의 약점을, “당시 막부가 [독도] 영유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으며 竹島[독도]에 대한 국가 권능의 표시가 그다지 분명치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다케시마 일건(울릉도쟁계)’이전 막부의 마쓰시마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을 알선한 막부 관료 아베 시로고로(阿倍四郎五郎)의 수하 가메야마 쇼자에몬(龜山庄左衛門)

55) 太寿堂鼎, 「竹島紛争」, 『國際法外交雜誌』 64卷 4·5号, 1966, 122-124쪽.

이 오야(大谷) 가문에 보낸 서장(1660.9.5)이다. 이에, “내년부터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로 당신 배가 건너가게 될 일에 관해 선년 시로고로가로주(老中)님의 내의(內意)를 얻었습니다”<sup>56)</sup>라고 기록되었다. 이 서장에 따르면 로주는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안에 있는 섬이라고 이해하고 마쓰시마에서의 어려움을 양해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로주는 마쓰시마를 다케시마의 부속 섬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 배경에는 다케시마로 실제로 도항하고 있던 오야 가문의 기록에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근처 마쓰시마(竹嶋近所松嶋)’<sup>57)</sup>, ‘다케시마 근처의 소도(竹嶋近所之小嶋)’<sup>58)</sup> 등으로 기록되고 있다. 오야나 막부 관료들은 마쓰시마를 다케시마의 속도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원래 마쓰시마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렸던 것은 다케시마(竹島)와 한 쌍을 이룬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송죽(松竹)은 운수 좋은 한 쌍이며, 현재도 설날에는 문 앞을 소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가도마쓰(門松)로 장식한 집을 흔히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막부는 마쓰시마를 다케시마의 속도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막부는 마쓰시마의 소속은 다케시마와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막부는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1625년경 일본 어민들의 도해를 허용하는 봉서(奉書), 소위 도해면허를 돗토리번주에게 내렸다. 이 사실은 막부가 다케시마는 일본의 어느 나라(지방)에도 소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막부의 인식은 오키 섬을 다스리는 오키 군대(郡代) 사이트 도요

56) 원문은, “來年より竹嶋之内松嶋へ貴様舟御渡之筈ニ御座候旨 先年四郎五郎御老中様へ得御内意申候”이다. 로주는 에도 막부의 최고 집권자다. 가메야마 서장은 東京大学史料編纂所가 소장하는 『大谷氏舊記』 三에 사본이 게재되어 있다.

57) 龜山庄左衛門이 大谷九右衛門에게 보낸 書狀(1659.6.21); 川上健三, 『竹嶋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81쪽.

58) 龜山庄左衛門이 大谷道喜에게 보낸 書狀(1659.9.8); 川上健三, 前掲書, 78쪽.

노부(齋藤豊宣)의 인식과 똑같다. 사이토가 저술한 관찬서 『은주(은수)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한 쌍으로 보고 두 섬은 일본 서북 한계 외로 기술했다. 이처럼 일본 관민은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의 속도, 혹은 다케시마와 한 쌍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일본 땅 외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부가 다케시마 도해면허를 내린 것은 어민들의 어업 실적을 바탕으로 다케시마를 일본 땅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도가 달성되기 전 조·일 간에서 ‘울릉도쟁계’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다케시마와 이 근처의 있는 마쓰시마에 대한 일본의 탈취는 달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17세기 ‘울릉도쟁계’ 이전 조·일 양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이케우치가 말하듯이 마쓰시마(우산도)는 ‘경계영역’, 즉 “일본이며, 동시에 이국(이역)”, 혹은 “일본도 아니며, 동시에 이국(이역)도 아닌 장소”라는 양의성(兩義性)을 띤 섬이었다고 생각된다.<sup>59)</sup>

## 2) ‘울릉도쟁계’와 우산도

1693년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를 시작했다. 양국의 교섭 과정은 일본에서는 앞의 『다케시마 기사』, 조선에서는 『춘관지』 ‘울릉도쟁계’ 조동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우산도(마쓰시마)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으며, 물론 우산도의 귀속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막부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문면은 마쓰시마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주목한 일본정부는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으며, 마쓰시마는 여전히 일본 땅으로 생각되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막부가 도해금지령을 내린 계기가 된 것은 돗토리번이 막부의 두 번 질문에 대한 회답서에 있었으므로 일본정부의 견해는 마땅치 않

59) 池内敏,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 132-138쪽.

다. 1695년 12월 돗토리번은 막부의 첫째 질문에 대해, “다케시마·마쓰시마 기타 양국[이나바국·호키국]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라고 회답했다. 이 회답서에 등장한 마쓰시마를 중심으로 막부는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1696년 1월 돗토리번은, “마쓰시마는 [일본의] 어느 나라[지방]에도 소속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회답했다.<sup>60)</sup> 이런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허용될 수 없으며, 이케우치 사토시도 주장하듯이 에도 막부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서 마쓰시마는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했던 것이다.<sup>61)</sup>

그런데 쓰카모토 다카시는 막부의 처사는, “마쓰시마를 조선에 조선 영토로 인정한다거나 포기한다고 전했던 것이 아니다”<sup>62)</sup>라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우산도(마쓰시마)의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기무라 간(木村幹)은, “어느 나라가 과거 특정 영역을 ‘영유하고 있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과거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사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다음, “전근대에서 ‘실효지배’란 대체로 어떤 것이며, 또한 이는 어떤 사료에 의해 밝힐 수 있는지”라는 의문을 제시했다.<sup>63)</sup>

일반적으로 ‘실효지배’의 요건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제 판례를 보면 ‘팔마스 섬 사건’(1928)에서는 인구가 적은 소도에 대한 ‘실효지배’와 그렇지 않은 영토에 대한 ‘실효지배’는 종류나 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sup>64)</sup> 그 후의 판례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며, ‘동부 그린란드’(1933)사건에서는 “인구가 희박하고 사람이 정주하지 않은 지역에

60) 『竹嶋之書附』; 『磯竹島覺書』. ‘어느 나라’를 이케우치 사토시 등은 이나바국과 호키국 두 나라로 보았으나, 문맥상 이는 일본의 어느 나라를 가리킨다.

61) 池内敏, 앞의 책, 2016, 183쪽.

62) 塚本孝, 「竹島領有權をめぐる韓国政府の主張について」, 『東海法学』 52号, 2016, 85쪽.

63) 木村幹, 「池内敏著 『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2014, 112쪽.

64) 許淑娟, 「実効支配とは何か」, 『国際法で世界がわかる』, 岩波書店, 2016, 75쪽.

대해서는 타국이 우월적인 주장을 입증하지 않는 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는 매우 적은 것으로도 된다”<sup>65)</sup>라고 한다. 결국 ‘실효지배’에 대한 요건의 기준은 없는 것이며, 이는 분쟁당사국들이 당해 영역에 대해 실행한 주권 표시의 강도나 지속성 등에서 종합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이 역사적권원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 귀속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면 양국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영원히 평행선을 갈 것이다.

한편,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울릉도를 조선의 영유로 결정했으니 그 경위를 살펴보면 독도 귀속의 판단에 참고가 될 것이다. 조선 정부의 울릉도 귀속의 판단기준은 1698년 이선부 서계 ⑨에 있듯이 울릉도가 우리 땅임은 여도 등 문적이 분명하며, 울릉도는 조선에 가깝고 일본과는 멀기 때문에 경계는 자연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판단기준은 형부대보가 1696년 10월 도일한 역관들에게 구두로 전했다. 그 내용은 문서 ⑤-1에 있듯이 막부가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사한 결과 돛토리번의 소속이 아님이 드러났으므로 이 섬에서 양국 어민들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에 가까운 다케시마로 일본인이 도해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조·일 양국은 조선 정부만이 울릉도에 영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위에 울릉도가 조선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결정했다. 즉 양국의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은 (i) 어느 나라가 낙도에 영유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ii) 어느 나라가 낙도에 가까운가? 라는 점이다.<sup>66)</sup> 본래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면 울릉도까지의 원근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울릉도쟁계’의 경우는 원근이 중요했다. 울릉도는 원래 조선 땅이지만 조선은 울릉도를 200년 이상 방치했다.<sup>67)</sup> 그 사이에 쓰시마

65) 中村道, 「領域權原としての実効的支配」, 『判例国際法』, 有信堂, 2006, 132쪽.

66) 박병섭, 앞의 글, 2017, 113쪽.

67) ‘울릉도쟁계’ 이전 조선 관원이 울릉도로 건너간 기록은 1470년대가 마지막이다. 또한 관찬서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이후 ‘울릉도쟁계’까지 울릉도의

번의 ‘의문 4조’나 왜관 관수의 「구상지각」 ⑩-2가 말하듯이 조선정부는 일본 어민들이 수차례 울릉도에서 어업을 했던 것을 알면서도 일본 어민들의 ‘침월’을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어업을 묵인했다. 이 결과 울릉도는 실질적으로 일본 땅처럼 되었던 것이다. 그런 울릉도가 만약 한국보다 일본에 가깝다면 막부는 결코 울릉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17세기에 있어서 방치된 낙도의 경우 국가의 영유 의사와 더불어 낙도와 의 원근이 중요했던 것이다.

위의 낙도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은 양국 사이의 외교교섭에서 밝혀졌으므로 이는 조·일 양국을 구속하는 규율이다. 이 규율은 ‘광의의 국제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sup>68)</sup> ‘광의의 국제법’이란 야나기하라 마사하루(柳原正治)에 따르면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근대국가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은 근대법에 한정되지 않는다.<sup>69)</sup>

이 ‘광의의 국제법’은 근대국제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근대국제법은 1928년에 판결된 ‘팔마스 섬 사건’(네덜란드/미국 간)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성숙 권원은 영역 주권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표명에 입각한 확정적 권원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한다. 이 ‘팔마스 정식’을 ‘울릉도쟁계’ 이전 울릉도에 적용하면 결과는 자명하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대해 원시적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쓰시마번이 지적했듯이 조선 정부가 울릉도를 방치했을 뿐더러 일본 어민들의 침월에 대해 모든 기회마다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묵인했다. 이는 조선이 울릉도를 묵시적으로 유기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본은 막부가 어민들에게 다케시마 도해면허를 교부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어민들은 약 70년 간 어업을 행했다. 이는 주권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

---

귀속을 거론한 관찬서는 없다.

68) 박병섭, 앞의 글, 2017, 113쪽.

69) 柳原正治, 『國際法』, 放送大學教育振興會, 2014, 22쪽.

면 팔마스 사건 판례에 비추어보면 ‘울릉도쟁계’ 이전 울릉도는 일본 영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실효적 점유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위의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중시하고 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확인했다. 따라서 근대국제법의 논리는 17세기 조·일 간에는 무관하며, 조·일 양국이 확정한 판단기준만이 규율이다.

다음에 위의 낙도의 귀속에 관한 조·일 간 판단기준을 ‘울릉도쟁계’ 이후 우산도(마쓰시마)에 적용하면 결과는 자명하다. 첫째, 양국의 영유 의사에 관해 일본에서는 마쓰시마(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부인하는 자료는 있어도 이를 인정하는 공적인 기록이 없다. 반면, 조선에서는 관찬서 『춘관지』(1745)가 ‘울릉도쟁계’조에서 안용복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산도는 조선 땅임을 기록했다.

다음 우산도까지의 원근에 관한 기록도 분명하다. 돛토리번이 로주에게 제출했던 앞의 두 번째 답변서 「각」에 따르면, 거리 관계는 일본 리(里)로 조선 본토와 마쓰시마(독도) 사이가 80-90리(320-360km), 일본 본토 이즈모국(出雲國)과 마쓰시마 사이가 110리라고 기록되었으므로 조선 본토가 가깝다고 인식되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섬까지의 거리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가 40리, 마쓰시마와 일본 오키도(隱岐島) 사이가 80리라고 기록되었으므로 역시 조선 측이 가깝다고 인식되었다. 이는 안용복의 진술을 기록한 일본 공문서 「겐로쿠 각서(元祿覺書)」<sup>70)</sup>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기록된 안용복이 말한 거리는 조선본토와 다케시마(울릉도) 사이가 30리,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우산도) 사이가 50리인데, 마쓰시마와 오키섬 사이는 배로 이틀 걸리는 거리다. 역시 우산도는 조선 본토 및 울릉도에 가깝다고 인식되었다.

70) 정식 명칭은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1696년.

이처럼 낙도의 귀속에 대한 판단기준을 우산도(마쓰시마)에 적용하면, 우산도도 조선 땅이 된다.

### 3) 판단기준의 한·일 양국 간 관습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은 그 후 조·일 양국에서 잘 유지되었다. 조선에서는 조선의 우산도는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라고 하는 『춘관지』의 인식이 관찬서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에 계승되었다. 이들은 모두 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松島이다”라고 기록했다. 특히 『증보문헌비고』는 호리 가즈오(堀和生)에 따르면, “200년에 걸친 편찬 사업의 소산이며 실록을 보완하는 관제 문헌이므로 조선정부가 우산도에 대해 영유의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다.<sup>71)</sup> 이렇듯 조선에서는 ‘울릉도쟁계’ 이후 관찬서에서 독도를 우산도=마쓰시마라고 인식하고 영유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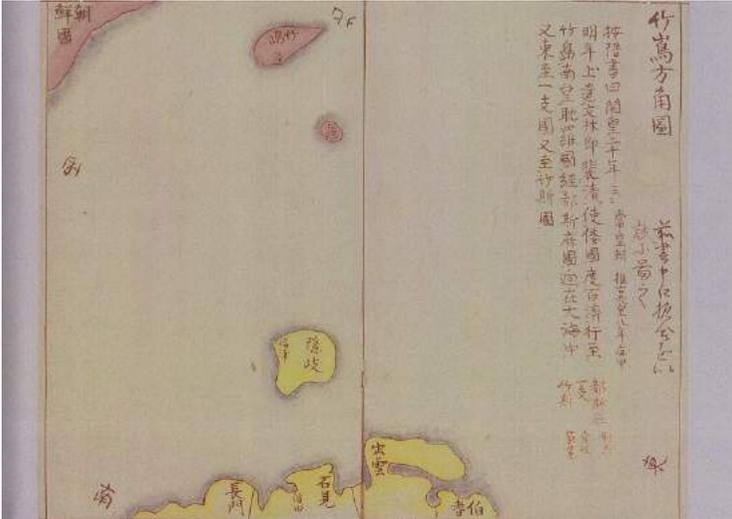
한편, 일본에서는 1740년대 나가사키봉행이나, 막부의 중추기관인 지샤봉행(寺社奉行) 등은 ‘젠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으로 인해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되었다는 것을 오야 가문과 함께 확인했다.<sup>72)</sup>

또한 19세기 다케시마로 밀항한 하치에몬을 처형한 ‘덴포 다케시마 일건’이 있었는데, 이때 마쓰시마에 대한 판단도 17세기의 판단기준대로였다. 이와미(石見, 시마네현 서부)국에 사는 하치에몬은 1836년에 오사카마치봉행소(大坂町奉行所)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그때 그는 마쓰시마로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도해하고 벌목 등을 벌였다. 그러나 오사카마치봉행소는 마쓰시마도 조선 땅으로 보고 이를 드러내는 지도 「

71) 堀和生, 앞의 글, 100쪽.

72) 池内敏, 「「国境」未滿」, 『日本史研究』 630号, 2015, 17쪽; 박병섭,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동북아역사논총』 62호, 2018a, 301-302쪽.

다케시마 방각도(竹嶋方角圖)〈그림 1〉를 하치에몬의 진술조서 『조선 다케시마 도해 일건기(朝鮮竹嶋渡海一件記)』에 첨부했다.



〈그림 1〉 「다케시마 방각도(竹嶋方角圖)」

또한 이 사건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評定所)는 오사카마치봉행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소속도 본격적으로 조사했다. 막부는 쓰시마번에게 두 섬은 모두 울릉도인지, 혹은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는 조선 외 땅인지, 두 섬의 상황, 지리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따로 있다는 것, 이 섬은 다케시마처럼 일본인이 건너가 어렵을 하는 것이 정지된 섬이라고 생각되지만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조선 지도에 울릉·우산 두 섬이 있다는 것 등을 회답하고 조선 지도도 제출했다.<sup>73)</sup> 이런 조사를 마친 평정소는 사건의 판결에서, “위[다케시

73)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 종가문서」 고문서 목록 #4013; 번각은, 池内敏, 『竹嶋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334-335쪽. 원문의 영인 및

마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로 도해한다는 명목을 세우고” 다케시마에 도해한 하치에몬에 대해 사죄를 언도했다.

이 직후 막부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 안에 마쓰시마 이름은 없었지만 다케시마로의 도해가 금지되었다면 이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도 당연히 도해 금지의 대상이다. 실제로 평정소 관계자가 앞의 「다케시마 방각도」를 개정했다고 보이는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朝鮮竹嶋渡航始末記)』 부속지도<그림 2>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땅과 똑같이 붉은 색으로 그렸다.<sup>74)</sup> 막부는 두 섬에 일본이 영유 의사를 가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또한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에 가장 가까운 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두 섬을 조선 땅으로 본 것이다. 이는 17세기 낙도에 관한 판단기준 그대로이다. 따라서 그 판단기준은 조·일 양국 간에서 관습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번역은, 경상북도 사료연구회, 『독도 관계 일본고문서 4』, 2017, 196-205쪽. 박병섭, 앞의 글, 2018a, 311쪽.

74) 박병섭,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3호, 2012a, 143-146쪽.



<그림 2>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朝鮮竹嶋渡航始末記)』 부속지도

이처럼 전근대기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해 영유의사를 한 번도 가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조선정부는 우산도에 대해 관찬서에서 거듭 영유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역사적·원시적권원은 일본에는 없고 조

선에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 판례를 보면 ‘리기탄·시파단 섬 주권 사건’(2002)에서 담당 재판관은 “한섬의 깃털과 한섬의 풀을 정확하게 비교”하듯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의 희박한 에펙티비테(effectivités)를 상대적으로 비교했다고 비유했다.<sup>75)</sup>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산도의 경우는 ‘한섬의 종이’와 ‘무(無)’를 비교하는 것이며 결과는 자명하다. 조선의 여러 관찬서에 거듭 기술된 우산도에 대한 주권 표시는 상대적으로 조선의 우산도 영유의 입증에 충분할 것이다.

#### 4)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일본에서 막부를 무너뜨린 메이지정부도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대로 독도를 판단했다. 1870년 외무성 관리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은 쓰시마번과 부산에 있는 왜관에서 조선의 상황이나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 등 조·일 간 외교의 역사를 조사하고, 보고서 『다이슈 조선 교제 취조서(對州朝鮮交際取調書)』 및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작성했다. 이 『취조서』 안에 ‘다케시마 일건’이라는 제목에서 다케시마가 조선 부속으로 된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sup>76)</sup> 이 보고서에는 조·일간 문서 <표 1>의 ①-④, ⑨, ⑩-1 등도 필사되고 있다. 다만 발신자나 수신자 이름 등이 없다.

한편, 『내탐서』에는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이라는 항목에서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이웃 섬(隣島)으로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서류(書留)가 없다. 다케시마에 관해서는 겐로쿠 기의 왕복 서한과 절차 서류가 사본[『취조서』]과 같이 있다”고 기록

75) 奥脇直也, 「領域支配の実効性ーリギタン島・シパダン島主權事件」, 『國際法判例百選』 第2版, 有斐閣, 2001, 61쪽.

76) 박병섭,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새 자료 및 연구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12호, 2012b, 163-164쪽.

했다. 모리야마 등은 다케시마의 이웃 섬, 마쓰시마에 대해 일본이 영유 의사를 가진다는 자료를 찾지 못했으므로, 다케시마와 함께 이웃 섬인 마쓰시마를 조선 부속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에도 시대 조·일 양국에서 확립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대로이다.

이런 인식은 외무성 관리뿐만 아니라 메이지 정부도 마찬가지다. 잘 알려져 있듯이 1877년 태정관은 내무성의 문의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질문서(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에 대해 내무성의 판단대로 ‘다케시마 외 1도’ 즉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지령을 내렸다. 이 질문서는 막부가 다케시마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다케시마 기사』를 첨부문서로 인용해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마쓰시마에 관한 자료는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같은 제목의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질문서」(1876)에 기술된 ‘원유의 대략’(原由の大略)과 다케시마·마쓰시마를 그린 「이소타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 뿐이다. ‘원유의 대략’은, “다음에 1도가 있다. 마쓰시마라고 부른다. 주회(周回) 30정[3.3km], 다케시마와 같은 선로(線路)에 있다. 오키에서 80리 정도. 죽목이 드물다. 또 물고기와 짐승이 있다”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이 1년 전 내무성은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에 관한 조사를 이미 끝내고 있었다. 이 조사 기록이 『이소타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1875)다. 이 문헌은 다케시마·마쓰시마는 돗토리번에 소속하지 않는다는 돗토리번의 첫째 회답 및 마쓰시마는 일본의 어느 나라(지방)에도 소속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는 돗토리번주의 둘째 회답 등을 기록하고 있다.<sup>77)</sup> 내무성은 이 문헌에 더하여 시마네현이 제출한 앞의 질문서에서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와 같은 선로, 즉 다케시마와 같은 영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내무성은 에도막부가 마쓰시마에 영유의사를 가지지 않

77) 박병섭, 앞의 글, 2012b, 151-154쪽.

있던 것과 마쓰시마가 다케시마와 같은 영역에 있다는 이유로 마쓰시마도 일본과 관계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도 에도시대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과 거의 같다. 이처럼 1905년 이전 일본 정부는 에도 막부가 확립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과 똑같이 판단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본 것이다.

한편, 조선 시대 해금정책으로 인해 우산도까지 가는 자가 끊어졌다. 관리도 실제로 우산도로 가서 이를 확인한 자는 기록상 없다. 조선정부는 정기적으로 울릉도를 수토(搜討)했는데, 수토관 중에는 박석창처럼 울릉도 바로 동쪽에 있는 대섬(竹島)을 우산도와 착각하고, 지도 「울릉도도형(蔚陵島圖形)」(1711)에서 대섬에 ‘해장죽전(海長竹田) 소위 우산도’라고 기입한 수토관도 있었다. 조선정부의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는 관찬서뿐이었으며, 우산도의 위치는 다시 모호하게 되었다.

근대기에 들어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882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은 고종으로부터 우산도 등을 조사하도록 명을 받았으나 우산도를 찾지 못했다. 울릉도 주민들도 우산도의 위치를 몰랐던 것이다. 또한 울릉도 주민들은 1900년에 한·일 공동으로 배를 구입해 우산도를 탐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실패했다.<sup>78)</sup> 이처럼 관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지 못했으며, 우산도는 관찬서 『증보문헌비고』(1908) 등에만 기재된 전설의 섬으로 되어버렸다. 이와 별도로 전라도 어민들이 1894년경부터 독도를 발견해 강지잡이 등을 하였다.<sup>79)</sup> 그들은 독도를 그들의 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는데 표준어는 돌섬이다. 이 독섬이 한자로 ‘石島’라고 표기되고, 1900년 대한제국(‘한국’이라고 약칭함) 칙령 제41호에 울도군 관할로 명시되었다.<sup>80)</sup> 이는 분명히 독도에 대한 주권 표시다.

78)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220-221쪽(일본어), 80-81쪽(한국어).

79) 김수희,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독도연구』 10호, 2011, 189-190쪽; 池内敏, 앞의 책, 2016, 173-174쪽.

80) 예전에 ‘石島=獨島’설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유론(謬論)”이라고 생각했던

그 후 울릉도 주민은 전라도 이외에도 경상도 사람 등이 늘어남에 따라 ‘石島’를 독섬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울리지 않게 되었는지, 독섬의 한자 표기가 ‘獨島’로 변했다. 1906년 시마네현의 울릉도·독도 조사단이 울도군수 심홍택을 방문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었다고 통고했는데, 이 일을 울도군수는 강원도 관아에 보낸 보고서에, “본군(本郡)에 소속된 섬인 독도…”라고 쓰고 조사단의 언동을 보고했다. 강원도 관찰사서리 이명래는 심홍택 보고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는데, 이에 대해 참정대신 박제순은 지령 3호를 내리고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확인했다. 한국이 독도에 대해 영유의사를 계속 가진 것이 분명하다.

결국 1905년 이전 근대기에 있어서 한국만이 독도에 대해 영유의사를 가지고 주권 표시를 했다. 이런 독도를 일본 정부 각 기관은 한국 영토로 보고 있었다. 앞의 외무성이나 내무성 외에 해군 수로부 등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고 있었다.<sup>81)</sup> 그런데 일본정부는 그런 독도를 1905년 무주지라고 강변해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그러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는 국제법에 위배되며, 한국에 대한 침략으로 된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현재 일본정부는 무주지선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1905년 조치는 “竹島[독도]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무성 『10포인트』에 게재된 1905년 내각회의 결정문을 보면, 일본의 조치는 무주지선점을 명분으로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이케우치 사토시는 칙령 제41호에 있는 石島는 독도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박병섭, 「한·일 양국의 독도/竹島 고유영토론의 쟁점」, 『독도연구』 25호, 2018b, 87쪽.

81) 朴炳涉, 「明治政府の竹島＝獨島調査」,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1号, 2016, 57-59쪽.

##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의 해석

독도에 대한 역사적·원시적권원의 확립 및 계속 유지에 대한 증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쟁당사국의 주장과 그 근거에 따라서는, 조약 문건 등에 근거한 권원도 같이 중요하게 국제재판소는 판단한다. 독도의 경우, 양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도 근거하여 그 문서적 법적 근거(조약)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조약도 국제법원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되고 다음해 4월 28일에 발효했다. 이 조약 제2조(a)에, “일본은 ‘Korea’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Korea’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 조항을 포함해 조문에는 독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이 조항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50년대에는 강화조약은 일·한 합병 전 일본 영토의 일부였던 육지를 독립된 한국에 할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의 竹島[독도]는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기 전 시마네현의 관리 하에 있었고, 합병 후에도 그 관할 하에 있었으므로 일본국이 독립을 승인한 ‘Korea(朝鮮)’에 竹島[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 팸플릿은 이런 주장과 상관없이, 러스크 서한과 ‘뱅크리트 보고서’를 보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한국 정부의 주장은 카이로선언이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지역에서 축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선언은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에 따라 일본을 구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은 일본 영토를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로 환

원시키는 것이며, 실제로 SCAPIN-677에 의해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되었다. 대일강화조약에 독도를 일본에 편입한다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일본으로부터 분리가 확정된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일본이 독립을 승인한 ‘한국’에 독도는 포함된다는 것이다.

결국 한·일 양국은 조약 제2조(a)에 규정된 ‘Korea’에 독도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다. 이처럼 조약문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한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2조는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습법이다. 그렇다면 강화조약 초안을 작성한 영·미 양국이 ‘Korea’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교섭 기록 등이 중요하다.

영국은 독자적인 강화조약 최종 초안(1951.4.7)에서 리앙쿠르 암(독도)을 일본 영토에서 분리했다. 영국은 1910년 이전 수로지에서 리앙쿠르 암을 조선 동해안에서 기술하고 있었으며,<sup>82)</sup> 전통적으로 리앙쿠르 암을 한국 영토로 다루었다.

한편, 미국은 초기 초안에서는 리앙쿠르 암을 한국 영토로 생각하다가, 잘 알려져 있듯이 1949년 12월에는 주일 정치고문 시벌드(William J. Sebald)의 의견을 받아들여 리앙쿠르 암을 일본 영토로 삼았다. 이유는, ① 1905년 일본은 한국의 항의 없이 시마네현의 관할 하에 두었다, ② 이 섬에는 한국 이름이 없으며 한국으로부터는 영토 주장이 없었다, ③ 미국 공군의 폭격지로 사용되고 기상 혹은 레이더 기지로서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 8월 덜레스(John F. Dulles)가 간결한 조약 초안을 작성했을 때부터 리앙쿠르 암이나, 센카쿠(다위다오)제도 등 중요하지 않은 섬은 초안에서 무시되었다.<sup>83)</sup> 이는 영·미 공동초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82) 이진명, 『서양 자료로 본 독도』, Pour l'Analyse du Folklore(Paris), 1998, 51-55쪽.

83) 박병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와 합의 -조약에서

다음해 1951년 한국 정부는 영·미 공동초안에 대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미 한국대사관은 독도의 위치를 질문하는 미 국무부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강화조약 공동초안을 세계에 공표하기 1주일 전인 8월 8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정보를 얻어 독도가 리앙쿠르 암임을 처음 알았다. 더 이상 독도 문제 때문에 지체할 수 없는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러스크 서한을 한국에 보냈다. 러스크 서한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등으로 썼다. 그런데 이 견해는 미국 내에서조차 이론이 있었다. 1952년 주일 미국대사관은 미 국무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일찍이 이[리앙쿠르] 암은 조선왕조에 소속하고 있었다”<sup>84)</sup>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러스크 서한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러스크 서한을 받은 한 달 후 외무부 장관 변영태가 주한 미국대사 무치오에게 서한<그림 3>을 보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 내용은, ① 독도는 SCAPIN-677, 맥아더라인 등에서 실질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받았다, ② 1948년 독도에서의 오폭 사건에서 SCAP이 사과한 것 등도 한국 영토임을 드러낸다, ③ 한국은 독도를 수백 년에 걸쳐 소유한 것을 드러내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 ④ 1905년에 일본이 현(縣) 수준에서 독도를 탈취해서 편입했던 일은 한국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할 수 없으며, 한·일 양국의 자료에서도 긍정되지 않는다<sup>85)</sup> 라는 것이었다.

누락된 섬들과의 비교 검토, 『독도연구』, 21호, 2016b, 23-33쪽.

84) 1952년 10월 3일자 스티브스(John M. Steeves) 서한, 「Koreans on Liancourt」; 박병섭·나이트 세이추, 호사카 유지 옮김,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서, 2008, 324-334쪽.

85) 박병섭, 앞의 글, 2016, 32쪽. 변영태 서한은 미국에서 비공개 기간 30년을 넘은 1982년 6월 보안을 이유로 미국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비공개를 유지하기를 결정했다. 현재 이 서한은 NARA에서 공개되고 있으나,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은 옛날 NARA의 비공개 화면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하루속히 갱신되어야 한다. 변영태 서한의 영인은, <http://dokdo-or-takeshima.blogspot.jp/2011/05/1951-sep-21-korean-ambassador.html>

이 서한의 날짜는 9월 21일이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조인식이 끝난 후였다. 변영태 서한은 강화조약 조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UNCLASSIFIED

SECURITY: 108-10/3/51  
Enclosure 1 1 PUSAN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OUL

September 21, 1951

Dear Ambassador Muccio, 51.9.21

This note is to seek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enclosed excerpt of Memorandum of SCAPIN-677, 29 January 1946, which should be regarded as a conclusive factor in deciding, in the Korean favor, the controversy over the ownership of Dokdo, known as "Liancourt Rocks" and also as "Takeshima" in Japanese. The fact that the disputed isle has been put on the Korean side of the MacArthur Line is another manifestation of the SCAP Memorandum under notice.

In 1948, if I do not remember wrongly, when air bombing practice caused casualties among the Korean fishermen in boats nestling near the isle, SCAP apologized to this Government for the incident. Had SCAP regarded the isle as Japanese territory, the presence of the Koreans there would have been illegal and no apologies necessary. As evidenced by the Memorandum in question, SCAP has, at no time, doubted that the isle belongs or ought to belong, to Korea.

We have substantial documented evidence to prove that the isle has been in the Korean possession for many hundred years. The fact that Japan incorporated the isle into one of its nearby prefectures in 1905 (a deal sneaked on a prefectural level, not on a Governmental level, for the obvious convenience to back down more easily in case of a possible international trouble) cannot repudiate our rightful claims to the isle, supported not merely by Korean documents but by Japanese ones also.

Sincerely yours,

Yung Tai PYU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Enclosure: Memorandum of SCAPIN-677, 29 January 1946

His Excellency

<그림 3> 변영태 서한(1951.9.21)

변영태 서한을 받은 주한 미국대사관은 10월 3일 이를 국무부에 보냈

을 때 그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영유권의 근거를 SCAPIN-677과 맥아더라인 및 한·일 양국의 역사자료에 두고 있으니, 그런 역사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국무부에 보내겠다고 외무부 장관에게 전했는데, 그런 자료가 올 것인지 의문이라고 썼다.<sup>86)</sup> 미국대사관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밝히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한국전쟁 와중 타인지 영유권 근거의 자료를 미국에 보내지 않았던 것 같다.

위와 같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는 미국과 자국의 영토로 보는 한국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사이 국무부는 문제가 많은 러스크 서한을 바로 주한 및 주일 미국대사관에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강화조약 공동초안을 작성했던 영·미 양국의 독도 소속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 채 강화조약이 조인되고 다음해 4월 비준되었다. 그렇다면 조문 제2조(a)항에 있는 'Korea'가 독도를 포함할지 여부에 관해서 연합국은 아무 결론도 내지 않았던 것이다.<sup>87)</sup> 강화조약 조인식에서 델레스는 연설에서 하보마이 등 일부 영토의 최종 처분은 의문이 남았음을 솔직히 말하고, 그런 의문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권했다.<sup>88)</sup> 그런 의문을 남긴 영토 중에 독도도 포함된다.

실제로 훗날 델레스는 이 사실을 밝혔다. 1953년 독도에서 일본 순시선에 대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자, 11월 23일 델레스는 주한 및 주일 미국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리앙쿠르 암을 일본 영토로 보는 미국의 입장은 강화조약에 서명한 수많은 국가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미국은 독도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한·일 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문제라

86) 1951년 10월 3일자 카펜터(Stanley S. Carpenter) 서한 「Transmittal of Letter from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n Korean Claim to Dokdo Island」. 국사편찬위원회, 『독도자료』 II-미국편, 2008, 181쪽.

87) 박병섭, 앞의 글, 2016, 39쪽.

88) 연설 전문은, 毎日新聞社, 『対日平和条約』, 1952, 481-499쪽.

고 지침을 내렸다.<sup>89)</sup> 이 텔레스의 견해에 드러난 바와 같이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채 구 일본제국의 영토 처분을 끝냈던 것이다.

## 2) '우티 포씨디티스'(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

강화조약에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은 김명기에 따르면, 국제법적으로 현상유보의 원칙('uti possidetis'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는 2012년 논문에서, “강화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화조약 체결당시에 있는 현상(status quo)대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참고서적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제판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현상유보’의 원칙을 독도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

현상유보의 원칙에 의거 1951년 9월 8일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될 당시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의 영역권이 분리된 상태대로 독도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게 된다.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은 독도의 imperium[통치권]이었으나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한국은 독도의 dominium[영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그 상태 그대로 1951년 9월 8일 [강화조약 조인시] “Uti Possidetis의 원칙”에 의해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동 원칙은 그곳에 남아 있는 권리(be entitled to remain there)이기 때문이다.<sup>90)</sup>

그런데 김명기는 2015년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논문에서는 ‘현상유보

89) 텔레스 전문의 영인은 한국국사편찬위원회, 『독도자료』 III-미국편, 2008, 184쪽; 정병준, 앞의 책, 797쪽.

90) 김명기,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검토」, 『독도연구』 13호, 2012, 298쪽.

의 원칙'에 대해 아무 말이 없고, 제1절에 썼듯이 강화조약 제2조에 대해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속도'론을 적용했다. 따라서 그는 '우티 포씨 디티스' 원칙을 적용하는 견해를 철회했는지 모호하다.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의 정의를 허숙연은 간결하게, "식민지가 독립할 때 새 독립국가는 국경선으로서 독립 시점의 구 식민지의 행정구획선을 승계할 것을 추정하는 원칙"<sup>91)</sup>이라고 했다. 또한 고테라 아키라(小寺彰)도 이 원칙은, "독립 후 국경선도 식민지 시대의 국경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라틴 아메리카 제국이 오래 전부터 주장했고, 아프리카 제국도 1963년 수뇌회의에서 승인했다"<sup>92)</sup>고 한다.

이 원칙을 기본으로 영토 분쟁이 ICJ에서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는 '부르키나파소·말리 사건'(1986)이다. 그때 재판부에서 제시된 이 원칙의 의의는, "식민지 독립과의 논리적 연계로부터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그 관습법으로서의 형성 여하가 거론되는 것이 아니다"<sup>93)</sup>라고 한다. ICJ는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을 법의 일반원칙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를 독도문제에 적용할 가능성을 최철영이 제기했지만, 제1절에 썼듯이 그는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본고는 다음에 이 원칙을 한·일 간 국경에 적용한다.

한·일 양국이 독립할 때까지의 양국의 행정관할경계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10년부터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다. 그동안 양국 간 행정관할경계선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있었으며, 독도는 시마네현 관할 하에 있었다. 또한 한국의 북쪽 경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었다.

그런데 1945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일본 주변 도서의 귀속은 포츠담 항복조건에 따라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규

91) 許淑娟, 앞의 책, 2012, 207쪽.

92) 小寺彰, 『パラダイム国際法』, 有斐閣, 2004, 128쪽.

93) 許淑娟, 앞의 책, 2012, 2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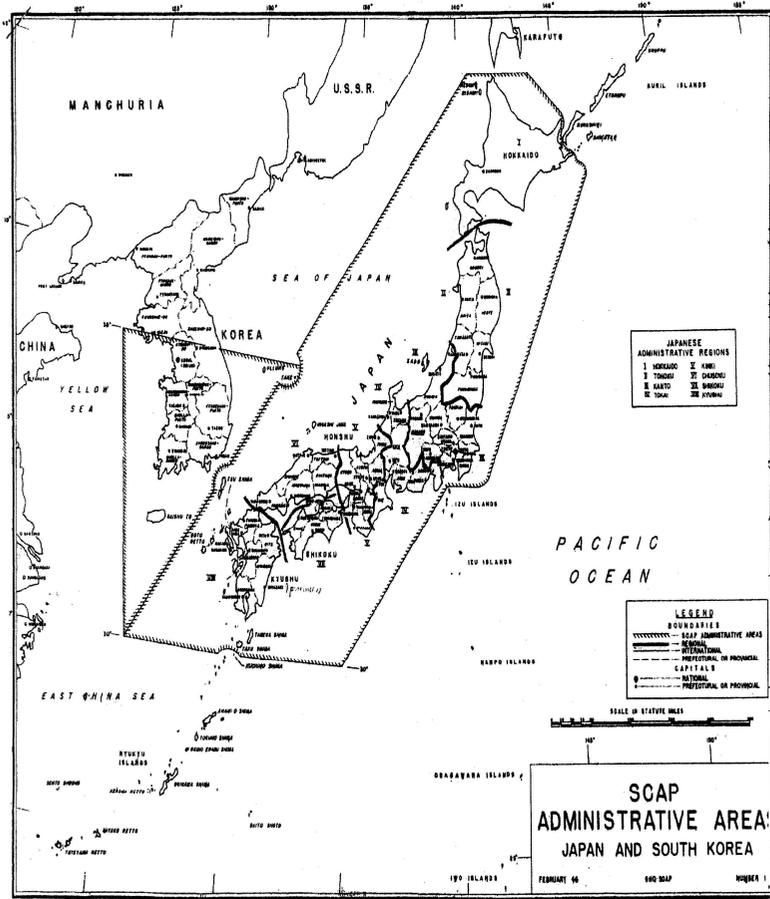
정되었다. 연합군은 9월 2일 「일반 명령 제1호 육군, 해군」을 일본에 내려, “일본국 대본영(大本營)과 일본본토, 이에 인접한 여러 작은 섬들, ‘북위 38도 이남 Korea’[‘남한’으로 약칭], 류큐제도 및 필리핀에 있는 ‘일본 부대’는 미국 태평양 육군부대(AFPAC) 최고사령관에 투항해야 한다”고 명령했다.<sup>94)</sup> 위의 구역 중 특히 일본본토는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의 관할로 되었다. 사령관은 맥아더이다. 또한 남한은 AFPAC 관할 ‘재한국 미육군 총사령부 군정청’(USAMGIK, 미 군정청으로 약칭) 통치하에 놓였다.

1946년 1월 29일 SCAP은 일본정부에 지령 SCAPIN-677을 내려, 울릉도, 제주도, 독도, 일부 주변 도서 등에 대해 일본정부가 정치상 및 행정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때 SCAP의 관할구역을 그린 지도가 「SCAP 관할 구역, 일본 및 남한」<그림 4>이다. 이 지도에서 ‘TAKE’ 즉 독도를 포함한 남한 구역이 SCAP 관할로 된 것처럼 그려졌으나, 본래 남한 구역은 AFPAC 아래 미 군정청의 관할이다. 그런데 맥아더가 SCAP과 AFPAC 사령관을 겸임한 관계상 GHQ 각 부처는 한국에 있어서의 미군정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해 일정 시기까지 맥아더에게 조언을 했다.<sup>95)</sup> 그 사이에 <그림 4>가 작성되었으므로 남한 구역이 SCAP 관할처럼 그려졌던 것이다.<sup>96)</sup>

94) ‘일본 부대’는 ‘일본국의 선임지휘관과 모든 육상, 해상, 항공 및 보조부대’의 약칭이다. 또한 SCAP는 이 명령을 SCAPIN-1로써 일본정부에 지령했다.

95) 조언을 한 시기는 天川晃他編, 『GHQ日本占領史』第2卷, 日本図書センター, 1996, 72쪽에 따르면 GHQ 민정국은 1947년 2월까지, 기타는 1948년 3월까지라고 한다.

96) 박병섭,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연구』 16호, 2014, 144-145쪽.



<그림 4> 「SCAP 관할 구역, 일본 및 남한」

1948년 8월 한국은 미국 등의 승인을 얻어 독립했다. 이는 물론 대한제국의 부활이 아니라 신생 대한민국의 탄생이다. 한편 일본은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할 때 독립했다. 이는 대일본제국의 부활이 아니라 신생 일본국의 탄생이다. 또한 양국은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 미 군정청으로부터, 일본은 SCAP으로부터 독립했다.

신생 독립국의 국경선은 ‘우티 포씨디티스’의 원칙에 따라 독립하는 순간의 기존 행정관할구역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순간의 행정관할구역은 SCAPIN-677에서 규정된 <그림 4>에 표시된 구역이며, 북쪽 경계는 38도선, 도서는 독도를 포함한다. 다만 이들 구역은 구 일본제국의 영토이며 최종 처분은 강화조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최종 확정은 대일강화조약의 발효를 기다려야 했다.

실제로 위의 남한 구역 중 제주도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 1951년 6월 5일 영·미 협의에서 영국이, “조선의 일부로서 일본이 포기하기로 된 제주도는 군사적인 장애가 될지도 모른다. 제주도는 일본에 아주 가깝고, 또한 조선은 공산주의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제주도를 일본 영토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sup>97)</sup> 결국 영·미 양국은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제주도를 한국 영토로 삼을 것을 결정했지만, 제주도조차 일본 영토로 될 가능성이 있었다. 제주도 등 대한민국의 영토는 국제법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확정된 것이다.

이 조약이 발효되고 일본이 독립할 때까지 <그림 4>에 표시된 남한 구역은 변함이 없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이를 변경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조약’이 말하는 조약 체결시의 사정 등은 앞에 쓴 바와 같이 한·미 협의가 계속 중이고, 독도의 귀속에 대한 영·미 양국의 견해는 엇갈린 채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의 귀속에 관해 아무 결론도 내지 않았다.

이처럼 조약에서 결정적인 판단을 얻지 못하면 국제법원에서는 당사국의 주장에 따라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이 검토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일 간 기존 행정관할경계선은 <그림 4>와 같이 독도와 오키섬 사이로 된다. 따라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된다.

97) British Foreign Office, *Collection 371(F.O. 371)*, 1951, Vol.92554, FJ1022/518; 原貴美恵,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溪水社, 2005, 61쪽; 박병섭, 앞의 글, 2014, 181쪽.

일본 정부도 이 원칙을 따랐던지 강화조약 발효 전후 독도를 “본방(本邦)”의 범위 외로 지정한 종래의 정책을 계속하였다.<sup>98)</sup> 예를 들면, 대장성령(大藏省令) 제4호<sup>99)</sup>(1951.2.13)와 이를 개정한 대장성령 제37호(1968.6.26) 및 총리부령(總理府令) 제24호<sup>100)</sup>(1951.6.6)와 이를 개정한 대장성령 43호(1960.7.8) 등이다. 이들은 모두 ‘竹の島’[독도]·울릉도·제주도 등을 ‘본방’ 외로 지정했다. 이 사실은 SCAPIN-677에서 ‘竹の島’[독도] 등을 일본으로부터 정치적·행정적으로 분리되었던 것을 기본으로 일본은 정책을 세우고, 이를 1960년대에도 유지했던 것이다.

## 6. 맺음말

박현진은 조·일 양국이 ‘울릉도쟁계’에서 교환한 외교문서는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설에 대해 최철영·유미림이 의문을 제시하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i) ‘울릉도쟁계’는 기존 조약의 이행을 위한 것도 아니고, 현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또한 영토·국경선 획정 문제는 현대 국제법상 약식조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약식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비판에는 아직 반론이 없는 것 같다.
- (ii) ‘약식조약’설이 말하는 1694년 이여의 서계 ④는 ‘거리관습’을

98) 김태기, 「일본 대장성령 제4호 및 총리부령 제24호의 본방(本邦) 규정과 독도」, 『일본공간』 15호, 2014, 118-121쪽; 박병섭, 앞의 글, 2016, 35-36쪽.

99) 「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1950.12.12]第4条第3項の規定に基く付属の島を定める省令」.

100) 「朝鮮總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1951.3.6]の施行に関する總理府令」. 이 자료는 일본 「일·한회담 문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이양수가 발굴하였다.

-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서계는 조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외교 문서가 아니며, 현대 국제법이 말하는 교환공문으로 볼 수 없다.
- (iii) 쓰시마번 도시요리(봉행)들, 즉 집권자들이 역관에게 보낸 문서 ⑤-3은 외교문서다. 그러나 「구상지각」 ⑤-1은 조선정부에 구두로 전달되었을 뿐, 문서는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외교문서가 아니다.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님을 ‘직접’ 인정한 글은 문서 ⑤-3에는 없고 문서 ⑤-1에만 있다.
- (iv) 왜관 관수가 동래부에 전달한 서계 ⑩-1에는 울릉도에 대한 막부의 조선주권 인정 사실은 없다. 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인정한 글은 쓰시마번의 「구상지각」 ⑩-2에 기록되고 있으나, 이는 조선에 구두로 전달되었을 뿐, 문서로 전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상지각」은 외교문서가 아니다.
- (v) ‘약식조약’설의 기초 자료가 되는 외교문서의 원본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원본을 대신할 정부가 공인한 필사본은 <표 1>중 ①, ②, ③, ④, ⑨, ⑩-1 등이 내무성의 『이소타케시마 각서』에 있다. 한편 조선 정부의 공식 기록 『동문회고』에는 필사본 ①, ②, ③, ④, ⑤-3, ⑤-4, ⑥, ⑦, ⑧ 등이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약식조약’설 검토에 필요한 외교문서 원본의 공인 필사본은 모두 다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서 ⑤-1, ⑤-2, ⑩-2는 외교문서가 아니지만 외교적인 구속력은 가진다.

이처럼 ‘약식조약’설에는 의문점 (i), (ii), (iv)가 남는다. 또한 박현진은 17세기 조·일 간 교환공문은 구속력 있는 ‘거리관습’을 이루는 국제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이 근거는 일본 측 공문이 “울릉도가 조선에 가까우므로 조선의 영토로 결정한다”고 쓰고, 조선 측 공문이 “조선의 영유권의 근거로 지리적 원근을 명시적으로 원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 측이 조선에 보낸 외교문서에는 “울릉도가 조선에 가까우므로 조선의 영토로 결정한다”라는 글이 없을 뿐더러 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직접’ 인정한 글조차 없다. 단지 문서 ⑤-3에서 다케시마는 일본과 거리가 멀고 조선에 가까우며, 양국 사람들이 섬에서 뒤섞이면 폐

단이 있으므로 쇼군이 다케시마로 갈 것을 금지했다고 간접적으로 일본 땅이 아님을 인정했을 뿐이다.

또한 쓰시마번이 구두로 조선에 전달한 내용은, 쓰시마번 문서 ⑤-1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이나바·호키에 부속된 섬이 아니고, 일본이 빼앗았던 섬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뒤, 양국 어민들이 섬에서 뒤섞일 우려가 있고, 또한 다케시마는 조선에 가깝고 일본에서 멀기 때문에 쇼군이 도해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막부는 먼저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다케시마까지의 거리 관계를 고려해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했다는 것이다. 조·일 양국은 거리 관계를 언급하기 전에 다케시마(울릉도)가 일본 땅이 아니거나 조선 땅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거리관습’설은 의문이다.

한편,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세웠다. 이 기준은 (i)어느 나라가 낙도에 영유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ii)어느 나라가 낙도에 가까운가? 라는 점이다. 본래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면 울릉도까지의 원근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울릉도쟁계’의 경우는 조선이 울릉도를 200년 이상 방치했기 때문에 원근이 중요했다. 이 판단 기준을 밝힌 양국의 외교문서는 야나기하라 마사하루가 정의한 ‘광의의 국제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광의의 국제법을 독도에 적용하면 독도는 한국 땅으로 된다. 첫째, 조선에서는 ‘울릉도쟁계’이후 우산도를 실견한 안용복의 진술을 바탕으로 『춘관지』 등 관차서가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는 조선 땅인 우산도라고 인식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젠로쿠 다케시마 일건’에서 마쓰시마는 일본 어느 지방에도 소속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둘째, 우산도는 일본의 오키 섬보다 울릉도에 가깝다. 따라서 위의 낙도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우산도(마쓰시마)는 조선 땅으로 된다.

그 후 조·일 양국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 땅이라는 인식이 간직되었다. 조선에서는 18세기의 『동국문헌비고』를 비롯해 19세기의 『만기

요람』, 20세기의 『증보문헌비고』에 이르기까지 관찬서가, “여지지에 이르되 울릉과 우산은 다 우산국 땅이다. 우산은 왜가 이르는 마쓰시마(松島)이다”라고 기술했다. 일본에서는 1740년 막부의 중추기관인 지사봉행들이 오야를 접견했을 때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를 확인했다. 또한, ‘덴포 다케시마 일건’ 때 막부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위치나 소속을 조사한 결과, 조선에 가까운 다케시마와 ‘다케시마 근처의 마쓰시마’는 겐로쿠 기에 도해가 금지되었던 것을 알았다. 즉 조선에 가까운 두 섬에 일본이 영유의사를 가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1837년 막부는 두 섬을 일본 땅 외로 보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또한 오사카마치봉행소 및 평정소 관계자는 각각 두 섬을 조선 땅으로 그린 지도를 작성했다. 이런 판단은 17세기 낙도에 대한 판단기준대로이다.

위의 판단은 메이지 시대 일본 외무성도 같다. 1870년 외무성 관리들은 다케시마·마쓰시마의 귀속을 조사했다. 그들은 다케시마에 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했는데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다는 것과 마쓰시마가 다케시마의 이웃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쓰시마도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고 보고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중에 “다케시마·마쓰시마 조선 부속이 된 시말”이라는 글을 썼다. 마쓰시마에 관한 기록이 없다면 이에 대한 영유의사를 드러내는 기록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마쓰시마의 귀속에 대한 판단기준은 에도 시대의 판단기준과 똑같다.

또한, 내무성의 판단기준도 똑같다. 내무성은 1875년 돗토리번이나 쓰시마번의 사료 등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의 귀속을 조사해 『이소타케시마 각서』를 편찬했다. 이 조사를 통해 내무성은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의 어느 나라(지방)에도 소속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다음해 시마네현에서 내무성에게 다케시마·마쓰시마에 관한 문의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1도 편찬에 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다. 이 질문서에서 마쓰시마는 다케시마로 가는 선로에 있는 섬, 즉 같은 영역에 있는 섬이라고 강조되었다. 또한 질문서에 첨부된 지도 「이소다케시마 약도」 등에서 다케시

마·마쓰시마와 한반도와의 근접성이 분명했다. 내무성은 이런 정보도 가미해 두 섬은 일본과 관계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판단은 에도 시대의 판단기준과 거의 같다.

내무성은 이 판단에 관해 신증을 기해 태정관에게 시마네현 질문서와 같은 제목의 질문서를 제출했다. 곧 태정관은 내무성의 판단을 인정하고, 두 섬은 일본과 상관없다고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처럼 메이지 정부도 에도시대의 낙도에 대한 판단기준대로 독도의 귀속을 판단했던 것이다. 그 후도 일본 정부는 1905년 이전에는 독도에 대해 영유의사를 가진 기록은 없다.

한편, 조선에서는 우산도는 조선정부의 해금정책으로 인해 한말에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었다. 이와 별도로 전라도 어민들에 의해 독섬이 발견되어 어렵에 이용되었다. 독섬은 돌섬의 전라도 사투리다. 이 섬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石島’라는 한자 표기로 울도군 관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전라도 이외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독섬의 한자표기 ‘石島’가 어울리지 않았던지 표기가 ‘獨島’로 변했다고 보인다. 1906년에는 울도군수는 ‘獨島’가 울도군 관할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근대기 독도에 대해 한국만이 영유의사를 가지고 독도에 주권 표시를 하였다. 그렇다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한국에 대한 침략이며 국제법에 위배된다. 그런데 현재 일본정부는 무주지선점에 관해 아무 말이 없으며, 1905년 내각회의 결정은 일본이 17세기에 확립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7세기 일본은 독도에 대해 영유의사를 가지지 않았던 것이며,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원시적권원이 확인되었더라도, 국제법원에서는 분쟁당사국의 주장 근거에 따라 조약에 근거한 권원도 검토된다. 따라서 독도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중요하다. 그런

데 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단지 제2조(a)에 일본은 'Korea'의 독립을 승인하고 'Korea'에 대해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이 'Korea'에 독도가 포함될지 여부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견해는 정반대다.

이럴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독도의 귀속은 한·미간에서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또한 공동초안을 작성한 영·미 양국은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다. 결국 연합국은 탈레스가 말했듯이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조약에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결론을 얻지 못하면 국제법원에서는 당사국의 주장에 따라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을 검토한다. 이 원칙은 새로 독립한 국가는 국경선으로서 독립 시점의 구 식민지의 행정구획선을 승계할 것을 추정하는 원칙이다. 한국의 독립은 1948년 미 군정청으로부터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존 행정관할구획선은 일제 강점기 행정구획선과 달리 독도를 포함한 남한 구역<그림 4>이다. 다만 이는 구 일본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일강화조약을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그 행정관할구획선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다.

일본 정부도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을 따랐는지, 대장성령 제4호(1951.2.13) 등 독도를 '본방 외'로 보는 여러 정책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도 지속했다.

【참고문헌】

<한국어>

- 경상북도 사료연구회, 『독도 관계 일본고문서 4』, 2017
- 국사편찬위원회, 『독도자료』 미국편, 2008
- 김강일·윤유숙 역주, 『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 동북아역사재단, 2012
- 김명기,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검토」, 『독도연구』 13호, 2012
- \_\_\_\_\_, 「대일강화조약 제2조(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 독도 포함여부 문제의 검토」, 『독도연구』 제18호, 2015
- 김병렬, 「對日講和條約 第2條의 解釋」,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1호, 1998
- 김수희,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독도연구』 10호, 2011
- 김채형,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3호, 2007
- 김태기, 「일본 대장성령 제4호 및 총리부령 제24호의 본방(本邦) 규정과 독도」, 『일본공간』 15호, 2014
- 박관숙, 『獨島의 法的 地位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1968
- 박병섭·나이토 세이추, 호사카 유지 옮김,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서, 2008
- \_\_\_\_\_,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_\_\_\_\_,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3호, 2012a
- \_\_\_\_\_,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새 자료 및 연구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12호, 2012b
- \_\_\_\_\_,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연구』 16호, 2014
- \_\_\_\_\_, 「池内敏의 『竹島- 또 하나의 일·한 관계사』」, 『독도연구』, 20호, 2016a
- \_\_\_\_\_,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와 합의 -조약에서 누락된 섬들과의 비교 검토」, 『독도연구』, 21호, 2016b
- \_\_\_\_\_,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광의의 국제법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23호, 2017
- \_\_\_\_\_,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동북아역사논총』 62호, 2018a
- \_\_\_\_\_, 「한·일 양국의 독도/竹島 고유영토론의 쟁점」, 『독도연구』 25호, 2018b
- 박현진,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영유권」, 『국제법평론』 제12호, 2008
- \_\_\_\_\_,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국제법학회논총』 58권 3호, 2013

- \_\_\_\_\_, 「17세기말 「울릉도쟁계」 관련 조·일 교환공문(사본)의 증명력(II)」, 『국제법학계논총』 63권 4호, 2018
- 백충현, 「國際法上으로 본 獨島研究」, 『獨島研究』(韓國近代史料研究協議會), 1985
-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관, 2010
- 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이석우,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국제법』, 집문당, 2007
- 이성환, 「울릉도쟁계의 조일 간 교환문서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독도연구』 26호, 2019
- 이진명, 『서양 자료로 본 독도』, Pour l'Analyse du Folklore(Paris), 1998
-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
- 최철영,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국제법원의 영토주권법리」, 『독도연구』 21호, 2016
- \_\_\_\_\_, 「「원록각서」·「죽도기사」·「죽도고」의 국제법적 해석」, 『독도연구』 22호, 2017, 73쪽
- 최철영·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 검토」, 『국제법학회 논총』 63(4), 2018
- 『同文彙考』 3, 國史編纂委員會 影印, 1978

<외국어>

- British Foreign Office, *Collection 371(F.O. 371)*, 1951
-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号, 1987
- 毎日新聞社, 『対日平和条約』, 1952
- 木村幹, 「池内敏著 『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2014
- 朴炳涉, 「明治政府の竹島=獨島調査」,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1号, 2016
- 柳原正治, 『國際法』, 放送大学教育振興会, 2014
- 原貴美恵,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溪水社, 2005
- 奥脇直也, 「領域支配の実効性」, 『國際法判例百選』 第2版, 有斐閣, 2001
- 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資料編)』, 島根県, 2007
- 小寺彰, 『パラダイム國際法』, 有斐閣, 2004
- 中村道, 「領域権原としての実効的支配」, 『判例國際法』, 有信堂, 2006
-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 池内敏, 「「国境」未滿」, 『日本史研究』 630号, 2015

池内敏,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

天川晃他編, 『GHQ日本占領史』第2卷, 日本図書センター, 1996

塚本孝, 「竹島領有権をめぐる韓国政府の主張について」, 『東海法学』52号, 2016

太寿堂鼎, 「竹島紛争」, 『国際法外交雑誌』64巻 4・5号, 1966

許淑娟, 『領域権原論』, 東京大学出版会, 2012

許淑娟, 「実効支配とは何か」, 『国際法で世界がわかる』, 岩波書店, 2016

『礮竹島覺書』, 『竹島紀事』, 「對島島宗家文書」

<Abstract>

## **Interdisciplinary Study of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Law on the Sovereignty over Dokdo**

**Park, Byoung-Sup**

The debate continues over Park Hyun-jin's claim that diplomatic documents exchanged in the Ulleungdo Dispute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e 17th-century Korea and Japan formed the 'agreement in simplified form' of 'distance criteria'. Among issues,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Japanese note verbale could be viewed as a diplomatic document, 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original document of the diplomatic document, using diplomatic records *Dongmun hwigo*.

As a result, questions remain in the theory of the 'agreement in simplified form'. While, regarding the 'distance criteria', both Korea and Japan first confirmed that Ulleungdo (Takeshima) was not Japanese land, but Korean land, then discussed the proximity between Ulleungdo and the two countries. So, the theory of the 'distance criteria' is questionable.

On the other hand, both countries set up criteria for belonging of a remote island in the Ulleungdo Controversy, which can be called broad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if Usando(Matsushima, Dokdo) is judged by its criteria, it also becomes Korean territory.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d to express its intention to possess Ulleungdo and Usando in its official documents. While, Japan has had the opportunity to judge belonging of Takeshima (Ulleungdo) and Matsushima (Dokdo) several times, and each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the two islands to be Korean

territory. This judgment was similar as the criteria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 judging criteria can be seen as local custom in both countries.

In Korea, however, because of the policy oceangoing ban, Usando became a legendary island of unknown location at the last years of Korean Empire. Separately, Dokseom (Dokdo) was discovered by fishermen in Jeolla-do and used in fishery. In 1900, the island was designated as Uldo county jurisdiction by Imperial Decree No. 41 in the Chinese character “石島”. This is a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Dokdo by the Korean Empire. Accordingly Dokdo is not *tella nullius*, so the Japanese government's “incorporation” of Dokdo into Shimane Prefecture in 1905 violates international law.

Even if Korea's historical and original rights to Dokdo have been identified as above, the treaty and *uti possidetis* principle are the subjects of consid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claim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No conclusion can be drawn on Dokdo's belonging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s a result,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uti possidetis* principle.

**Key words:** Ulleungdo Dispute, Usando, Takeshima, Agreement in simplified form, Broad international law, San Francisco Peace Treaty, *Uti possidetis*

이 논문은	2019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

##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경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토교육용 학습자료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이 상 균\* · 안 동 립\*\*

### 〈목 차〉

1. 머리말
2. 기존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1693년 울릉도 도해 및 피랍경로 재구성
4. 1696년 울릉도 도해 및 도일경로 재구성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안용복이 독도교육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제작된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자료들이 학술적 엄밀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채 제각각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신의 연구성과를 근거로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 경로를 재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낱자는 음력이었음에도 양력인 것처럼 인식되었는데, 음력과 양력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용어는 '1693년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사건'과 '1696년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사건'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와 관련된 연구 및 영토교육 시에는 당시의 항해 조건을 고려하여 동해상의 연중 기상 현상과 연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안용복의 피랍사건은 조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skyigeo@gmail.com

\*\* 동아지도 대표 / starmap7@hanmail.net

선 조정의 수토제 시행의 동력이 되었던바,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도일 사건은 중앙의 수토제와 관련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1696년에는 뇌헌이 승려들과 배를 동원하여 순천에서 출발했던 것을 근거로 출발지를 순천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울릉도, 독도, 안용복, 영토교육, 도일경로, 수토제, 뇌헌

## 1. 머리말

일본의 독도 도발의 수위가 도를 넘는 상황에서 독도 영유권의 논거를 강화하고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용복의 도일 사건은 독도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영유 의지를 보여주었던 사례로 인식된다. 반면, 일본의 학계에서는 안용복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안용복의 도일 행적 자체를 평가절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학계에서는 보다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안용복의 활약과 성과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

안용복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안용복의 신분 및 관직 등에 관한 연구(권오엽, 2009; 2015), 안용복의 주변인물에 관한 연구(권오엽, 2010; 권혁성, 2012; 김호동, 2010), 도일경로에 관한 연구(박병섭, 2010; 송휘영, 2017), 「원록구병자년조선주척안일권지각서」 관련 연구(권오엽, 2008; 권정, 2011), 울릉도 도해의 배후설 및 밀사설 등에 관한 연구(권정, 2011; 최영성, 2019)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sup>1)</sup> 특히, 2005년에 일본에서 「원록구병자년조선

1) 안용복의 도일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1693년의 사건을 ‘1차 도일’로, 1696년의 사건을 ‘2차 도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1차 도일을 ‘피랍사건’으로, 2차 도일을 ‘도일사건’으로 재고하려는 시도가 있는데(박병섭, 2010; 송휘영, 2019 등), 본고에서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따라 안용복의 도일사건과 관련된 용어의 표현을 1693년의 ‘피랍사건’과 1696년의 ‘도일사건’으로 표

주착안일권지각서」가 발견됨에 따라 안용복의 2차 도일에 관한 연구는 활기를 띠고 있다. 기존에는 「숙종실록」 등에 기록된 국내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일본측 자료의 등장으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1696년에 안용복과 동행했던 뇌헌을 상승(商僧)으로 인식하고, 뇌헌을 수행했던 승려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는데, 최근 뇌헌의 신분이 부분적으로 밝혀지면서 안용복의 도일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용복 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 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파악됨에 따라 안용복 일행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 과정에 대한 연구가 전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학계의 연구성과는 곧바로 영토교육 자료로 활용되는데, 안용복과 관련된 교육용 자료나 박물관 등에 전시된 게시물 등을 살펴본 결과, 오류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영토교육 관련 교재나 교과서, 독도박물관, 안용복 박물관 등 영토교육 체험공간에 게시된 안용복의 도일경로는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채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북한측 자료 또한 남한측 자료와는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최신의 연구성과가 교육용 자료로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의 주요 영토교육 관련 기관에 전시되고 있거나 교재에 수록된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경로 관련 자료와 북한측 관련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의 지점을 확인한 후, 최근 학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693년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사건 및 1696년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안용복의 도일과정과 관련된 교육용 학습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관련 주제를 다루었던 연구는 전무하다.

안용복은 한일 양국 간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명확하고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 전제할 때, 안용복과 관련된 연구는 한일 양자는 물론이고 제3자 또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일본측 자료와 국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안용복의 도일에 관한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영토교육 자료 또한 최신의 버전으로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영토교육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 2. 기존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 국내의 영토교육 박물관 및 독도교재 자료 분석

안용복과 관련된 교육용 학습자료는 서울 소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체험관, 울릉도 소재 안용복 박물관 등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과 교육부가 발행하고 있는 독도교재에도 수록되어 있다(허준 외, 2017). 그밖에도 안용복 관련 학습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장에서는 안용복 박물관에 게시되어 있는 도일 경로도와 독도교재에 수록된 도일 경로도를 사례로 경로상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림 1> 안용복 박물관에 게시된 안용복의 도일 경로도  
(울릉군 소재 안용복 박물관 자료)

울릉도 소재 안용복 박물관에 게시된 안용복의 도일 경로도는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어두운 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동해바다는 황갈색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미지의 아래쪽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1693년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사건은 범례에 ‘1693년 1차 행로’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지도상에 행적도는 노란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반면, 1696년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사건은 ‘1696년 2차 행로’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지도상에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지도상에 주요 지명은 한글과 한자, 그리고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글자의 색상은 흰색이다. 동해바다의 황갈색과 1693년의 경로를 나타내는 노란색이 비슷하여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안용복 일행은 두 차례 모두 울산포에서 출발해서 영해를 경유하여 울릉도로 도해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 자료에는 안용복과 박어둔이 울릉도에서 일본측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오키시마 방향으로 끌려가던 과정에서 독도를 들른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독도에 들렀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독도가 보이는 지점에서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 본토에서 이동한 지점의 지명은 돛토리 번을 제외하고는 지명이 없거나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다. 1696년 도일 이후 귀국 경로의 경우, 오키시마를 경유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오키시마를 일본식 발음과 한국식 한자 발음이 섞인 채 오키도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급하게 귀국한다 하더라도 오키시마로부터 양양까지 이동하는 동안 독도나 울릉도 인근 해역을 지나지 않은 채 일직선으로 양양까지 이동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 사료된다. 이 자료에는 또한 흥해를 경유한 것이 누락되어 있다.

고등학교 독도 바로알기 교재에 수록된 도일 경로도는 한반도 일부와 일본열도 일부가 연두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바다는 옅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었다. 1693년의 1차 도일은 붉은색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3년 후의 이동 경로는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하였다. 지명은 한글 명칭으로만 표기하였으며, 바다를 표현한 옅은 파란색과 1696년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짙은 파란색이 동일한 계통이어서 가독성은 떨어진다.



<그림 2> 고등학교 독도 바로알기 교재에 수록된 도일경로

(허준 외, 2017, 「고등학교 독도 바로알기」,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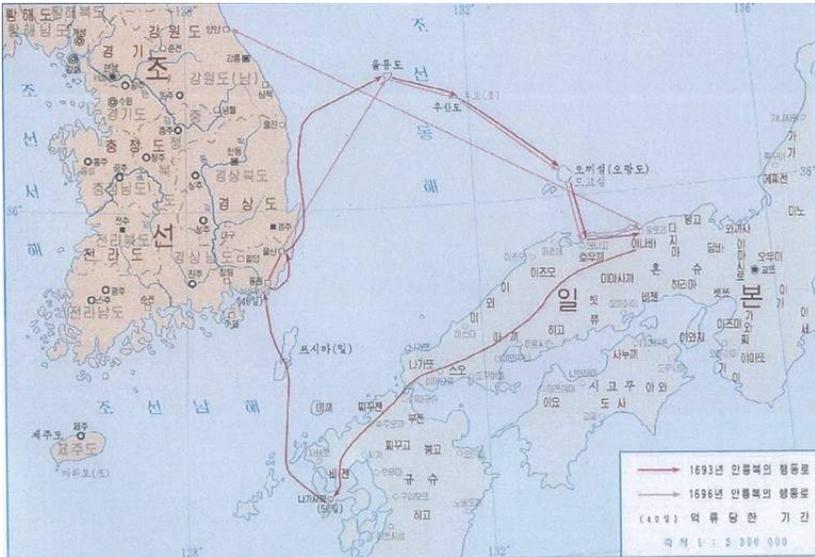
이 자료에 따르면, 안용복 일행의 출발점은 울산이며, 영해를 경유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흥해를 경유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이 자료에 표현된 이동 경로는 앞에서 살펴본 안용복 박물관 자료와 대동소이하다. 예컨대, 1693년에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으로 납치되어 이동하던 상황이라면 독도에 들렀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한데, 지도상에는 독도에 들렀다 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며, 오히려 1696년 도일 시에는 독도를 지나친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1693년 피랍 시 안용복과 박어둔이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선의 주요 지명은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1696년 도일 후의 귀국 경로를 보면, 돛토리에서 출발하여 오키제도를 들렀다 간 것인지 바로 옆을 지나친 것인지가 명확하

지 않으며, 양양으로 가는 길에 독도와 울릉도 부근을 지나지 않고 일직선으로 이동한 것처럼 표현된 것도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는 공통적으로 방위 표시와 축척이 누락되어 있는데, 한국인들은 방위와 대략의 축척을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이들 자료를 본다면 방위와 축척이 빠져서 자료를 읽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 2) 북한의 역사지도첩 및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 분석

안용복의 도일과 관련된 북한측 자료는 「조선력사지도첩」에 수록된 지도 이미지와 고급중학교 2학년 「역사 교과서」에 수록된 안용복의 활동도를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력사지도첩」에 수록된 자료는 삽화의 형태가 아니며, 베이스 맵에 붉은색 선으로 안용복의 도일경로를 표시하였다. 1693년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 경로는 진한 색으로 표현하였고, 1696년의 도일경로는 옅은 색으로 표현하였다. 지도에 표현된 지명과 섬의 형태가 작고 명확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지도는 력사지도첩에 수록된 지도라서 그런지 지도의 우측 하단에 축척도 표현되어 있다.



**<그림 3> 북한의 역사지도첩에 수록된 안용복의 도일 경로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2007, 「조선역사지도첩」, p.89)

울산에서 출발하고 영해를 경유하여 울릉도로 도해하는 것으로 표현된 남한측 자료와는 달리, 역사지도첩에 수록된 지도에는 두 차례 모두 동래에서 출발하고 울산을 경유하여 울릉도로 도해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더욱이 1693년의 경우, 배편으로 울산까지 이동한 것으로 표현된 반면, 1696년의 경우는 동래에서 울산까지 내륙으로 이동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며, 울산에서 울릉도 방향으로 이어지는 선도 명확하게 특정 항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직선을 그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든다. 이 지도에서는 영해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 지도를 보면, 1693년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 경로는 선이 곡선에 가깝게 휘어지게 표현된 반면, 1696년의 경로는 직선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에서의 행적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남한측 자료와는 차이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 지도의 우측 하단에는 범례가 작은 박스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데, 남한측 자료와는 달리 1차 및 2차와 같은 용어는 표기되지 않았으며, ‘1693년 안용복의 행동로’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범례에는 억류당한 기간을 40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동안 억류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안용복의 활동도를 보면, 안용복의 도일 경로는 력사지도첩에 수록된 내용과 거의 비슷하나, 교과서의 자료는 삽화의 형식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에는 음영을 넣었는데, 일본열도가 더 진하게 표현되어 있다. 1693년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 경로는 진한 실선으로 표현된 반면, 1696년의 경로는 점선으로 표현하여 두 시기를 구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에 표현된 섬의 이미지와 지명은 명확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림 4>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 수록된 안용복의 활동도

(한영찬 외, 2014, 「역사 고급중학교 2」, p.65)

력사교과서에 표현된 안용복 일행의 출발 지점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울릉도로부터 오키시마 구간에는 여러 개의 선이 그어져 있어서 가독성이 크게 떨어진다. 북한의 력사지도첩과 역사교과서에는 안용복의 도일 행위를 ‘울릉도, 독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자료가 수록된 교과서 내용은 흥미롭다. 관련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안용복은 평범한 어부로 표현되어 있으며, 안용복과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 울릉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때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해적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안용복은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박어둔과 함께 오키시마로 가서 그곳의 도주와 담판을 벌이는 등 침략자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막부의 관백으로부터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확인을 받고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남한의 안용복 박물관에 게시된 자료와 독도 바로알기 교재에 수록된 자료, 그리고 북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에서 제작한 「조선 력사지도첩」에 수록된 안용복의 도일 경로도와 력사교과서에 수록된 안용복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남한측 자료와 북한측 자료 간에 표현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남한 자료의 경우, 오키제도로부터 요나고로 향하는 경로가 이즈모의 서쪽에 표현된 나가하마를 경유하는 것으로 표현된 반면, 북한 자료의 경우, 오키제도로부터 요나고로 바로 이어지도록 표현된 것이 크게 다르다.

지도의 형태로 표현되는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 경로도는 안용복 연구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 정보가 압축된 시각자료이다. 따라서 최신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도일 행적도는 다시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성과는 남북 간에도 공유하여 일본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 3. 1693년 울릉도 도해 및 피랍경로 재구성

안용복이 피랍되었던 1693년 당시 조선의 조정 상황을 보면 숙종이 총애하는 장희빈이 왕비가 되면서 그녀와 결탁되어 있던 남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남인 정권은 임진왜란의 경험에 비추어 힘약한 일본인들과의 충돌을 피할 것을 주장하면서 일본과 대마도를 상대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쓰시마 번주가 울릉도의 쓰시마 영유를 집요하게 요청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아계울릉도(我界鬱陵島), 귀계죽도(貴界竹島)”와 같이 애매모호한 서계를 작성해 주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김학준, 2010, 97-98).

당시 조선의 조정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쇄환정책을 시행하던 상황으로 이 섬에 대한 도해는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있었다. 안용복의 1693년 피랍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1692년(원록 5년)에는 조선에서 11척의 배가 울릉도를 향해 출선하였는데, 난풍을 만나 절반은 돌아가고 5척의 배에 53명이 울릉도에 입도했으며, 1693년(원록 6년)에는 선박 3척에 42인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울릉도로 건너갔던 사실이 밝혀졌다(오오니시, 2011, 28-37).<sup>2)</sup> 당시에 지원 세력 없이 안용복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 정도 규모의 선단과 인원을 동원하여 울릉도에 건너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원록 5년과 6년의 기록에 의하면, 안용복은 ‘3년에 한 번씩 국주의 명으로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 이 섬에 온다’, ‘삼계의 샤쿠완의 명을 받아 도해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오오니시(2011)와 권정(2011)은 당시 안용복의 배후에는 무역행위와 세금징수 등을 담당하고 있던 동래부사 및 부산 첨사

2) 일본의 경우, 오야가와 무라카와가는 도해에 필요한 자금과 무기를 대여받았는데, 안용복의 납치사건 이후 죽도가 조선의 울릉도임이 명백해지자, 1694년에는 돗토리번이 자금대여를 꺼리게 되었고, 결국 70여 년간 지속되었던 죽도 도해는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권정, 2011, 509).

의 지시 또는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들의 목인 또는 협조 없이 울릉도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유통시키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쇄환정책’의 상황에서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어로활동은 할 수는 없었지만, 지방 권력자들의 암묵적인 허가 및 지원 하에 울릉도 도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권정, 2011, 523).

본 장에서는 안용복의 1693년 피랍 상황과 경로를 주요 거점 및 구간 별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예컨대, 출발 지점으로서 울산의 역할, 영해의 지리적 조건과 출발 시기, 울릉도에서 요나고까지의 경로, 요나고에서 오사카까지의 경로, 오사카에서 시모노세키까지의 경로, 시모노세키에서 나가사키까지의 경로, 나가사키에서 부산포까지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출발 지점으로서 울산의 역할

안용복의 호패에는 안용복이 오충수의 사노(私奴)인 것으로 새겨져 있으며, 「증보문헌비고」 권31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 ‘동래의 안용복은 예능로군으로서 왜말을 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성호사설」의 기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일찍부터 왜관을 출입하면서 일본어를 익혔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동래에 살던 사람으로 어머니를 보기 위해 잠시 울산으로 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와 일본에서의 행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안용복 일행이 울산에서 출발했던 배경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인부역년대잡집(因府歷年大雜集)」에 실린 오키에서의 ‘조선인구술서’ 내용과 「죽도기사(竹島紀事)」의 관련 내용, 그리고 「변례집요(邊例集要)」에 기재된 안용복 일행의 명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울산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표 1). 또한 요나고에서 작성된 <안용복구상서> 내용 중에 ‘울산이라는 곳에서 선임(船賃)을 치렀다’라는 기록은 울산에서 배를 준비하고 선원을 모집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요컨대, 부산포와 동래에서 지령을 내리고, 울산에서 배를 준비하고 선원을 모집하는 등 당시 조선에서는 매년 울릉도로의 어로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안용복은 부산계 상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선단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었으며, 대부분의 선원과 배를 준비하고 있던 울산에서 일행과 합류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권정, 2011, 517-518).

〈표 1〉 제1선의 승조원 명단과 울산 출신의 비율(1693년)

因府歷年大雜集	竹島紀事	邊例集要
안헨치우(船頭)	안요구	安龍福
<b>토라헤(울산사람)</b>	바쿠토라히	朴於屯
요치엔기	키무요치야키(船頭)	金自信
<b>토쿠센기(울산사람)</b>	<b>키무토구소이(울산 사람)</b>	金德生
바타이(鍛冶)	킨바타이	金加之同
이한닌(거년에 온 자)	<b>이하니(울산 사람)</b>	李還梁
세호테키(목수)	<b>세코치(울산 사람)</b>	淡沙里
야가이(거년에 온 자)	<b>차야구치야춘(울산 사람)</b>	徐化立
<b>텐스우엔(울산사람)</b>	킨텐토이	等
名不詳人(거년에 온 자)	영해에서 하선한 인물	等

(오오니시 토시테루, 2011, p.51)

## 2) 영해의 지리적 조건과 출발 시기

조선 조정에서 시행했던 울릉도 수토는 일본인에 의한 안용복 피랍사건 이듬해인 1694년 장한상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sup>3)</sup>, 이는 1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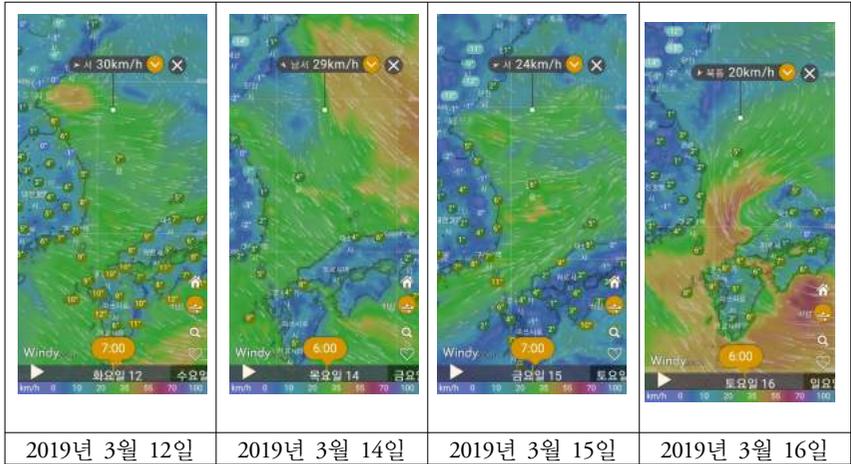
년에 남구만이 1-2년 간격의 수토제를 제안한 것이 속종의 재가를 얻어 시행된 것으로 비록 쇄환정책을 시행하던 상황이었음에도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일본인들에 의한 피랍 사건은 울릉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적극적인 영토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조선 조정에게 인식시켜준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 주요 수토사 및 출발지 정보

연번	수토 관계자	출발 날짜	출발 장소	비고
1	최세철	1694년 8월 20일	삼척 장오리진	삼척 군관
2	장한상	1694년 9월 19일	삼척 장오리진	삼척 첨사
3	전회일	1699년 6월 4일	평해 월송포진	월송 만호
4	이준명	1702년	삼척 장오리진	삼척 영장
4	김창윤	1786년 4월 27일	평해 구미진	월송 만호
4	한창국	1794년 4월 21일	평해 월송포진	월송 만호
4	이규원	1882년 4월 21일	평해 구미진	검찰사

정부 차원의 이러한 수토제는 공적인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삼척이나 평해에서 출발하였던 것에 반해, 안용복 등 비공식적인 울릉도 도해는 지리적으로 평해에서 더 남쪽에 위치해 있는 영해 축산항에서 도해한 것이 특징이다. 수토제에 관한 논의는 1694년 장한상의 수토 이후 정기적인 수토로 방침이 정해졌지만, 관리들이 꺼려하여 즉시 시행되지는 못했다(유미립, 2009, 158). 초기 수토사들은 울릉도 도해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수토 시기는 5월이 적당한 것으로 건의되었는데, 실제로 4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의 날짜 기록 방식이 음력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시기가 한 달가량 늦어진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4)</sup>

3) 최세철은 장한상의 군관으로 장한상의 지시에 의해 사전답사 형식으로 먼저 울릉도에 다녀왔으며, 공식적으로는 장한상의 수토가 최초인 것으로 인식된다.  
 4) 을미개혁(1895년 8월)으로 태양력이 도입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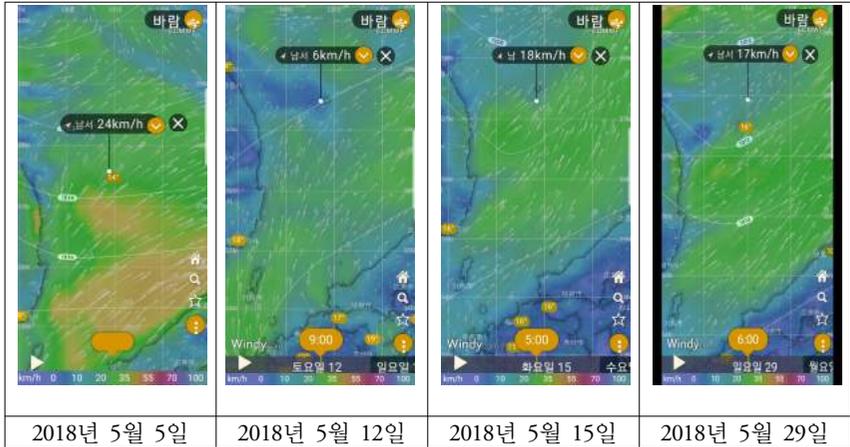


<그림 5> 3월의 동해상 기상정보 사례(자료: Windy)

안용복의 1693년 울릉도 도해 날짜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나가사키에서 취조를 받은 안용복의 진술에 따르면, 3월 21일 울산을 출발하여, 25일 영해에 도착한 후, 27일 오전 8시경 영해를 출발하여 같은 날 오후 6시경 울릉도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오오니시, 2011, 47). 그렇지만, 영해를 출발한 3월 27일은 음력이며, 양력으로 환산할 경우, 5월 2일 토요일이 된다. 실제로 동해상의 3월달 기상 정보를 보면 바람에 의존하던 당시로서는 도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4월 이후에는 순풍 부는 날이 많아 바람만 잘 만나면 어렵지 않게 울릉도에 다다를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월과 5월의 기상도를 비교해 본다면 풍속과 풍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5월이 동해안에서 울릉도나 독도로 도해하기에는 더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6).

---

적인 문서가 음력으로 기록되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 시기인 1873년부터 양력사용이 시행되었다.



<그림 6> 5월의 동해상 기상정보 사례(자료: Win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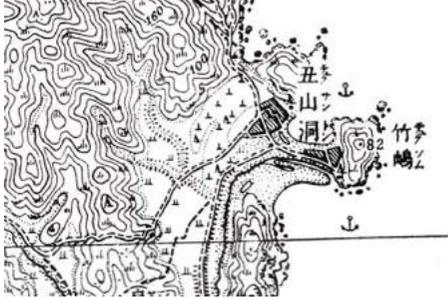
한편, 안용복 일행이 울릉도 도해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영해의 축산포는 천혜의 항구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7).<sup>5)</sup> 영해에는 축산포진(丑山浦鎭)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선조 25년(1592)에 부산포로 옮겨져서 안용복의 도일 당시에는 그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안용복의 도일 당시에 영해의 축산포는 다수의 민간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하며 순풍을 기다리기에 최적의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6)</sup>

일본측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안용복은 1693년 이전에 이미 수차례 울릉도 도해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울릉도 도해에 관한 가장 최신의 정보와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원록각서 본문 3의 기록에 의하면, 1696년 도일 시기에 안용복은 작은 나무 상자 속에 ‘귀이개’와 같이 생긴 목편을 넣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5) 축산도의 축산 명칭은 일제 강점기 때 죽도(竹嶋)로 개칭되었으며, 포구 인근의 동네 이름이 축산동으로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3권, 경상도, 동래현.

그것은 자석이 든 목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오오니시, 전계서, 69). 즉, 당시 안용복은 이미 나침반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p>18세기 초(조선지도)</p>	
<p>일제강점기 지형도</p>	
<p>최근 위성영상 이미지</p>	

**<그림 7> 영해 축산포의 시기별 형세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상, 일제강점기 지형도/중, 네이버 위성영상/하)

### 3) 울릉도에서 요나고까지의 경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용복의 피랍 당시 울릉도에서 오키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 대다수의 자료는 독도를 경유하는 것처럼 표현되었으며, 일부는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독도를 들르지 않은 채 곧바로 오키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오오니시, 전개서, 36-40). 사실, 조선인 2인을 강제로 붙잡아서 일본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돌아가는 도중에 굳이 독도에 들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안용복 일행의 피랍 당시 오키-돗토리 경로(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한 일본인 어부들은 4월 18일(양력 5월 22일) 울릉도를 출발하여 20일(양력 5월 24일) 오키의 후쿠우라(福浦) 항에 도착한다. 동월 23일에 후쿠우라 항을 출발하여 도고(鳥後)를 거쳐 도젠(島前)까지 당일 이동했다. 그리고 동월 26일 도젠을 출발하여 당일에 나가하마(長浜)에 도착하였으며, 동월 27일 나가하마를 출발하여 당일에 호우키(伯耆) 요나고(米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안용복 일행을 납치한 일본인들은 도젠을 출발하여 현재의 이즈모시 서쪽 인근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가하마에 도착한 후 요나고로 이동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사료되어 고지명을 확인해본 결과 안용복이 납치되던 당시에는 나가하마가 요나고와 마주보는 미호노세키에 위치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해당 구간의 경로를 새롭게 재구성하였다(그림 8).

#### 4) 요나고에서 오사카까지의 경로

5월 16일, 막부는 간혀 있는 두 조선인을 도토리에서 나가사키로 보낼 것을 도토리번에 지시했고, 이러한 막부의 지시는 동월 26일 도토리에 도착했다. 도토리번에서는 즉시 두 조선인의 이송 경로를 검토하였는데, 보다 안전한 육로 즉 시토사카(志戸坂) 고개를 넘는 경로를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동해 루트를 통해 이동할 경우 두 조선인이 바다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또한 오사카(大阪)를 경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두 조선인은 29일 아침에 요나고를 출발하여 6월 1일 돗토리 성하에 도착하였다. 도토리에서는 요나고에서와는 달리 비교적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취조가 이루어졌고, 대접을 받기도 했다(오오니시, 전게서, 115-119).

돗토리번을 출발한 안용복과 박어둔은 다음과 같은 루트를 통해 이동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6월 7일 오전 9시경 돛토리를 출발하여 모치가세(用瀬)에서 휴식을 취한 후 저녁 무렵 치즈(智頭)에 도착하여 1박을 하고, 8일에는 시토사카(志戸坂) 고개를 넘어 아와쿠라(栗倉)와 히라후쿠(平福)를 지난 후 사요우(佐用)에서 1박을 한 후, 9일에는 이보가와(揖保川)를 따라 내려가다가 히메지(姫路)에서 1박을 하고, 10일에는 다시 해안을 따라가다 아카시(明石) 또는 아마가사키(尼崎)에서 1박 후, 11일에 오사카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오사카를 경유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류민을 송치하는 경우는 곧바로 나가사키로 보내는데, 당시 돛토리번으로는 영역을 침범한 범죄자를 송치하는 일이었으므로 더욱 치밀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오사카는 막부가 서국을 지배하는 거점으로 오사카의 죠우다이(城代)는 서일본 33개국의 소송을 재판하는 재판권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돛토리번으로는 오사카 죠우다이에게 조선인 범죄자들에 관한 사건의 전말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미야키에쓰젠노카미(宮城越前守)가 보낸 서부를 받아 그것을 근거로 선박 통행증과 통해 허가를 받고, 오사카 카와구치에서 서국으로 가는 공용선을 타는 노정을 정했기 때문이다(오오니시, 전계서, 123).

## 5) 오사카에서 시모노세키까지의 경로

오사카를 출발하여 세토나이카이를 따라 내려간 안용복 일행은 나가사키를 향해 어떤 경로로 이동한 것일까? 현재까지 이 부분에 관한 단서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오오니시(2011)는 만요우(万葉) 시대에 견신라사가 파견된 경로이자 근세에는 조선통신사가 귀국 시 거쳐 간 해로를 주목하고 있다(오오니시, 전계서, 127). 2장에서 살펴본 바로는 안용복과 박어둔의 송환 경로에서 오사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돛토리에서 나가사키까지의 이동은 육로가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그렇지

만, 세토나이카이를 통한 이동의 가능성을 제시한 오오니시의 통찰력은 안용복과 박어든의 송환 경로를 실제로 가깝게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조선통신사는 세토나이카이 뱃길을 이용했으며(그림 9),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세토나이카이 항로도(瀬戸内海附近航路図)」에는 세토나이카이가 주요한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그림 10).<sup>7)</sup>

오오니시는 또한 안용복 일행이 오사카에서 나가사키까지의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원록 9년에 에도에 갔던 쓰시마 사자 카지마 곤하치(賀嶋權八)의 노정을 안용복 일행의 행로에 역방향으로 적용하고자 했다. 즉, 쓰시마 사자는 쓰시마 후츄우에서 오사카까지는 해도로 이동하고, 오사카에서 에도까지는 육로로 이동한 바 있는데, 안용복 일행은 오사카에서 적어도 시모노세키(下関)까지는 해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9> 조선통신사 이동 경로(일본정부관광국)

7) 「瀬戸内海附近 航路図」를 제작한 오사카상선회사는 1884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회사에서 제작한 항로도에는 세토나이카이가 전 근세 일본에서 통행이 빈번했던 해상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림 10> 오사카 상선회사의 세토나이카이 항로도(일본 繪葉書資料館)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안용복 일행이 일부 구간을 해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된 바 없는데, 당시 안용복과 박어둔의 호송을 담당했던 일본인들은 두 조선인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나가사키까지 호송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볼 때,<sup>8)</sup> 오사카에서 시모노세키까지의 해로 이동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안용복 일행을 호송하던 일본인들은 쓰시마 사자 카지마 곤하치(賀嶋權八)의 노정을 역으로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다.<sup>9)</sup> 안용복 일행이 세토나이카이를 통해 이동했다 하더

8) 조선인 일행의 경호 책임자는 아마다 이라자에몬과 히라이 진에몬이었는데, 나가사키까지 가는 동안 고카치(御徒方) 5인, 의사 1인, 요리사 1인이 동행하였고, 조선인 1인당 4인의 아시가루(足輕)를 붙여 총 10여명 정도의 수행원을 꾸린 것을 보더라도 일행의 안전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알 수 있다(오오니시, 전계서, 122). 또한 세토나이카이에서 선박을 통한 이동은 두 조선인이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였으며, 이동중에 도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오오니시, 전계서, 131).

9) 오오니시의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추정하고 있다. 즉, 요도가와(淀川) 하구 또는 가와구치(川口)에서 배를 타고 오사카 만을 가로질러 효고(兵庫) 항으로 향하다가 아카시(明石) 해협을 지나 후지에(藤江)에서 1박을 할 수 있다.

라도 기상여건에 따라 항해 속도나 경로, 숙박지는 얼마든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예상되는 안용복의 이동 경로를 세토나이카이를 지날 수 있는 최단 거리를 설정하고자 한다(그림 11).



<그림 11> 나가하마에서 시모노세키까지의 경로

다음날, 후지에를 출발하여 하리마나다(播磨灘)를 서쪽으로 두고 히메지(姫路)를 지나 하슈우 무로쓰(室津)에 도착하여 1박 한다. 그 다음날, 무로쓰를 출발하여 이에시마쇼토우(家島諸島)를 지나 쇼우도시마(小豆島)의 사카 테우라에 도착 후 1박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날에는 사누키(讃岐)로 접어들어 타카마쓰(高松), 사카이데(坂出)를 지나 타도쓰(多度津)에서 1박을 할 수 있으며, 다음날에는 타도쓰를 출발하여 시와쿠쇼토(塩飽諸島)를 지나 비고의 토모노우라(鞆の浦)에서 1박이 예상된다. 그 이튿날에는 토모노우라를 출발하여 인노시마(因島), 오오미시마(大三島)를 지나 미타라이(御手洗)에서 1박을 한 후, 이튿날, 미타라이를 출발하여 카마가리(蒲刈)를 지나 쿠라하시지마(倉橋島)에서 1박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 이튿날에는 쿠라하시지마를 출발하여 스오우오시마(周防大島)를 지나 카미노세키(上關)에서 1박이 예상된다. 카미노세키를 출발하여 스오우나다를 서쪽으로 두고 순항하여 나카노세키(中關)에서 1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가노세키를 출발한 후 스오우나다(周防灘)를 가로질러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여 대안의 모치쿠(門司)나 오쿠라(小倉)에서의 1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해로를 통해 이동할 경우 최소 9일에서 늦어도 12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오오니시, 전계서, 128-129).

한편, 권정(2011)은 「肅宗實錄」,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伯耆志」, 「竹島紀事」 등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안용복과 박어둔이 에도까지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키고, 관백의 서계를 받았던 정황을 파악하는 등 한국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용복의 에도행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박병섭(2009)은 「다케시마도해유래기발서」, 「異本 伯耆志」, 「히카에초우」, 「御用人日記」, 「숙종실록」, 「다케시마 기사」, 그리고 쓰시마의 소우 교부타이후(宗刑部大輔)가 에도에 제출한 「口上之覺」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용복이 에도에 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송휘영(2017)의 연구 역시, 돗토리번의 요나고와 돗토리에 머물렀던 2개월 10일이라는 안용복의 행적 중 10일 이상의 공백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안용복이 에도까지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안용복의 에도행에 관한 관점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용복의 에도행 경로를 명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안용복의 에도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후의 연구를 위해 에도행 추정 경로를 표현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된다. 오사카로부터 에도까지의 경로는 조선통신사의 이동 경로를 참조하여 표현하였다(그림 12).



<그림 12> 안용복의 에도행 추정 경로

## 6) 시모노세키에서 나가사키까지의 경로

시모노세키의 건너편 모지쿠 또는 오쿠라에서 1박을 한 안용복 일행은 나가사키를 향해 육로로 이동을 시작했을 것이다. 일행이 지나갔을 것으로 보이는 나가사키가도(長崎街道)는 산인에서 표류민을 호송하던 길이기도 했다. 안용복 일행이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지점은 쿠로사키(黒崎), 코야노세(木屋瀬), 이이즈카(飯塚), 우치노(内野), 타시로(田代), 칸자키(神崎), 우시즈(牛津), 쓰카자키(塚崎), 소노기(彼杵), 오오무라(大村), 이사하야(諫早), 야가미(失上)를 지나 나가사키에 이르는 길이며, 오쿠라에서 나가사키까지는 통상 6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오오니시, 전개서, 129).

6월 7일에 돗토리를 출발하여 6월 30일에 나가사키에 도착하였으니 23일이 소요된 것이다. 돗토리부터 오사카까지가 5일, 오사카에서 1일 체류하고, 오사카에서 오쿠라까지가 11일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고, 오쿠라에서 나가사키까지는 6일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안용복 일행의 동선과 일정은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 7) 나가사키에서 부산포까지의 경로

안용복 일행은 6월 30일에 나가사키에 도착하여 9월 1일까지 억류되어 있다가 동월 2일 쓰시마번으로 인도된다. 나가사키에서 쓰시마까지의 동선은 히라도(平戶島)와 히가시마쓰우라반도(東松浦半島) 사이를 통과하여 이키(壱岐)도를 지나 쓰시마에 이르는 항로인데(오오니시, 전개서, 152), 2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자료에는 나가사키를 떠나 히라도(平戶島)와 히가시마쓰우라반도(東松浦半島)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나카도리도(中通島)와 히라도 사이를 지나는 것처럼 동선을 표시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최대한 해안에 근접해서 이동했을 것으로

로 사료된다.



<그림 13> 시모노세키에서 쓰시마까지의 예상 경로

안용복과 박어둔은 9월 2일에 쓰시마의 이즈하라(嚴原)에 도착한 후, 11월 1일까지 쓰시마에 억류되어 있다가 동월 2일 동래의 왜관으로 송환된다. 두 조선인은 왜관에서 12월 10일까지 억류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로 동래부로 인도되었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용복의 1693년 당시의 행적을 한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최대한 현실성 있는 이동경로를 재구성하였다. 교육용 자료를 통해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 경로를 가르칠 경우, 대략의 날짜와 주요 동선 위주로 지나치게 간단히 다룬다면 영토교육의 의의 및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흥미와 감동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날짜와 주요 동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구성된 안용복의 1차 도일 행적도는 기존의 자료와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4).



<그림 14>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 경로(1693)

#### 4. 1696년 울릉도 도해 및 도일경로 재구성

1694년(숙종 20년), 조선 조정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장희빈의 모략으로 폐비되었던 민비가 복위되고, 인현왕후의 복위를 반대했던 남인들이 제거되면서 소론 정권이 들어섰던 것이다. 영의정이 된 남구만을 중심으로 한 소론 정권은 남인 정권의 나약한 대일외교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후에 공조판서가 되었던 신여철은 “만약 왜가 울릉도를 점거한다면 그 인근의 강릉과 삼척이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1694년 8월 쓰시마 번주가 차사 다치바나를 조선에 보내 남인 정권시 조선에서 써주었던 “아계울릉도(我界鬱陵島), 귀계죽도(貴界竹島)”에서 울릉도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소론 정권은 ‘귀계죽도’ 표현이 포함되어 있던 1차 회서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는 바로 조선의 울릉도임을 밝히는 새로운 회서를 만들어 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김학준, 전거서, 99-100).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 사건(1693)은 조선 조정의 울릉도 수토제를 시행하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1696년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사건은 장한상의 수토 이후, 조선 조정에서 수토에 관한 논쟁만 하고 있던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상, 조정의 울릉도 수토를 대신하여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에 출어하는 조선인 어부들을 관리하고, 일본 어부들을 단속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10) 장한상(1694)의 수토 이후 조정에서는 정기적인 수토 방침은 정해졌으나 관리들이 꺼려하여 1699년에 이르러 재개되었다. 수토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697년 1월 일본과 울릉도 쟁계가 매듭지어진 이후인 4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영의정 유상운은 수토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5월인 점을 들어 1698년 5월에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그나마 실천에 옮겨진 것은 1699년 월송 만호 전회일에 의해서였다(유미립, 전계논문, 158쪽). 한편, 울릉도 수토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미 세종 19년에 논의된 바 있다(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2월 8일 무진 2번째 기사, 1437년). <강원 감사에게 왜노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명하다> 강원도 감사 유계문(柳季聞)에게 전지하기를, "지난 병진년 가을

안용복이 일본인들에 의해 피랍되었던 1693년에는 울릉도 도해 및 어로활동이 목적이었을 뿐 일본으로 건너갈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96년에는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의 어로활동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본에 건너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출발 전에 이미 도일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안용복의 1696년 도일은 어떻게 기획되었던 것일까? 만약 1693년의 피랍사건 이후 안용복에 대한 처벌이 가혹했다면 1696년의 도일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1693년의 울릉도 도해가 부산 첨사 또는 동래부사와 같은 지방 권력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행해졌던 것이라면, 1696년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은 남구만과 같은 중앙 권력이 기획하고, 동래부사 또는 부산첨사의 지원 하에 경상좌수영과 전라좌수영이 연합한 하나의 작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최영성의 연구(2019)는 안용복의 1696년 도일을 조선 조정에서 기획

---

에 경이 아뢰기를, ‘무릉도(茂陵島)는 토지가 기름져서 곡식의 소출이 육지보다 10배나 되고, 또 산물이 많으니 마땅히 현(縣)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어 영동의 울타리를 삼아야 한다.’ 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이 섬은 육지에서 멀고 바람과 파도가 매우 심하여 헤아릴 수 없는 환난을 겪을 것이니, 군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그 일을 정지하였는데, 경이 이제 또 아뢰기를, ‘고로(古老)들에게 들으니 옛날에 왜노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여러 해를 두고 침략하여, 영동(嶺東)이 빈 것 같았다.’고 하였다. 내가 또한 생각하건대, 옛날에 왜노들이 날뛰어 대마도에 살면서도 오히려 영동을 침략하여 함길도에까지 이르렀었는데, 무릉도에 사람이 없는 지가 오래니, 이제 만일 왜노들이 먼저 점거(點據)한다면 장래의 근심이 또한 알 수 없다. 현을 신설하고 수령을 두어 백성을 옮겨 채우는 것은 사세로 보아 어려우니, 매년 사람을 보내어 섬 안을 탐색(探索)하거나, 혹은 토산물을 채취(採取)하고, 혹은 말의 목장을 만들면, 왜노들도 대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몰래 점거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왜노들이 와서 산 때는 어느 시대이며, 소위 고로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며, 만일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바람과 파도가 순조로운 때가 어느 달이며, 들어갈 때에 장비(裝備)할 물건과 배의 수효를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

하고 지원한 ‘밀사’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당시 조선과 일본의 외교는 쓰시마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안용복은 쓰시마를 건너뛰고 직접 일본의 본토로 갔던 것이다. 일본의 역사서 「죽도고」에는 안용복 일행을 ‘사절’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소송’을 위한 도일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sup>11)</sup> 안용복의 도일 당시 스스로 칭했던 ‘울릉자산양도감세장’이란 직함은 사신으로서의 도일에 대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 임시로 설정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울릉도와 자산도에 대한 징세를 근거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남구만이 윤지완에게 “안용복은 평범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급할 때 쓸 만한 점이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통해 남구만의 머릿속에는 이미 안용복의 도일이 상정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안용복의 도일 일행 중 5명이 전라좌수영에 소속되었던 의승수군이었는데, 승려의 참여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일까? 일부 연구자들은 뇌헌을 상송 등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안용복이 밀사로서 파견되었다면 승군이면서 승려였던 흥국사의 뇌헌만큼 최적의 동행인을 찾기는 쉽지 않으리라 사료된다. 더욱이 안용복의 도일시 뇌헌은 순천에서 선박을 이끌고 안용복의 선단에 참여했을 정도로 순천승에게 주어진 사명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sup>12)</sup>

11) 원록각서 본문 14에도 소송 문제로 도해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속종실록에도 다음과 같이 소송을 암시하는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즉,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자산 등의 섬을 조선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의 서계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 정식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중략)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한데도, 쓰시마 도주가 서계를 빼앗고는 중간에서 위조하여 자주 차왜를 보내고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속종실록」 22년 9월조). 어쨌든, 안용복 일행은 쓰시마의 문제를 쓰시마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막부에 전달하고자 도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안용복이 뇌헌 일행을 만났을 때 그들은 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즉, 뇌헌은 배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일정한 선원을 거느

요컨대, 조선의 조정에서 남구만과 윤지완이 안용복의 도일을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이라면, 이는 불필요한 정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당시 중앙에서는 수토에 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울릉도 수토는 중단된 상황에서 안용복을 보냈을 것이라는 추정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장에서는 안용복의 1696년 울릉도 도해 및 도일 경로를 주요 거점 및 구간별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예컨대, 출발지를 순천으로 재설정하고, 순천에서 울릉도까지의 경로, 울릉도에서 오키까지의 경로, 오키에서 돛토리번까지의 경로, 돛토리 번에서 양양으로 귀국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순천에서 울릉도까지의 경로

1696년 도일시, 5인의 승려들에 대한 오키 역인의 질문에 승려들은 죽도(울릉도) 관광차 승선한 것이라 대답을 한 바 있으며<sup>13)</sup>, 속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안용복은 울산에 거주하는 모친을 보기 위해 갔다가 뇌현이라는 승려를 만나 ‘작년에 울릉도에 갔던 일을 얘기하면서 울릉도에는 해산물이 풍부하다는 말을 하자 뇌현 일행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배에 동승하여 영해의 유일부 등과 함께 울릉도에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sup>14)</sup> 비밀리에 중앙의 권력자로부터 명을 받고 추진되었

---

리고 있었던 것이다(권혁성, 2012, 389). 한편, 의승수군은 전라좌수영 소속 군인으로, 이들 5명이 일본에 건너가는 것은 전라좌수사의 승인 또는 목인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뇌현 일행은 귀국 후 비변사에서 문초를 받았지만, 곧 풀려났으며, 7년 후인 1703년에 세워진 흥국사사적비에 뇌현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나라에 죄를 지은 사람’이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최영성, 2019, 114-115).

13) 원록각서 본문 8(오오니시, 전개서, 235-236).

14) 居母至蔚山適逢僧雷憲等備說年往來鬱陵島事且本島海物之豐富雷憲等心利之隨同乘船歟寧海篙工劉日夫等俱發到本島(肅宗實錄 22년 9월 25일)

던 도일이었다고 본다면 뇌헌 등 승려들의 참여에 관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허위로 가볍게 진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sup>15)</sup>

한편, 기존에 제작된 안용복의 1696년 도일 행적도에는 출발점이 울산인데, 최근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배를 이끌고 출발했던 순천을 출발지로 지정하고 안용복은 울산에서 합류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리라 사료된다. 울산 및 영해의 지리적 특성에 관해서는 앞장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울릉도로부터 일본으로 도해하는 과정과 귀국 경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안용복 일행은 1696년 3월 15일(양력 4월 16일)에 울산을 출발하여 당일 해를 경유하여 영해에 도착하였으며, 19일 조반 후 영해에서 출선하여 당일 석양에 울릉도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안용복 선단은 5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울릉도에 머물면서 어로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sup>16)</sup> 당시 안용복에 관한 일본측 자료에 따르면, 1696년 울릉도 도해 시 총 13척의 배가 동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sup>17)</sup>, 이는 안용복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사료된다. 즉, 1693년 도해 당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부산첨사와 같은 지방 권력자의 승인 또는 묵인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

15) 안용복과 뇌헌의 만남에 대해서는 「疆界考」, 「增補文獻備考」, 「萬機要覽」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다. 즉, ‘안용복이 매우 분개하여 울산으로 달려가니, 해변에 상승 뇌헌 등이 배를 짓고 있었다. 안용복이 피어 말하기를, 울릉도에는 해삼이 많으니, 내가 그들을 하여, 그 길을 안내하여 주겠다, 하니 승이 혼연히 따랐다.’(龍福憤心走蔚山海邊有商僧雷憲等織舟龍福誘之曰鬱陵島多海蔘吾當爲汝指其路僧欣然從之。(「疆界考」 鬱陵島安龍福事<1756>, 「增補文獻備考」 輿地海防東海蔚珍<1770>, 「萬機要覽」 軍政篇海防東海蔚陵島事實<1808>)

16) 안용복의 1696년 울릉도 도해 시 육지에서 출선한 날짜는 자료에 따라,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본고에서는 원록각서 본문 11에 진술되어 있는 내용을 따르고자 한다.

17) 원록각서 본문 12번에 따르면, 1696년의 울릉도 도해 시에는 총 13척의 배가 출어하였으며, 이들 배에는 각각 9인, 10인, 11인, 12인, 13인, 15인 등이 승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오오니시, 전게서, 238).

이다. 따라서 1696년의 경우는 예년과 같이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의 어로활동을 위한 선단구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안용복과 뇌헌을 중심으로 한 척의 배는 도일을 위한 준비를 추가적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본 자료에 기록된 안용복 일행의 관명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안용복의 신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표 3). 안용복은 노군 출신으로 1693년에 피랍되었을 때에는 ‘비장’을 칭했는데, 3년 후에는 ‘울릉자산양도감세장’을 칭했다.<sup>18)</sup> 비변사의 진술에 의하면, 1696년 도일 당시에는 배에 ‘울릉자산양도감세장’이라는 깃발을 달고, 푸른 철릭에 검은 갓과 가죽신을 신는 등 의관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신분상의 문제에 대해 문책했다는 기록은 없고 도해한 죄를 물어 치죄했다는 기록만이 있을 뿐이다(권오엽, 2009, 241-242).

<표 3> 1696년 도일 당시 안용복 일행 명단

숙종실록(肅宗實錄)	죽도고(竹島考)	원록각서(元祿覺書)
安龍福 (東萊人)	安同知 (三品堂上臣)	安龍福 (안헌치우)
李仁成 (平山浦人)	李裨將 (進士軍官)	李裨元 (이비잔)
金成吉 (樂安人)	金裨將 (進士軍官)	金可果 (킨사우쿠하우)
金順立 (延安人)	金沙工 (帶率)	金甘官 (킨한구한)
劉日夫 (興海人)	劉漢夫 (帶率)	柳上工 (유샤코우)
劉奉石 (寧海人)	劉格率 (帶率)	ユウカイ(유우카이)
雷憲 (天天僧)	憲判事 (金鳥僧釋氏)	雷憲 (토이헌)
勝淡	淡法主 (釋氏帶率僧)	勝淡 (스우쿠하네이)
連習	習化主 (釋氏帶率僧)	衍習 (엔스스)
靈律	律化主 (釋氏帶率僧)	靈律 (윤유쿠)

18) 죽도고의 기록에 따르면, 이인성과 김성길의 관명이 비장이었던 것으로부터 이들이 안동지(안용복)의 부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원록각서 본문 3에 따르면, 안용복이 차고 있던 표찰에 ‘통정대부 안용복 갑오년(1654)에 태어났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丹賁	賁化主 (釋氏帶率僧)	丹冊 (탄소이)
----	-------------	----------

(오오니시, 2011, p.264; 권혁성, 2012, p.390)

당대의 조선은 양란의 피해가 복구되어 전답이 늘었음에도 세수가 감소되고, 백성이 늘어도 군사가 늘지 않는 문제를 오가작통제와 호패법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 납속논상제도(納粟論賞制度)였는데, 이는 납속인에게 상위의 신분계층 또는 관련 조직으로의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신분 상승을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가장 많이 발부된 것이 통정대부(通政大夫)였고, 통정대부 이상의 첩문을 받은 자가 가납하면 첨지(僉知), 동지첩(同知帖)이 제수되었다. 당시 조선의 이러한 제도와 안용복이 비장 또는 동지 등을 칭한 것을 같이 놓고 생각한다면, 안용복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사칭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안용복이 ‘누구나 은 40목씩을 관에 바치고 이 찰을 받았다’고 진술한 「죽도고」의 기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권오엽, 2009, 242-243; 오오니시, 전게서, 59).

## 2) 울릉도에서 오키까지의 경로

안용복 일행은 울릉도에 근해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일본인들을 추격하여 울릉도를 5월 15일에 출발하였는데, 사실 안용복은 돛토리를 통해 에도막부에 쓰시마의 비리를 소송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위해 ‘조울양도감세장’으로서의 ‘통정대부’ 안동지가 되어 돛토리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오오니시, 전게서, 310).

안용복 일행이 다음날 새벽 무렵 독도(송도)에 도착하여 보니, 일본인들이 가마솔을 걸어놓고 물고기를 삶고 있었는데, 안용복이 막대기로 쳐

서 깨뜨리며 그들을 꾸짖으며 ‘자산도 또한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16일 아침에 이들의 뒤를 쫓아 오키 방향으로 추격하다가 광풍을 만나 18일 아침에 오키 도고(島後) 북단의 니시무라(西村) 해안에 표착하였다. 안용복 일행은 도착 당일 동린의 나카무라(中村) 향에 피항했다가, 19일 아침부터 오키도의 동해안을 돌아 오오쿠무라(大久村) 북단의 카요이우라에 정박하여 하룻밤을 보낸 후, 20일 아침에 오오쿠무라만(大久灣)에 도착하였다.



<그림 15> 도고(島後)에서의 이동 경로

(오오니시, 전개서, p.284)

안용복 일행은 오키 대관소(代官所)에 자진 출두하여 그곳에 표착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소송할 것이 있어서 호우키주로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sup>19)</sup> 대관소의 대관들은 20일부터 22일까지 조선인

일행을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23일 세키슈우(石州) 어용소(御用所)에 제출하였으며, 이 자료는 이와미(岩見)의 오오모리대관소에 보고되었고, 이어서 막부와 돗토리번에도 서건의 전말이 보고되었다(권혁성, 전계논문, 379; 오오니시, 전계서, 311-314).

### 3) 오키에서 돗토리번까지의 경로

오키국에 조선의 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은 돗토리번에 6월 5일 무렵 전달되었다. 또한 번주가 체재하고 있던 에도의 돗토리번저에도 파발꾼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번주는 막부에 관련 내용을 13일에 보고했다.<sup>20)</sup> 호키슈(伯耆州, 돗토리번)로부터 오랫동안 아무런 회신이 없자, 안용복은 ‘울릉자산양도감세장’을 칭하고 직접 호키슈를 향해 건너갔다(장순순, 2014, 361). 안용복 일행이 오키를 출발한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6월 4일 호키국(伯耆國)의 아카사키(赤崎)에 나타나서 동쪽을 향하고 있을 때, 돗토리번에서 급파된 야마자키 슈마(山崎主馬)는 조선인의 배를 아오야(靑屋) 마을로 안내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때 안용

19) 도주가 안용복의 도일 목적을 묻자 자신이 1693년에도 왔던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관백으로부터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서계까지 받았는데, 일본인들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리 땅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는 문제를 항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무라카미 가문 문서」에 따르면, 안용복은 ‘다케시마는 대나무섬이라고 하며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 내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竹島라고 합니다. 팔도지도(八道之圖)에 쓰여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마쓰시마는 같은 도내에 자산(子山)이라는 섬으로 둘 다 팔도지도에 쓰여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덧붙여 호키태수에게 소송할 것이 있어서 호키(돗토리번)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 오키섬에 표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장순순, 2014, 361-363). 무라카미 가문의 문서 내용은 5월 23일에 끝났지만, 이 사료의 의의에 대해 나이토우 세이쥬는 “안용복이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영토라고 일본 측에 주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오키에서의 이 문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박병섭, 2009, 322-323).

20) 「御用人日記」, 원록 9년 6월 13일(박병섭, 2009, 323쪽 재인용).

복 일행은 배에 깃발을 달고 있었는데, 당시 아오야 마을의 주민이 깃발에 적힌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 「죽도고」 등에 수록된 것은 흥미롭다(박병섭, 2009, 324).

안용복 일행은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아오야의 센넨지(專念寺)에 체류했던 것으로 보이며, 돗토리번에서는 언어상의 문제로 조선인들과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막부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sup>21)</sup> 돗토리번에서는 조선인들이 아오야에 머무는 동안 사람을 보내 안용복 일행의 도일 목적에 대해 듣고자 하였으며, 그들의 소지품 등을 조사하여 막부에 보고하였다.<sup>22)</sup>

안용복 일행은 6월 14일 아오야에서 가로(賀露)의 도젠지(東善寺)로 옮겨진 후 21일까지 그곳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로우주우(老中) 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加賀守)는 그들을 배안에서 머물도록 지시하였는데,<sup>23)</sup> 그러한 지시가 돗토리성부에 전달되는 동안 돗토리번은 안용복 일행을 조선의 사신으로 여기고 접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24)</sup> 그러나 조선인을 절대로 절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로우주우의 지시가 재차 떨어짐에 따라 안용복 일행은 고야마(湖山池) 호수에 있는 아오시마(靑島)에 유폐되어 귀국 전까지 50여 일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다(박병섭, 2009, 329).

21) 그러나 「호키지(伯耆志)」에 따르면, 안용복 일행은 아오야에 머무는 동안 현지 주민들과 교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안용복과 동행했던 이인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8장의 휘호를 써주기도 했다(박병섭, 2009, 324).

22) 「御用人日記」, 원록 9년 6월 22일(박병섭, 2009, 325쪽 재인용).

23) 「御用人日記」, 원록 9년 6월 22일(박병섭, 2009, 328쪽 재인용).

24) 돗토리번은 도젠지에 집을 푼 조선인 일행에 시중을 붙여주고, 정중히 접대하기 위해 가마와 말을 보내 본정회소(本町會所)에서 연회를 베푼 것으로 파악된다(오오니시, 2011, 338-339).



<그림 16> 돗토리성 주변도

(오노니시, 전게서, p.338)

안용복 일행이 아오시마에 유폐되어 있는 동안 조선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쓰시마번은 안용복 일행을 정식사절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추방해줄 것을 막부에 상소하였다. 오쿠보 가가노카미는 이국인의 소송 문제는 분명 나가사키 봉행소의 관할이지만, 조선에 관해서는 쓰시마에 일임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월 24일에 조선인들을 추방하라는 지시를 내린다.<sup>25)</sup> 8월 4일에는 에도로부터 거듭 조선인들을 추방하라는 지시가 떨어

25) 조선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 쓰시마번을 중개로 한다는 당시의 규칙을 근거로 쓰시마번에서는 안용복 일행의 소송건을 호우키는 물론 나가사키에서도 다룰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안용복 일행의 소송건은 당시의 관행을 무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쓰시마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웠던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안용복의 소송건이 받아들여진다면 조일 양국 사이에 있던 쓰시마

어졌는데, 조선인들의 배가 고야마 호수에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배를 가로 향으로 끌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 안용복 일행은 결국 8월 6일 아침에 가로항을 출선하였다(오오니시, 2011, 382-384).

#### 4) 돛토리번에서 강원도 양양까지의 경로

안용복 일행이 가로항을 출발하여 어떤 경로를 따라 조선의 강원도 양양까지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나간 흔적을 알게 해주는 일부 자료가 남아있어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일본에는 야다 타카토우(矢田高当)가 지은 「장생죽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책은 저자가 오키의 어부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교우와 원년(享和元年, 1801)에 기록한 것으로 안용복 일행이 오키에 들러 오키 주민들과 재회한 후 귀국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오오니시, 2011, 387-391).

이 사료에 따르면, 안용복 일행은 가로항을 떠난 후 오키의 니시무라 항에 입항하였는데, 사람들에게 방향을 물어 후쿠우라항으로 이동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료에는 안용복의 1693년과 1696년의 도일 상황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1696년의 귀국 상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용복 일행은 오키에서 순풍을 기다렸다가 다시 서북 방향을 향해 출선하였다. 그들이 가로항을 출발한 것이 8월 6일이고, 강원도 양양에 도착한 것이 8월 29일(양력 9월 24일)이므로 가로항에서 오키를 거쳐 곧바로 양양까지 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간에 자산도(독도)에도 들르고, 울릉도에도 들러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도 조달하고, 그들의 일행이 계속 체류하고 있는지 또는 울릉도 상황이 어떠한지에 관해서도 살펴보면서 며칠을 더 체류한 후 순풍에 맞춰

---

의 역할과 권리는 상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쓰시마에서는 안용복 일행을 종식 사절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 조정이 의도했던 하나의 계략이었던 것으로 생각했다(오오니시, 2011, 356-365).

다시 배를 띄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계에서는 안용복의 도일 목적이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도해에 대한 항의인가, 또는 쓰시마의 비리를 막부에 직접 알리기 위함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연구결과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오키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일본인들의 불법도해를 문제 삼으면서 대마도의 비리에 대해서는 호키슈에 가서 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대마도는 조일 양국의 중간에서 각종 비리를 일으켰으며, 또한 울릉도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욕심을 부리는 등 대마도에 대한 소송건에는 대마도의 비리 뿐만 아니라 울릉도 영유권 문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따라서 안용복의 소지품 중에 팔도총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식적으로 안용복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도일을 감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분명 배후의 지원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측에서 조선의 조정에 안용복의 도일 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관해 물어봤을 때 동래부사는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는 등, 결국 이 사건은 남구만과 같은 고위 권력자가 기획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즉, 조선에서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도해 문제나 대마도의 비리 문제를 대마도측과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으면서 안용복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압박을 주려는 고도의 전략을 갖고 있

26) 막부는 돗토리번이 다케시마는 자기 영토가 아니라는 회신을 함에 따라 그 섬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쓰시마번과 협의했다. 1696년 1월 28일, 다케시마 도해 금지의 봉서가 에도의 돗토리 번저에 넘겨졌고, 그로 인해 돗토리 번주에게 발행되었던 막부의 다케시마 도해 허가증은 2월 9일 막부에 반납되었다. 그러나 돗토리 현지에 다케시마 도해 금지의 봉서가 도착한 것은 8월 1일이었다. 에도 막부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은 곧바로 조선에 전달되지 않았다. 쓰시마 번은 ‘다케시마 일건’ 교섭이 암초에 부딪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조선에 전달할 것인지 고민했던 것이다. 그때까지의 쓰시마번은 조선인의 도해금지를 요구하고 수년간이나 조선과 힘든 교섭을 계속해 왔지만, 막부의 결정은 일본인의 도해 금지로 쓰시마번의 요구와는 정 반대의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박병섭, 2009, 314-317). 그런 와중에 안용복의 도일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27)</sup>



<그림 17> 안용복 일행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 경로(1696)

비록 안용복의 1696년 도해시 쓰시마의 개입으로 인하여 안용복이 막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채 추방당하기는 했지만, ‘울릉도는 이미 조선의 영토’라는 일본측 진술도 확인하였고, 쓰시마나 막부에 대

27) 안용복의 도일 행적에 대한 조선 조정의 평가는 엇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이라 사료된다. 「숙종실록」은 남구만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안용복이 계유년에 울릉도에 갔다가 왜인에게 잡혀 호키슈에 들어갔더니, 본주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을 만들어 주고 증물도 주었는데, 쓰시마편을 거쳐 나오는 길에 공문과 증물을 죄다 쓰시마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나 그의 말을 반드시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안용복이 다시 호키슈에 가서 정문(문文)한 것을 보면 전에 했던 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안용복이 금령을 무릅쓰고 다시 가서 사단을 일으킨 죄는 진실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쓰시마의 왜인이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거짓 칭하고, 에도의 명이라 거짓으로 핑계 대어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속여 농간을 부린 정황이 이제 안용복 때문에 죄다 드러났으니 이것은 또한 하나의 패사입니다.” (숙종실록 22년 10월 13일).

한 압박 효과도 충분했던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기존에 제작된 안용복의 도일 행적도를 보면 남한측 자료의 경우 귀국시 울릉도와 독도를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북한측 자료의 경우 오키, 독도, 울릉도 모두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오키도를 경유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므로 표시를 해주어야 하며,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당시의 항해방식을 고려할 때 오키에서 양양까지 가는 동안 독도와 울릉도를 경유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 사료된다. 더욱이, 안용복 일행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특별한 영유의식을 갖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울릉도와 독도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 5. 결론

안용복의 도일 사건은 일반적으로 독도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영유 의지를 보여주었던 사례로 인식되는데, 그의 이동 경로나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안용복의 행적을 보여주는 영토교육 자료는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하며 학생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독도교육 자료로서 비중있게 제공되고 있는데, 오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안용복의 도일과 관련된 영토교육 자료는 최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으며, 본 고에서는 안용복의 행적 및 이동경로를 최신의 연구성과를 근거로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날짜는 역사서에 기록된 음력을 양력인 것처럼 인식하였는데,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할 경우 한달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안용복의 행적과 관련된 날짜는 혼동을 피하고 현실성을 고려하여 음력과 양력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1693년과 1696년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에 관한 용어표현이 지금까지는 ‘1차 도일’과 ‘2차 도일’ 형태로 다루어졌는데, 1693년에는 일본인들에 의한 피랍 상황이었으며, 1696년에는 자발적으로 건너갔던 사실을 근거로 본고에서는 ‘1693년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사건’과 ‘1696년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사건’으로 용어표현을 변경하였다.

셋째, 안용복이 배를 타고 도해하던 시기에는 바람과 같은 기상 현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을 고려하여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연구 및 영토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연중 동해상의 풍향 및 풍속 등 기상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해상의 3월과 5월 기상도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넷째, 1693년의 안용복 피랍사건은 조선 조정의 울릉도 수토제 시행의 동력을 제공하였으며, 1696년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은 중앙의 수토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행해진 것임을 근거로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도일 사건은 중앙의 수토제와 관련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수토사들의 출발지와 안용복의 출발지를 지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그 차이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1693년의 행적에 관한 자료는 독도를 경유하지 않고, 오키제도, 나가하마를 거쳐 요나고로 상륙한 후, 돗토리를 거쳐 오사카까지는 육로로 이동했다가 다시 오사카에서 시모노세키까지는 해로를 통해 이동하고, 시모노세키에서 나가사키까지는 육로로 이동하고, 나가사키에서 쓰시마까지는 해안에 근접하여 이동했던 동선을 제시하였다. 당시 안용복의 에도행에 관한 논쟁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나, 안용복의 에도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고에서는 추정되는 경로를 별도의 지도로 제시하였다. 에도행의 추정 경로는 조선통신사의 이동 동선을 참조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세토나이카이를 통한 이동 경로는 조선통신사의 이동경로 및 일본측 자료에 근거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696년의 행적에 관한 자료는 뇌헌이 승려들과 배를 동원하여 순천에서 출발했던 것을 근거로 출발지를 순천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안용복은 울산에서 합류하였으며, 도일 상황에서도 안용복은 뇌헌 등 순천의 승려들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출발지를 순천으로 재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 행적도는 안용복 연구의 종합적 결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관념적 측면보다는 철저한 고증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안용복과 관련된 영토교육은 특정 시기와 경유지를 단순 암기하는 것처럼 다뤄져서는 안되며,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건과 동선을 매개로 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안용복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 공통적으로 영토교육에서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는데, 내용상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관한 주제로 남북간에 학술교류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오엽,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와 안용복」『일본어문학』, 39, 2008.
- 권오엽, 「통정대부 안용복: 한일 기록이 전하는 안용복의 관직」『일본어교육』, 50, 2009.
- 권오엽, 「염간 박어둔과 독도」『일본문화학보』, 46, 2010.
- 권오엽, 「안용복의 호패」『일본문화학보』, 64, 2015.
- 권 정, 「숙종실록 기록으로 본 안용복: 안용복 진술의 타당성에 관해」『일본언어 문화』, 19, 2011a.
- 권정,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의 배후: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일본어문학』, 55, 2011b.
- 권혁성, 「순천승 뇌현의 일본도해: 호국승으로서의 뇌현」『어어일문학』, 55, 2012.
- 김학준, 『독도연구』동북아역사재단, 2010.
- 김호동, 「독도 관련 한일자료의 새로운 해석: 울릉도, 독도 어로활동에 있어서 울산의 역할과 박어둔: 조선 숙종도 안용복, 박어둔 납치사건의 재조명」『인문연구』, 58, 2010,
- 박병섭, 「안용복 사건과 돛토리번」『독도연구』, 6, 2009.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력사지도첩』사회과학원-국가측지국, 2007.
- 송희영, 「안용복의 도일 사건과 일본에서의 행적: 안용복 도일루트와 에도행의 가능성에 관련하여」『일본문화학보』, 72, 2017.
- 오사카상선회사(大阪商船會社), 「瀬戸内海附近航路図」, 일본 絵葉書資料館 소장, 연대미상.
- 오오니시 토시테루, 『안용복과 원록각서』한국학술정보(주), 2011.
- 유미림,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2009.
- 장순순, 「1696년 안용복의 도일과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 최영성, 「안용복 제2차 도일의 성격에 관한 고찰: ‘조선의 밀사’ 안용복」『독도연구』, 26, 2019.
- 한영찬 외, 『역사 고급중학교 2』교육도서출판사, 2014.
- 허준 외, 『고등학교 독도 바로알기』동북아역사재단, 2017.
- 『일제강점기 지형도』, 조선총독부, 1915.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세종 19년, 숙종 22년 기사.

『조선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세기 초.

네이버지도 위성영상, <https://www.naver.com/>

윈디 기상자료, <https://www.windy.com/>

일본정부관광국, <https://www.welcometojapan.or.kr/>

일본 회엽서자료관(繪葉書資料館), <https://www.ehagaki.org/shopping/ja>

<Abstract>

## **A Critical Study on the Moving Routes for Ahn Yong-bok's Passages to Ulleungdo and Japan**

- Focusing on Reconstruction of Learning Materials for Territory  
Education -

**Yi, Saangkyun · An, Dong-Li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dicate that the existing materials regarding the Ahn Yong-bok's doings were academically inexact and unrealistic in many different versions and reconstruct the moving routes for his passages to Ulleungdo and Japan on the basis of the recent performances of research as h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key figure in education as to Dokdo. This study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dates of his doings were thought of as being based on the solar calendar though they are based on the lunar calendar; thus,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m by both lunar and solar calendars. Second, the terms regarding Ahn's doings were divided into the 'passage to Ulleungdo by sea and being kidnapped in 1693' and the 'passage to Ulleungdo and Japan by sea in 1696.' Third, it is necessary to be associated with the meteorological phenomena on the East Sea the year round, taking the then voyage conditions into account, in conducting research or giving territory education in relation to Ahn's passage to Ulleungdo by sea.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lain Ahn's passages to Ulleungdo and Japan and being kidnapped in relation to Joseon's territorial inspection of Ulleungdo, which was driven by his being kidnapped. Fifth,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starting point into Suncheon because Nocheon set sail with Buddhist monks from the region in 1696.

**Key words:** Ulleungdo, Dokdo, Ahn Yong-bok, Territorial Education, Moving Routes to Japan, Territorial Inspection of Ulleungdo, Nocheon

이 논문은 2019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안용복 밀사’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유 미 림\*

### 〈목 차〉

1. 머리말
2. ‘안용복 밀사’설-1: 남구만의 밀사 안용복
3. ‘안용복 밀사’설-2: ‘조선 정부의 밀사 안용복’설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1696년 안용복이 권력자의 밀명을 띠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일했다는 ‘안용복 밀사’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안용복 밀사’설은 남구만이 안용복을 밀사로 보냈다는 설(①)과 남구만과 윤지완이 공조하여 보냈다는 설(②)로 나뉜다.

①의 주요 논지는 조선 정부가 쓰시마번이 아닌 다른 노선을 통해 외교노선을 새로 개척하기 위해 안용복을 보내 돛토리번에 쓰시마번의 비리를 고발하게 했으나, 쓰시마번의 방해로 결국 막부에 보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안용복의 도일 목적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형태로 쓰시마번의 비리를 고발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②의 주요 논지는 당시 정파 간의 인식 차이가 커서 공식 사행을 파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쟁을 피하면서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밀사를 파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파 간 인식 차이가 무엇인지, 밀사 파견의 배경은 무엇인지, 파견을 계획한 시기는 언제인지, 안용복이 칭한 관직이 밀사로서 적합한지, 안용복과 그 일행의 신분은 임무 수행에 적합한지, 국왕인 숙종은 어떻게 관련 있는지, 일본 측은 밀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

\*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조선은 밀사를 파견하지 않고도 직접 사신을 보내 쓰시마번의 행태를 막부에 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굳이 자격이 의심스런 안용복을 보냈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이 ‘안용복 밀사’설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안용복 밀사’설은 사료 인용에 있어서도 개인 문집이나 2차 문헌을 이용했고, 구절의 일부를 뽑아 무리하게 밀사설과 엮은 측면이 있다.

**주제어:** 밀사, 안용복, 남구만, 뇌헌, 감세장

## 1. 머리말

이 글은 독도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안용복 밀사’설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안용복 밀사’설의 단초는 2010년대 초반부터 보이기 시작했지만, 최근 이 가설이 다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울릉도 쟁계’는 1693년 일본이 안용복·박어둔을 납치했다가 송환할 때 조선 어민의 울릉도 어로를 금지를 요청하는 서계를 조선 측에 보내옴으로써 시작된 사건이다. 이 분규는 조·일 양국 간 영토 분쟁으로 비화했고, 결과는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이른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이다. 이 금지령이 나온 것은 1696년 1월이지만, 그 사실이 조선 정부에 전해진 것은 1697년 1월 도해역관이 귀국한 뒤이다. 그런데 한 해 전인 1696년 봄 안용복이 다시 도일(渡日)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의 도일은 1693년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용복 밀사’설은 안용복의 도일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안용복이 당시 권력자의 밀명을 띠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일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왜, 안용복을 밀사로 보낼 계획을 세웠는가? 그리고 안용복에게 맡긴 특수임무란 무엇인가? 안용복은 특수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가? 일본 정부는 안용복을 사신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지니고 안용복이 밀사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려는 것이다.

## 2. ‘안용복 밀사’설-1: 남구만의 밀사 안용복

본격적으로 ‘안용복 밀사’설이 제기되기까지는 그 단서를 제공한 선행연구들이 있다.<sup>1)</sup> 1693년 안용복이 에도에 가서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고 기록한 『숙종실록』이 사실이라는 주장,<sup>2)</sup>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배후에 동래 부사와 부산 첨사가 있었다는 주장,<sup>3)</sup> 안용복이 샤큐완(부산첨사이홍적, 삼척 첨사 장한상)의 지령을 받아 돛토리번을 방문했다는 주장<sup>4)</sup> 그리고 안용복은 조선 조정이 파견한 선견사였다는 가설 등<sup>5)</sup>이다. 한편 이를 부인하는 다른 시각의 견해, 즉 “안용복의 행위와 의식은 자신의 이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울분과 적개심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sup>6)</sup>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안용복 밀사’설의 단서를 제공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자 간 논리가 상충하거나 연구자 개인의 논리가 일관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각각의 단편적인 논의를 ‘남구만의 밀사 안용복’이라는 하나의 논리로 엮은 자는 권오엽<sup>7)</sup>이고, 이를 사료를 통해 논증하겠

1) 권정, 2011-a, “독도에 관한 일본 고문서 연구.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38; 권정, 2011-b, “『숙종실록』 기록으로 본 안용복 -안용복 진술의 타당성에 관해.-,” 『일본언어문화』 19; 권정, 2011-c,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의 배후 -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일본어문화』 55; 권혁성, 2012, “순천승 雷憲의 일본도해 : 호국승으로서의 뇌현,” 『일어일문학』 55; 권오엽, 2015-a, “안용복의 호패,” 『일본문화학보』 64; 권오엽, 2015-b, “남구만의 밀사 안용복,” 『일본어문화』 65; 권혁성·권오엽, 2015, “花田 李進士와 獨島,” 『한국일본어문화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 권정, 2011-b.

3) 권정, 2011-c

4) 권혁성·권오엽, 2015, 앞의 글, 228쪽.

5) 권혁성, 2012, 앞의 글, 393쪽. 권혁성에 따르면, 大西俊輝가 그런 경우를 대담하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6) 윤재환, 2016, “약천 남구만이 바라본 안용복의 의미,” 『동방한문학』 제69집, 동방한문학회, 323쪽.

7) 권오엽, 2015-b 앞의 글. 학술논문이므로 존칭은 생략했다. 다른 필자도 마찬가

다는 목적을 지니고 구체적으로 부연한 자는 최영성이다. 이 글은 권오엽의 논지를 ‘안용복 밀사설-1’(①로 약칭)로, 최영성의 논지를 ‘안용복 밀사설-2’(②로 약칭)로, 두 가지 설을 아우르는 논지를 ‘안용복 밀사’설로 칭하며 검토하기로 한다. 두 설의 차이를 구분한다면, ①은 남구만이 보낸 밀사라는 의미에서 ‘남구만의 밀사 안용복’설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②는 숙종의 목인 아래 남구만과 윤지완이 공조하여 보냈다는 의미에서 ‘조선 정부의 밀사 안용복’설이라고 할 수 있다.

①은 이 주제에 관해 선구적 연구를 했음에도 여러 연구자의 설이 섞여 있고 출전을 밝히지 않아 자신의 설인지 다른 연구자의 설인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를 테면 권혁성은, 안용복이 쓰시마번의 비리를 소송하기 위해 돗토리번에 도해했는데 쓰시마번의 방해공작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비리를 소송하며 쓰시마번을 제외한 외교노선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했다<sup>8)</sup>는 논리를 개진한 바 있다. 즉 안용복이 새로운 외교노선을 개척하려는 “조정 세력의 지령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권오엽의 논지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논거의 출전을 밝히지 않았다. 권혁성은 새로운 외교노선을 개척하려는 목적 아래 도해한 것은 뇌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보았다.<sup>9)</sup> 권혁성은 「겐로쿠각서」를 해설한 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의 해설<sup>10)</sup>을 참고한 부분이 많으나, 그 역시 출전을 밝히지 않아 누구의 논지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최영성이 권오엽의 논지를 구체화했으므로 이 글은 최영성의 이설(異說)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에 앞서 ①의 논지를 먼저 검토한다. ①은 남구만이 조정의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밀사 파견을 진행했다는 시각에서 논지를 전개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지다.

8) 권혁성, 2012, 앞의 글, 392쪽.

9) 위의 글, 393쪽.

10) 권오엽·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 2009, 앞의 책.

다.<sup>11)</sup> 첫째, 남구만은 1693년 피랍으로 인해 일본에 갔다가 송환된 안용복이 제공한 정보로 쓰시마번이 사실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쓰시마번을 제외한 신 외교노선의 구축을 기획, 안용복으로 하여금 돗토리번을 통해 쓰시마번의 비리를 막부에 소송하도록 밀명을 주어 밀사 형식으로 파견했으며 그 과정은 조정의 합의를 얻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했다. 둘째, 안용복의 해상활동이 일정한 세력의 허가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그가 통행증을 소지한 사실로 알 수 있고, 1696년 소송 건은 지방권력을 벗어나 중앙 권력의 허가나 지시가 필요한 일이었다. 1693년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안용복이 남해와 동해세력을 아울러 도일을 계획한 것은 공적 권력의 기획과 주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셋째, 1696년 오키국 번소에서 안용복이 호키국 태수에게 소송할 용건이 있음을 말하자, 번소는 이를 막부에 보고하면서 “조선인이 제출한 서류를 목록에 적어” 제출했는데, 이는 안용복 일행이 일본의 공적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외교노선이 고정되는 것을 두려워한 쓰시마번은 돗토리번을 통한 소송 건이 접수되면 조선외교를 전담해온 특권이 없어져 생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막부의 지시를 바꾸도록 제안, 막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넷째, 1696년 안용복이 ‘조울양도감세장 신 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長臣安同知騎)’라는 깃발을 걸고 일본에 간 것은 오키 이후가 분명하지만 의관 등은 급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출선 당시부터 준비해간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지방 권력의 한계를 벗어나 중앙 권력의 지시나 허가가 필요한 일이다.

즉 ①의 논지는, 밀사를 파견한 목적은 쓰시마번의 비리를 막부에 알리는 것이지만, 조선 정부가 직접 알리는 것이 아니라 돗토리번을 통해 하는 것이었다. 이를 기획한 자는 남구만으로 조정의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했다. 그의 구상은 쓰시마번이 아닌 다른 노선을 통해 새로운 외교노선을 개척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도일한 안용복은 남해

11) 권오엽, 2015-b, 앞의 글, 431-444쪽.

와 동해 세력을 아우르고 갔으므로 이는 중앙 권력의 허가와 지시를 받은 것이다. 안용복이 제출한 문서는 돗토리번을 통해 막부에 보고되었지만, 쓰시마번이 막부를 움직여 결국 남구만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의 논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쓰시마번이 사실을 왜곡한다고 했는데 왜곡한 사실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안용복의 도일 목적이 쓰시마번의 비리를 알리는 것인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밝히려는 것인지도 애매하다. 안용복이 남해와 동해 세력을 아우른 것이 공적 권력의 기획과 주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안용복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뇌헌 세력을 아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았다.<sup>12)</sup> 배의 운영권은 뇌헌에게 있었으며, 일행의 구성으로 보면 안용복이 뇌헌 일행에 편승한 것이거나, 안용복 주도의 선단에 뇌헌의 배가 참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애매하지만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sup>13)</sup> 또한 뇌헌 세력의 포함이 공적 세력과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따져볼 일이다.

한편 ①은 “안용복 일행은 일본에서 사신 대접을 받았다. 일행이 표찰한 隱岐番所나 鳥取藩은 물론 막부도 사신단으로 대우했다. 그런 경우가 고착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對馬藩의 반대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조선의 뜻을 기록한 공문을 막부에 접수시킨 것은 사실이다.”<sup>14)</sup>라고 했다. 이는 안용복의 소장이 돗토리번을 통해 막부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겐로쿠각서」를 보면, 대관(代官)의 수하가 “조선인이 제출한 문서를 목록에 적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사자가 피조사자가 지참했던 물품 및 문서를 보고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오키의 관리는 안용복 일행이 지닌 문서를 목록에 적어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12) 권혁성, 2012, 앞의 글.

13) 권혁성, 2012, 앞의 글, 392쪽.

14) 권오엽, 2015-b, 앞의 글, 445쪽.

관리는 “문서를 목록에 적어” 보고했다고 했을 뿐 문서의 내용을 적어 보고했다고 한 바는 없다. 안용복 일행이 지닌 문서를 목록에 적어 보고했다는 것과 그 문서의 내용을 적어 제출·접수시켰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이를 일러 안용복 일행이 일본의 공적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①은 “조선인이 제출한 서류를 목록에 적어”라고 번역했음에도 “안용복이 제출한 문서 등을 첨부한 보고서를 관계요로에 전했”고, 이 “보고를 받은 鳥取藩이 江戸藩邸를 통해 막부에 보고”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했다. 오키의 관리는 이인성이 쓰던 소장(訴狀)의 초안을 본 적은 있지만 정서된 소장은 보지 못했다. 안용복이 호키에 가서 직접 제출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키의 관리는 소장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안다고 했을 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자세히 보고하지 않았다. 안용복은 비변사에서 진술할 때, 호키에서 소장을 제출했으나 쓰시마도주의 반대로 막부에 보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이나바에 가서 말하겠다고 했음에도 정작 이나바에 온 뒤로는 일본어를 못하는 듯이 행동했다. 더구나 일본 측 기록에도 안용복이 제출했다는 소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한 바가 없다.

①은 안용복이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조선의 뜻을 기록한 공문을 막부에 접수시킨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안용복의 그런 활동은 對馬藩이 아닌 다른 노선을 통해 조선의 뜻을 막부에 전달하겠다는 남구만의 구상과 같”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의 뜻”은 무엇인가? 남구만의 뜻인가? 군주의 허락이나 조정의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남구만의 뜻을 조선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가? dots(도토리)번이 안용복의 도일 사실을 막부에 보고한 것을 일러 공문을 “접수”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만일 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한들 오키 현지에서 작성된, 관부의 날인이 없는 소장을 공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오키의 관리는 이와미국에 보고하는 동시에 dots(도토리)번청 가로에게도 보고했고, 가로는

이 사실을 에도 번저에 보고했다. 따라서 이 사실은 막부의 노중에게도 보고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용복 일행의 도일 사건 내지 일행을 조사한 사실이 막부에 보고되었을 터이지만, 이를 일러 막부에 공문을 접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은 남구만이 쓰시마번이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을 안용복이 제공한 정보로 확인했기 때문에 “일본이나 울릉도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는 일에 안용복을 활용”<sup>15)</sup>하기 위해 돛토리번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밀사를 파견한 목적이 쓰시마번 관련 소송인가, 아니면 여러 정보에 관한 검증인가? ①에 따르면, 안용복을 밀사로 파견한 이유가 1609년의 기유약조로 인해 조선과 일본과의 통신은 쓰시마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쓰시마번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하는 일은 허가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부산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왕래하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對馬藩의 사실 왜곡을 방관할 수도 없어, 안용복을 밀사로 파견한 것이다.”<sup>16)</sup>라고 한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밀사 파견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듯 ①의 논지는 여러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①의 논지는 ②에 의해 수용되었고, 좀 더 구체화되었다. 아래서는 이를 검토한다.

### 3. ‘안용복 밀사’설-2: ‘조선 정부의 밀사 안용복’설

#### 1) ‘조선의 밀사’ 파견 배경과 시기의 문제

최영성은 권오엽의 설이 사실일 것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하되, “다만 사료 섭렵과 논증에서 아쉬움이 있다”<sup>17)</sup>고 하고, 기존 사료를 재해석하

15) 권오엽, 2015-b, 앞의 글, 438쪽.

16) 위의 글, 448쪽.

고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자료를 제시하여 ‘안용복 밀사설’<sup>18)</sup>을 뒷받침할 만한 논거를 제시하려 했다. 권오엽은 안용복을 밀사로 파견한 자를 남구만으로 본 반면, 최영성은 남구만과 윤지완의 공조로 보았다. ②의 논지는, 남구만이 윤지완 및 안용복에게서 얻은 자료로 인해 울릉도(독도포함) 문제의 실상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기에 그의 후견인이 되어 안용복을 밀사로 파견한 것인데, 당시는 정파 간의 인식 차이가 커서 공식 사행을 파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쟁을 피하면서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밀사를 파견했다는 것이다.<sup>19)</sup> ②는 밀사 파견의 배경으로 정파 간 인식 차이를 들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밀사 파견이 정쟁과 관련 있다면 소론세력과 남인세력 간 울릉도 쟁계를 둘러싼 의견 차가 관찬 사료나 개인 문집에 보였어야 한다. ②는 남구만이 윤지완에게 보낸 서한을 인용하여 안용복을 밀사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았다. 즉 “남·윤은 남인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비판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쓰시마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였다. 이에 남구만은 밀사 파견을 기획하였던 것 같다.”<sup>20)</sup>라고 했다. 남구만은 1694년 4월 영의정이 되었지만 민암의 옥사를 잘못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임했다가 다시 복직한 시기가 1695년 10월이고, 유집일로부터 안용복이 제공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에야 대일 외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후 남구만이 앞장서고 윤지완이 이를 따르는 형태로 대일 외교를 폈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박세채가 서운

17) 최영성, 2019, “安龍福 제2차 渡日의 성격에 관한 고찰 ‘조선의 密使’ 안용복-,” 『독도연구』 26. 영남대 독도연구소, 90쪽.

18) 최영성은 ‘안용복 밀사설’로 칭했지만, 이 글에서는 ‘안용복 밀사’설로 칭했다.

19) 최영성, 2019, 앞의 글, 91쪽.

20) 최영성, 2019, 앞의 글, 98쪽. 이에 대한 각주에서 「남구만이 류상운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정에서 별도로 일본에 사신을 보내 그 虛實을 살피고자 하는데, (쓰시마번) 너희들은 장차 어떻게 대처하겠는가?”운운한 대목은 밀사 파견과 관련하여 남구만의 의중이 실린 말이라 하겠다.」라고 했지만 출전은 밝히지 않았다.

함을 토로하는 일도 있었다며 박세채의 서한을 1694년 7월 12일로 추정했다.

그렇다면 남구만이 밀사 파견을 계획한 시기는 언제인가? 1694년 7월 이전인가? 1694년 8월 이후인가? 아니면 복직 이후인 1695년 10월 이후인가?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 남인 계열이 실각하고 남구만 등 소론계가 정권을 잡은 시기는 1694년 4월경이지만, 일본 측이 조선 측의 1차 회답서계(1694.2)에 불만을 품고 개작을 요구하는 서계를 보내와 조선 측이 조정에서 의논한 시기는 1694년 8월경이다. 이어 조선 측은 1차 서계에 대한 회답서계를 회수하고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강변한 이여 명의의 서계를 작성했다(1694.9). 따라서 이때는 이미 소론계가 정권을 잡은 이후이므로 울릉도 쟁계를 둘러싸고 정파 간 이견이 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게다가 숙종은 남구만과 이 문제를 의논하기까지 했다.<sup>21)</sup> 개작된 서계가 강경해진 데 불만을 품은 쓰시마번은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左衛門)을 보내 다시 개작을 요구하며 버텼지만 조선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접위관 유집일은 1694년 10월 초에 귀경했다. 10월 말 쓰시마 번주 요시쓰구가 사망했고 그 소식은 11월 중순에 왜관에 전해졌다. 다다 요자에몬은 번주가 사망했음에도 바로 귀국하지 않고 서계의 개작을 요구하며 왜관에 체재하고 있었다.

1695년 초 남구만은 영의정에서 물러났지만 동래에서 안용복을 조사하고 돌아온 접위관 유집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1695년 4월 쓰시마번 형부대보 요시자네는 다다에게 귀국을 명하되 조선 측 답서의 ‘의문 4개조’를 작성하여 동래 부사에게 전하도록 지시했다. 쓰시마번은 1695년 6월 중순 교섭대표를 다다 요자에몬에서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로 바꾸었다. 이어 형부대보 요시자네는 에도로 떠났고 노중에게 교섭 문제를 보고했다. 그러므로 적어도 양국 정부가 울릉도 쟁계를 교섭하는 동안에는 밀사 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남구만이

21)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3, 『竹嶋紀事』 I, 174쪽.

1694년 8월 이후 안용복의 도일을 계획했다거나 안용복의 후견인이 되었다면 관련 사실이 사료에 보였어야 한다. 그런데 1694년에 안용복은 수감 중이었다. 죄수를 밀사로 파견하려 계획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럴 계획이 있었다면 굳이 형기를 채우기를 기다렸다가 도일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②는 『다케시마기사(竹嶋紀事)』를 인용하여, 조선이 돛토리번을 외교 창구로 해서 막부와 직접 통교하려 한다는 소문이 왜관에도 알려져 쓰시마번이 이를 우려하고 있었다고 했다. 『다케시마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 『다케시마기사』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접위관이 철수한다면 거듭 통교의 길도 끊어지게 되니 답신을 수령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듯이, 쓰시마번은 조선 측 서계를 수령해야 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케시마기사』에 “막부와 직접 통교하려 한다는 소문”을 운운했듯이 실제로 조선 정부는 밀사를 보낼 필요 없이 직접 막부와 통교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밀사 파견을 계획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구만은 중신으로서 서계 작성 및 개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는 개작 서계에서 “이번에 온 서계 가운데 竹島를 귀국의 지방이라 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어선이 다시 나가는 것을 금지하려 하였고, 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계를 침범해 와 우리나라 백성을 붙잡아간 잘못은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성신(誠信)의 도리에 흠이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이런 뜻으로 동도(東都)에 전보(轉報)하여, 귀국의 변방 해안 사람들을 거듭 단속하여 울릉도에 오가며 다시 사단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서로 좋게 지내는 의리에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sup>22)</sup>라고 했다. 외교적인 절차에 따라 조선의 뜻을 막부에 전달해줄 것을 쓰시마번에 요구한 것이다. 이런 그가 절차를 무시하

22) 『숙종실록』, 1694년 8월 14일.

고 단독으로 밀사 파견을 계획했을까? 다음에서는 ②가 제시한 제목을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 2) 남구만이 말한 ‘천비전개(賤裨專价)’의 의미

②는 “쓰시마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여 밀사 파견을 계획하였던 것 같다”<sup>23)</sup>고 했는데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남구만이 류상운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의중, 즉 밀사를 파견하려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았다. 그 내용은 “조정에서 별도로 일본에 사신을 보내 그 虛實을 살피고자 하는데, (쓰시마번) 너희들은 장차 어떻게 대처하겠는가?”<sup>24)</sup>고 한 대목이다. 이어 ②는 “남구만이 류상운에게 ‘안용복의 사람 됨은 평범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듯하다. 급할 때 쓸 만한 점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메시지가 간단하지 않다. ‘완급가용(緩急可用)’은, 뒤에 나올 ‘천비전개(賤裨專价)’란 말과 함께 남구만이 안용복을 신임하여 가까이 두었음을 알려주는 단서다.”<sup>25)</sup>라고 했다. 그런데 첫 번째 글은 윤지선이 영부사 남구만에게 자문했던 내용을 숙종에게 아뢴 것으로 1696년 10월 13일자<sup>26)</sup> 『숙종실록』에 보인다. 두 번째 ‘緩急可用’을 운운한 것은 남구만이 유상운에게 답한 내용으로 1696년 10월 5일자 서한에 보인다.<sup>27)</sup> 그러나 두 가지 내용 모두 안용복의 처리에 대한 일을 언급한 것이므로 밀사 파견에 대한 남구만의 의중이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즉 이 내용은 남구만이 “안용복을 신임하여 가까이 두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쓰시마번이 자신들의 기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조선 정부에서 따로 사신을 보낼 것임을 말한 것이다. 즉 안용

23) 최영성, 2019, 앞의 글, 98쪽.

24) 각주 25에서 인용했는데 출전은 밝히지 않았다. 『숙종실록』 1696년 10월 13일 기사에 보인다.

25) 최영성, 2019, 앞의 글, 98쪽.

26) 『숙종실록』 1696년 10월 13일.

27) 『藥泉集』 권31, 「答柳相國 丙子十月五日」.

복의 처리는 쓰시마번의 죄상을 밝힌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안용복에 대한 “신임”이 개재될 여지는 없다.

‘賤裨專价’ 운운은 남구만이 윤지완에게 보낸, 1695년 11월 16일자 서한에 보인다. 그런데 쓰시마번은 1695년 10월 요시자네가 직접 에도로 가서 번의 의사를 막부에 전달하려 했다. 그러므로 ②가 남구만의 11월 서한을 근거로 밀사 파견 계획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②는 “얼핏 보기엔 보통의 편지글 같지만 두 사람이 비밀스런 일을 계획하고 있음이 분명하다.”<sup>28)</sup>라고 했다. ②는 ‘전개(專价: 耑价)’의 의미를 사신, 인편으로 보고, “조·일간의 외교문서에서 ‘전비’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29)</sup>고 했지만, 남구만의 편지에서의 ‘전개’는 단순히 인편을 의미할 뿐 사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천한 제가 특별히 보낸 인편은 도중에 편지가 없어질 우려가 없을 듯하니, 부디 바라건대 이 인편이 돌아올 때에 답서를 보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지만, 이는 오역이다. 올바른 번역은 “천비를 특별히 보냈기에 도중에 편지가 없어질 우려가 없을 듯하니...”가 된다. 아무리 겸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남구만이 동료에게 자신을 ‘천비’로 칭하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천비전개’는 남구만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특별히 심부름꾼을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sup>30)</sup>

그런데 ②는 “‘천비(賤裨)’ ‘전개(專价)’ ‘부침(浮沈)’은 중의적(은유적) 표현이 가능한 말들이다”고 하며, 실제로 편지에서 은어처럼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남구만이 인편 노릇하는 사람을 걱정했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여기서 ‘비(裨)’를 비장(裨將)으로 보면 문맥이 확 달라진다고 했다. 『다케시마고(竹島考)』 등에서 ‘안비장(安裨將)’이라 한 자는 안용복을 가

28) 최영성, 2019, 앞의 글, 105쪽.

29) 위의 글.

30)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제공한 번역이 오역임을 기관을 통해 확인했다(11월 4일).

리킬 수 있으므로 “전개(專价)’를 ‘사신’으로 보면 본고의 논지에 꼭 들어맞는다”<sup>31)</sup>는 것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천비의 ‘비’가 ‘안 비장’ 즉 안용복이 되므로 “안비장을 사신으로 보내니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염려가 없을 듯합니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서한은 모두 윤지완의 건강 및 출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서한의 전체적인 문맥을 무시하고 안용복에 대한 신임 및 밀사로 연결 짓는 것은 너무 뜬금없다. 그럼에도 ②는 “위 서한에서 단순히 ‘인편’(심부름꾼)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천비’나 ‘전개’ 가운데 한 단어만으로도 족하다 굳이 ‘천비전개(賤裨專价)’라 하여 유의어(類義語)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 이면에 은밀한 의미가 숨어 있다. 필자는 이 녀자가 ‘밀사 안용복’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본다.”<sup>32)</sup>고 했다. 그러나 ‘천비’와 ‘전개’는 유의어가 아니다. ‘천비’에게 ‘전개’를 맡긴다는 의미이므로 여기에는 ‘은밀한 의미’가 숨어 있지도 않고, 따라서 이를 밀사 안용복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남구만이 윤지완에게 ‘천비전개’를 운운하며 계획을 세웠다면, 무엇을 계획했다는 것인가? 편지의 앞뒤 맥락으로 보건대, “대감의 말씀 가운데 무한한 우려가 있으시니, 한번 보여 주시기를 우러러 바랍니다.”는 것은 윤지완이 계속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사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결국 ‘賤裨專价 似無浮沈之慮’는 남구만이 보낸 심부름꾼으로 인해 윤지완이 편지를 제대로 받지 못할 염려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는 “남구만이 문인 최석정(崔錫鼎:1646~1715)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 내용 역시 안용복 밀파(密派)와 같은 기밀 사항을 암시하는 것 같다”<sup>33)</sup>고 했지만, 이 역시 근거가 미약하다. 서한에 “보내 주신 두 통의 편지는 잘 보았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미 요상(僚相: 동료 정승)과의

31) 최영성, 2019, 앞의 글, 105-106쪽.

32) 최영성, 2019, 앞의 글, 106쪽.

33) 위의 글.

논하여 결정하였으니 다른 도리가 없었소. 우리의 소재(所在)는 다만 하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어찌 그 사이에 사람의 힘이 깰 수 있겠소?”<sup>34)</sup> 라는 것을 제시했다. ②는 이 편지가 1696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동료 정승 윤지완과 결정을 하다 ‘성공 여부는 하늘에 달렸다’ 등의 말로 미루어 사안의 비밀스러움과 양심적 정치인의 노심초사를 엿볼 수 있다. 당시 안용복이 남구만으로부터 비밀 메시지를 전해 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sup>35)</sup>고 했다. 그러나 서한의 내용은 주로 세금 징수와 양역의 폐단에 관한 것일 뿐 ‘밀사’나 안용복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런 문맥을 무시하고 일부 구절만을 취하여 ‘밀사’설과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다.

『약천집』에는 남구만이 최석정에게 보낸 서한 27편이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안용복을 언급한 것은 한 편에 불과하다.<sup>36)</sup> 이 서한에 남구만이 왜인의 서계 개작 요구에 대하여 “좌상·우상과 예조 판서의 뜻은 저들의 요구를 허락하고자 한다고 하나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소.”라고 답한 내용이 있다. 이는 도리어 남구만이 우상 즉 윤지완과 일을 함께 도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②는 밀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1696년 1월에 귀국하는 역관 편에 보내온 두 통의 구상서에 대하여 조정에서 논의가 분분하고 왕복 서한이 그치지 않았던 정황을 들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왕복서한이 그치지 않다가 일이 드디어 잠잠해졌다”고 하고, 그렇게 된 원인을 밀사 파견으로 인해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1696년 1월 도해금지령 이후에도 서한에서의 사례 및 ‘울릉도’ 언급을 둘러싼 논전은 계속되었다. ②는 “서한이 오고 가다가 잠잠해졌다”는 말은 일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밀사 파견으로 국면이 바뀌었

34) 『藥泉集』 권32, 「答崔汝和」

35) 최영성, 2019, 앞의 글, 106-107쪽.

36) 『藥泉集』 권32, 「答崔汝和」

음을 의미한다.”고 했지만, 이는 밀사 파견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안용복이 다시 도일한 시기는 1696년 5월이고, 논전이 완전히 결착된 시기는 1699년 말이기 때문이다. ②가 인용한 것은 『만기요람』인데<sup>37)</sup> “이로써 왕복하기를 그치지 않다가 일이 마침내 잠잠해졌다”고 한 것은 양국이 도해금지령 이후 서한의 표현을 두고 논전한 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은 ②가 주장하듯이 밀사 파견으로 국면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일본 측도 안용복의 도일이 조선 정부가 관여한 일인지 의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과정을 보면, 1696년 10월 16일 형부대보는 역관을 대면한 자리에서 구술 각서로 에도의 지시를 전하면서 “올 여름 조선인 11인이 배 한 척에 타고 송사가 있다고 하면서 이나바에 건너왔기에,...이것이 조정의 의도로 보낸 것이라면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위라고 생각되므로 사신을 보내 따져야겠지만, 아랫것들의 행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보류했습니다. 거듭 이런 일이 있다면 결코 조선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조정에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임을 말한 바 있다.<sup>38)</sup> 이에 역관은 “조정에 자세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조정에서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쓰시마번은 또 한번 안용복의 송사가 조선 정부의 지시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한 적이 있었다. (관왜가) “지난 가을에 귀국 사람이 정단(呈單)한 일이 있었는데, 조정의 명령에서 나온 것입니까?”라고 동래 부사에게 물었던 것이다. 이에 동래 부사는 “분변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역관을 에도에 보낼 일이지 무엇을 꺼려 어리석은 바닷가 백성을 보내겠습니까?”<sup>39)</sup>라고 답했다. 동래 부사의 답변대로 조선은 역관을 에도에 직접 보

37) 최영성은 『만기요람』을 인용했는데, 『만기요람』은 시간배열 순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만기요람』은 1696년 2차 도일을 언급한 뒤에 남구만이 ‘강토는 조종에서 물려받은 것이니 줄 수 없다’는 말을 기술했는데, 같은 내용이 『속중실록』에서는 1694년 2월 23일자 기사에 보인다.

38)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3, 『竹嶋紀事』 II, 163쪽.

내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용복을 보내겠는가? 양국 간 약조를 무시하고 임무 수행에 대한 검증조차 안 된 안용복이라는 인물을 보낼 만큼 조선 정부가 무모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1696년에 안용복이 정단(呈單)한 사실은 왜관 관수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다. 조선 조정도 안용복이 호키 태수에게 정문(呈文)<sup>40</sup>했지만 관백에게는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sup>41</sup> 안용복의 정문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비변사에서의 진술에서다. 안용복의 진술에 따라 정문한 내용을 추정해보면, “울릉도와 자산도(우산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관백의 서계를 되찾고, 그 과정에서 서계를 빼앗고 위조한 대마번의 죄상을 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속중실록』에는 호키 태수가 안용복에게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했으니,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함부로 침범하거든, 아울러 국서(國書)를 만들고 역관을 정해 보내오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는 전적으로 안용복의 진술에 의거한 내용이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일본 측 기록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속중실록』은 안용복의 진술에 의거하여 쓰시마도주가 관백의 서계를 빼앗고 위조한 죄상을 기술했지만, 『성호사설』<sup>42</sup>은 쓰시마도주가 조선에서 보낸 예물을 중간에서 횡령한 죄상까지 기술했다.

안용복이 울릉도에 많은 배가 함께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39) “若有可辨，送一譯於江戶，顧何所憚，而乃送狂蠢瀟民耶?” (『속중실록』 1697년 2월 14일)

40) 정단과 정문은 엄격히 말하면 다른 의미지만, 『속중실록』과 일본 문헌 등에서는 섞여 나온다.

41) 『속중실록』 1696년 9월 25일.

42)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쌀 1석에 만드시 15두요, 면포 1필은 35척이며, 종이 1권에 20장으로 충수(充數)해 보냈는데, 대마도에서 빼먹고 쌀 1석은 7두, 면포 1필에 20척, 종이는 3권으로 절단하여 에도로 올려보냈으니, 내가 이 사실을 관백(關白)에게 바로 전달하여 그 속인 죄상을 다스리게 하겠소.”(『星湖僮說』 3권 「천지문」 ‘울릉도’)

정치적 배경이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sup>43)</sup> 「겐로쿠각서」에는 “배 13척에 사람은 1척에 9인, 10인, 11인, 12-3인, 15인 정도씩 타고 다케시마까지 갔는데, 사람 수를 물으니 한 번에 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다. 실제로 13척이 울릉도에 갔는지가 불확실할 뿐더러 전부 안용복이 인솔해 간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는 그에게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안용복이 허세를 보이기 위해 과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②는 『화국지(和國志)』에서 “국경에서 귀주의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도망하여 돌아가므로, 뒤쫓아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고 한 것을 일러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왜 2개월을 두류하다가 도일하였는지를 알려주는 단서다. 안용복이 도일한 이유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하겠다.”<sup>44)</sup>라고 했다. 본래 이 내용은 『숙종실록』(1696.9.25)에 보였던 내용이다. 『화국지』는 안용복이 호키 태수와 만나 소장을 운운한 내용을 누락한 대신 위의 내용을 기술했다. 이 내용은 안용복이 호키 태수와 만났을 때 한 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도일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의 논지대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안용복이 일본에 이른 것이라 해도 이것이 ‘밀사’설과 연결되어야 할 필연성도 없다. 안용복 진술의 방점은 자신이 전에 일본에서 받았던, 두 섬을 조선 땅으로 인정해준 서계를 되찾기 위해 다시 온 것임을 밝히는 데 있을 뿐 일본인을 뒤쫓아 온 사실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2개월을 머문 이유는 일본으로 들어가려면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②는 「겐로쿠각서」에서 안용복이 “전(殿: 대장)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다”고 한 대장과 『화국지』에서 “대장의 명령을 받고 감세하기 위해 울릉도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의 ‘대장’이 동래 부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43) 최영성, 2019, 앞의 글, 100쪽.

44) 위의 글, 101쪽.

했다.<sup>45)</sup> 동래 부사와 연계지는 것은 안용복과 관청과의 연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지만, 이 역시 ‘밀사’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또한 ‘전’이 동래부사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전’을 동래 부사로 본다면 안용복의 도일을 중앙 권력의 지시와 연결지는 ①의 논지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당시 어민들은 돈벌이를 위해 울릉도에 몰래 건너간 것이었으므로 어획물에 대한 세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안용복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국가의 허락 하에 어로했음을 일본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②는 “안용복이 일본의 관계 요로(官界要路)에 상소(上疏)와 정문(呈文: 공문발송)을 했음은 조·일 양국 기록이 일치한다. 특히 『죽도고』에서는 ‘…… 그 가운데 1척이 호키국에 소송을 하기 위해 도래했다는 이유를 말했다’(其内ノ壹艘伯耆国へ訴訟ノ爲渡來セルノ由申シ)고 적었다. 도일 목적으로 ‘소송’이라는 제한적 외교 행위를 적시한 것 역시 밀사설에 힘을 실어준다.”<sup>46)</sup>고 했다. 나아가 각주(36)에서 “『원록각서』를 보면, 당시 안용복 일행은 1693년 11월, 제1차 도일 때 일본이 준 물건과 文書(1책)를 내놓았다고 한다. 소송과 관련 있는 증거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상소(上疏)와 정문은 그 의미가 다르다. 또한 “도일 목적으로 ‘소송’이라는 제한적 외교 행위를 적시한 것 역시 밀사설에 힘을 실어준다”고 했지만, 소송하러 온 것이 반드시 외교행위나 밀사와 연결되어야 할 필연성도 없다. 안용복의 행위가 외교행위가 되려면 서계를 지참했어야 하고 역관을 대동했어야 한다. 「겐로쿠각서」에 기술된 안용복의 신분은 ‘통정대부’·이 부분은 다시 검토한다.였으므로 그 자체가 사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②가 각주에서 언급한 “『원록각서』를 보면, 당시 안용복 일행은 1693년 11월, 제1차 도일 때 일본이 준 물건과 文書(1책)를 내놓았다고 한다. 소송과 관련 있는 증거물로 판단된다”고 한 내용은

45) 최영성, 2019, 앞의 글, 101-102쪽.

46) 위의 글, 102쪽

①의 설명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①에 따르면, 『원록각서』에는 (조선인을 조사한 내용을 적은 한 권의 문서 및) 조선인이 제출한 문서를 목록에 적어 지참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①은 목록에 기재된 문서가 대관소의 서간 3건을 포함하여 9건에 이른다고 보았다.<sup>47)</sup> 그런데 ②는 이 부분을 “일본이 준 물건과 文書(1책)”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에서 받은 물건을 써놓은 장부 1책”으로 번역된다. 즉 조선인을 조사한 내용을 적은 한 권의 문서 및 조선인이 제출한 문서 목록을 제출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소장 자체를 제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일러 소송 관련 증거물로 보기는 어렵다.

안용복의 도일 목적이 소송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겐로쿠각서」에 기록된, 5월 21일과 22일의 행적에서다. 오키의 관리는 21일 안용복 일행 중 한 명(이비원=이인성)이 배에서 쓰고 있던 서한이 소송 관련 내용임을 알았다. 관리는 그 대체적인 내용은 보았지만 정서된 내용은 보지 못했다. 안용복과 이비원, 뇌헌과 제자 연습이 22일에 민가에 상륙하여 초안을 다시 정서했는데, 안용복은 정서한 소장을 오키 관리에게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는 “『각서』에는 조선팔도를 그린 8매의 지도가 있었고, 그 중 한 장에는 울릉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것으로 표기되었다. 조선시대에 지도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도 안용복 일행이 예사 민간인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sup>48)</sup>라고 했다. 그러나 관청이 만든 지도를 필사한 지도가 당시 민간에도 많이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민간인도 지도를 소지할 수 있었다.

②는 안용복이 예사 민간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신분은 기록에 따라 다르다. 1693년 안용복이 일본에 피랍되었다가 송환될 때 보내온

47) 권오엽, 2008, “「元祿九年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과 안용복,” 『일본어문학』, 39집, 한국일본어문학회, 427-428쪽.

48) 최영성, 2019, 앞의 글, 102-103쪽.

일본 측 서계에는 “어맹(漁氓)”을 운운했고, 『숙종실록』(1694.2.23)도 어채인(漁探人), 어맹으로 지칭했다. 『성호사설』은 “동래부 전선(戰船)에 예속된 노군(櫓軍)”이라고 했다. 이익이 안용복을 ‘노군’으로 기록한 것은 예조 관원인 아들 이맹휴가 제공한 정보를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1693년의 피랍사건을 기록한 『다케시마고』는 안용복의 요패의 앞면에는 ‘東萊 私奴 用卜 나이 33세 키는 4척 1촌, 面鐵髭暫生疤無 主京居吳忠秋’가, 뒷면에는 ‘庚午 釜山佐自川一里 第十四統三戶’로 기재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안용복이 요패를 은 40목(目)을 내고 받았다는 내용도 기술했다. 그런데 『증보 진사록(增補珍事錄)』에는 가슴<sup>49)</sup>에 찬 찰(札)이라고 했고,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이 찬 찰(札)에는 소인(燒印)이 있다고 적혀 있다. 이 역시 1693년 안용복의 신분이 노군(櫓軍)<sup>50)</sup>이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군병은 요패를 차도록 되어 있고 기술된 내용이 요패 양식<sup>51)</sup>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노라는 신분을 40목에 구입했다는 것도 의심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그가 왜 사노 신분의 요패를 차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안용복의 신분이 2차 도일에서는 바뀌었다. 『숙종실록』(1696.8.29)은 ‘동래인 安龍福’으로 기록했으나, 「겐로쿠각서」는 요패의 앞면에 “通政大夫 安龍福 甲午生, 東萊”로 적혀 있다고 기록했다. 호패는 16세 이상 되는 남자라면 지참해야 하는 것으로 앞면에 성과 이름·나이 및 출생 연도의 간지(干支)를 새기고, 뒷면에는 소속 관청의 낙인(烙印)이 있다. 정3품 이상 당상관은 앞면에 관직을, 후면에 호패 두 글자를

49) ‘腰’의 오기로 보인다.(『增補珍事錄』 번각, 시마네현 웹 다케시마문제연구회 홈페이지)

50) 能櫓軍이 정식 명칭인 듯하다. 임진왜란 이후 군사 확보책으로 천인(賤人)에게도 군역을 부과함으로써 생겨난 양인(良人)과 천인의 혼합 부대로 수군 가운데 배에서 노 젓는 역할을 담당했다.

51) 안쪽에는 성명과 용모를 새기고 겉에는 주소와 관직을 찍어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낙전(烙篆)한다. 통상적으로 호패에는 품계를 기재하지 않는데, 통정대부는 정3품 당상의 품계이다. 동·서반의 관원 및 궁중관원의 2품 이상은 아패(牙牌)를 차고, 3품관 이하 및 삼의사(三醫司)와 잡과(雜科) 합격자는 각패(角牌)를 찬다.<sup>52)</sup> 그런데 안용복은 요찰(腰札)을 차고 있었다. 아패나 각패가 아니었다. 이는 오키에서 차고 있던 요패가 위조품일 가능성을 말해준다. 다만 그가 납속제를 이용하여 신분을 산 것이라면 이는 그에게 그만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신분이 2차 문헌에서는 달라져 있다. 『이나바지(因幡志)』는 조선인 11인의 기명(騎名)을 적되 안용복에 대해서는 ‘三品堂上 臣 安 同知’로 기재했다. 선박에 건 깃발의 걸면에는 ‘朝鬱兩島監稅將 臣 安同知騎’로, 뒷면에는 ‘朝鮮國 安同知 乘舟’로 적혀 있다고 했다. 『다케시마고』도 이를 따라 ‘선장 안동지’ ‘삼품당상 신 안동지’로 기재했으며, 이후 다른 2차 문헌도 대부분 ‘삼품당상 신 안동지’로 기재했다. 『인푸역년 대잡집(因府歷年大雜集)』은 “조선국 사자(使者) 11인”이라고 기록했다. 이는 안용복이 ‘삼품당상’이라며 사신으로 자처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겐로쿠각서」에는 요패에 ‘통정대부’<sup>53)</sup>로 적혀 있다고 했는데, 2차 문헌에서는 왜 ‘삼품 당상’으로 바뀌어 적혀 있을까? 이는 안용복이 오키에서 호키로 들어갈 때 신분을 바꾸었음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안용복이 실제로 칭한 신분이 무엇이든 모두 “예사 민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고위직 신분에 해당한다. 게다가 ‘감세장’이라는 신분도 보인다. 이런 사실은 오히려 ‘밀사’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사신이 품계가 맞지 않는 여러 개의 관직을 칭한다는 것은 의심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그가 ‘밀사’로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고위직 신분을 사칭한 것이라면 귀국 후 사형을

52) 『大典會通』 「戶典」

53) 권오엽은 통정대부가 ‘삼품당상 安同知’와 품계를 같이하며, 1693년에 칭한 裨將과 연계가능한 관명이라고 했다(권오엽, 2015-a, 앞의 글, 220쪽). 그러나 비장은 삼품당상의 품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언도받았다는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국왕의 목인 아래 사칭한 것인데 그런 그에게 사형을 내렸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3) ‘假稱鬱陵子山兩島監稅’

②는 안용복이 ‘가칭 울릉자산 양도감세’했다고 보고, 이 임시 직함은 “일본 측과 접촉하기 위해, 또 외교에서 명분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극소수 인사만이 아는 범위에서 안용복에게 가칭과 임무가 주어졌을 것이다.”<sup>54)</sup>라고 했다. ②는 ‘假稱鬱陵子山兩島監稅’(숙종실록 22년 9월 25일), ‘自稱鬱陵搜捕將’(성호사설), ‘詭稱鬱陵監稅官’(만기요람 외), ‘自稱鬱陵島監稅官’(원중거 화국지)을 소개하고 가칭과 사칭의 차이를 언급, 비밀리에 파견되었으므로 가칭이라 기술했다고 보았다. ②는 가칭, 자칭을 사칭과 구분하여 사기꾼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가칭이든 자칭이든 그가 없는 직함을 칭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안용복이 관직을 사칭했다고 해서 그의 진술 전체가 허위인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외교상 명분을 얻으려 했다면 조선 정부는 도리어 그에게 올바른 관직을 주었어야 했다. ②는 “일부 기록에는 ‘감세장(監稅將)’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에 감세장이란 직책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각주(49)에서 “안용복이 타고 온 뱃전에 달았다는 것발에는 ‘감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숙종실록』 위의 직함 뒤에 나오는 ‘將使人通告’란 문구에서 ‘將’자를 앞으로 붙여 ‘감세장’으로 읽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이 문장의 원문은 “渠不勝憤惋 乘船直向伯耆州 假稱鬱陵子山兩島監稅將 使人通告本島 送人馬迎之...”이다. ②가 ‘감세장’으로 읽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근거가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오역이다.<sup>55)</sup> 이는 ‘鬱陵子山兩島監稅

54) 최영성, 2019, 앞의 글, 111쪽.

55)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제가 분완(憤惋)을 금하지 못하여

將'으로 구두를 띄는 것이 맞다. '將'자를 관명에 붙여 해석하지 않고 “장차 사람을 시켜 알리려 통고하려 하는데 그 섬에서 사람을 보내 맞이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시간의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 이쪽에서 알리기도 전에 먼저 저쪽에서 사람을 보내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용복이 “울릉자산 양도 감세장을 가칭하고 사람을 시켜 본도에 통고하자, (그 쪽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 맞이했다”고 번역하는 것이 문리에 맞다.

실록에는 감세장으로 보이지만 다른 문헌에는 수포장, 감세관으로 되어 있다. 안용복이 감세장'을 칭한 것이 '감세관'을 알고 있었기에 유사 관명을 고안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일본 기록에는 '朝鬱兩島監稅將 臣安同知騎'<sup>56)</sup>로 되어 있다. 이를 일러 ②는 조선에 없는 관직을 안용복이 사칭한 것이므로 외교 명분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칭한 것이라고 했지만, 외교에 임하는 자가 어떻게 관직이 없을 수 있는가? 따라서 이는 외교 명분상의 우위와는 관계가 없고, 안용복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고관을 사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다. ②는 “극소수 인사만이 아는 범위에서 가함을 준 것”이라고 했지만, 상대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선 정부가 정식 직함을 주었어야 교섭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②는 안용복이 사형에서 유배형으로 감형받은 사실에 대하여 “남·윤 등 안용복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이 비변사 재추(宰樞)로 있으면서 안용복의 밀사 활동을 도왔고, 또 사건 처리를 하면서 그의 구명을 위해 나섰음을 시사한다. 안용복의 외교 행위가 비변사 주요 인사와 비밀리에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57)</sup>라고 했다. 그러나 남·윤 등이 안용복의

---

배를 타고 곧장 백기주로 가서 울릉 자산 양도 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장차 사람을 시켜 본도에 통고하려 하는데, 그 섬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어 맞이하므로...(渠不勝憤惋, 乘船直向伯耆州, 假稱鬱陵子山兩島監稅, 將使人通告本島, 送人馬迎之.)”

56) 『竹島考』, 『因幡志』.

밀사 활동을 도와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비변사 재신들이 안용복의 주살을 주저한 이유는 그가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밝힌 공이 있는데 그를 죽인다면 일본인의 기분만 좋게 해줄 뿐 앞으로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불리한 선례가 될 것으로 염려했기 때문이다.

숙종은 안용복의 1차 피랍사건을 처리할 때도 남구만과 의논하여 일을 처리했고 2차 도일 때도 비변사 재신들과 논의했다. 숙종과 남구만, 윤지원 3자만이 비밀리에 논의해야 할 하등의 명분이 없고, 이는 조선의 통치구조 상 불가능하다. 비밀리에 파견한 것이라면 귀국 후의 처리과정도 비밀에 부쳐야 한다. 관찬 사료에는 재신들이 남구만·윤지원과 논의한 내용 및 이를 국왕에게 보고한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남구만과 윤지원이 안용복의 사형에 반대한 이유는 그가 밀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공적을 인정해서였다.

#### 4) 의승 수군과의 제휴

②는 뇌헌이 홍국사 주지로서 의승장을 겸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의승 수군의 주진사(駐進寺)<sup>58)</sup>인 홍국사에는 임진왜란 당시부터 300명가량의 의승 수군 조직이 있었으므로 뇌헌도 바다를 잘 알아 도일 당시 큰 공을 세웠을 것이라고 했다.<sup>59)</sup> 그러나 의승 수군이 있던 사찰의 승려라는 사실이 1696년 도해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뇌헌은 의승 수군이 활약하던 시기와는 다른 시대를 산 인물이다.

「겐로쿠각서」에 따르면, 뇌헌은 1689년 윤3월 18일부의 금오산의 주인장을 지니고 있었으며 1689년 윤3월 20일부의 ‘金烏山 朱印書付’도 지니고 있었다. ②는 이에 대하여 “주인장(朱印狀: しゅいんじょう)”이란

57) 최영성, 2019, 앞의 글, 110쪽.

58) 駐進寺가 맞다.

59) 최영성, 2019, 앞의 글, 112쪽.

일본 에도시대 장군의 직인(朱印)이 찍힌 공문서를 말한다. 뇌헌을 승장에 임명하거나 해상통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sup>60)</sup>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다음 사실을 유추했다. 첫째, 흥국사 의승군은 주로 방답진에 배치되었을 것이고, 둘째, ‘장군’이란 전라좌도수군절도사를, 공문서는 승장 임명장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해상통행권<sup>61)</sup>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서(증명서)는 안용복 일행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sup>62)</sup> 또한 이런 사실에 의거하여 ②는 뇌헌을 ‘장사하는 스님’이라고 한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겐로쿠각서」에 보인 ‘산목’은 산가지가 아닌 ‘점대[筍竹]’인데, 점대는 승려에게 일상 휴대품이나 다름없는 물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63)</sup>

그러나 일본에서 발행된 주인장과 금오산 주인장의 성격이 같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조선 정부가 승려에게 무역을 허가하는 문서를 발급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금오산의 주인장’ 내지 ‘금오산 朱印書付’ 운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자의(字意)대로 붉은 인주로 날인된 문서이거나 사호(寺號)를 날인한, 승려로서의 권위를 나타낼 만한 상징적인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해도 주인 문서마다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도 의아하다. 이 부분은 좀 더 고증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뇌헌의 주인장이 해상통행권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뇌헌은 상승이었을 뿐이므로 그를 승장이나 수군과 연계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겐로쿠각서」에 보인 ‘金烏山の 朱印狀’에 대하여 ②는 이것이 『다케

60) 위의 글, 113쪽.

61) 각주에서 「竹島之書附」에 ‘渡海朱印’ 관련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竹島之書附」에 실린 竹嶋渡海之覺(1722.11)에는 1693년 “竹島 도해에 관련된 주인장(御朱印)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고 했다.

62) 최영성, 2019, 앞의 글, 113쪽.

63) 위의 글, 114쪽.

시마고』에 보인 ‘金烏僧將’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金烏僧將의 장(將)에서 장군을 끌어와 전라좌도수군절도사에 해당시켰다. 그러나 「켄로쿠각서」에 ‘금오승장’은 보이지 않는데도 금오산의 주인장을 ‘금오승장’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인가? ‘금오승장 석씨’라는 글자가 처음 보인 것은 『이나바지』이다. 『다케시마고』는 이를 따른 것이다. ②가 논한 대로라면 승장은 뇌헌이고 전라좌도수군절도사에도 해당된다. 이는 ‘뇌헌=승장=전라좌도수군절도사’라는 논리인데, 무리한 해석이다.

오니시 도시테루는 뇌헌이 지참한 주인장을 도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주인장 즉 부적이라고 보았다고 한다.<sup>64)</sup> 그러나 「켄로쿠각서」에서의 ‘주인장’에는 각각 날짜가 적혀 있으므로 이를 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적에는 날짜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승려가 무속신앙에 사용하는 부적을 지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②는 ‘산목’을 ‘점대’로 보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대부분 주판으로 보았고<sup>65)</sup> 주판을 지닌 사실을 상승(商僧)과 연결지었다.<sup>66)</sup> 산목은 예로부터 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도구였는데 그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지만 점차 주판으로 발전했다. 뇌헌이 상승임은 안용복이 밝힌 바이고, 안용복은 출선 준비를 하고 있던 뇌헌을 경제적 이익으로 유인하여 울릉도로 데리고 갔다. 『승정원일기』(1696.9.27)에서 안용복과 이인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바닷가의 어리석은 백성(海曲愚氓)”으로 표현한 것도 뇌헌 등을 승군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②는 뇌헌과 함께 간 4명의 승려를 전라좌수영에 속한 부하승려로 보았다. 그러나 뇌헌을 승장으로 기록한 문헌이 1차 사료가 아니므로 부하승려를 전라좌수영 및 의승수군과 연계짓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록과 「켄로쿠각서」에 기재된 4명의 승려는 한자는 약간 다르지만 발

64) 권오엽·오니시 도시테루, 앞의 책, 127쪽.

65) 위의 책; 권혁성, 2012, 앞의 글,

66) 권혁성, 2012, 앞의 글, 381쪽.

음이 같으므로(丹責, 丹冊, 連習, 衍習) 발음을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연습’이 뇌헌의 제자로 되어 있다. 『이나바지』에 ‘석씨 대술승 책화주(責化主)’로 적었을 때의 ‘責’은 실록에 보인 ‘丹責’의 ‘責’자와 같으므로 ‘丹責’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올바른 이름은 1차 사료에 의거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나바지』를 비롯한 2차 문헌<sup>67)</sup> 어디에도 부하승려를 승군으로 본 경우가 없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②는 ‘영취산 흥국사 중수사적비’에 뇌헌 관련 기록이 있다고 했지만<sup>68)</sup>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sup>69)</sup> ②는 흥국사 사적비에서 ‘判事 雷軒’을 쓰되 事자를 초서로 쓴 것은 정자로 쓴 사람(이판승)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으나,<sup>70)</sup> 이 역시 근거가 없다. ‘판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모두에 해당시켰다가 다시 세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시키고 있어 그 의미가 애매하다. ‘憲 判事’라는 직함이 보인 것은 『이나바지』와 『다케시마고』, 『인푸역년 대잡집』 등의 2차 문헌에서다. 이런 직함을 최초로 기록한 『이나바지』는 아오야의 선박업자 차야 헤이스케(茶屋兵助)가 보관하고 있던 기록과 배 표식을 옮겨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분은 안용복 일행이 이나바로 들어가면서 칭한 것이다. 안용복이 자신을 ‘安 同知’로 칭한 것은 역관의 직함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관의 직함에는 동지와 판사가 보이기 때문이다. 뇌헌이 자신을 ‘憲 判事’로 칭한 것은 흥국사의 신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케시마기사』에는 1694년 9월 조선 조정이 김 병사에게 안 동지를 딸려 울릉도로 보냈다<sup>71)</sup>는 내용이 역관을 통해 재판에게 전해진 사실이 실려 있다. 여기서 김 병사는 장한상을, 안 동지는 역관 안신휘를 가리킨다. 안용복이 ‘동지’ 직함을 알게 된 것은 1693년 겨울 쓰시마번과 왜관에 감금되어 있었을 때인

67) 문헌에 따라 化主와 化上으로 기술한 차이가 있다.

68) 최영성, 2019, 앞의 글, 111쪽.

69) 정확한 제목은 「興國寺重修事蹟碑」이다(崔昌大, 『昆侖集』, 『한국문집총간』).

70) 최영성, 2019, 앞의 글, 113쪽의 각주 63.

71)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竹嶋紀事』 I, 192쪽.

듯하며, 이로 인해 2차 도일에서 ‘동지’를 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밀사’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밀사가 지역에 따라 직함을 바꿨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고 역관의 직함을 차용했다는 것도 사신의 직분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②는 뇌헌이 ‘금오승장’의 신분에 ‘판사’라는 직함을 띠고 일본에 건너 갔다고 했다.<sup>72)</sup> 승려가 외교에 참여한 사례로 인종 때 의승 독보(獨步)가 명나라에 밀사로 파견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독보는 간사(間使)로서 특정임무를 띠고 가서 상대국으로부터 자문(咨文)을 받아왔으므로<sup>73)</sup> 가기 전에 조정의 공문을 지니고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뇌헌은 사료에서 외교와 관련하여 어떤 언급도 없다. ②의 논리대로라면 뇌헌도 밀사로 파견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밀사가 뇌헌이라는 것인지, 안용복이라는 것인지가 애매해진다. 게다가 이런 논리는 남구만과 윤지완에 의해 파견된 밀사가 안용복이었다는 자신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②는 이인성의 신분을 ‘進士軍官’으로 칭했지만, 『숙종실록』에는 ‘평산포인 李仁成’, 「젠로쿠각서」에는 ‘李裨元’으로 보인다. ‘裨元’이 2차 문헌에서는 ‘裨將’으로 보인다. 『이나바지』에는 이비장과 이진사가 함께 보였고, 『증보 진사록』과 『인푸역년 대잡집』, 『다케시마고』에는 ‘진사군관’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관 ‘진사’와 무관 ‘군관’은 함께 쓸 수 없는 직책이다. 이인성이 시에서 자신을 ‘朝鮮 花田李進士書’라고 한 것에 대하여 권혁성<sup>74)</sup>은 ‘화전’을 호로, 비장과 진사군관을 신분으로 보았으나 이 역시 『이나바지』에 의거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②는 안용복·이인성 이외의 관련자들은 단순 종범으로 에둘러 규정하고 이내 석방했다고 했으나,<sup>75)</sup> 수범으로 조처된 자는 안용복뿐이고 이인성을 비롯한 나머지는 종범으로 처리되었다.<sup>76)</sup> 권혁성은 남해조직의

72) 최영성, 2019, 앞의 글, 115쪽.

73) 『인조실록』 19년 8월 25일 외

74) 권혁성·권오엽, 2015, 앞의 글, 226-227쪽.

75) 최영성, 2019, 앞의 글, 123쪽.

인술자 이인성이 일행의 대표자이고 실질적인 대표일 것으로 여겼다. 그는 “이인성을 11인의 대표로 보는 大西俊輝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sup>77)</sup>고 했다. 그러나 수범이 아닌 중범을 일러 11인의 대표라고 하는 것도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 5) 事後處理를 통해 본 밀사 문제

②는 안용복의 도일로 야기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영의정 유상운이 남구만과 윤지완에게 처리를 넘겼으며 숙종이 윤허한 것은 “숙종 역시 밀사 파견에 무관한 처지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며,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숙종과 남·윤이 끝까지 비밀을 털어놓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했다고 생각한다”<sup>78)</sup>고 했다. 이는 남구만이 단독으로 밀사를 파견했다고 한 ①의 논리와 배치된다. 안용복의 2차 도일이 문제가 된 1696년 9월, 영의정 유상운과 좌의정 윤지선, 그 밖의 대신들은 모두 안용복의 처형을 주장했고 우의정 서문중은 신중론을 폈다. 유상운은 숙종의 윤허를 얻어 울릉도 정계 초기에 서계 작성과 개작에 개입했던 남구만과 윤지완에게 자문했다. 윤지완은 일본 측이 서계의 ‘울릉’ 두 글자의 삭제를 요청하여 남구만이 이를 들어주려 했을 때 반대했던 인물이다.<sup>79)</sup> 윤지선도 윤지완에게서 들은 일을 조정에서 언급했다. 윤지완은 “안용복은 사사로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람되게 나라의 일을 말했는데, 그가 조정에서 시킨 것처럼 했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니, 그 죄를 논하면 의심할 바 없이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윤지완이 위와 같이 말했다면, ‘밀사’설이 성립할 여지는 더더욱 없다. 그가 밀사 파견에

76) “尙運曰李仁成製疏，其罪亦重，而若論首從，仁成爲從，宜斷以次律。其餘只爲漁採而去，當置而不論矣。上可之” 『숙종실록』 1696년 9월 27일.

77) 권혁성·권오엽, 2015, 앞의 글, 228쪽. 230쪽.

78) 최영성, 2019, 앞의 글, 116-117쪽.

79) 『숙종실록』 1694년 8월 14일.

개입한 자라면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지완이 안용복의 처형을 반대한 이유는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지 자신이 개입된 일이어서가 아니었다.

남구만 역시 안용복을 처단하는 것이 하책(下策)이라고 보았다. 그는 “안용복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다시 가서 사단을 일으킨 죄는 진실로 주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마도의 왜인이 울릉도를 竹島라고 거짓으로 칭하고, 예도의 명이라고 거짓으로 핑계대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울릉도 왕래를 금지시키려고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정상이 이제 안용복 때문에 죄다 드러났다”고 하여 안용복의 공적이 적지 않음을 들었다. 그럼에도 좌의정 윤지선은 남구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안용복의 처형을 주장했다. 윤지선은 윤지완의 형이다. ‘안용복 밀사’설이 사실이라면 동생 윤지완이 개입된 일을 형 윤지선이 전혀 몰랐을까? 서로 다른 정파도 아닌데 외교문제에서까지 대립하고 동생이 형에게 비밀로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영부사 남구만이 보기에 안용복의 처치나 쓰시마에 지급하는 물품을 삭감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 아니었고, 쓰시마가 속인 정상을 따지는 것이 급무였다. 그래서 쓰시마가 속인 정상을 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또 글을 보내 「너희가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모든 일에 이렇게 신의가 없다. 안용복은 풍랑에 표류한 잔약한 백성으로서 국서(國書) 없이 직접 정문(正文)한 것은 진실로 믿을 수 없다. 조정에서 따로 사신을 일본으로 보내 그 허실을 살피고자 한다. 너희는 장차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고 물으면, 대마도의 왜인이 반드시 크게 두려워 할 것입니다.”<sup>80)</sup>라고 했던 것이다. 이는 남구만이 생각하는 상책이었다. 남구만이 밀사 파견에 개입했다면, 이런 발언<sup>81)</sup>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앞에서

80) 『숙종실록』 1696년 10월 13일.

81) 최영성은 위 문장을 일러 “밀사 파견과 관련하여 남구만의 의중이 실린 말이 라 하겠다.”(98쪽 각주 25)고 했다. 그러나 일본에 사신을 보낸다는 것은 정식

언급했듯이 조선 정부는 ‘일본’ 즉 에도막부에 직접 사신을 보내 쓰시마의 행태를 알릴 수 있었다. 외교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민간인을 보낼 필요가 없고, 만일 그랬다면 이는 상대국을 무시한 외교이기도 하다. 반대로 조선 정부가 일본이 사신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무조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역시 상대국을 무시한 발상이다. 국서의 효력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남구만이 국서나 서계 없이 밀사를 보냈을 가능성이 희박함은 남구만 자신의 언급으로 드러났다.

## 6) 후세의 평가와 밀사 문제

②는 『화국지』를 인용하여, 그 안의 “나랏일 담당하는 것”, “사신의 배”, “한 번의 사행” 등의 말을 일러 안용복이 사실상 사신이었음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剛柔自濟’, ‘智勇交周’는 장군의 풍모를 나타내는 말이며, 이를 소론 정권의 대일 외교 슬로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sup>82)</sup> ②는 1차 사료가 아닌 『화국지』를 인용했으며 거기 기술된 내용을 모두 ‘안용복 밀사’설로 엮기 위해 건강부회하고 있다. ‘使舟如馬’를 “사신의 배가 말이 달리듯 하였다”라고 번역했으나, 이는 배 부리기를 말 부리듯 빠르게 했다는 의미이고, ‘張國威於一行’을 “한 번의 사행에서 국위를 떨쳤으니”로 번역했으나, 이는 안용복의 도일로 인해 나라의 위세가 떨쳐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②는 『다케시마고』 목록에 보인 ‘朝鮮国通使舶于本藩’을 일러 조선국 사신의 배가 돛토리번으로 온 것으로 해석했지만<sup>83)</sup> 관련된 본문을 보면

---

사신을 의미하지 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록에서 ‘쓰시마’와 ‘일본’으로 구분하여 기술한 것은 통교 매개자와 에도막부 즉 일본 정부를 구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82) 최영성, 2019, 앞의 글, 120쪽.

83) 최영성, 2019, 앞의 글, 122-123쪽.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 1696년 유학자 쓰지 반안이 아오야(靑屋)로 가서 안용복과 이인성과 대담해보니, 다케시마(울릉도)의 일로 사신을 보내온 것인지는 불분명하게 끝났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케시마고』는 “『이나바지』에 기록된 것을 보니 앞뒤가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인용할 만한 것은 못 된다”고 했다.<sup>84)</sup> 『다케시마고』의 저자가 『이나바지』를 참고했으면서도 그 기록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다. 돗토리번의 공식 기록에서도 안용복을 사신으로 인정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안용복이 돗토리번에 들어온 이후의 상황도 일본 측이 안용복을 사신으로 보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돗토리번은 안용복 일행이 정회소에 있는 동안에는 잠시 사신 대우를 해주었으나 아오야로 보낸 뒤에는 감시선까지 붙였다가 다시 고야마라는 호수 안의 아오시마(靑島)라는 임시 거처로 옮겼다. 돗토리번은 안용복이 “몇 년 전에 竹島에서 연행해 와서 나가사키로 보냈던 안비찬”<sup>85)</sup>과 같은 자임을 막부에 보고했다. 막부는 이들을 나가사키로 보내 조사받게 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바로 돌려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쓰시마번은 안용복이 쓰시마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돗토리번에 소송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돗토리번과 공조하여 이들의 추방을 건의했고, 막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일본 측이 안용복 일행을 사신으로 인정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용복이 이나바에 도착하여 소송을 하고 싶다는 제안은 처음부터 돗토리번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정황을 일러 안용복이 사신으로 대접받았다거나 공문을 막부에 접수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②는 일본 측이 안용복 일행을 외교사절로 대접했고, 문헌에 “분명히 ‘사절’로 적었다”고 했다. 그 증거로 “아마도 그 섬(울릉도)에 매년 풍흉을 검사하기 위해 보낸 관인(官人)에게 호키주 사절을 겸임하게 했을 것

84) 『竹島考』

85)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3, 『竹嶋紀事』II, 102쪽.

이다”<sup>86</sup>)라고 한 일본 사료를 제시했다.<sup>87</sup>) 그러나 위 문장을 사신으로 파악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케시마고』의 저자는 “다케시마 일 때문에 사박(使舶)을 보내온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은 상태로 끝났다고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무리한 해석의 예를 들면, ②는 박세채가 남구만에게 보낸 서간에서 “동래부 일의 전말을 알려주시었고 아울러 접위관이 보내온 개인 서한까지도 내려주셔서 더욱 절실하게 감사드립니다. 비록 (동래부사의) 장본(狀本)은 보지 않았으나, 안복(안용복)이 한번 이바지함으로써 저들(쓰시마번)의 손발이 모두 드러났으니...”<sup>88</sup>)라고 한 내용을 인용했다. 여기서 접위관의 서신이란 1694년 8월 유집일이 동래로 내려가 안용복을 심문한 뒤 남구만에게 보낸 서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안용복이 한번 이바지했다”<sup>89</sup>)고 한 것은 ‘안용복의 공술’을 의미한다. 즉 ‘安福一供’은 안용복이 쓰시마번의 속임수를 공술하여 그들의 계략이 다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이를 “안용복이 한번 이바지했다”는 것으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안용복 밀사’설은 두 연구자에 의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①의 논지는 남구만이 신 외교노선의 구축을 기획하여 조정의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안용복에게 소송 임무를 맡겨 실행하게 했고, 안용복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적 권력의 비호를 받아

86) 권오엽 편주, 2011, 『岡嶋正義古文書』, 선인, 340쪽.

87) 최영성, 2019, 앞의 글, 91쪽.

88) 위의 글, 98쪽.

89) “東萊事, 乃蒙委示曲折, 兼賚接慰私書, 尤切感激. 雖亦不見狀本, 而安福一供, 彼之手足俱露, 此後似無可憂之端矣” (『南溪集』 권9, 「答南相國-九月四日」).

도일했다는 것이다. 밀사 파건의 목적은 쓰시마번의 비리를 막부에 알리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안용복이 돗토리번을 통해 문서를 제출했으나 쓰시마번이 막부를 움직여 결국 의도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②의 논지는 남구만과 윤지완이 정쟁을 피하고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안용복을 후원하여 밀사로 파견하는 데 공조했다는 것이다. 속중은 밀사 파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개입된 것으로 보았다. ②는 ①의 설이 사실이지만 논증에서 아쉬움이 있음을 보완하기 위해 양국의 사료와 문헌을 활용하여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논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①과 ②가 제시한 사료 해석은 자의적이어서 전체의 맥락과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모든 글은 맥락이 있게 마련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부 구절이나 단어를 ‘안용복 밀사’설과 무리하게 엮으려 한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모든 논증과정이 ‘안용복 밀사’설을 전제로 하여 꺾 맞춰져 있다. “남·윤 등은 쓰시마번의 잘못된 행태를 막부에 직접 알려 바로잡도록 하는 전략을 썼다”<sup>90)</sup>고 하고, 남구만이 “소리는 없고 결과는 확실하게 내는” 국방정책을 표방한 것이 대일 외교 및 안용복 밀사설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91)</sup>고 했지만, 안용복이 쓰시마번의 행태를 막부에 직접 알렸음을 보여주는 1차 사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두 사람의 국정철학과 ‘안용복 밀사’설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엿볼 만한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안용복 밀사’설은 안용복의 도일을 상식선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물론 안용복의 2차 도일에는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밀사설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파견 목적과 계획, 임무 수행을 위한 전략과 능력, 일본 측의 대응 등에 관한 구상 및 그 실행과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안용복 밀

90) 최영성, 2019, 앞의 글, 95쪽.

91) 위의 글, 96쪽.

사설은 파견의 목적은 물론이고 파견 계획을 세운 시점도 분명하지 않다. 남구만 혹은 남구만과 윤지완이 숙종의 내밀한 승인 아래 다른 대신과의 합의 없이 일을 추진했다는 설정도 조선의 통치구조로 볼 때 불가능하다. 더구나 양국 간 교섭이 일본 측이 조선의 울릉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조선 측이 굳이 안용복을 밀사로 파견할 이치가 없다. 안용복의 수행 능력을 보자면, 오키에서는 일본어를 구사하다가 이나바로 들어간 뒤로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고되었는데<sup>92)</sup> 통정대부 안용복이 밀사였다면 그는 서계를 지참하고 역관을 대동했어야 하고 처음부터 일본어를 구사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오키에서는 통역을 했고 이나바로 들어갈 때는 역관의 직함 ‘안 동지’를 자처했다. dots토리번은 그가 몇 년 전에 왔던 인물임도 파악했다. 그런 그가 밀사로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안용복 밀사’설은 밀사 파견의 목적이 쓰시마번의 비리를 막부에 고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전자가 목적이었다면 남구만의 말대로 국서를 지참한 사신이 직접 막부로 가서 알리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안용복이 일본에서의 행태를 비변사에서 진술한 부분에서는 영토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밀사 파견의 목적이 영유권 주장에 있었다면, 조선 정부가 서계 왕복을 통해 울릉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이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나아가 조선 정부가 안용복을 밀사로 보낸 것이었다면 임무를 완수한 뒤에는 그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유배형으로 감형되었다. 도리어 지중추부사 신여철은 안용복의 죄가 사죄(死罪)에 해당되는 이유가 국사(國使)를 칭하고 타국에 문서를 함부로 올렸다는 데서 찾았다.<sup>93)</sup> 안용복이 밀사였다면 이런

92) dots토리번은 쓰시마번 관리에게 안용복이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전했으므로 막부에만 그렇게 보고한 듯하다.

발언은 나오기 힘들다. 극히 일부 대신만이 밀사 파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후 처리도 극비리에 진행되었어야 하지만, 실록에는 국왕과 대신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처리한 과정을 보여준다.

일본 측 기록에는 안용복이 울릉도를 거쳐 오키에 들어오기까지의 행적, 호키와 이나바, 돗토리성하에 들어오기까지의 행적 및 상부와 막부에 보고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일본 측이 안용복을 사신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를 섬에 가두고 냉대하다가 돌려보낸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 측으로서는 쓰시마번을 통하지 않은 비공식 사절인데다 서계도 지니지 않은 자를 사신으로 받아들였을 리도 없다. 일본의 공식 문서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용복 밀사’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남구만과 윤지완의 서한이나 실록의 일부 구절에서 밀사의 단서를 끄집어내지만, 정작 필요한 근거는 안용복 일행을 사신으로 시종 일관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일본 측의 1차 사료이다. ‘안용복 밀사’설은 숙종이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질적인 주도자는 누구였는지, 두 대신은 과연 공조했는지, 추진과정과 결과는 어떠한지 등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는 하나의 가설로도 성립하기 어렵다.

한편 ‘안용복 밀사’설은 사료 활용의 측면에서도 1차 사료보다 2차 자료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1차 사료는 『숙종실록』과 「겐로쿠각서」에 불과하고 대신의 문집 일부가 덧붙여져 있을 뿐이고, 『화국지』와 『다케시마고』 같은 2차 문헌을 주로 이용하여 논지를 전개했다. 그러나 『다케시마고』는 『이나바지』를 인용한 것인데, 『다케시마고』의 저자조차 『이나바지』를 신뢰하지 않았다. 독도 연구에서 사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심화를 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천착하여 단장취의(斷章取義)한다면 이는 도리어 영유권 강화에 역행하고, 일본 측에 비판의 빌미만 제공할 우려가 있다.<sup>94)</sup>

93) 『승정원일기』 1696년 10월 13일.

94) 이 글의 초고가 완성될 즈음 시모조 마사오가 최영성의 글에 대해 반론한 것

【참고문헌】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藥泉集』(남구만), 『南溪集』(박세채), 『星湖僿說』(이익), 『和國志』(원중거)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1696)

『竹嶋之書附』

『竹嶋紀事』

『因幡志』

『竹島考』

『增補珎事錄』

『因府歷年大雜集』

권오엽·오니시 토시테루(大西俊輝) 역주, 2009, 『元祿覺書』, 제이앤씨.

유미림, 2015,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권오엽, 2008, “「元祿九年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과 안용복,” 『일본어문학』, 39집, 한국일본어문화회.

권오엽 편주, 2011, 『岡嶋正義古文書』, 선인.

권정, 2011-a, “독도에 관한 일본 고문서 연구-『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죽도도해 유래기발서공)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38, 동아시아일본학회.

권정, 2011-b, “『숙종실록』기록으로 본 안용복 -안용복 진술의 타당성에 관해-,” 『일본언어문화』 19,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권정, 2011-c,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의 배후 -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일본어문학』 55, 한국일본어문화회.

---

이 있음을 알았다. 시모조는 최영성의 논고가 통정대부 안용복을 밀사로 규정  
한 권오엽의 논고를 답습한 것이라고 보고, 안용복이 자칭한 통정대부 호패는  
위조라고 보았다. 호패에는 통정대부라는 작위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정대부라는 관직에 의거하여 밀사로 보는 두 사람의 논의는  
허위의 역사를 날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의를 단순화한 감은 있지만, 일  
부 타당한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영성 씨의 논고 「안용복 제2차 도  
일의 성격에 관한 고찰-조선의 밀사 안용복-」 비판, 웹다케시마문제연구소,  
실사구시 제59회, 9월 10일)

- 권혁성, 2012, “순천승 雷憲의 일본도해 : 호국승으로서의 뇌현,” 『일어일문학』 55, 대한일어일문학회.
- 권오엽, 2015-a, “안용복의 호패,” 『일본문화학보』 64집, 한국일본문화학회.
- 권오엽, 2015-b, “남구만의 밀사 안용복,” 『일본어문학』 65, 한국일본어문학회.
- 권혁성·권오엽, 2015, “花田 李進士와 獨島,”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는 문집』, 한국일본어문학회, 45회 국제학술대회.
- 윤재환, 2016, “약천 남구만이 바라본 안용복의 의미,” 『동방한문학』 제69집, 동방한문학회.
- 최영성, 2019, “安龍福 제2차 渡日의 성격에 관한 고찰 -‘조선의 密使’ 안용복-,” 『독도연구』 26. 영남대 독도연구소.

<Abstract>

## **The Problem of the Hypothesis about Ahn Yong-bok Emissary**

**Yoo, Mi-Rim**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hypothesis about Ahn Yong-bok emissary. The hypothesis about Ahn Yong-bok emissary is that in 1696, Ahn Yong-bok went to Japan to receive a secret order from a powerful man and perform a special mission. A hypothesis about Ahn Yong-bok emissary is divided into the view that Nam Gu-man sent Ahn Yong-bok to emissaries (①) and that Nam Gu-man and Yoon Ji-wan cooperated (②). The main argument of ①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ent Ahn Yong-bok to Tottori-han to accuse of corruption in order to open a new diplomatic route through a line other than Tsushima-han, but was not reported to Edo Shogunate due to Tsushima-han's obstruction.

The main point of ② was that the sentiment of Ahn Yong-bok was escorted to solve diplomatic issues with Japan while avoiding political conflict because it was difficult to officially send resignations due to the large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political factions in Korea. However, this claim is not clear. First, it is not clear what i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political factions. Second, it is not clear what is the background of dispatching emissary, and when is Nam Gu-man planning to send emissary. Third, it is not clear how the king is involved in this matter. Finally, it is not clear how the Japanese accepted emissaries. Joseon government could send an envoy directly to inform the Edo Shogunate of the behavior of

Tsushima-han by not sending emissaries.

However, the justification for why Ahn Yong-bok should have sent a questionable question is not revealed in the hypothesis of emissary. A hypothesis about emissary used personal citations or secondary literature in the citation of historical sources, and some parts of the verses were overly woven with hypothesis about emissary.

**Key words:** emissary, Ahn Yong-bok, Nam Gu-man, Noiheon, Tax inspector

이 논문은 2019년 11월 2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거문도인의 독도 조업\*

- 김윤삼 · 박운학의 증언을 중심으로 -

정 태 상\*\*

### 〈목 차〉

1. 서론
2. 독도 도항 시기
3. 독도 도항 방법
4. 독도의 모습
5. 독도 도항의 목적과 어획물
6. 맺음말

### 〈국문초록〉

거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독도에서 물개 잡이를 했으나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거기에도 1900년 조선 조정의 금지령과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로 울릉도에서 배를 못 만들게 되자, 거문도인들의 독도 도항의 역사는 단절되어버렸다.

한동안 단절됐던 독도 도항의 역사는 1960년대 김윤삼 박운학 두 거문도 노인의 언론 사 인터뷰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거문도인들이 독도에까지 과연 갔는지, 독도에 가서는 무엇을 했는지는 인터뷰 기사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삼과 박운학은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독도에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러일전쟁(1904년) 직전의 당시 시대 상황과 모순됨이 없이 일치한다. 또한, 독도에 가서는 물개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18-기획연구-2)

\*\* 독도재단 이사

잡고 미역·전복을 채취했다고 증언했는데, 물개기름과 해구신은 해상교역활동을 하던 거문도인들에게는 고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거문도인들이 본 독도 모습은 '큰 섬 두 개와 작은 섬 여러 개'였으며, '큰섬 두개 사이에 뗏목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는 증언은 실제 모습과 일치하여 신뢰성을 더한다. 독도에 나무가 있다는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으며, 독도 연구자들조차도 독도에 나무가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도, 거문도인 박운학은 독도의 바위틈에 자란 나무를 꺾어서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 때 못으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독도에 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독도 바위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거문도인들에게 울릉도는 보물섬, 독도는 조상 전래의 어장이었다. 울릉도개척령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주역은 거문도인이었다. 특히 거문도인들이 울릉도개척령 이후에 독도에서 조업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지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造船)과 미역 채취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납벌에 대항해서 선봉에서 싸운 것도 거문도인들이었다.

거문도인들의 일본인 벌목공과의 잦은 충돌은 조선중앙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1899년 황성신문의 '울릉도 사황' 보도와,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주제어:** 울릉도, 독도, 거문도, 물개, 다케시마

## 1. 서론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를 잇는 항로의 중간 해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로서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 각축장이 되기도 했다. 고도, 서도, 동도의 3개 섬으로 되어 있어 오랫동안 흥양현(興陽縣)의 '삼도'로 불리었는데,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해 거문도를 찾은 정여창이 거문도인의 학식이 뛰어난 것에 감동하여 거문도(巨文島)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거문도에는 인구에 비해 땅이 좁고 척박하여 대부분 수산업에 종사했으며, 해상 항로의 길목에 위치하여, 오래전부터 원거리 항해와 해상교역 활동을 해왔다.

1882년 울릉도개척령이후 울릉도 거주민은 그 종사 직업과 출신지역 면에서 이원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토 내륙으로부터의 이주민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오랫동안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어 온 거문도인들은 조선(造船)과 미역 등 해조류 채취를 주로 해왔다.

종전에 국내학계에서는 울릉도개척령이후 농업 이주민의 역할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거문도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김수희는 거문도인 김윤삼옹의 울릉도 독도에 관한 증언을 게재한 민국일보를 학계에 공개하고, 거문도인의 뱃노래 가사에도 울릉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으며,<sup>1)</sup> 김윤배는 거문도 현지답사를 통해 거문도인의 울릉도 도항 근거를 찾고 당시의 항해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sup>2)</sup> 또한, 김기주는 전라도인의 울릉도 도항과 배 건조에 관한 역사적인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했다.<sup>3)</sup>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거문도인의 울릉도 도항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독도 도항에 관한 분명한 연구가 부족한 점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선행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바탕을 두고, 그동안 총 6차례의 거문도 현지답사 결과를 정리하여 거문도인들의 독도 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직접 독도에 가서 조업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거문도인 김윤삼·박운학 두 노옹(老翁)의 기록으로 남겨진 증언 내용을, 새로이 조선, 일본의 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함으로써, 1905년 이전 오래전부터 거문도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 
- 1) 김수희(2011),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韓日關係史研究』제38집, 경인문화사, pp.197-229.; 김수희(2011),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 이케우치 사토시의 '석도' 논의를 중심으로, 『獨島研究』제10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171-200.
  - 2) 김윤배(2013), 「조선시대 전라지역민들의 울릉도 독도 항해와 경로」, 『독도학회』, pp.11-21
  - 3) 김기주(2012),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울릉도·독도 개척과 전라도인의 활동」, 『大丘史學』제109집, 大丘史學會, pp.71-122.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학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sup>4)</sup> 또한 ‘19세기 말 이전의 독도는 조선인의 인식과 관심 너머에 존재하는 상상의 바위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sup>5)</sup> 조선은 ‘1800년부터 80년간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sup>6)</sup> 거문도인의 독도 도항 관한 검증을 통해 이러한 일본 측에 치우친 주장들의 타당성도 아울러 검증될 것이다.

## 2. 독도 도항 시기

### 1) 거문도 일대 호남남해안 거주민들의 울릉도, 독도 도항

#### (1) 울릉도, 독도 도항의 기원

거문도인이 울릉도를 거쳐 독도에 까지 갔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근거는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이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납치되었을 때 진술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sup>7)</sup> 일본의 『죽도기사』에 의하면 안용복과 박어둔은 대마도 관리의 조사에 응하여, 3척의 배가 울

4) “당시 한국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편입에 대해 항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도 일본의 편입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후에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공허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김병열, 노영구, 이상근(2009. 12), 『독도 연구 60년 평가와 향후 연구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8.)

5) 배성준(2005.6), 「'독도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선을 위하여」, 『문화과학』42, 문화과학사, p201.

6)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80년이 넘도록 울릉도 등지에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다.”(호사카 유지, 『대한민국 독도』,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2010, 성안당, p16.)

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편(2018), 『울릉도·독도 관련 거문도 자료. 1』, 선인, p13.

릉도에서 조업하였는데 그 중 한 척이 전라도 순천 배라고 진술했다.<sup>8)</sup>

거문도에서 멀지않은 순천 일대의 거주민이 독도에 까지 갔다는 보다 분명한 근거는, 안용복 납치 3년 후 자발적으로 도일(渡日)한 안용복과 ‘순천승’ 5명 등 일행 11명이 강원도 양양에서 체포되어 조선조정에서 신문을 받은 사실이다. 안용복의 2차 도일 때는 전라도 남해안 여수 일대의 거주민들이 대거 참여했다. 여수 영취산 흥국사의 승려 5명과 순천 낙안인 1명, 순천에서 가까운 남해인 1명 등 7명이 울릉도와 독도를 경유하여, 일본에서 두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귀국한 것이다.<sup>9)</sup>

19세기말 이전 독도는 상상의 바위섬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이<sup>10)</sup> 근거가 없음은, 거문도인의 독도도항을 논할 것도 없이, 위의 안용복 2차도 일시의 기록만으로도 입증이 된다.

## (2) 1700년대 후반 울릉도에서의 배 건조

언제부터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지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래된 기록으로는 정조 11년(1787년) 김광숙 등이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고,<sup>11)</sup> 같은 해인 1787년 프랑스 라페루즈 탐험대의 보고서에도 울릉도를 거쳐 지나가던 중에 조선인이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sup>12)</sup>

라페루즈탐험대의 기록은 울릉도에서 호남인이 배를 만든다고 하는 이규경(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인용한 『동국문헌비고』

8) 『죽도기사』원록 6년 9월 4일;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竹嶋紀事 I』, 도서출판 지성인, pp35-38.

9) 『숙종실록』 숙종 22년 병자(1696) 8월 29일;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년) 3쪽, 14쪽.

10) 배성준(2005) 「'독도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선을 위하여」, 『문화과학』42, 문화과학사, p201.

11) 『비변사등록』, 정조 11년(1787년) 8월 29일

12) 이진명(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p53.

(1770)의 발간 연도와 큰 차이가 없다. 프랑스 탐침대는 울릉도에서 110km 떨어진 동해안의 어민들이 배를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그 이전 기록인 『동국문헌비고』에서 호남인들이 울릉도에서 배를 건조했다는 기록과 대조해 보면 프랑스인들이 본 울릉도의 조선인들은, 동해안의 어민들이 아니라 거문도주변 호남남해안 거주민일 가능성이 크다.

1878년 군함 아마기(天城)보고서를 게재한 『수로잡지』제16호(1883년)부터 1899년 『조선수로지』제2판까지<sup>13)</sup>, 많은 일본 측 문헌에서도 울릉도에서 조선인이 배를 만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3) 1800년 이후 호남인의 울릉도 도항

1800년대에 들어서는 호남 남해안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에 도항한 기록이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1800년경부터 80년간 관리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이 있으나,<sup>14)</sup>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1841년 울릉도(鬱陵島)를 수색할 때 붙잡힌 잠상(潛商)의 선척(船隻)을 뇌물을 받고 풀어 준 월송만호(越松萬戶)를 처벌한 기록 등 『비변사등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여러 번에 걸쳐 울릉도에 관리를 보내어 수도(搜討)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15)</sup> 또한 1803년과 1807년 두 번에 걸쳐 순천,

13) 海軍水路局(1883), 『水路雜誌』第16號, pp.24.; 水路部(1899), 『朝鮮水路誌』第二版, p.265.

14)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80년이 넘도록 울릉도 등지에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다.”(호사카 유지, 『대한민국 독도』,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2010, 성안당, p16.)

15) “함경감사 조병헌(趙秉憲)의 장계를 보니, 울릉도(鬱陵島)를 수색할 때 붙잡힌 잠상(潛商)의 선척(船隻)을 뇌물을 받고 풀어 준 월송만호(越松萬戶) 오인현(吳仁顯)의 죄상에 대해서는 담당 관사에서 품처하게 해 달라고 청하고, 각종의 뇌물 등을 책자로 만들어 올려 보냈으며 속공(屬公)의 여부를 본사에 논보(論報)하였습니다. 수색 토벌의 행정의 열마나 엄중한 것인데 자신이 진장(鎭將)이면서 뇌물을 받고서 몰래 풀어 주는 일을 이처럼 낭자하게 하였으니, 변방의 금령을 생각할 때 너무도 놀랍습니다.”(『비변사등록』 현종 7년(1841년) 6월 10일)

장흥, 흥양의 어민들이 허가 없이 울릉도에 도항하다 적발되어 지방 수령들이 처벌 받은 기록이 있다.<sup>16)</sup>

1854년 강원도암행어사 강난형(姜蘭馨)은 3년에 한번 수토하는 틈을 이용하여 백성들이 울릉도로 들어가므로 무시수토(無時搜討)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17)</sup>

다산 정약용의 시(詩)에서도 울릉도를 언급한 것이 3편이나 있다. 그 중 탐진어가(耽津漁歌)는 탐진(耽津)이라는 지명으로 보아 강진(康津) 유배중 쓴 것으로 보인다. “돛을 달고 동으로 울릉도로 간다(治帆東向鬱陵行)”라는 구절은 유배 당시(1801-1818년) 강진 해안에서도 울릉도로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진보다 더 가까운 거문도에서 울릉도로 더 많이 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sup>18)</sup>

#### (4) 이규원의 검찰일기에 나타난 거문도인의 울릉도 도항

1882년 고종의 울릉도개척령 당시에도 많은 백성들이 울릉도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규원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울릉도검찰사로 임명된 이규원은 일행 102명과 함께 1882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 동안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겼다.<sup>19)</sup>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1882)에 의하면 그 동안 정기적인 수토정책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체류자는 조선인이 140명, 일본인도 78명이나 되었다. 직업별로는 조선(造船)이 미역 채취를 포함하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채약(採藥), 예죽

16) 『비변사등록』 순조 3년(1803년) 5월 22일; 『승정원일기』 순조 7년(1807년) 5월 13일

17) 『비변사등록』 철종 5년(1854년) 8월 16일

18) 『다산시문집』 제4권, 시(詩)

19) 송병기(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pp. 148-149.

(刈竹)이 약간 있을 뿐이다. 울릉도 체류민 140명 가운데는 흥양 삼도(거문도), 초도, 낙안 등 거문도 주변 전라도 출신이 115명으로서 82%이었다.<sup>20)</sup> 거문도인들이 오래전부터, 고종 때까지도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로작업을 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독도 도항 시기

### (1) 언제부터 독도로 갔는가?

이와 같이 울릉도로 간 기록은 많이 있어서 일응 그때 독도에도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반드시 독도에도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직접 독도에 갔다는 사실은 거문도 서도리의 두 노옹(老翁)이 아주 자세하게 증언하였다.

독도도항 시작 시점에 관해 거문도인 김윤삼옹(당시 87세)은 민국일보 기사에서, “저 섬은 돌섬(石島=獨島의 별칭)인데 우리 三島(거문도)에 사는 金致善(지금부터 1백40년전) 할아버지 때부터 꼭 저 섬에서 많은 '가제'를 잡아간다고 가르쳐주었다”고 하였다.<sup>21)</sup> 문맥으로 보아, 이 기사를 작성한 1962년 보다 140년 전이면 1822년이 된다. ‘김치선 씨의 증손 김철수 씨가 57세’라고 했으므로, 증조부와와 나이 차이를 감안해도 대략 1822년이 된다.

김윤삼은 1822년 부터 거문도 서도리 사람들이 돌섬 즉, 독도에서 조

20) 송병기(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p151.; 김기주(2012), 「조선 후기-대한제국기 울릉도-독도 개척과 전라도인의 활동」. 『大丘史學』 제109집, 大丘史學會, pp21-22.

21) 이 기록만 보아서는 '140년전'의 기점이 이 기사를 작성한 1962년인지, 김윤삼이 처음으로 독도에 간 1895년인지 명확하지 않다. 문맥으로 보아 기사를 작성한 때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기사를 작성 한 때를 기점으로 하면 1822년이 되고, 김윤삼이 처음으로 독도에 간 때를 기점으로 하면 1775년이 된다.

업을 시작하였다고 증언한 것이다.<sup>22)</sup> 18세기 후반부터 거문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는 기록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김윤삼의 조상들이 1822년부터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독도에까지 가서 조업활동을 하는데 대한 큰 장애 요인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거문도인들에게 독도는 조상전래의 어장이었다. 김윤삼 본인이 울릉도와 독도에 간 시기에 관하여는, '20세 되던(1895년) 여름철 천석짜리 무역선 5-6척이 원산을 거쳐 울릉도에 도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2) 언제까지 독도에 갔는가?

언제까지 독도에 갔는지는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같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박운학 옹(당시 78세)은 '열일곱 살 때(1901년, 필자 주), '가제(물개의 일종)<sup>23)</sup>를 잡으러 돌섬(독도)에 곧잘 갔다'고 하였으며,<sup>24)</sup> 김윤삼은 언제까지 독도에 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한 **민국일보**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22) 김윤삼의 증언은 거문도 서도리의 일부 주민의 독도 조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문도의 다른 지역이나 인근 초도 등 다른 곳의 거주민들은 그보다 더 일찍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했을 수도 있다. 이는 1770년의 『동국문헌비고』에서 그 이전의 『여지지』를 인용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조선땅이다(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라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770년 이전에도 독도에 누군가가 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지지』에 기록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갔지만, 금지령을 어기고 갔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23) 정식 명칭은 바다사자(Japanese sea lion)이다. 강치, 가지, 가제, 가지어(加支漁, 可支漁), 수우(水牛), 해수(海獸) 해록(海鹿)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반드시 같은 종(種)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본 논문에서는 물개로 부르기로 한다. 해달(海獺, 獵虎)도 바다사자와는 다르지만, 대체로 같은 동물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4) 《조선일보》 1963년 8월 11일, 「바다의 개척자」

그가 마지막 다녀온 것이 28세(1904년) 때라 하는데 세상이 어수선해서 그 후에는 '돌섬'에는 못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sup>25)</sup>

민국일보에 기록된 나이와 연도가 정확하게는 맞지 않는데, 괄호 안에 병기된 연도보다는 나이가 더 정확할 것이다. 20세 때 1895년이라면 28세 때는 1903년이 된다. 즉, 김윤삼은 1903년 까지만 독도에 가고, 그 이후에는 세상이 어수선하여 독도에 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였고, 한반도가 무력으로 점령당한 상태에서, 1905년 2월 독도가 일본영토로 불법 점유되고,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에 대한 독도 독점적 장기 임대(중립)가 있었다.

세상이 어수선하여 1904년부터는 독도에 갈 수 없었다는 김윤삼의 증언은 당시 시대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우용정의 보고서에 의하면 1900년부터 조선(造船) 금지령이 내려졌는데도,<sup>26)</sup> 거문도인이 1903년까지 울릉도에 도항했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므로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00년 6월 울릉도에서 배를 만드는 일이 금지되었지만, 국가쇠망기에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았다. 1902년에 거문도배 20척이 미역 채취하러 왔다는 기록이나,<sup>27)</sup> 1903년에 울릉도에서 조업 중이던 배가 신선(新船)을 만들어 순천으로 돌아가던 중 일본 마고오리(摩郡) 유노츠(溫泉津)에 표착하였다는 일본 측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5) 《민국일보》 1962년 3월 19일,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땅". 천석짜리 뗏목배로 내왕」

26) 又 告示 六月 三日

一. 毋論 本國人與外國人 何고 伐木造船은 一切 廢禁할 事.(우용정, 『視察委員告示』, 又告示(1900년 6월 3일); 신용하 편저(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3』, 독도연구보전협회, pp55-56에서 재인용)

27) 每年 全羅道 三島(거문도) 地方에서 多數의 漁夫 等 渡來하여 海岸에 滿生하는 若芽를 採取한다.(外務省通商局(1902), 「韓國鬱陵島事情」, 『通商彙纂』第234號, p46.; 農商務省 水産局(1903), 「韓國鬱陵島漁業の狀況」, 『水産貿易要覽』, p491)

전라도 순천 김한서외 9명의 선원 8명의 객(客)의 건. 명치 37년 12월 4일

어업을 위해 명치 36년(1903년) 4월부터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중 파손에 의해 신선(新船) 신조(新造) 11월 19일 출발 순천으로 귀항중 풍파에 막혀 적재한 재목을 해중에 던지고 11월 25일 摩郡 溫泉津에 표착<sup>28)</sup>

거문도인의 배 건조는 1900년의 금지령 이후에도 어느 정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윤삼이 1903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갔다는 증언은 이러한 주장과 시기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 (3) 김윤삼의 독도에서 일본사람, 배조차 본 일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김윤삼은 독도에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없었다.,” “돌섬에서 일본배조차 본 일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김윤삼이 독도에 갔다고 한 것은 1895년부터 1903년까지이므로 이 기간에 일본인도 독도에 갔다면 김윤삼이 일본인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통상휘찬』제50호에 의하면, 1904년부터 울릉도에서 독도 물개잡이를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9)</sup> 그 전 해인 1903년에는 일본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등이 리앙코도의 물개 포획을 기도하였으

28) Vol. 10 全羅道順天金漢書外9名ノ船員8名ノ客ノ件 明37.12.4

漁業ノ爲明36年4ヨリ鬱陵島デ漁業ニ從事中破損ニヨリ新船新造11月19日出發 順天ニ歸航中風波ニ遮ラレ積載ノ材木ヲ海中ニ投ジ11月25日摩郡溫泉津ニ漂着(국사편찬위원회(2003), 『해외사료총서 5-일본외무성의교사료관소장 한국관계사료목록』,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itemId=fs&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fs\\_005\\_0010\\_0030\\_060\\_0070](http://db.history.go.kr/item/level.do?setId=1&itemId=fs&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position=0&levelId=fs_005_0010_0030_060_0070), 2019.11.25. 검색)

29) 外務省通商局(1902), 『鬱陵島現況』, 『通商彙纂』第50號, p50.; 1904년 독도에서의 물개잡이 경쟁이 심해지자, 일본어부 나카이가 이를 독점하기 위해 독점적인 물개잡이 어업권을 신청했고, 일본 정부에서는 그것을 핑계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하고 나카이에게 독점적인 물개잡이 어업권을 부여한 것이다.

나 준비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sup>30)</sup> 즉, 1903년은 일본인이 독도에서 물개 잡이를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대거 몰려들기 이전이다. 더구나, 독도에서는 식수 등의 문제로 오래 체류하지 않았다. 그리고, 1902년의 『통상회찬』제234호에 의하면 울릉도에서 독도로 전복을 채취하러 가기는 하나 식수가 없으므로 4-5일간만 독도에 머무른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울릉도에도 일본인이 불법적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 또는 물개를 잡기위해 울릉도에서 독도로 간 사람들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김윤삼이 1903년 이전에 독도에 갔다면, 일본인들이 몰려들기 이전이므로 일본인과 마주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김윤삼이 당시 독도에는 “일인(日人)은 그림자도 없었다”는 증언은 사실로 보인다.

요컨대, 거문도 서도리 김윤삼의 조상은 1822년부터 울릉도와 독도로 도항했으며, 김윤삼은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박운학은 1901년에 독도에 갔다 온 것으로 증언하였는데, 시기적으로 보아 당시의 시대상황과 모순됨이 없다.

### 3. 독도 도항 방법

#### 1) 울릉도에 어떻게 갔는가?

김윤삼은 ‘천석짜리 뗏목배로 내왕’하였다고 했으며, 박운학은 ‘사발뚝배’ 또는 ‘사발배’를 타고 갔다고 하고, 배의 모양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김윤삼은 ‘통나무를 파서 이어 만든 큼직한 천석짜리 배’로, ‘갈대로 만든 커다란 돛을 달고’ 갔다고 했으며, 박운학

30) 박병섭(2010),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184-186.; 奥原碧雲(1906),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p27.

은 ‘여덟 아름이나 되는 귀목을 베어 도끼로 다듬고, 나무뿔을 박아 배를 만들어’ 갔다. ‘툽 하나 없이 도끼로 만든 사발배, 그 배에 깃꼴을 뜯어 영성하게 얹은 돛을 달고’ 갔다고 하였다.

현대인의 상식으로 판단해보면 일견 황당해 보이고, 그 배의 모양이 어떠한지,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는 당시의 다른 기록들과 대조를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천석짜리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갔다는 것은 정조 11년(1787년)의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기록되어 있다.

서울에 사는 김낭청(金郎廳)이라는 자가 30명의 결군(格軍)을 모집하여 사람마다 각각 30냥(兩)을 주고, 천석(千石)을 실을 수 있는 대선(大船)으로 울릉도에 들어가서 섬의 대나무를 베어 가득 싣고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sup>31)</sup>

김윤삼과 박운학보다 약100년 전에 금지령을 어기고 천석짜리 배로 울릉도로 들어갔었는데 그보다 100년 후에 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윤삼은 ‘갈대로 만든 커다란 돛을 달고’ 박운학은 ‘배에 깃꼴을 뜯어 영성하게 얹은 돛을 달고’ 갔다고 하여, 돛은 천으로 된 돛이 아니라 갈대나, 깃꼴을 돛으로 썼다고 한다. 이 역시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증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본기록을 보아도 1890년을 전후하여 돛은 벗짚이나 갈대를 엮어서 만든 ‘돛자리 돛’을 사용하였다.<sup>32)</sup> 따라서 당시에 거문도인들이 갈대나 깃꼴로 돛을 만들었다는 것은 일본기록과도

31) 京居金郎廳稱號者，募得三十名格軍，每名各給三十兩，以千石容入大船，往入鬱陵島，斫伐島竹，滿載以歸云矣。(『승정원일기』 정조 11년(1787) 7월 16일)

32) 兒島俊平(1988), 「隱岐漁民の竹島(鬱陵島)行き」『郷土石見』21호, p44(박명섭(2010),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독도연구』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162에서 재인용.)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박운학이 ‘귀목을 베어 도끼로 다듬고, 나무뿔을 박아 배를 만들어’ 갔다는 증언은 『수로잡지』41호(1883년) 등 일본기록과도 대략 일치한다. 『수로잡지』41호에 의하면, “현재 섬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104명이다. 봄여름 2계절 간 이 섬에 와서 새로 어선을 제조하여 낚은 어선과 바꾸어 돌아간다고 한다. 이 어선들은 철류(鐵類)를 쓰지 않고 목재만으로 만든다고 한다.”<sup>33)</sup> 라고 하여, 울릉도의 조선인들은 뚝을 쓰지 않고 배를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다.

## 2) 뗏목을 타고 독도로 갔다는 주장에 대해

울릉도에서 독도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 박운학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김윤삼은 “원산등지에서 명태 등을 실은 배를 울릉도에 두고 뗏목을 저어 이틀 만에 2백리 되는 ‘돌섬’에 도착했다.” 고 증언하였다.

‘뗏목’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뗏목이 아니고, ‘떼배’라고 부르는 2층으로 된 뗏목으로 만든 배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파도가 치더라도 돛을 염려가 없다. 돛을 달지 않은 것으로 잘못 추정되기도 하나, 현재 거문도 거주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구동성으로 돛도 달았다고 한다. 돛을 달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김윤삼이 ‘뗏목을 저어’ 갔다는 것은 돛을 단, 뗏목으로 만든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을 말한다.

김윤삼이 말한 200리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80km 가 된다. 이는 실제거리 87.4km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틀 동안 갔다고 하는데, 초속 0.5m 속도로 간다면 1시간에 1.8km로서, 독도까지 87.4km를 가는 데는 48시간, 즉 이틀이면 갈 수 있다. 김윤삼이 독도까지 노를 저어 이틀 걸려서 갔다는 주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3) 일본 해군수로국(1883년 7월), 『수로잡지』제41호, p37.

## 4. 독도의 모습

### 1) 거문도인이 본 독도의 모습

거문도인 김윤삼, 박운학은 그들이 각각 본 독도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섬이 온통 돌바위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없었다 한다. 돌섬은 큰 섬 두 개 그리고 작은 섬이 많이 있는데 큰 두 섬 사이에 뗏목을 놔두고 열흘 남짓 있으면서 '가제(海狗=웃도세이)'도 잡고 미역, 전복 등을 바위에서 따다.<sup>34)</sup>



〈그림1〉 거문도인들이 뗏목을 정박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도와 서도 사이의 지점

34) 《민국일보》 1962년 3월 19일자,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땅". 천석짜리 뗏목 배로 내왕」

김윤삼이 말한 독도의 모습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독도의 실제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독도에 열흘 남짓 있으면서 물개 등을 잡는다는 것은, “독도에 오랫동안 출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4-5일 정도 지나면 울릉도로 귀향한다.”고 한 『통상휘찬』제234호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35)

박운학이 본 독도의 모습은 박운학의 인터뷰 당시에는 기록되지 않고, 약 40년 후 당시의 취재 기자가 칼럼니스트가 된 후에 ‘이규태코너’라는 칼럼에 실렸다.

40여 년 전 거문도 어부 박용학(박운학을 말함, 필자 주)씨로부터 독도 물개잡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집단 서식지인 독도에는 1000여 마리의 물개가 살고 있었으며 사람이 가면 달려들어 아양을 떨다가 암놈 가까이 가면 도전적으로 대드는 애처가라 했다.<sup>36)</sup>

김윤삼은 독도가 돌바위의 큰 섬 2개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으며, 박운학은 물개가 1000여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하였다. 어느 증언이든 사실과 일치하며, 가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이다. 특히 박운학의 물개에 관한 설명은 아주 구체적이다.

## 2) 박운학의 독도에 나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독도는 돌로 된 섬이어서 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거문도인 박운학은 독도에 나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35) 韓國鬱陵島事情

又本島ノ正東約五十海里ニ三小島アリ之ヲリャンコ島ト云ヒ本邦人ハ松島ト稱ス、同所ニ多少ノ鮑ヲ産スルヲ以テ本島ヨリ出漁スルモノアリ然レトモ同島ニ飲料水乏シキニヨリ永ク出漁スルコト能ハサルヲ以テ四五日間ヲ經ハ本島ニ歸港セリ。(外務省通商局(1902), 「韓國鬱陵島事情」, 『通商彙纂』第234號, p.46.)

36) 《조선일보》 2004년 8월 10일, 「이규태코너, 물개요리」

30여 년 전 거문도에서 80대의 노어부 박운학(朴雲學) 옹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 한말(韓末) 당시 거문도어부들은 울릉도에 가서 아름답드리 거목(居木)을 베어 배를 만들고, 또 그 재목을 뗏목으로 만들어 끌고 온다고 했다. 해변에 움막을 치고 배를 만드는데 쇠못을 구할 수가 없어 이 독도까지 가서 나무를 베어와 그 나무못으로 조립을 했다 한다. 왜냐하면 이 바위섬에서 자란 나무는 왜소하지만 몇 백 년 몇 천 년 풍운에 시달려 목질이 쇠만큼 단단해져 있기 때문이라 했다. 독도나무를 베어오면서 물개 한 마리를 잡아와 기름을 짜고 그 기름으로 밤을 밝혔으며...<sup>37)</sup>

박운학의 이 증언내용도 1963년의 조선일보에 게재되지 않고, 30년 후 ‘독도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이규태코너’ 칼럼에 게재되었다. 박운학은 독도에 가서 독도의 바위틈에서 자란 단단한 나무로 못을 만들어 울릉도에서 배를 조립했다고 한다.<sup>38)</sup> 울릉도에서 조선인들이 배를 만들고 있었고, 조선인들은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생나무로 배를 만든다는 것은 1883년의 『수로잡지』제41호부터 1899년의 『조선수로지』까지 연이어서 등장하는 기록이다.<sup>39)</sup>

독도에 나무가 있었다는 기록은 조선과 일본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 1877년 일본의 『태정관지령』의 부속문서에서는 독도에 “수목이나 대나무는 거의 없다”(樹竹稀少)고 하고 있으며, 해군 수로부에서 발행한 『환영수로지』(1886.12)와 『조선수로지』(1894) 등에서는 “두 개의 불모암서”(不毛岩嶼)로 묘사하고 있다.<sup>40)</sup> 독도연구자들도 대부분은 독도에 나

37) 《조선일보》 1990년 3월 29일, 「이규태코너, 독도의 나무」

38) 김수희(2011),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韓日關係史研究』제38집, 경인문화사, p226.

39) 일본 해군수로국(1883년 7월), 『수로잡지』제41호, p37; 水路部(1894), 『朝鮮水路誌』, 明治二十七年十一月, p265

40) 海軍水路部(1886년 12월), 『寰瀛水路誌』第二卷第二版, pp. 397-398.; 水路部(1894), 『朝鮮水路誌』, 明治二十七年十一月, pp. 255-256

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도 박운학은 독도에 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독도 나무는 거문도인들이 독도로 간 주된 목적은 아니었지만, 가보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료에 기록된 독도의 모습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본 독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거문도인이 본 독도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독도로 가서 며칠간 생활하면서 본 독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본 대로 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나무가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바위틈에 나무가 간혹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sup>41)</sup> 독도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독도에 나무심기 운동을 활발히 벌이기도 했다. <그림2>는 2003년에 독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팔뚝만한 나무가 보인다. 과거에 조금이나마 자라던 나무들이 지금은 없어진 이유에 대하여 이규태 칼럼에서는 무분별하게 베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울릉도 주민들은 해방이후 미 공군에 의한 독도 폭격 훈련으로 나무가 멸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sup>42)</sup>

---

41) 이예균, 김성호(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 예나루, pp301-308.

42) 이예균, 김성호(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 예나루, pp301-308.



<그림2> 독도 나무<sup>43)</sup>

독도에 나무가 없어진 원인은 논외로 하고, 거문도인들이 ‘독도 나무로 못 대신 사용하였다’는 상식과는 다소 다른 주장은 역설적으로 그 주장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43) 이예균, 김성호(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 예나루, p305.

## 5. 독도도항의 목적과 어획물

### 1) 거문도인의 울릉도 도항 목적과 울릉도개척령 이후의 활동

#### (1) 물물교역을 위한 서해와 동해 항해

김윤삼은 1962년 *민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895년부터 1903년 기간 중 서해의 신의주와 동해의 원산까지 물물교역을 위한 항해를 했다고 한다.

계절풍을 따라 제물포(인천)는 물론 멀리 신의주(그때는 의주)까지 올라가서 쌀과 곡식을 가득 싣고 남해를 거쳐 동해를 거슬러서 원산까지 가서는 명태등 해산물과 바꿔 싣고 돌아오는 물물교환의 무역을 하였다.<sup>44)</sup>

또한 박운학은 1693년 *조선일보*(이규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해의 신의주부터 동해의 원산까지 항해하면서 거래한 물품과 가격차이, 거래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다.

울릉도로 떠나기 전에 멀리 의주(義州)나 진남포(鎭南浦) 장산 마루곳까지 가서 쌀 한섬을 8량 5돈에 사 싣고 영일만 쟁기 섭설이를 지나 울진 강릉 원산에 가서 팔면 한섬에 '다섯곱인 40량씩 받았지' 한다.<sup>45)</sup>

즉, 의주(義州)나 진남포(鎭南浦)등 서해의 평야지대에서 쌀을 싣고 나서 동해안의 울진, 강릉, 원산에 가서 팔아 많은 이문을 남기고, 울릉도로 갔다는 것이다. 거문도 서도리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거문도인들

44) 《*민국일보*》 1962년 3월 19일자,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땅". 천석짜리 뗏목배로 내왕」

45) 《*조선일보*》 1963년 8월 11일, 「바다의 개척자」

은 서해방향을 아랫녘, 동해방향을 웃녘이라고 한다. 조상이 동학 패잔병 또는 서해의 해적에게 희생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당시 거문도인들이 서해로는 의주까지, 동해로는 원산까지 항해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 '보물섬(貨藪) 울릉도' 도항

조선 태종대부터 왜구의 침입을 경계하여 울릉도 거주민을 본토로 쇄출하고 2-3년에 한 번씩 관리를 보내어 수토(搜討)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다.<sup>46)</sup> 왜구의 침략을 경계한 울릉도 거민 쇄출 정책의 엄격한 시행으로 울릉도는 점차 본토로부터의 인적이 끊어진 섬이 되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울창한 원시림과 풍성한 해조류는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금지령을 어기고 울릉도로 들어가게 하였다.

거문도인 김운삼과 박운학은 이구동성으로 울릉도를 '보물섬'으로 여겼다고 한다. 거문도인들에게 서해의 의주와 동해의 원산 다음의 항해코스는 보물섬 울릉도였다.

"한탄한다 함경도 올고 간다 울릉도 저 바다너머 보물섬이 있다..." 등 멋진 노래를 부르며 20여명이 노를 저으며 가기도 했다.<sup>47)</sup>

보물섬이란 말은 박운학의 증언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여덟 아릅이나 되는 귀목을 베어 도끼로 다듬고, 나무뿔을 박아 배를 만들어 숲을 이룬 미역과 전복을 따 싣고 배 콩무늬에 집질 나무뿔목을 달고 왔다 했다. (중략) 빌어먹은 반년양식을 보물섬인 울릉도 내왕 한번 에 완전히 갚기 때문에 먼 의주까지 가야 했었다.<sup>48)</sup>

46) 『태종실록』 태종 3년 계미(1403) 8월 11일.

47) 《민국일보》 1962년 3월 19일,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땅". 천석짜리 뗏목배로 내왕」

거문도인들이 울릉도에서 한 일은 새로 배를 만들고, 미역, 전복을 채취하고, 그리고 목재를 콩무니에 달고 오는 것이었다. 목재는 집짓는 재목으로 쓰여, 거문도에도 울릉도에서 가져온 목재로 지은 집이 많이 있었으나, 주택개량으로 지금은 거의 전부가 없어졌다. 울릉도를 보물섬으로 여겨 바닷가의 선상(船商)들이 금지령을 무릅쓰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보다 100년 전의 다른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래 울릉도를 수색하는 일에 대해 연석에서 여쭙은 뒤에 공문을 보내 알렸습니다. 강원 감사 이병정(李秉鼎)의 계본(啓本)을 보니 ‘근래에 연해의 선상(船商)<sup>49)</sup>들이 본도(本島)를 보물수출(貨載)로 여겨 금령을 무릅쓰고 몰래 들어가는 폐단이 흔히 발생합니다.<sup>50)</sup>”

두 거문도 노옹이 갔던 1900년 전후보다 훨씬 이전부터 보물섬 울릉도로 들어가서 배를 만드는 일이 계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1882년 고종의 울릉도개척령으로, 금지령을 어기고 울릉도에 들어간 행위는 사면을 받고, 오히려 오래전부터 사실상 울릉도를 지킨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지령을 어기고 울릉도에 입도(入島)한 지 10년이 된 함양(咸陽) 출신 채약인(採藥人) 전석규(全錫奎)를 울릉도 도장(島長)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 수 있다.<sup>51)</sup>

울릉도개척령 이후에 이주한 농업 이주민들은 납세의무가 면제되었지만, 배를 만들고 미역을 채취한 거문도인들은 납세의무도 이행하였다. 황성신문에 의하면 미역에 대하여는 10분의 1을 징수하고, 배를 만드는

48) 《조선일보》 1963년 8월 11일, 「바다의 개척자」

49) 선상(船商)은 배를 만들어 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선상은 거문도인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50) 『일성록』, 정조19년 을묘(1795) 8월 21일

51) 송병기(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p178.

것에 대하여는 배 한 척당 200냥을 징수하였다.<sup>52)</sup>

### (3) 일본인 벌목공과의 충돌과 그 영향

1800년대 말 무렵에는 울릉도의 원시림을 노리고 일본 벌목공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울릉도개척령 이후의 농업 이주민들과는 달리 울릉도 목재를 가지고 배를 만들던 거문도인들은 일본 벌목공과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일본 벌목공의 행패와 조선인과의 충돌은 계속해서 조선 조정에 보고되었고, 1900년에는 한일 양국 공동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울도(鬱島) 시찰위원 우용정(禹用鼎)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위원이 영사에게 묻기를, 일본인 20명이 도감(島監) 관방(官房)에 밤을 타 야노(惹鬧)한 일월(日月) 기록이 있으니 이 어찌 패거(悖學)가 한둘 이겠는가?

(중략)

영사가 묻기를, 오도감(吳島監)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답하기를, 전라도 영사 말하기를, 당사자가 출석한 후에 심판할 수 있다.<sup>53)</sup>

위는 일본인 벌목공 20명이 밤에 거문도 출신 울릉도 도감(島監) 오성일(吳性鎭)의 관사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위원 우용정이 항의하고 일본 영사가 변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당시 울릉도의 목재를 둘러싸고 한일간의 충돌이 극심하였고, 그 중심에 거문도인 오도감이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울릉도개척령(1882년) 이후에도 울

52) 《황성신문》 광무 3년(1899년) 9월 23일

53) 우용정, 『울도기』, 『鬱陵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 韓日人分日査問』, 六月三日 再次審問 裴季周及 日人福間等 對質, (신용하 편저(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3』, 독도연구보전협회, pp76-77); 위원은 內部視察官 鬱島視察委員 우용정(禹用鼎)이고, 영사는 주 부산 일본 부영사 아카즈카 마사스케(赤塚正輔)이다.

릉도와 독도를 지킨 주역은 농업이주민이 아니라 거문도인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이주민은 면세되었지만 거문도인들은 세금도 납부하여 재정을 뒷받침했다. 우용정의 보고서에 의하면 1900년 6월 3일, ‘본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벌목(伐木)하여 조선(造船)하는 것을 일체 엄금할 것’이라 하여,<sup>54)</sup> 그동안 허용되었던 울릉도에서 배를 만드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벌목·조선금지령은 힘 약한 조선인들에게만 시행이 되고 일본인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1904년경에는 울릉도에서 목재로 쓰인 구목이 바닥나는 상황이 되었다.<sup>55)</sup> 배 만드는 일 금지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벌목공에 의해 나무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거문도인들이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기 위해 울릉도에 갈 이유는 없어져 버렸다.

거문도인들의 일본 벌목공을 상대로 한 투쟁은 울릉도의 나무를 지켜 내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인 벌목공의 행패와 충돌에 관한 중앙정부의 외딴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게재·공포한 1899년 9월 23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의 ‘울릉도 사황(事況)’, 1900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칙령이 있게 하는데 거문도인들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54) 又 告示 六月 三日

一. 毋論 本國人與外國人 竝고 伐木造船은 一切 廢禁 事.(우용정, 『視察委員告示』, 又告示 六月三日, 신용하 편저(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3』, 독도연구보진협회, pp55-56)

55) 허영란(2006),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제13호, 동북아역사재단, p234.; “往時は全島樹木鬱蒼として美觀を呈せしも、濫伐の結果頗減少せり”(岩永重華編(1904), 『最新韓國實業指針』, 寶文館, p294.); “往時は此種の樹木全島に繁茂して殆んど無儘の觀ありしも、近年本邦人の濫伐によりて漸く減少せり。”(田淵友彦(1905), 『韓國新地理』, 博文館, pp306-308.)

## 2) 독도 도항의 주된 목적

### (1) 주요 어획물로서의 물개

그러면 거문도인들이 독도에는 왜 갔는가? 울릉도에 간 목적과는 상당히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김윤삼은 “돌섬은 큰 섬 두 개 그리고 작은 섬이 많이 있는데 큰 두 섬 사이에 뗏목을 놔두고 열흘 남짓 있으면서 '가제(海狗=웃도세이)'도 잡고 미역, 전복 등을 바위에서 따다.”고 하였다.<sup>56)</sup> 일본 측 기록인 『통상회찬』제234호에는 1902년에 전복을 채취하려, 『통상회찬』제50호에는 1904년부터 물개잡이를 위해, 울릉도에서 독도에 간다고 하였다. 어느 기록이든 김윤삼이 말한 독도의 어획물과 일치한다. 독도의 어획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자료인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에 기록되어 있다.

바다짐승류 - 갯치, 고래, 참 돌고래, 범고래, 낫돌고래 등

어류 - 상어, 정어리, 고등어, 오징어, 만새기, 참다랑어, 새끼다랑어, 날치, 천정어, 블락 등.

해조류 - 미역, 김, 모자반, 쇠미역, 우뚝가사리, 파래 등

패류 - 삿갓조개, 소라, 거북손, 전복, 우렁이 등

그러나 죽도(=독도)에서 장래 유망한 어업(漁獵)은 갯치잡이뿐이며, 전복의 잠수기 포획도 다소 유망하다. 김과 미역은 섬 전체에 군생하고 있으나, 겨울에는 파도가 높기 때문에 도항하여 채집할 수가 없다.<sup>57)</sup>

김윤삼이 독도에서 잡았다고 한 가제(海狗=웃도세이)와 미역, 전복은 『죽도급울릉도』에 기록된 독도에서의 어획물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sup>58)</sup> 특히, 물개(갯치)잡이는 장래 유망한 어업으로 서술되고 있다.

56) 《민국일보》 1962년 3월 19일,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땅". 천석짜리 뗏목배로 내왕」

57) 奥原碧雲 著, 유미림 편역(2009), 『「독도와 울릉도」 번역 및 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19-20.

1905년 이전, 거문도인이 물개를 잡으러 독도로 가던 당시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국인이 물개를 잡으러 독도에 까지 간 기록은 1947년 울릉도에 이주한지 60년 된 홍재현옹의 증언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당시 85세의 홍재현은 울릉도 개척 당시(1882년)부터 울릉도민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역채취와 물개 포획을 위해 독도에 여러 번 출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 ,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것은 본도 개척당시부터 도민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 , 나도 당시 김양윤(金量潤)과 배수검(裴秀儉) 동지들을 작반(作伴)하여 거금(距今) 45년전(卯年)부터 사오차(四五次)나 감괘(甘藷)채취 업호포획차(獵虎捕獲次)로 왕복한 예가 있음
- 최후에 갈 시는 일본인의 본선을 차대(借貸)하여 선주인 촌상(村上)이란 사람과 대상(大上)이란 선원을 고용하여 가지 포획을 한 예도 있습니다. 59)

재현의 증언에서 묘년(卯年)은 계묘년(1903)을 말한다. 즉, 홍재현, 김양윤, 배수검 등은 1903년부터 4-5차례 미역채취와 해달(獵藪) 포획을 위해 독도를 왕래했다고 증언한 것이다.<sup>60)</sup> 해달(獵藪)은 거문도인이 말한 가제와 유사한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에서 거문도인 김윤삼과 박운학이 공통적으로 한 중요한 일은 가제(물개의 일종)를 잡는 일이었다. 독도에서 물개를 잡아 기름을 채취한

58) 거문도인의 독도 전복 채취에 관하여는 김수희(2011년 6월),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 이케우치 사토시의 '석도' 논의를 중심으로」, 『독도 연구』 제10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183-187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59) 外務部政務局編(1955), 『獨島問題概論』, 外務部, pp35-38.; 정병준(2011), 『독도 1947』, 돌베개, pp163-164.

60) 정병준(2011), 『독도1947』, 돌베개, pp163-167.; 신석호(1948), 「독도소속에 대하여」, 『사해』12월호(제1권 제1호); 신석호(1960), 「독도의 내력」, 『사상계』 8월호.

사실에 관하여는 그 후에도 거문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고 김병순 전 거문도 서도리 대표는 “독도에서 미역도 따고 가지어를 포획해서 기름을 내어 농가의 수용에 긴요하게 쓴다.”고 기록을 남겼으며,<sup>61)</sup> 이귀순 거문도벚노래 전수회장(84세)은 17때부터 면사무소에 근무했는데 당시 거문도를 다녔었던 할아버지들로부터 “독도에서 가제기름을 채취해서 옹기에 담아 영산강, 금강, 마포에 까지 가서 팔았다.”고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잡은 물개의 처분에 관하여, 김운삼은 “울릉도에 다시 돌아와 부산이나 대마도로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가제'를 딱 좋아했다”, “'가제'의 살은 먹고 가죽을 가지고 신발등도 해 신었다”고 하였으며, 박운학은 “가제 가죽으로 갓신, 담배쌈지도 만들어 선물로 삼았고 기름을 짜서 불을 켜다.”고 하였다.<sup>62)</sup>

박운학이 1963년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중 물개에 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약 30년 후 이규태칼럼에 ‘물개조약’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이 물개를 잡아 기름은 항해 도중에 등불기름으로 썼다. 가죽으로는 갓신-담배쌈지-남바위 감으로 집안 어른 선물도 하고 또 값비싸게 팔기도 했다. 신(腎)은 머리스공-공 선장 소유로 오다가다 관선(官船)을 만나면 뇌물로 바친다고 하였다. <sup>63)</sup>

61)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편(2018), 『울릉도·독도 관련 거문도 자료 I』, 선인, p132,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에서는 김병순 전 거문도 노인회장이 생전에 남긴 거문도인의 울릉도, 독도 도항에 관한 기록을 2권의 책으로 펴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본 가영(嘉永)2년 기유년(己酉年, 1849년)에는 거문도인 이성서(李聖西)가 일본 백기(伯耆)에 표류하여 도움을 받고 필담을 나눈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1849년 무렵에도 거문도인이 원거리 항해를 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자료 98-99쪽)

62) 《조선일보》 1963년 8월 11일, 「바다의 개척자」

63) 《조선일보》 1991년 1월 6일, 「이규태코너, 물개조약」; 특히 해구신(海狗腎)은 아주 귀한 물건이어서 거문도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해구신 하나에 보리 세가마를 받았다고 한다.

부산이나 대마도로 가서 일본사람들에게 울릉도의 산물을 팔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1883년에는 조일통상장정(朝日通漁章程)이 체결되었고, 1889년에는 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이 체결이 되었다. 그 이전부터 일본인은 한반도의 어장을 제멋대로 침탈해 왔으나, 이 통상장정 및 통어장정의 조인 결과, 전라·경상·강원·함경의 4도 해역에서의 일본인들의 어업 활동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거문도 어민들이 대마도로 가는데도 특별한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울릉도에서 물개를 잡았을 가능성에 대해

거문도인들은 조선후기 대(代)를 이어가면서 이른바 선상(船商) 활동을 하였으며, 선상활동을 위한 배를 만들고, 부수적으로 교역할 물건을 구하기 위해 울릉도로 간 것이다. 독도에 가서 잡은 물개도 상업적 목적으로 팔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거문도인 김윤삼과 박운학이 독도에서 잡았다고 하는 물개가 혹시 울릉도에서 잡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1906년에 발간된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의 『竹島及鬱陵島』에 의하면, 울릉도 어획물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오징어, 가오리, 정어리, 전복, 김, 미역은 별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sup>64)</sup>

어획물의 종류 - 근해는 어족과 해조류가 풍부하여 대형 참다랑어, 물고기, 방어, 정어리, 대형 상어, 만새기, 물치다랑어, 삼치, 고등어, 돌고래, 낫돌고래, 범고래 등의 바다짐승이 있는데, 무리지어 오는 것들 중에 드물게는 강치가 오는 경우도 있다.

64) 奥原碧雲 著, 유미림 편역(2009), 『「독도와 울릉도」 번역 및 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58-59.

위와 같이 1904-1905년 무렵에 울릉도의 어획물 중에 물개(강치)는 들어있지 않다. ‘무리지어 오는 것들 중에 드물게 강치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을 뿐이다.

울릉도의 산물로서 물개가 많이 잡혔다는 조선의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수토관이 총을 쏘아 잡은 기록이 2회 있을 뿐이다. 정조10년(1786) 월송만호(越松萬戶) 김창윤(金昌胤)의 수토보고서와<sup>65)</sup> 정조 18년(1794년) 월송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 보고서에 총을 쏘아 가지어(可支魚)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는데,<sup>66)</sup> 수토의 증거물로 잡은 것이다. 총을 쏘지 않고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울릉도에는 물개가 많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기록에도 명시시대에 들어 울릉도에서 물개를 잡은 기록은 찾을 수 없다. 1878년 군함 아마기(天城)보고서를 게재한 『수로잡지』제16호(1883년)부터 1899년 『조선수로지』까지, 그 후 일본의 울릉도 침탈이 노골화 되던 시기의 『통상회찬』제234호(1902년), 『한해통어지침』(1903), 『수산무역요람』(1903), 『최신한국실업지침』(1904년), 『한국신지리』(1905년) 등<sup>67)</sup> 1905년 이전의 거의 모든 일본 자료에서 울릉도의 산물에 물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1877년 『태정관지령』의 부속문서에서 울릉도에서 나는 산물로 전복과 물개(海鹿)를 들고 있는데,<sup>68)</sup> 이는 1693년 안용복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일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통상회찬』제50호(1905년)에서 울릉도의 수출품에 물개(‘도도’라고 하

65) 『일성록』 정조 10년 병오(1786) 6월 4일

66) 『정조실록』 정조 18년 갑인(1794) 6월 3일

67) 海軍水路局(1883), 『水路雜誌』第16號, pp.24-26.; 水路部(1899), 『朝鮮水路誌』第二版, pp.263-265.; 外務省通商局(1902), 『通商彙纂』第234號, 「韓國鬱陵島事情」, pp.43-47.; 葛生修吉(1903), 『韓海通漁指針』, 「울릉도」, 흑룡회 출판부, pp.120-124.; 農商務省水産局(1903), 『水産貿易要覽』, 「韓國鬱陵島漁業の狀況」, pp.491-492.; 岩永重華 編(1904년), 『最新韓國實業指針』강원도편 울릉도 양코도, pp.293-294.; 田淵友彦(1905), 『韓國新地理』, 博文館, 1905. pp.306-308.

68) 정태만(2012), 『태정관지령이 밝혀주는 독도의 진실』, 조선뉴스프레스, p. 45.

는 海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울릉도에서 잡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시 독도에서의 조업은 일본인도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였었고, 독도에서 잡은 물개를 울릉도에 가져와서 수출하여 수출입통계에는 독도어획물을 울릉도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요컨대, 거문도인이 상업적으로 많은 물개를 잡아서 팔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울릉도가 아닌 독도에서 잡은 것으로, 거문도인이 독도에 까지 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6. 결론

울릉도까지 항해할 능력이 있는 거문도인들이 그 부속섬인 독도로 항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民國일보(1962. 3. 19)와 조선일보(1963. 8. 11)에서 각각 증언한 거문도인 김윤삼과 박운학 두 노옹(老翁)이 젊은 시절에 어른들을 따라 독도에 간 것은 1895년부터 1903년 사이이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때마침 울릉도를 거점으로 물개잡이가 활기를 띠고, 일본이 독도를 불법 점유한 것은 1905년이므로, 1904년 이후에는 독도에 가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거문도인들이 1903년까지만 갔다고 증언한 것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전혀 모순되지 않고 일치한다.

서해 신의주부터 동해 원산까지 해상교역활동을 한 거문도인들에게 독도로 갈 요인은 충분히 있었다. 울릉도에서는 잡기 어려운 물개잡이를 독도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개기름과 해구신은 고가로 거래되는 상품이였다. 울릉도 수토관(搜討官)이 물개를 총으로 잡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물개기름을 대량으로 판매할 정도로 물개를 잡는 것은 독도까지 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독도에 간 주 목적은 물개잡이이지만, 물개잡이 이외에도 미역·전복도 채취하였으며, 특히 박운학은 독도의 나무를 꺾어서 울릉도에서 배를

만드는데 못으로 썼다고 하였다. 전문가들조차 독도에 나무가 있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 거문도인들이 독도에 나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은, 역설적으로 독도에 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독도에 가 보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문도인들이 증언한 독도의 모습도 실제와 완전히 일치한다. 두 개의 큰 섬과 작은 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증언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거문도인들이 수백 년간 금지령을 어기고 울릉도·독도에 도항한 행위는 고종의 울릉도개척령(1882)으로 모두 사면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울릉도에 오랫동안 살아온 함양인 전석규를 울릉도 도장(島長)으로 임명한 것은 비워둔 섬 울릉도와 독도를 잘 지켜온 공로를, 조선 조정으로부터 사후(事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울릉도개척령 이후에도 대략 1900년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주역은 거문도인이었다.

거문도인들이 오성일 도감을 중심으로, 일본 벌목공들의 목재 침탈에 맞선 싸움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은 우용정의 보고서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비록 울릉도의 나무를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중앙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결과적으로 황성신문 기사(1899.9. 23)와 대한제국칙령 제41호(1900.10.25)가 있기 하는데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울릉도개척령(1882년) 이후, 즉 조선 조정에서 울릉도에 대한 거주를 허용하고 난 후에 거문도인들이 독도에 도항한 것은, 정부의 공인 하에 한 것이므로 사실상 독도를 실효 지배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참고문헌】

『비변사등록』,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竹嶋紀事 I』, 도서출판 지성인.

국사편찬위원회(2003), 『해외사료총서 5-일본외무성의외교사료관소장 한국관계사료목록』

김기주(2012),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울릉도·독도 개척과 전라도인의 활동」, 『大丘史學』제109집, 大丘史學會.

김병열, 노영구, 이상근(2009. 12), 『독도 연구 60년 평가와 향후 연구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수희(2011),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韓日關係史研究』제38집, 경인문화사.

김수희(2011),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 이케우치 사토시의 '석도' 논의를 중심으로」, 『獨島研究』제10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김윤배(2013), 「조선시대 전라지역민들의 울릉도 독도 항해와 경로」, 『독도학회』. 『다산시문집』 제4권, 시(詩)

박병섭(2010),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배성준(2005.6), 「독도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선을 위하여」, 『문화과학』42, 문화과학사.

송병기(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신용하 편저(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3』, 독도연구보전협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편(2018), 『울릉도·독도 관련 거문도 자료. 1』, 선인.

奥原碧雲 著, 유미림 편역(2009), 『독도와 울릉도 번역 및 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外務部政務局編(1955), 『獨島問題概論』, 外務部.

우용정, 『視察委員告示』, 又告示 六月三日.

우용정, 『울도기』, 『鬱陵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 韓日人分日査問』, 六月三日 再次審問 裴季周 及 日人福間等 對質.

이예균, 김성호(2005), 『일본은 죽어도 모르는 독도 이야기 88』, 예나루.

이진명(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정병준(2011), 『독도1947』, 돌베개.

허영란(2006),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제13호, 동북아역사재단.  
호사카 유지, 『대한민국 독도』,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2010, 성안당.

農商務省 水産局(1903), 「韓國鬱陵島漁業の狀況」, 『水産貿易要覽』.  
『원록구명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년).  
兒島俊平(1988), 「隱岐漁民の竹島(鬱陵島)行き」 『郷土石見』21호.  
外務省通商局(1902), 「韓國鬱陵島事情」, 『通商彙纂』第234號.  
外務省通商局(1902), 「鬱陵島現況」, 『通商彙纂』第50號.  
奥原碧雲(1906),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일본 해군수로국(1883년 7월), 『수로잡지』 제41호.  
水路部(1894), 『朝鮮水路誌』, 明治二十七年十一月.  
水路部(1899), 『朝鮮水路誌』第二版.  
岩永重華編(1904), 『最新韓國實業指針』, 寶文館.  
田淵友彦(1905), 『韓國新地理』, 博文館.  
『죽도기사』 원록 6년 9월 4일  
海軍水路局(1883), 『水路雜誌』第16號.  
海軍水路部(1886년 12월), 『寰瀛水路誌』第二卷第二版.

《민국일보》 1962년 3월 19일,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땅". 천석짜리 뗏목배로 내왕」  
《조선일보》 1963년 8월 11일, 「바다의 개척자」  
《조선일보》 1990년 3월 29일, 「이규태코너, 독도의 나무」  
《조선일보》 1991년 1월 6일, 「이규태코너, 물개조약」  
《조선일보》 2004년 8월 10일, 「이규태코너, 물개요리」  
《황성신문》 광무 3년(1899년) 9월 23일, 「울릉도사황」

<Abstract>

## **Port Hamilton people's Dokdo fishery**

- Focusing on the testimony of Kim Yun-sam and Park Un-hak -

**Chung, Tae-Sang**

The People of Port Hamilton had long built ships on Ulleungdo Island, and had hunted of seals in Dokdo. But they left no record. In 1900, the Joseon government banned the shipbuilding on Ulleungdo island. In addition, by the Japanese woodcutter's reckless deforestation, wood was depleted on Ulleung Island. Then, the history of Port Hamilton people's going over to the Dokdo has been erased.

The history became known to the public through media interviews of two old men of Port Hamilton in 1960's. They testified they had been Dokdo until 1903, since 1895. This is consistent with the situation of the time before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 They hunted for seals and gathered seaweed in Dokdo. Seal oil was a high-priced commodity for Port Hamilton people who were engaged in maritime trade.

Port Hamilton people said that Dokdo was 'two large island and several small island, and they 'worked with boat between two large islands'. This statement is consistent with Dokdo's true appearance and adds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Ulleungdo was a treasure island, and Dokdo was hereditary fishing grounds to Port Hamilton people. Not only before but after the Ulleungdo Immigration Order, it was the people of Port Hamilton who played a major role in defending the Ulleungdo and Dokdo. Port Hamilton people's fishing

activity after the Ulleungdo Immigration Order could be interpreted as effective control under international law.

It was also the Port Hamilton people who fought against the Japanese woodcutter on the vanguard. Frequent clashes with Japanese woodcutters drew atten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contributed considerably in promulgating the Korean Empire Ordinance 41 of 1900.

**Key words:** Ulleungdo, Dokdo, Port Hamilton, seals, Takeshima

이 논문은	2019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



[첨부자료 2] 전 거문도 서도리 대표 김병순옹의 거문도인 독도 도항에 관한 기록 2

鬱陵島 檀島

巨文島人들은 1,000년에 鬱陵島를 往來하여 本島의 産物인  
미역 藻草들을 運搬했다

二月이면 西營이 불기온 季節이다 鬱陵島民들은 巨文島人(4인)  
이 慣例로 미역을 採取行役을 한다 乾燥한 미역 藻草는 陸  
地 産物과 外島地에서 船糧을 購買하고 交換하면 便宜로 買을게고  
하여 積累해두는 二月에 鬱陵島로 出航하게된다

島民들은 舟木을 搬船用으로 伐採할때는 獨기로 木부분을 半徑을  
직각에 돌고 ぐるぐる 돌고 몇사람이 잡아안기면 木나무의 반쪽이 갈라진다  
고한다 다음에 舟木材用으로 쓴다고한다

島民들이 들어와서 獨營에서 盜賊을 해간다고한다

巨文島 사람들은 獨島에서 미역도 따고 가지어는 捕獲해서 島를  
내서 農家の需用에 緊要하게 쓴다 元山 城隍까지 木타낸다  
南東地方을 航海하다가 暴風을 만나 巨文島 取縣 伯島에 漂流하여  
島人들과 筆談으로 지내다가 木타낸다

韓半島에 이르면 鬱陵島를 往來가 끊어졌다

解放후 報章에 據한바 國籍不明의 新移民 獨島近海에서  
渡路中の 渡船團에 檢査銃 射撃을 해왔다고 했다 人類로 到區의  
容忍 못할 惡行으로 國府最高會議議長 朴正熙 議長의 建議  
文을 先해서 野蠻行爲을 糾彈하였다

출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편(2018), 『울릉도·독도 관련 거문도 자료. 1』, 선인, p132.

[첨부자료 3] 거문도인들의 울릉도에 관한 소회를 표현한 글

巨文島人云云 撫野陵島云云 이글은 거문도인  
 巨文島(興陽三島)一九六二년五月 鬱陵島赴島의  
 國船不明의 飛行機가 出漁中의 船中에 機銃射擊  
 을 加害하는 事에 朴正熙最高會議議長에게 建議書  
 提出  
 朴正熙議長一九六二年初度視察  
 島民들은 意外의 歡迎一九六三年七月 恩惠不忘  
 碑를 建立  
 一九八〇年 金萬鈞七人 家族脫出 救助 云云 云云  
 巨文島人 日本島取器의 漂流 一九九〇年 聖西

## 조선시대 대일사행과 울릉도 · 독도\*

정 훈 식\*\*

### 〈목 차〉

1. 머리말
2. 조선시대 대일사행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 독도
3. 조선시대 대일사행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 독도의 의미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시대 대일사행기록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 관련 기록을 살펴본 논문이다. 울릉도 독도 관련 기록은 1617년 회담검쇄환사 종사관 이경직의 『扶桑錄』과 1719년 통신사 필담창화집 『桑韓星槎餘響』, 그리고 계미통신사행을 통해 저술된 성대중의 『日本錄』과 원중거의 『和國志』, 마지막으로 1882년 수신사행을 기록한 박영효의 『使和記略』에서 확인된다. 비록 소략하지만, 울릉도 독도에 대한 대일사행의 인식과 대일사행이 오간 시대의 양국의 인식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먼저 이경직의 『부상록』에 보이는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 대마도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전후 공식적으로는 두 나라의 국교재개를 위해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선초부터 드러낸바 있는 울릉도를 점거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는 대마도를 분명히 인식케 하는 기록이다. 둘째로 필담창화집 『상한성사여향』에 보이는 조선지도는 울릉도 우산도를 명칭과 함께 분명하게 표기해둔 기록이다. 이는 당시 에도시대 막부와 긴밀히

\* 이 논문은 대구한의대학교 독도 · 안용복연구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2019. 10. 24.)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객원교수 / hunsik26@hanmail.net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이 간행한 책이라는 점에서 당시 일본의 영토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계미통신사 사행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성대중과 원중거의 기록에 나오는 울릉도·독도 기록은 안용복, 대마도 관련 내용과 얽혀 전한다. 사행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마도의 농간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과거 안용복의 울릉도·독도 사건이 다시 호명된 것인데, 곧 두 사람은 조선이 앞으로 일본과 대마도를 구별해서 봐야 하며 특히 대마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대마도가 울릉도를 점거하려는 야욕을 안용복이 겪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영효의 『사화기략』에 전하는 기록은 에도막부의 울릉도·독도해금지령이 메이지유신 이후 해이해져 울릉도·독도로 도해하는 일본인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 시기는 메이지 정권이 울릉도·독도에 관해 에도막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시기임을 반영하지만, 머지않아 독도 점거를 감행하는 메이지정권의 조치를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오늘날 독도와 관련하여 한·일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근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대일사행기록, 울릉도, 독도, 부상록, 상한성사여향, 일본록, 화국지, 사화기략

##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시대 대일사행과 울릉도·독도<sup>1)</sup>의 관련성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둔다. 조선시대의 대일사행에서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양상으로 전해오는가? 우선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조선시대 대일사행이야말로 대일 외교정책의 중심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기록을 먼저 살피고 정리하여 구체적으로는 대일

1) 메이지 초기까지 논쟁의 주 대상은 울릉도였으며, 독도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전후에 비로소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정영미,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2015, 165쪽. 기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도 울릉도와 관련된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용복의 울릉도 쟁계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울릉도·독도 쟁계라 해도 무방하다. 나아가 조선 후기 울릉도 쟁계가 곧 현재의 독도 문제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는 공통사안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이 용어로 쓴다.

사행이 울릉도·독도와 관련한 사안을 어떻게 대했으며,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 갔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공식 외교 라인인 조선조정-대마도-에도막부(혹은 조선조정-메이지정부)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울릉도·독도 문제를 공유, 협상, 해결 해갔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지금도 한일외교에서 첨예한 사안으로 부각된 독도 영유권이라는 사안을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 그 시의성과 방법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교적 해법을 포함한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지혜를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대일사행에는 시대별로 조선전기의 사행, 조선후기의 사행, 그리고 강화도조약 이후 파견된 수신사와 조사시찰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은 대일본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교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할 외교사절을 일본에 파견했는데 현재 이를 조선통신사<sup>2)</sup>라 한다. 선초부터 비정례적으로 이루어진 대일사행은 대일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중단되었다. 전쟁이 종결된 후 대마도의 적극적인 국교재개교섭으로 마침내 1607년 회담겸쇄환사를 파견하면서 조일외교가 재개되어 1811년까지 모두 12차례 통신사행이 왕래하였다. 그 이후 대마도와 왜관, 동래를 통한 외교라인이 가동되다가 메이지유신으로 조선과 에도막부사이에 구축되었던 교린체제가 완전히 붕괴된다. 이는 곧 조선시대 대일외교가 전면 재구성되어야 할 시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강화도조약을 맺고 조선은 메이지 일본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는데, 이는 이전의 교린체제(대일사행)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이에 미처 준비되지 않은 조선 조

2) 명칭에 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최근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한 대일사행 기록의 유네스코등재를 기점으로 '조선통신사'라는 용어가 정착되는 단계다. 그렇다고 그 용어의 정합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나, 일단 여기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정은 일단 기존 사행의 전례를 대거 참조하여 대일외교 사절을 보내는 데, 이것이 1876년부터 1882년까지 4차례 다녀온 수신사행이다.<sup>3)</sup>

시기적으로 울릉도·독도 사안이 조선조 전 시대를 걸쳐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대일사행이라고 하면 조선 왕조 전시대에 걸쳐 일본에 다녀온 사행을 말하며, 이를 통해 기록된 자료에서 울릉도·독도를 언급했거나 현안으로 다루며 해결하는 과정을 모두 살필 것이다. 다만 조선시대 대일사행은 정례화되지 못하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협의를 거쳐 파견 여부를 결정하였기에 울릉도·독도 사안이 발생한 때와 꼭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대마도와 동래를 통해 기민하게 오가는 외교업무기록에 훨씬 풍부한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기록은 여기서는 제외한다.

대일사행기록은 다양하다. 공적인 기록은 물론, 사행원 개개인이 남긴 통신사행록이나 수신사행록, 그리고 일본의 문사와 주고받은 필담창화집 등 체제와 내용이 서로 다른 기록이 풍부하다. 본고에서는 공적인 기록은 제외하고 통신사행록과 필담창화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조선시대 대일사행기록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조선시대 대일사행에서 울릉도·독도는 얼마나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 조선시대 대일사행에서는 대부분 통신에 관한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순탄하게 왕래한 것만은 아니다. 일본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때로는 통신의 틀이 깨질 위기에 이르는 때도 많았다. 이를 극복하고 통신 혹은 수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통신사기록에 자못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울릉도·독도

3) 조사시찰단과 갑신정변 사후 처리를 위하여 1884년에 보낸 사행까지 포함하여 6차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효정,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기록의 범주와 유형」, 『동북아문화연구』 45집, 동북아문화학회, 2015.

관련 기록도 풍부하게 살필 수 있으리라 여겼지만 기대만큼 확인되지는 않는다. 살펴본 결과를 아래에 제시한다.

### 1) 1617년 회담검쇄환사의 『扶桑錄』

가) 마도가 蟻竹島에 가서 형편을 탐지하고 오겠다 하므로, 할 수 없이 배 6척을 준비하여 바람을 기다려 들여보냈더니, 1척만 겨우 도착했는데 과연 彌左의 蹤跡이 있었고, 나머지 배들은 모두 딴 곳에 떠돌다가 돌아왔다. 마침 이때에, 東萊府에서 문서를 부쳐 국경을 침범한 잘못을 통절하게 힐책하므로, 마도 사람들이 이 때문에 들어가서 家康의 언사와 기색이 화평한 때를 엿보아, 蟻竹은 본시 조선 강토 안쪽인 것을 상세히 말하고 온갖 수단으로 주선하여 겨우 정지시켰다. 또 왜인들이 매양 耽羅를 침범하려고 하였고, 가강도 또한 그런 뜻이 없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중지했으나, 작은 섬이 지금까지 보전된 것은 다행이라 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지난 일을 와서 말하여, 공을 마도에 돌리려는 뜻인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sup>4)</sup>

나) “예전 秀吉이 있을 때입니다. 왜인 하나가 蟻竹島에 들어가서 材木과 갈대를 베어 오기를 자원했는데, 혹은 참대[筥]처럼 큰 것이 있으므로 수길이가 크게 기뻐하고 이어 ‘蟻竹彌左衛門’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고 따라서 미좌에게 그것으로 생활하게 하고 해마다 바치도록 정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수길이가 죽고 미좌도 잇따라 죽으므로 다시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가강이 이 말을 듣고 먼저 와서 뵈옵도록 했던 것입니다.”<sup>5)</sup>

이 기록은 『부상록』에 전하는 내용이다. 『부상록』은 1617년 제2차 회담검쇄환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을 다녀온 李景稷(1577-1640)이 저술한 통신사행록으로, 7월 4일 부산에서 일본으로 출발하기 3일 전부터 시작

4) 『扶桑錄』, 1617년 10월 1일(임술), 고전번역원.

5) 『扶桑錄』, 1617년 10월 5일(병인), 고전번역원.

하여 10월 18일까지의 일정을 기록했다.

이 시기의 조일관계의 현안은 국교재개와 교린관계 회복, 그리고 임란포로쇄환에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교재개를 위한 협상을 통해 1607년 처음으로 회답검쇄환사를 보낸 뒤, 10년 만에 다시 회답검쇄환사를 다시 보낸다. 그리고 1624년에는 3차 회답검쇄환사를 보내는데, 이 시기까지는 대개 교린체제 모색기라고 부른다.<sup>6)</sup>

양국은 이 시기에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국교를 재개하기로 하고 사행을 초청하고 파견하였는데, 일본은 새로 들어선 德川 막부가 대내적으로 지역의 다이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와, 대외적으로 막부 정권의 수립을 천명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하였으며, 조선도 대외적으로 북방 여진족의 흥기에 따른 정세불안 속에서 남방(일본)의 정세 안정이 시급한 사안으로 제기되었으며, 또한 임진왜란 때 끌려간 포로를 데리고 와야 한다는 국내요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도쿠가와 막부의 국교재개 요청에 응하되,<sup>7)</sup> 그 선결조건으로 임진왜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로쇄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이 3차례의 사행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울릉도·독도는 현안으로 부각될 사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교린관계 복원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일 뿐이다. 실제로 이 시기 통신사행록에는 대체로 포로쇄환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부상록』에도 시종일관 포로쇄환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매일의 일

- 
- 6)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박사논문, 1995, 41쪽.  
 7) 그러나 사실상 이는 대마도의 국서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애초에 왜란 이후 통신사행이 재개된 배경에는 대마도주 宗義智·宗義成 부자 및 그 가신 柳川景直·柳川調興 부자의 모략이 개입되어 있었다. 즉, 1606년 대마도에서 파견한 橘智正의 화의 요청에 조선에서는 그 전제로 德川家康의 국서를 요구하였고, 굴지정이 다시 와서 가강의 국서를 전달함으로써 비로소 1607년 회답검쇄환사 파견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국서는 대마도에서 위작한 것이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국서를 조작하고 개찬하였는데 이를 유천조흥이 폭로하여 막부에 불려가 판결 받은 사건이 바로 국서조작사건이다. 일본에서는 이를 ‘柳川一件’이라 부른다. 三宅英利, 손승철 옮김,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편, 1991, 177-185쪽 참조.

정이 그려져 있다. 그럼에도 대마도가 울릉도를 점거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을 포착하고 이를 기록해 놓은 것은 교린체제 모색기라는 조심스러운 시기에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울릉도 쟁계와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기록이다. 위에 인용한 두 기록은 모두 임진왜란 직후 대마도의 울릉도 점거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가)는 7월에 떠난 사행이 8월 26일 교토 伏見城에서 에도 막부 2대 쇼군 徳川秀忠(재위 1605-1623)을 만나 국서를 주고받은 뒤 귀국길에 올라 名護屋 근처 神集島 포구에 정박하는 동안의 기록에 전하는 내용이다. 이때까지 오로지 포로쇄환에 관한 내용으로 점철된 기록에서 갑자기 대마도인의 울릉도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의외의 일이다. 대마도 왜인이 울릉도를 조사하고자 배를 띄우려고 하였는데 이를 허락하니 출항한 배 6척 가운데 1척 만 울릉도에 갔다 돌아왔다고 하였다. 이때 동래에서 서계로 이를 항의하자 대마도가 家康에게 의죽도가 조선의 강역임을 잘 말해 그러한 일을 중지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즉 대마도는 울릉도를 조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통보하고 배를 띄우려하자, 조선이 동래부사를 통해 일본에 항의하니, 이에 대마도는 에도 막부가 알면 큰 화를 당할까 우려하여 간사하게 그들이 먼저 울릉도 도해금지를 막부에 건의하고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대마도가 겉으로는 조·일간 국교재개를 중개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울릉도에 도해하여 벌목과 어로를 하고자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폭로한 내용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행 와중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내용으로 보건대 이는 다음 기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는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 한다. 동해 가운데에서 울진현을 마주하고 있다. 섬 한가운데 큰 산이 있고 사방 백리이며 바람이 순조로울 때 2일이면 닿는다.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이라 불렀으며 신라에

항복하고 토산물을 조공했다. 고려 태조 때에는 섬사람들이 방물을 바쳤으며, 우리 태종조에는 안무사를 파견하여, 백성을 데리고 나와 섬을 비웠다.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우며, 대나무가 깃대처럼 크고, 쥐는 크기가 고양이만하며, 호두도 되만큼 크다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 가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왜의 분략질을 당하여 인가의 연기가 사라졌다. 근래 들으니 왜놈들이 의죽도를 점거했다한다. 혹 기죽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곧 울릉도다.<sup>8)</sup>

李睟光(1563-1629)의 『芝峯類說』에 보이는 대목인데, 이 책이 1614년에 저술되었으니 여기서 임진왜란 이후에 왜인이 울릉도를 점거했다는 사건은 적어도 이 이전의 일이다. 실제 이해에 대마도는 울릉도에 집단이주하기를 조선에 청원했으며, 조정은 동래부사를 통해 일인지하 거절할 일이 있다. 그러니 가)의 내용은 이 사건과 유관할 것이다.

나)는 이경직이 포로쇄환에 매진하며 돌아와 대마도에 머물던 중 대마도주의 가신 平調興이 말한 내용이다. 豐臣秀吉이 정권을 잡고 있던 때에 왜인이 의죽도 즉 울릉도에 들어가 대나무를 베어 오자 의죽미좌 위문이란 이름을 내리고 해마다 울릉도에서 베어온 나무를 바치도록 했다는 것인데, 수길이가 전국을 통일한 때로 잡는다면 1590-1598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며, 임진왜란을 제외한다면 전쟁 전 2년 사이의 일이다. 이 기록 또한 왜인들의 울릉도 점거 야욕을 기록한 몇 안 되는 통신사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선초에 이미 울릉도 이주 욕망을 드러냈던 대마도가 이때부터 그 욕망을 실현할 구체적인 행동에 옮겼음을 알 수 있다.

8) 『芝峯類說』 권2, 「地理部」, <島>, “蔚陵島一名武陵, 一名羽陵. 在東海中, 與蔚珍縣相對. 島中有大山, 地方百里, 風便二日可到. 新羅智證王時, 號于山國, 降新羅納土貢. 高麗太祖時, 島人獻方物, 我太宗朝, 遣按撫使, 刷出流民空其地. 地沃饒, 竹大如杠, 鼠大如猫, 桃核大於升云. 壬辰變後, 人有往見者, 亦被倭焚掠, 無復人烟. 近聞倭奴占據磯竹島, 或謂磯竹, 卽蔚陵島也.”

## 2) 1719년 기해통신사행의 필담창회집 『桑韓星槎餘響』

그 다음 울릉도·독도 관련 기록은 한 세기가 지나서야 보인다. 1719년 기해통신사행은 9차 통신사행으로 에도막부 8대 쇼군 德川吉宗(재위 1716-1745)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파견한 사행이다. 이 사행을 통해 저술된 申維翰(1681-1752)의 『해유록』은 통신사행록의 대표작이라 평가된다. 사실 이 시기는 안용복이 일본에 도해하여 울릉도·독도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에도막부로부터 확답을 받은 시점에서 멀지 않지만,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일본 승려 性湛<sup>9)</sup>이 펴낸 필담창회집인 『桑韓星槎餘響』<sup>10)</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또한 문자기록이 아닌 그림(지도)으로 전해온다.



『상한성사어항』의 조선지도 중 <팔도총도>(좌)와 <강원도>(우). 두 지도에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지명이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다.

- 9) 신유한은 『해유록』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해유록』 1718년 6월 27일, “장로의 이름은 성담이고, 자는 月心이며, 호는 可竹이다. 진승원의 하상으로서 명을 받들고 온 것인데, 지금 임기가 차다. 위인이 옛 태가 있어 단아하였고, 불경을 널리 통하여 마주 앉았는데 오랑캐의 속된 기색이 없었다.”
- 10) 이 책은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이란 장서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총독부 소장 도서였다가, 후에 이관되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성담은 以酌庵<sup>11)</sup> 소속 승려로 1719년 중앙절에 제술관 신유한을 비롯하여 삼사의 서기 姜栢(1690-1777), 成夢良(1673-1735?), 張應斗(1670-1720?) 등과 필담창화를 하고 이를 모아 교토의 柳枝軒<sup>12)</sup>에서 이 필담창화집을 편찬하였다.<sup>13)</sup> 이듬해(1720) 봄 유지현의 운영자 茨城多左衛門(茨城方道)은 이 책에 조선 팔도지도를 첨부하여 다시 간행하였는데 이 지도가 주목된다. 자성방도가 덧붙인 지도는 <八道總圖>를 포함하여 팔도지도 9장을 발문<sup>14)</sup>과 함께 실었는데 특히 <팔도총도>와 <강원도>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 이는 에도막부의 울릉도·독도의 귀속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다. 즉 이정암에 파견된 승려는 에도막부가 국서조작사건 이후 조·일간의 외교문서 작성을 위해 직접 파견한 교토오산 출신의 승려들이며, 또한 유지현도 德川御三家의 하나인 水戶德川家 장판서의 영향 아래 있는 서점이라는 점을

- 
- 11) 이정암은 대마도에 있는 사찰로 조선과 일본의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곳이다.
- 12) 이 서점은 교토 六角通 御幸町 西入町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7세기 중반부터 메이지시대까지 운영되었다고 한다. 박희병·이효원 외, 『18세기 통신사 필담』 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241쪽 참조. 신유한은 오사카에서 이 유지현을 목격하였다고 기록해두었는데, 아마도 지점이나 분점으로 보인다. 『해유록』, 1719년 9월 4일, “그중에 書林·書屋이 있어, 柳枝軒·玉樹堂이라고 써 붙었는데, 고금의 百家書籍을 저장하고 출판 판매하여 다시 사들여 쌓아 두었고 중국의 책과 우리나라 여러 先賢의 전술한 글들이 없는 것이 없었다.”
- 13) 성담은 중앙절을 맞는 즐거움, 琵琶湖, 富士山 등에 관해 시문창화를 하고, 신유한과는 특별히 箱根嶺, 湖邊客舍, 白水坂 등에 대해 시를 주고받았다.
- 14) 발문은 다음과 같다. “내가 시중에 조선 팔도 지도를 얻어 광 속에 깊이 간직해 온 지 오래되었다. 그 발어를 읽어본 즉, 이 지도 한 책은 동국방여승람에 근거하여 털끝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렸다. 일찍이 조선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 지도가 가장 좋다 하니, 이 책만이 진짜요, 다른 지도는 저 땅의 군현리정에 그 차이가 없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이 때문에 진정 이렇게 말할 것이니, 호사의 일조가 없을 수 없어, 이 때문에 이 책의 뒤에 붙여 사방에 공표하는 것이다. 경자(1720) 초봄, 평안성서포, 유지현 자성방도 씀.” 고운기 역주, 『桑韓星槎答響·桑韓星槎餘響』, 보고사, 2014, 170쪽. 이로 보면 자성방도는 오래전에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지도를 이미 구해두었다가 이 책을 펴낼 때 붙인 것으로 보인다.

감안한다면 이 지도는 사실상 에도 막부의 영토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따라서 이 시기 그 어떤 기록과 비교해도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한편 이번 사행에 참여한 신유한이 『해유록』에서 일본을 총평한 대목이 주목된다.

나로써 추측하건대 인간에 액운이 닥쳐서 수길 청정과 같은 적이 다시 그 땅에 나지 아니한다면 우리 국가의 변방의 걱정은 만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관시를 통한 이래로 대마도의 교활하고 간사한 것이 한이 없어 관역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많은데도 조정에서는 매양 은혜로 후하게 대접하여 조그마한 섬의 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호리를 다투어 이기고야 말도록 만들었으니, 실무를 아는 이는 마땅히 보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sup>16)</sup>

이 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신유한은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이나 가등청정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라의 변방은 걱정할 것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았을 시기 새롭게 들어선 에도 막부의 심중을 이해하기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던 17세기와 달리 에도막부 시기 일본의 정세를 매우 긍정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반면 국교재개시부터 줄곧 문제를 일으킨 대마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계심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점점 강화되어 후대 사행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재미통신사의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5) 이와 비슷한 시대에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를 보더라도 울릉도 독도는 자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1655년 <쇼호 일본지도>, 1702년 <겐로쿠 일본지도>, 1717년 <교호 일본지도>, 1779년 <개정 일본여지료전도> 등의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시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16) 『해유록』 하, 「문견잡록」, 고전번역원.

### 3) 1764년 계미통신사행의 『日本錄』과 『和國志』

계미통신사행을 통해 저술된 통신사기록은 대략 14편으로 조선후기 12차례의 통신사행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다.<sup>17)</sup> 그 가운데 울릉도·독도 관련 기록은 成大中(1732~1809)의 『일본록』과 元重擧(1719~1790)의 『화국지』에서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책에 실린 기록은 모두 안용복과 대마도와 관련된 내용이 얽혀 있다. 또한 그 기술된 양상도 앞서 살펴본 기록과 달리 단편적이지 않고 매우 자세하고 분량 또한 자못 길다.

우선 성대중의 『일본록』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용복에 관한 일을 한편의 글로 수록했다. 여기서 성대중은 안용복의 도해 사건의 시말을 서사적 필치로 자세하게 그렸다. 그런 다음 안용복에 대한 평가를 한 마지막 부분이 주목된다.

이때 모든 일이 용복에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까닭에 왜인들이 모두 그를 미워하여 용복이 대마도를 경유하여 길을 가지 않은 것으로 죄를 묻고 나섰다. 옛 조약에 대마도로부터 부산으로 가는 한 길 이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조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의 의론이 모두 용복을 마땅히 참수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영동녕 윤지완과 영중추 남구만이 그를 죽인다면 다만 대마도인들의 마음만 통쾌하게 해줄 것이요, 또 그 사람됨이 죄가 많고 민첩하니 두었다가 훗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귀양 보내는 선에서 처리하였다. 조정에 서는 또 무신 장한상을 보내어 가서 울릉도를 살피게 하였다.<sup>18)</sup> 이로

17)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사, 2006.

18) 장한상은 1682년(숙종 8) 통신사를 수행하여 일본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 그리고 안용복 도해사건이 일어나자 남구만의 건의로 울릉도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고 1694년(숙종 20) 울릉도 수토관으로 임명되어 이해 9~10월에 울릉도 지역을 조사하고 돌아와 조정에 보고하였다. 조선초기부터 시행한 쇄환정책을 전환하여 사실상 이때부터 울릉도에 대한 수토정책이 시작된 중요한 조사였다. 즉 안용복의 도해는 울릉도에 대한 조선 조정의 정책전환을 이루어낸 사

부터 법을 정하기를 월송의 만호와 삼척의 영장이 매번 5년마다 1번씩 교대하기로 하였으니, 왜인들이 지금까지 다시는 울릉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못하는 것은 다 용복의 공로다.

효효재 김용겸 공이 일찍이 『춘관지』라는 책이 좋다고 내개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예조에서 구하여 보았는데 이맹휴가 엮은 것이다. 상권에는 제사의 의식에 대한 것을 실어 놓았고, 하권에는 사대교린의 절목에 관한 것을 실어 놓았는데, 맨 끝에다 <안용복전>을 실어 놓았다. 용복은 동래의 평범한 백성으로 왜국과 울릉도를 가지고 다룬 일로 인하여 전하게 되었다. 울릉도는 본래 우리 땅인데 왜국의 어부들이 함부로 점거하여 고기 잡으러 들어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리어 잡혀서 욕을 당하였다. 용복이 매우 분노하여 이에 고기잡이 장정들을 결성하여 가서 쫓아내고 왜국에 들어가서는 백기주 태수와 대등한 예로 분기탱천하여 강하게 변론하였다. 왜국이 굴복시킬 수 없어서 마침내 울릉도를 돌려주었으니 그 일이 참으로 장하고 위대하나, 그러나 왜국과의 교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맹휴가 책의 맨 끝에 엮어 놓은 것은 반드시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sup>19)</sup>

성대중은 안용복을 가리켜 왜인들이 더 이상 울릉도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한 공로가 있다고 그 활약을 높이 평하였다.<sup>20)</sup> 주목할 점은 대마도 인이 그를 미워했다는 대목이다. 울릉도·독도를 오래전부터 주시하면서 호시탐탐 노리던 대마도 인들에게 안용복은 원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건이라 할 수 있다.

- 19) 성대중 지음, 홍학희 옮김, 『일본록-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안용복의 일을 덧붙이다>, 소명출판, 2006, 189-193쪽.
- 20) 기실 이 점은 현재에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에도막부의 서계를 받고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한 일이 현재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용복에 대한 연구는 두 나라의 인식편차가 너무 큰 상황이다. 안용복에 대한 공동 이해와 인식이 독도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병우, 「일본이 기억한 안용복-『竹島紀事』와 『竹島考』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66, 한국일본문화학회, 2015, 83-103쪽 참조.

이 대목은 울릉도·독도와 안용복의 도해를 둘러싼 두 나라의 세 주체, 즉 조선-대마도-에도막부의 인식과 대응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은 국교를 재개하여 교린(통신)관계를 맺고 있었다. 대마도는 여기서 양국의 관계에 실무적 중개임무를 맡아서 수행했다. 양국은 두 나라의 평화로운 관계를 훼손할 그 어떤 행위도 경계하며, 오로지 통신의 유지와 지속을 위한 일처리를 강조했다. 그런데 안용복의 도해는 두 나라의 교린관계를 위협하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성대중은 이 일을 두고 “교린에는 도움이 없었”다고 한 것이다. 그 스스로 교린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통신사 수행원을 발탁되어 일본에 파견되었으니 누구보다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대중은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각별하게 안용복에 관한 일을 서술해놓았을까? 여기서 대마도를 주목해야 한다. 성대중이 안용복과 대마도를 특별히 대립시켜 부각해놓은 것은 교린관계를 흔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대마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교린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마도가 역설적으로 교린관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주범이었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李孟休(1713-1750)가 <안용복전>을 지어 『춘관지』의 말미에 수록한 것은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이맹휴는 아마도 에도막부와 교린관계를 유지코자 한다면 대마도가 일으키는 여러 교활한 책동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사대교린의 절차를 기록한 『춘관지』의 마지막에 <안용복전>을 배치를 통해 암시하지 않았을까? 교린관계를 유지하고 훼손하지 않으려면 대마도를 무엇보다 경계해야 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교린관계를 일부 훼손할지언정 안용복처럼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 또한 이 깊은 뜻에 담겨있다고 보인다.<sup>21)</sup>

21) 필자는 이 대목에 관한 분석을 이미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으나, 다시 해석해보았다. 정훈식, 「조선후기 일본론에서 대마도와 안용복」, 『역사와경계』 89, 부산경남사학회, 2013, 162-163쪽.

성대중과 함께 계미통신사행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원중거도 『화국지』에 <안용복전>을 수록해 두었다. 이 작품은 성대중의 기록보다 서사적 전개가 풍부하고 생생하지만, 논지는 성대중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주인공 안용복의 적대자로 대마도를 설정한 것은 역시 대마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설정이다.

당시 대마도의 왜구는 울릉도를 가리켜 죽도라 하며 산음도 백기도에 속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왜구들은 백기주 태수를 꺾어 사람들을 번갈아 가며 울릉도에 보내 물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캐갔다. 그러던 중 안용복을 보고 도리어 국경을 침범했다고 하여 그를 묶어 대마도관청으로 잡아갔다. …… 이 무렵, 대마도의 왜구가 연일 동래의 왜관에 가서 울릉도가 죽도라고 억지를 부렸다. 왜구들은 일이 이루어지면 마땅히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해산물과 대나무의 이익을 독차지할 수 있었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동래부의 제사에 제공되는 물품을 속여 팔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2)</sup>

원중거의 서술을 통해 안용복이 바라본 대마도의 계략은 거의 적중했다. 대마도인이 울릉도를 점거하려는 계략을 품고 갖은 술수를 부리며, 설사 울릉도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분란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동래부를 협박하여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대마도가 그러한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계미통신사행을 통해 분명히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신유한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사행록을 남긴 저자들이 감지한 부분이다. 대마도의 이런 행태는 매우 낮은 점이 있는데 바로 오늘날 일본 중앙 정부가 독도를 두고 벌이는 갖가지 행태와 닮았기 때문이다. 이 점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겠다.

22) 원중거, 『화국지』, 「안용복」. 여기서는 다음 번역본을 인용했다. 진재교 편역, 『알아주지 않은 삶』(태학사, 2005), 29-33쪽.

원중거는 이 책의 다른 곳에서도 대마도가 울릉도·독도에 대하여 벌인 여러 도발적 행위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안용복의 도해를 기점으로 울릉도에 대한 정책을 쇠환정책에서 수토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sup>23)</sup>

#### 4) 1882년 수신사행의 『使和記略』

조선통신사의 기록에서 확인된 것은 필자의 과묵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이상이다. 그 다음은 수신사행록에서 살필 수 있는데 朴泳孝(1861~1939)가 남긴 다음 기록이다.

내가 또 외무경에게 말하기를,

“폐방 松島의 재목은 禁養하여 수호한 지가 수백 년이나 되었는데, 귀국의 민간인들이 몰려와서 斫伐하는 까닭으로 조정에서 관원을 보내어 순찰·검사한 것입니다. 인접한 지경을 규찰하는 일을 만약 중지하고 금지하지 않는다면 사단을 일으킬까 염려되니, 몰래 작별하는 것을 엄금하도록 청합니다.”

하니 외무경이 말하기를,

“이 일로 해서 일찍이 귀 조정에서 통보가 있었으므로 이미 금령을 엄중히 지시했는데, 만약 또 그전과 같이 몰래 작별을 한다면 귀국에서 부근 항구의 일본 영사관으로 잡아 보내어 懲治하는 방법을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弊邦이 장차 이 섬(松島)에서 起鑿하려고 백성을 모집하고 있으니 몰래 재목을 작별하는 문제는 지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였다.<sup>24)</sup>

23) 원중거, 『화국지』, 「왜관의 사실」, 소명출판, 2006, 416-418쪽.

24) 박영효, 『使和記略』 1882년 9월 21일, 고전번역원. 한편 최근 번역본으로 간행된 책에서는 ‘송도’에 注하기를 ‘부산의 송도’라 했지만, 이는 오류로 보인다. 이효정 옮김, 『사화기략』, 보고서, 2018, 63쪽. 왜냐하면 이때 박영효의 요구로

이 기록은 『사화기략』에 있는 대목이다. 1882년 6월에 일어난 임오군란의 주동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손해 배상을 하라는 일본의 압박에 조선은 제물포조약을 맺으며 사태를 수습하였다. 아울러 이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기 위해 이해 8월 일본에 사행을 파견하는데, 이 사행에 박영효는 대조선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임명되어 일본에 다녀온 뒤 『사화기략』을 남긴다. 박영효는 일본에서 제물포조약을 보완 수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이는 오로지 국서전달이라는 이전의 사행의 임무 외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사행의 역할로 박영효는 다양한 현안을 협상하여 처리하고, 심지어 일본에 주재하는 서양 외교관과도 적극적으로 만났다. 그의 이러한 폭넓은 외교활동은 당면한 울릉도·독도와 관련된 현안까지 미친다. 박영효는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몰래 들어와 벌목을 하는 일을 일본 외무경에게 알리고 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여기서 송도라 함은 독도를 지칭하는 듯 하지만 내용상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외무경은 울릉도에 들어간 자국민을 잡아 일본 영사관으로 보내면 처벌하겠다는 답을 하였다. 이는 강화도 조약 전후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정립기라는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인이 다시 울릉도를 침범하여 벌목 어로활동을 벌이는 일이 빈번해진 상황과 관련 있다.

방금 강원 감사 林翰洙의 장계를 보니, ‘鬱陵島搜討官의 보고를 하나 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看審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어 해안에 쌓고 있었는데,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7명이 그 곁에 앉아 있기에 글을 써서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일본 사람인데 나무를 찍어

---

당시 외무성 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가 1882년 12월 16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은 「鬱陵島渡航禁止建議文」을 태정대신에게 올리는데, 이 문건이 현재 독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화기록과 이 문건의 관련성을 살피건대 시기나 문건작성의 주체 등에 근거해보면 박영효를 비롯한 조선조정의 요구로 작성된 문건임이 확실해 보인다.

원산과 부산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선박의 왕래가 근래에 빈번하여 이 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통리기무아문으로 하여금 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sup>25)</sup>

1881년 새로 구성된 기구인 통리기무아문에서 1882년 고종에게 울릉도·독도에 관해 건의한 내용의 일부다. 이미 영조 때 이미 쇄환정책을 폐기하고 수토제를 실시하고 있던 조선은 강화도 조약 후 울릉도 수토관이 올린 새로운 보고가 통리기무아문에 접수되고 아문은 이를 고종에게 보고하였다. 울릉도에 일본인이 들어와 벌목하고 있다는 보고가 그것이다. 고종은 이를 계기로 새롭게 조성된 상황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더욱 자세히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이규원은 이듬해 1882년 4월 7일 울릉도를 조사하기 위해 출발하기 전 고종을 알현하고 하직인사를 할 때 고종은 특히 자세히 감찰할 것을 명한다.<sup>26)</sup> 이 때 고종은 울릉도·독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고을을 세울 계획(設邑爲計)”이다. 이는 곧 울릉도의 수토제를 폐지하고 울릉도 개혁계획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규원의 울릉도·독도 검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그렇게 하여 이규원은 울릉도를 직접 검찰한 뒤 같은 해 6월 16일 고종에게 복명하고<sup>27)</sup>, 8월 20일 영의정 홍

25) 『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1881) 5월 22일,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하다>

26)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1882) 4월 7일, <검찰사 이규원을 불러 만나다>, “울릉도에는 근래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상으로 왕래하면서 제멋대로 편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송죽도와 우산도는 울릉도의 곁에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슨 물건이 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번에 네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골라서 임명한 것이니 각별히 감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고을을 세울 생각이니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지에다가 자세히 적어 보고해야 할 것이다.”

27) 『고종실록』 18권, 고종 19년(1881) 6월 16일, <일본인의 울릉도 벌목을 금하는

순목이 고종에게 울릉도 개척을 건의하고 고종이 윤허하면서 울릉도 개척 계획이 최종확정 되었다.<sup>28)</sup>

위 박영효의 기록은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조정에서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울릉도에 일본인이 들어와 벌목하는 일이 그치지 않자 조선 조정은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며 서한을 보내었다. 그럼에도 일본인의 울릉도 벌목이 그치지 않자 박영효는 수신사로 직접 일본에 가서 일본 외무경에게 이 사안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일본 외무경이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었지만, 주목할 점은 이것이 사행에서 조선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울릉도·독도 사안을 다룬 최초의 사례라는 점이다. 사행이라는 공식적인 외교 관리가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 관리에게 최초로 울릉도·독도 사안을 제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이전의 대일사행에서 기록한 울릉도·독도 사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3차 수신사가 이전의 통신사와 다른 면모라 할 수 있다.<sup>29)</sup>

### 3. 조선조 대일사행기록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의 의미

앞서 살핀 기록을 바탕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

---

공문을 보내다>.

- 28)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1881) 8월 20일, <영의정 홍순목이 울릉도 개발을 건의하다>.
- 29) 이러한 측면에서 박영효의 활동은 使行이 아닌 外交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 사행은 전통시대의 事大交隣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신의 행차로 임무를 부여받은 신하에게 실질적인 전권이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만국공법체제에서의 외교는 국가와 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에 의해 국제관계가 처리되었으며 대사나 공사에 의하여 그 관계가 조정되기도 하였다. 이효정, 「19세기 후반 조선 지식인의 독립 국가 지향-박영효의 『사화기략(使和記略)』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2집, 한국고전문학회, 2017, 244쪽.

보고자 한다. 첫째는 조일관계의 핵심적인 담당자들이 남긴 기록에 한일 관계의 쟁점중 하나인 울릉도·독도 사안이 왜 이렇듯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이 기록에서 유추할 수 있는 대일사행의 울릉도·독도 사안에 대한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

첫째 문제에 대하여 방대한 대일사행 기록에서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은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앞서 거론한 기록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한일관계의 대표적인 담당자들이 남긴 대일사행기록에서 왜 울릉도·독도 사안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빈약한가?

두 가지 면에서 이유를 살필 수 있는데, 우선 에도 시대에 울릉도·독도의 영토 귀속 문제는 대마도와 시마네 현 외의 지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곳은 생존을 위해서 울릉도·독도를 드나들면서 어획을 몰래 해오며 급기야 섬의 점거를 위한 계략을 꾸며왔지만,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통신사의 노정에 따르면 대마도 외에는 울릉도·독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노정을 지나는 사행으로서는 그 지역 자체의 관심사와 전문 등을 중심으로 여정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관련기록이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그나마 앞서 살핀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노정에 대마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행이 부산에서 배를 띄워 대마도에 거의 다다르면 그때부터 대마도가 사행을 수행하여 에도에 다녀온다. 왕래기간 대마도가 거의 모든 노정을 수행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마도의 행태를 보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앞의 네 기록 중 두 기록이 대마도와 관련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둘째, 대마도와 오늘날 시마네현, 돗토리현에 해당하는 은기주, 백기주 등에서 발생한 울릉도·독도 쟁계는 에도 막부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정리하여 더 이상의 논란을 키우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신사행록에서는 물론 사행노정에서 이루어진 필담창화에서 울릉도·독도를 거론하는 자

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필담창화집에 수록된 조선팔도지도에서 보듯 두 섬이 조선에 속해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sup>30)</sup> 그 만큼 조선후기(에도시대) 양국 관계에서 울릉도·독도 사안은 외교현안으로 부각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는 에도막부에서 빠르게 결정하여 오늘날 시마네현에 속하는 지역과 대마도를 통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메이지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새롭게 조일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틈을 타 그전까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에 의해 억제되었던 대마도와 시마네현 중심의 일본인들이 울릉도·독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벌목과 어로활동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으로 메이지 정부 내에서도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 바로 『사화기략』이다.

조선시대 대일사행의 기록에서 울릉도·독도 사안에 관한 사행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행에서 이에 관한 실질적인 역할은 미미하였다. 이것은 통신사 고유의 업무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사행의 왕래는 오로지 교린에 목적이 있으며 그 외의 일은 부차적인 일이거나, 고유한 목적에서 벗어난 일이다. 따라서 영토와 관련된 일은 당연히 통신사 고유의 목적과 업무에서 벗어난 일이다. 통신사를 기록한 여러 문헌에 울릉도 관련 사안이 극히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특히 계미통신사행을 다녀온 뒤 남긴 여러 기록에서 울릉도 독도 관련 기록이 비교적 풍부하게 전해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중거와 성대중 등 계미통신사행은 왜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

30) 이와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간행한 다른 지도에서도 거의 모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한 것을 보건대 이는 비단 필담창화집 만의 견해가 아니라 이 시기 일본의 공통적인 인식으로 보인다.

심을 기울여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을까? 겉으로 보면 대마도의 교활한 책동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조선의 대일 외교정책의 근간이나 방향을 성찰하라는 주문이 깔려 있다고 보인다. 조선은 초기에 왜구를 근절하기 위해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였지만 신숙주의 건의 이후 줄곧 일본과 교린관계를 맺고 평화를 지향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이것은 임진왜란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딛고서 이어질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그 정당성과 시의성을 확립하였다. 그런데 세부적인 측면에서 교린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확인되는 바 그것이 대마도의 교린관계 훼손 책동이다. 여기에 울릉도·독도 사안이 연계되어 문제의 파장은 적지 않았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원중거와 성대중은 일본과 교린정책을 유지하고 더욱 공고하게 두 나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대마도문제를 시급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sup>31)</sup>

반면 울릉도·독도 사안은 이미 안용복의 도해 이후 쇄환정책에서 수토정책으로 변경하여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을 내어놓지는 않았다. 그 대신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록 대마도와 동래를 통해 서계를 주고받으며 논쟁을 펼쳤지만, 양측의 주장만 확인할 뿐 진전이 없었으며, 오히려 안용복의 영웅적 활약을 통해 해결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즉 안용복 도해사건은 울릉도·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교린정책에 바탕을 둔 당국자간의 공식적인 외교는 큰 실효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사건인 것이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양국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독도 사안을 해결하는데 이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31) 원중거는 특히 사행제도의 개혁을 통해 대마도의 작란을 원천 차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훈식, 「원중거와 홍대용의 사행록을 통해본 18세기 사행록의 향방」, 『조선통신사연구』 제7호, 조선통신사학회, 2008. 참조.

#### 4. 맺음말

에도시대 대마도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주장은 현재 거의 사라졌지만, 그 방식과 태도는 오히려 일본 정부로 옮겨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 일본정부는 에도시대 대마도가 했던 방식 그대로 국교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시마네현은 마치 독도가 그 지역의 행정구역에 포함된 곳임을 끊임 없이 주장하며 독도 영유권을 위한 광범위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에도 막부의 정책을 우선 뒤집고, 오히려 에도막부 시절 대마도와 시마네 지역이 독도 영유권과 어업권을 주장하던 그 내용을 고스란히 계승한 결과다. 현 일본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통신품계를 대조선 외교의 기본 축으로 확립한 에도막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이다. 물론 일본의 현 정부가 일제 강점기 등의 지난 시기 굴곡진 한일관계사를 극복하고 근대적 의미에서의 외교관계를 한국과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적어도 독도사안에 서만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권기,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시기에 수립된 정책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패망이후에도 일본의 한반도 침략 기조, 소위 정한론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물론 이는 당시 일본 패망의 책임을 져야할 세력이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현재 일본 정치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적 정치외교력, 국가적 역량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학계에서도 일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그 부당성과 허구성을 진단하는 작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인가? 일본은 메이지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현 일본정부가 지속되는

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외교 분야, 교육 분야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며, 일본의 평화헌법이 개정된다면 그 이후 군사 분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논리적 허구성을 지적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 속내와 궁극적 목적을 잘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에도시대 식자들과 사무라이들에서 논리가 자라나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 1769?-1850)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에 이르러 정한론의 방법적 초석이 마련될 때, 조선침략의 시작점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지목한 것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조선침략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마련한 뒤 점점 확대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용복을 특별히 기록한 원중거와 성대중의 안목은 오늘날에도 시의성이 적지 않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조선왕조실록』

이경직, 『扶桑錄』, 고전번역원.

박영효, 『使和記略』, 고전번역원.

『桑韓星槎餘響』(고운기 역주, 『桑韓星槎答響·桑韓星槎餘響』, 보고서, 2014.)

이수광, 『芝峯類說』, 고전번역원.

신유한, 『海遊錄』, 고전번역원.

성대중 지음, 홍학희 옮김, 『일본록-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원중거 지음, 박재금 옮김, 『화국지-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출판, 2006.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

김병우, 「일본이 기억한 안용복-『竹島紀事』와 『竹島考』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66, 한국일본문화학회, 2015.

박희병·이효원 외, 『18세기 통신사 필답』 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이효정,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기록의 범주와 유형』, 『동북아문화연구』 45집, 동북아문화학회, 2015.

이효정, 「19세기 후반 조선 지식인의 독립 국가 지향-박영효의 『사화기략(使和記略)』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2집, 한국고전문학회, 2017.

정영미,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2015.

정훈식, 「원중거와 홍대용의 사행록을 통해본 18세기 사행록의 향방」, 『조선통신사연구』 제7호, 조선통신사학회, 2008.

정훈식, 「조선후기 일본론에서 대마도와 안용복」, 『역사와경계』 89, 부산경남사학회, 2013.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박사논문, 1995.

三宅英利, 손승철 옮김,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Abstract>

## Diplomacy to Japan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Ulleungdo and Dokdo

Jung, Hun-Sik

This paper examines the records related to Ulleungdo and Dokdo in the records of diplomatic missions to Japan during the Joseon Dynasty. Records related to Ulleungdo and Dokdo were recorded in *Busangnok* written by Lee Kyung-jik, who visited Japan in 1617, *SangHanSungSayeohyang*, the Collection of written conversations and poems on diplomatic missions in 1719, *Ilbonnok* written by Sung Dae-Joong, and *Hwagukji* written by Won Joong-Ger on diplomatic missions in 1763, and It is confirmed in *Sahwagiryak* written by Pak young-hyo in 1882.

Although this record is brief, it is a valuable record that can recognize both Japan's perception of Ulleungdo and Dokdo and both Japan's perceptions of the Ogan era.

**Key words:** Ulleungdo, Dokdo, *Busangnok*, *SangHanSungSayeohyang*,  
*Ilbonnok*, *Hwagukji*, *Sahwagiryak*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

## 독도의 지위 관련 연구 동향

- 미국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박 찬 호\*\*

### 〈목 차〉

1. 머리말
2. 주요 논문 소개
3. 쟁점 정리
4. 맺음말-전망

### 〈국문초록〉

외국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발표하는 독도관련 연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깊이가 있거나 이론이 정연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들의 연구는 독도의 영유권 다툼을 다루거나 국제해양법상 일반적인 섬의 지위를 다루면서 독도를 연구하고 있다. 즉, 독도가 해양법상 어떠한 해양관할수역을 갖는지, 혹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가 연구의 대상이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대체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 입장이나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과 같은 연구자들은 심도있는 분석을 하지 않고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대체로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에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위안거리라고 하겠다. 한편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체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 바위섬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외국 연구자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대체로 영어로 된 인터넷 자료를 많이 인용하며 연구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장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사이트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또한 한글로 발표된 독도 관련 연구결과물을 외국어로 소개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독도, 영유권, 해양관할수역, 해양경계획정, 해양법상 독도의 지위

## 1. 머리말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제3국 학자들과 제3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국의 학자들과 언론은 독도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여 대체로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제3국의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외국 언론에서는 독도 문제를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가 외국 언론에 등장하는 경우는 대체로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를 둘러싼 갈등현상이 발생하거나, 남중국해에서와 같이 국가들간에 도서 영유권과 관련한 분쟁이 야기될 때인 것 같다.

외국 특히 미국의 언론에서 독도문제를 다룬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나<sup>1)</sup> 한일간의 역사적 문제를 다룰 때,<sup>2)</sup> 혹은 동북아

1) South Korea Recalls Envoy to Japan, New York Times, 2008.7.15; South Korea's Textbook Whitewash, New York Times, 2015,11,13.

2) Desolate Dots in the Sea Stir Deep Emotions as South Korea Resists a Japanese Claim, New York Times, 2008, 8,30; Fight Over Rocky Islets Opens Old Wounds Between

시아의 영토문제를 조명할 때<sup>3)</sup> 독도 문제가 언론에 등장한다. 특히 지난 2012년 이명박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 일본의 항의가 제기된 때와<sup>4)</sup>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남북한 응원단이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과 관련하여 언론에 자주 보도되기도 하였다.<sup>5)</sup> 그런데 언론에서 독도문제를 다룰 때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한국은 독도라고 부르고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으며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데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독도가 형제자매나 배우자인 것처럼 의인화하기를 즐긴다고 소개하기도 한다.

한편 외국에서의 외국 학자들에 의한 독도 연구는 생각보다 그리 활발하지는 않는 것 같다. 특히 영어권과 일본에서의 연구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의 연구 저작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들은 독도문제를 영유권 분쟁의 차원에서 연구하거나, 국제해양법상 일반적인 도서의 지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독도가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에 관해 분석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발간된 학술지에 게재된 외국 학자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독도문제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되고 있거나 왜곡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

- 
- South Korea and Japan, New York Times, 2012, 10,4; Japan PM Sends Ritual Offering to Yasukuni Shrine for War Dead, New York Times, 2016,8,15; Leaders of South Korea and Japan Meet in Effort to Mend Ties, New York Times, 2015,5,2.
- 3) Dispute Over Islands Reflects Japanese Fear of China's Rise, New York Times, 2012, 8,21; East Asia's Sea Disputes: Scar Tissue from War Wounds, New York Times, 2012, 8,16; Territorial Disputes Involving Japan, New York Times, 2012,9,20.
- 4) South Korean's Visit to Disputed Islets Angers Japan, New York Times, 2012, 8,10; South Korea Returns Letter on Islets From Japanese Leader, New York Times, 2012, 8,23.
- 5) North Koreans Troupe Is Cleared to Enter South's Waters Before Games, New York Times, 2018,2,5; Goals on the Ice and Politics in the Air as Japan Beats Unified Korean Team, New York Times, 2018,2,14;

한 독도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 잘 전파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인 호기심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독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주요 논문 소개

### 1) 개관

미국 학술지에 발표된 독도 관련 연구는 대체로 독도의 영유권, 독도의 관할 수역 및 독도의 해양경계획정에서의 효과에 관한 것들로 구분된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연구물은 대체로 전문 연구자에 의한 논문과 로스쿨 학생과 같은 일반 연구자들에 의한 논문으로 대별된다.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에서는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고 하거나 혹은 일본에 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한국이나 일본의 학자에 의한 연구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로스쿨 학생들은 대체로 국제재판을 통하여 도서 영유권 분쟁이 해결된 사례를 소개하고, 독도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더 강하다는 한 학생의 주장은 다른 학생연구자들에 의해 그대로 인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독도 영유권 문제만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물도 있지만, 섬과 관련된 국제분쟁을 연구한 논문에서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문제가 언급되기도 하고 있다.

한편 독도의 관할 수역 및 독도의 해양경계획정에서의 효과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해양관할수역 및 해양경계획정을 다루는 연구에서 섬의 효과와 관련하여 독도의 지위와 효과가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독도의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독도 주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인정하지 않거나 경계획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길 주저하는 것 같다. 그리고 독도 문제를 법적인 차원이 아닌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는 연구물도 눈에 띈다. 정치인들이 독도 이용하여 민족 감정에 호소하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고 판단한다. 지난 2011년에 일본의 국회의원 3명이 울릉도를 방문하기 한국에 왔다가 김포공항에서 제지당한 사건과 2012년 지지율 하락과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사건으로 정치인 당사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의도한 이익을 얻지만 궁극적으로는 양국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독도 관련 예산도 대폭 줄이고 정치적인 이벤트도 자제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주장에는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sup>6)</sup> 이하에서는 독도의 영유권, 독도의 해양수역 및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효과를 다룬 주요 연구 내용을 저자별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 2) 독도 영유권

### (1) N.S. Schrijver and V. Prislán,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국제법연구센터의 Schrijver와 Prislán은 그들의 논문에서 도서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들 판례의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sup>7)</sup> 분석 대상은 2001년 카타르 바레인 사건,<sup>8)</sup> 2002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간

6) M. Erika Pollman, "The Politicization of the Liancourt Rocks Dispute: Its Effect on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Issus & Insights』, Vol. 15, No. 10, 2015.

7) N.J. Schrijver and V. Prislán, "Cases Concerning Sovereignty over Islands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Dokdo/Takeshima Issu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46, 2015, 281-314.

의 리기탄 시파단 사건,<sup>9)</sup> 2007년의 니카라과 온두라스 사건,<sup>10)</sup> 2008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의 페드라 브랑카 사건,<sup>11)</sup> 2007년 니카라과 콜롬비아 사건<sup>12)</sup>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영토의 권원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한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 특히 시원적 권원과 일반적인 국가 행위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규칙을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개별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재판소가 적용한 다양한 법적 기법과 크기가 작고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섬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사실과 여타 증거문제를 다루는 재판소의 실제적인 접근법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Schrijver와 Prislán은 한국과 일본 중에서 어느 국가가 독도에 관한 시원적 권원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역사적 증거에 달려있다고 본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기 때문에 19세기에 무주지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은 독도가 울릉도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보이고 조선의 울진현에 속해 있었다고 기록한 1454년의 문서에 근거하여 독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영토로 취급한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역사적인 문서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의 기록이 불명확하고 확실하지 않다는 근거로 증거력을 다투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문서와 지도에 사용된 우산이 오늘날 독도를 나타낸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울릉도나 울릉도 인근의 소도인 죽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이 역사적 증거들의 정확성을

---

8)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Qatar v. Bahrain).

9)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 /Malaysia).

10) Case Concern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Nicaragua v. Honduras).

11)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Singapore).

1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Colombia).

입증할 수 있다면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대 한국에 속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Schrijver와 Prislán은 보고 있다.<sup>13)</sup>

일본은 17세기 중엽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본 막부가 1618년에 자국민의 울릉도로의 도해면허를 부여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도해면허를 받은 일본인이 울릉도를 왕래할 때 독도를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여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고 여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618년 도해면허는 독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시원적 권원 주장은 간접적인 추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추론되는 간접적인 추정인 아닌 분쟁 영토의 소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중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14)</sup> 그리하여 Schrijver와 Prislán은 한국이 근거로 하는 역사적 문서에 충분한 증거적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면, 이 문서는 한국이 시원적 권원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주게 된다고 한다.<sup>15)</sup>

국제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는 권원은 조약상 권원과 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한 권원인데, 한국과 일본간에는 독도 영유권에 관해 체결된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일 양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약 제2조(a)에 독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조약을 근거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어렵다는 것이 Schrijver와 Prislán의 입장이다.<sup>16)</sup>

우선하는 권원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제재판소에서 *effectivités*라고 칭하는 분쟁 영토에 대한 국가 권한의 실효적 표명으로써

13) Schrijver와 Prislán, 전계 논문, p. 287.

14) *Minquiers and Ecrehos(France/United Kingdom)*, Judgment, 17 Nov. 1953, [1953] ICJ Reports 47, p.57;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16 Oct. 1975, [1975] ICJ Reports 12, p. 93.

15) Schrijver와 Prislán, 전계 논문, p. 288.

16) Schrijver와 Prislán, 전계 논문, p. 291.

터 권원(sov<sup>er</sup>eign title)이 추론될 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국제재판소는 이 원칙을 적용하여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Schrijver와 Prisl<sup>an</sup>은 양국간에 권원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역사적인 기록들이 한국의 주장이 더 강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한다. 한국이 1403년부터 1895년까지 공도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울릉도에 2,3년마다 수토관을 파견하였는데, 이러한 수토행위는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당시 통치자들이 독도가 한국의 주권하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토행위가 울릉도에 국한하지 않고 독도에서도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석도라고 언급된 독도가 울릉도의 관할하에 둔 1900년 칙령 제41호는 매우 중요한데, 석도가 독도를 의미한다면 1900년 칙령과 울도군의 관리는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 독도의 크기가 아주 작고 그 위치를 고려할 때 그러한 행위는 한국의 권원을 확인하거나 권원을 창설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Schrijver와 Prisl<sup>an</sup>의 견해이다.

또한 1877년의 태정관 문서를 포함한 일련의 일본의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일본은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편입하였지만, Schrijver와 Prisl<sup>an</sup>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가 한국에 어느 정도 대항력이 있는지,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한국이 행사한 effectivités 보다 우세할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7)</sup>

일본이 1877년에 태정관 지령을 통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 Schrijver와 Prisl<sup>an</sup>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의 영유권 분쟁사건에서 Johor의 1953년 서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처럼 1877년 지령도 국제재판에서 무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chrijver와 Prisl<sup>an</sup>은 일본이 1877년 이전에 독도에 관한 권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877년 태정관 지령은 일본이 1877년 현재 독도에 관한 주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

17) Schrijver와 Prisl<sup>an</sup>, 전계 논문, p. 298.

가하고 있다.<sup>18)</sup>

Schrijver와 Prislán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국제재판소는 시원적 권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쟁 영토를 무주지라고 본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현존하는 모든 증거들로 볼 때 독도는 한국에 속했던 것 같고, 조선의 공도정책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무주지였다고 보려는 일본의 시도는 실패할 것으로 본다.

둘째, 조약상 권원이나 판정에 근거한 권원이 중요한데, 독도의 경우에는 조약이 없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영토조항에서 독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셋째, 최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는 시원적 권원이나 조약상 권원이 없는 경우에 주권의 실효적 표명의 증거를 중시하고 있다. 한국은 주권 행사에 관한 광범위한 기록을 보여주는데, 비록 1952년 이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행위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이전 행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9)</sup>

## (2) J.M. Van Dyke

전 하와이 대학 교수 Van Dyke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분석하고, 독도가 동해에서 한일간의 해양경계선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는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에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에서 독도를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sup>20)</sup>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에는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18) Schrijver와 Prislán, 전계 논문, pp. 300-301.

19) Schrijver와 Prislán, 전계 논문, pp. 301-302.

20) J. M. Van Dyke, "Legal Issues Related to Sovereignty over Dokdo and Its maritime Boundar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8, 2007, pp. 157-224.

편입한 1905년에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입장에 근거해 있는데, Van Dyke는 일본의 이러한 입장은 편입 당시에 독도가 법적으로 무주지였거나 다른 국가들이 일본의 영토편입을 묵인한 경우에만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1905년 편입 당시에 독도가 무주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1905년 이전에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위들은 영유권 설정과 관련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또한 일본은 1905년 이전의 점유에 근거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평가한다.<sup>21)</sup>

Van Dyke는 1785년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삼국점양도와 같은 일본의 지도들이 독도를 한국에 속한 것으로 표기한 것은 일본인들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sup>22)</sup> 1877년에 당시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지적조사와 관련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무성의 질의에 대해 울릉도와 그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지령을 소개하고,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제작한 조선 동해안도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밖에 표시되어 있어 일본 정부기관들이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일본 학자를 소개하고 있다.<sup>23)</sup> 한국은 1900년에 칙령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일본에 의한 주권침탈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영토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고 Van Dyke는 평가하고 있다.<sup>24)</sup>

Van Dyke는 독도가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불모의 소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이 섬에 대한 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한국이 수세기 동안 울릉도에서의 거주와 행정활동, 독도 인근

21) Van Dyke, 전계 논문, pp. 158-159.

22) Van Dyke, 전계 논문, p. 167.

23) Van Dyke, 전계 논문, p. 174: Kazuo Hori, "Japan's Incorporation of Takeshima into Its Territory in 1905", 『Korea Observer』, Vol. 28, 477, 1997, p. 496.

24) Van Dyke, 전계 논문, p. 175.

수역에서 한국인들의 어로활동, 독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권의 시현을 통해 이러한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주장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한국은 독도가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될 수 있고 근접성의 원칙이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18,9세기에 일본의 지도와 일본정부의 조치가 보여주듯이 일본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묵인하거나 인정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Van Dyke는 독도에 대해 주권행사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행위들과 19세기에 독도에 대해 주권행사를 거부한 일본정부의 행위, 분쟁영토가 무주지라는 주장을 거부한 국제관례를 고려할 때 국제재판소는 독도가 1905년 당시에 무주지였다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한다.<sup>25)</sup>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에서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초안 작성과정에서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었다가 제외되었다 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독도의 지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Van Dyke는 일본의 독도 편입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연합국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26)</sup>

한국은 1952년의 평화선 선언과 1954년 등대건설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이상 독도를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Van Dyke는 이러한 행위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수립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거나 시효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통제권을 획득하여 영유권을 수립한 것이라고 본다. 만일 재판부가 한국의 점유가 독도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일본은 그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없으며, 한국의 점유가 시효에 바탕을 둔 영유권 확립으로 본다면 일본은 한국의 점유를 용인

25) Van Dyke, 전계 논문, pp. 180-181.

26) Van Dyke, 전계 논문, p. 184.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항의했다고 주장하며 영유권을 다뤄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sup>27)</sup>

Van Dyke는 일본의 항의를 분석하였는데, 1950년대 초반에는 어느 국가도 장기간 물리적으로 독도를 점유하지 않았고 상대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를 하곤 하였는데, 한국이 1954년에 독도에 등대를 세우고 경비인원의 주둔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일본의 항의도 격화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분쟁을 제소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Van Dyke는 한국의 주장이 취득시효이론에 따라 2차 세계대전이후의 점유에 근거하고 있다면 일본의 항의는 목인의 추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Van Dyke는 한국의 영유권 주장은 수세기에 걸친 활동과 18,9세기 일본의 목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에 근거하고 있고, 일본의 주장은 1905년에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어서 서면 항의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한다. 또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 독도 문제를 종결짓지 못하여 일본의 입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한다. 독도문제가 오랜 교섭과정에서 논의를 위한 공식의제에 오른 적이 없었던 것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sup>28)</sup>

1998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하여 Van Dyke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3항에 규정된 최종해양경계선 확정 이전에 체결되는 잠정협정에 해당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sup>29)</sup> 그리고 Van Dyke는 분쟁 도서가 주장국 영토와 근접해 있다는 것은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두 섬이 관련이 있고 역사적으로 두 섬이 한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30)</sup>

27) Van Dyke, 전계 논문, p. 184

28) Van Dyke, 전계 논문, pp. 190-192.

29) Van Dyke, 전계 논문, p. 193.

30) Van Dyke, 전계 논문, p. 193.

### (3) R. Pedrozo

전 미국 해군대학 교수인 Pedrozo는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을 소개한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은 주로 역사적인 문서와 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를 통한 편입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의 교섭 역사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서들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독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1900년 칙령과 카이로 선언등과 같은 2차 세계대전 중의 문서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과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의 지령에 근거하여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하고 있다.<sup>31)</sup>

Pedrozo는 한국은 역사적 기록에 근거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47해리 정도 떨어진 거리상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인접성은 국제 관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sup>32)</sup> 즉,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간 분쟁에서 리기탄과 시파단섬은 주위 인도네시아 도서들과 40해리 떨어져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영유권이 부인되었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의 사건에서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에 서는 24해리, 말레이시아에서는 7.7해리 떨어져 있지만 싱가포르의 영토로 인정받은 것을 예로 들고 있다.

Pedrozo는 한국은 공도정책으로 약 500년간 독도에 대해 주권자로서 행위를 취하지 않았고, 그 이후 1880년대와 1900년대에 한국이 취한 행위들도 17세기에서 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점령하는 1954년까지

31) R. Pedrozo, "Sovereignty Claims over the Liancourt Rocks (Dokdo/Takeshima)", 『Chinese(Taiw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Affairs』, Vol. 28, 2010, pp. 78-79,

32) Pedrozo, 전계 논문, p. 85.

지 일본이 취한 입법, 행정, 사법 등 광범위한 주권 행사에 비교하면 효과적이지 못하여 일본의 주장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sup>33)</sup>

그리고 Pedrozo는 한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역사적 기록에는 독도가 언급된 것이 아니라 울릉도가 언급되어 있고, 독도라고 언급된 곳에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등 독도의 실상과는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sup>34)</sup> Pedrozo는 또한 안용복 사건에 따른 소위 죽도일건(竹島一件) 이후 일본의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에 돌려준 1696년에 독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국이 주장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막부가 안용복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계를 주었는데, 안용복이 이 서계를 대마도주에게 탈취당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개한다. Pedrozo는 사실이 그렇다면 막부에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재발행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막부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의 조선 영유권을 인정하였다고 정리하고 있다.<sup>35)</sup>

일본이 17세기에 울릉도에 대한 주장을 포기한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분명하지만 독도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Pedrozo는 삼국사기와 같은 과거의 역사적 기록물에는 울릉도는 언급되어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1900년에 울도군의 관할로 정하는 칙령에서도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알타협정에도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으로 독도를 명시하려는 노력은 실패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인용하는 SCAPIN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연합국 정책

33) Pedrozo, 전계 논문, p. 86.

34) Pedrozo, 전계 논문, p. 87.

35) Pedrozo, 전계 논문, p. 87.

의 표명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6)</sup>

그리고 국제재판소는 영토에 대한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권 취득의 항구적인 의도를 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실효적 행사(effectivités)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Pedrozo는 판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도정책을 시행하면서 거의 500년동안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주권자로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도정책이 1883년에 포기되었지만 한국은 독도에 공적으로 존재하였음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독도와 그 주변 수역을 규율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 독도를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개인의 어로행위를 effectivités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어민들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어로행위를 했었다는 것은 영유권 주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37)</sup>

한편 Pedrozo는 일본은 독도에 대한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점유와 관리를 통하여 독도에 대한 권원을 획득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17세기부터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정, 입법, 준사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는데, 한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은 1718년에 자국 상인들이 울릉도로 가서 상업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였는데 독도는 이들 상인들이 정박하고 어로활동을 하는데 이용되었다. 그 후 70년간 독도는 전복 채취, 바다사자 포획, 대나무를 포함한 삼림 벌목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이 1883년에 공도정책을 포기한 이후에도 일본은 이 지역에 경찰력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1900년대 초기에 강치 포획이 증가하여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강치 포획을 규제하는 면허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이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서 자원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영토에 대한 권한의 규제 및 관리의 표명이라고 한다. 이

36) Pedrozo, 전계 논문, p. 95.

37) Pedrozo, 전계 논문, p. 96.

런 점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권원을 인정할 것으로 Pedrozo는 예견하고 있다.<sup>38)</sup>

Pedrozo는 한국이 제시하는 지도의 증거력에도 의문을 표시한다. 한국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태곤의 조선전도 등과 같은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국제재판소는 지도가 조약과 같은 공식적인 문서에 첨부된 경우에만 그 지도에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도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다.<sup>39)</sup>

Pedrozo는 한국이 2차 세계대전중에 나온 카이로 선언, 알타, 문서등에 의하여 전쟁 후에 독도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그러나 Pedrozo는 이러한 문서는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한국의 영유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1914년 이후 약탈하거나 점령한 태평양상의 섬들과 대만 및 평후열도와 폭력과 탐욕으로 일본이 취한 영토를 언급하고 있고, 알타협정은 쿠릴열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을 언급하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제도도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sup>40)</sup>

#### (4) B.K. Sibbett

로스쿨 학생인 Sibbett은 국제법상 영토취득 방법과 관련 국제판례를 소개하고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분석하고 한국의 주장이 일본에 비하여 우월하여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Sibbett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주로 역사적 기록, 한국

38) Pedrozo, 전계 논문, p. 97.

39) Pedrozo, 전계 논문, p. 88.

40) Pedrozo, 전계 논문, p. 90. Pedrozo는 일본이 반환하는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원문을 변형하여 "...territories(not islands) taken by Japan by "violence and greed."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

과 체결한 협정과 같은 국제법, 공식적인 영유권 선언, 독도에 관한 한국 행위에 대한 항의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본다.<sup>41)</sup> 즉, 일본의 독도 기록은 1650년부터 존재하는데, 일본의 어민들이 17세기부터 독도를 이용하였고 20세기 초에는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였다. 그리고 러일전쟁 중에 전략적 목적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그 후에 시마네현에 공식적으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인정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1954년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해상보안청 선박을 독도 근해로 보내고 있다고 한다.<sup>42)</sup>

한편 Sibbett은 한국이 독도를 발견하여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해방이후에 일본이 양자 및 다자조약을 통하여 독도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하고 있다.<sup>43)</sup> 한국은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되었다는 기록은 512년에 이미 있고 다양한 지도들이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으로 독도를 반환하였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관할로부터 제외하고 분쟁지역에서 일본의 행위를 금지한 SCAPIN 677과 1033을 발표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독도 포기 이후에 독도에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경찰 병력도 주둔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sup>44)</sup>

Sibbett은 한국이 부두를 설치하고 등대를 유지 관리하고 담수화시설 등을 통하여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강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재판에 회부된 많은 영토 분쟁 사례에서도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영유권 수립을 중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45)</sup>

41) B.K. Sibbett, "Tokdo or Takeshima?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dham Int'l Law Journal』, Vol. 21, 1998, p. 1633.

42) Sibbett, 전계 논문, pp.1634-1636.

43) Sibbett, 전계 논문, p. 1633.

44) Sibbett, 전계 논문, pp. 1636-1639.

Sibbett은 또한 한국이 독도가 지속적으로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한국의 주장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46)</sup>

## (5) 기타

Castellino와 Redondo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서 독도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독도와 관련하여 초안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당사국들이 해결하도록 남겨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47)</sup> 저자는 1905년 이전 양국의 행위에는 증거력이 부족하여 그 이후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데 한국인의 거주, 경비대의 주둔 등 한국이 취한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주권행사로 인해 국제 재판에서는 한국의 영유권이 인정되고 일본 어민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활동을 고려하여 이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한다.<sup>48)</sup>

Haas는 한국이 독도를 발견하고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권한의 표시를 증명하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이 일본 주장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한다.<sup>49)</sup> 그리고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국이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중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것이 화해를 위한 실제

45) Sibbett, 전계 논문, p. 1644.

46) Sibbett, 전계 논문, p. 1644-1645.

47) Castellino and Redondo, "The Title to Dokdo/Takeshima" Addressing the Legacy of World War II Territorial Settlements/ Finding the Right Settlement of Dispute Mechanism",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 Rights』, Vol. 22, 2015, pp. 560-561. Nasu와 Rothwell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H.Nasu and D.R.Rothwell, Re-Evaluat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 2014, p. 58.

48) Castellino and Redondo, 전계 논문, p. 577.

49) Phil Haas, "Status and Sovereignty of the Liancourt Rocks: The Dispute between Japan and Korea", 『Gonzag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2011, p. 25.

적인 조치가 되고 양국이 상호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sup>50)</sup>

Fern은 한일관계에서 독도의 역사를 개관하고 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을 분석하고 한일 양국의 주장을 검토한 후 한국이 더 많은 주권 행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이 더 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51)</sup>

Bowman은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분쟁을 다루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영유권 문제를 미해결인체로 계속 남겨두는 방법,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는 일본의 제안을 수락하는 방법, 그리고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고 자원 문제와 경계선 문제는 중재에 회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역에서 안정을 도모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sup>52)</sup>

로스쿨 학생인 Bowman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이고 법적인 주장은 한국의 그것보다 약하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물을 인용하면서, 일본의 주장처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될 경우에 일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한다.<sup>53)</sup> 그리고 Bowman은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고, 한국에 있어 독도는 자부심, 역사,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서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국에게 불리하게 판결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sup>54)</sup> 또한 Bowman은 한국과 일본이 영토문제에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전략적 우방으로서 독도 문제의 해결이 절실한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양보하여 양국간의 지난 날의 역사적인 아픔을 극복하고

50) Haas, 전계 논문, p. 26.

51) Fern, "Tokdo or Takeshima? The International Law of Territorial Acquisition in the Japan-Korea Island Dispute", 『Stanford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5, 2005, p.79.

52) G. Bowman, "Why Now IS the Time to Resolve the Dokdo/Takeshima Dispute",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6, 2013, p. 436.

53) Bowman, 전계 논문, p. 454.

54) Bowman, 전계 논문, p. 450.

협력관계를 형성하길 기대하고 있다.<sup>55)</sup>

### 3) 독도의 해양수역

Van Dyke는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3항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 바위섬이라는 연구를 소개하고 한국 정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고 합의한다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긴장관계를 해소하게 되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도 사이에 등거리선을 설정하면 독도는 한국측에 있게 된다고 분석한다.<sup>56)</sup> Haas는 독도는 크기, 자체의 독자적인 자원이 없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향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57)</sup> Féron은 필리핀과 중국간의 중재재판에서 독도보다 더 큰 태평도(0.46 평방 킬로미터)에 식수가 있는 지 없는 지 여부가 섬인지 바위섬인지를 결정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8)</sup>

55) Bowman, 전계 논문, pp. 461-462.

56) Van Dyke, 전계 논문, p. 197-198; Van Dyke, "The Republic of Korea's Maritime Bounda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8, No. 4, 2003, p.527. Van Dyke는 Dzurek의 논문 "Deciphering the North Korean-Soviet(Russian)Maritime Boundary Agreement"를 인용하며 한국이 독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주장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Van Dyke의 주장은 다른 논문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Henri Feron, "The Philippines v. China Jurisdictional Award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Columbia Journal of Asian Law』, Vol. 29, 2016, p. 329.

57) Hass, 전계 논문, p. 9.

58) Feron, 전계 논문, p. 332.

#### 4) 해양경계획정에서 독도의 효과

Van Dyke는 독도는 12해리 영해만 갖기 때문에 한일간 해양경계획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59)</sup> Prescott는 해양경계획정에서 독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sup>60)</sup>

북한과 러시아는 1986년에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정에서 독도에 대해 아무런 효과도 부여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지 않기로 제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61)</sup>

Pedrozo는 한국과 일본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선에 대해 한국은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사이를 주장하는데 반해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sup>62)</sup>

---

59) Van Dyke, 전계 논문, p. 202; Van Dyke, "North-East Asian Seas-Conflicts, Accomplishments an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7, No.3, p. 401.

60) J.R.V. Prescott, 『Marine Jurisdiction in East Asian Seas, East-West Environment and Policy Institute Occasional Paper』, no.4, 1987, p. 48 (Van Dyke, 전계 논문, p. 205 재인용). 그 후 Prescott는 일본이나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것은 독도가 영해 이외 어떠한 관할수역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V. Prescott and C. Schofield, 『Undelimited Maritime Boundaries of the Asian Rim in the Pacific Ocean』, IBRU Maritime Briefing 2001, p. 52.

61) A.G.O. Elferink, "The Law and Politics of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Part 1",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1, 1996, p. 569.

62) Raul (Pete) Pedrozo(1), "International Law and Japan's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 92, 2016, p. 133. 필자는 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주장의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동해에서 한일간 해양경계획정에서 한국이 독도를 무시하고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부각되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경

### 3. 쟁점 정리

독도관련 연구 논문을 분석해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특히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한국에 비해 더 우세하다고 판단하는 논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Pedrozo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야와 무라카와가 1618년에 상업활동을 위해 도토리 번주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았고, 독도는 정박장 혹은 어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소개한다. 1690년대에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한국인들을 조우하고 이를 계기로 한일간에 울릉도의 주권에 관한 교섭이 몇 차례 있었고 이를 계기로 막부에서 1696년에 도해금지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는 도해금지 대상이 아니었으며 17세기부터 독도 근해에서의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의 광범위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Pedrozo는 이러한 활동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의 분쟁 사건에서 리기탄과 시파단섬의 말레이시아 영유권을 인정하면서 이 섬들이 Bajau Laut(바다 집시)가 항구적으로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경제활동을 위해 방문하고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해상경제의 일부가 된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해석한다.<sup>63)</sup> 이러한 해석은 일본의 어민들이 울릉도 도해면허를 받고 울릉도로 가는 길에 독도 주변에서 어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국제사법재판소가 인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여겨진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의 사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주장한 내용으로 Pedrozo의 분석과 전망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sup>64)</sup>

---

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63) Pedrozo, 전계 논문, pp. 79-80.

64)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n

Pedrozo는 한국은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편입한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40여년간 독도 영유권을 다투지 않아서 페드라 브랑 카사건에서와 같이 영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65)</sup> 그러나 Pedrozo의 판단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이후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 까지 한국은 일본의 식민상태에 있어서 독도 영유권을 다투지 못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으로 여겨진다.

Pedrozo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 교섭과정에서도 확인된다고 한다. 한국은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협정은 독도의 지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협정 기안자들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Dean Rusk가 정리한 미국의 입장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Rusk는 독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한국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 이후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미 국무성 지리학자인 Boggs도 “울릉도에 대한 한국명은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없고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였다고 Pedrozo는 소개하고 있다.<sup>66)</sup> 그러나 Dean Rusk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면서,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according to our information”)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즉, Rusk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Rusk의 무지를 고려하지 않고 Rusk의 불완전한 견해를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서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sup>67)</sup> 또한

---

/Malaysia), Judgment, ICJ Reports 2002, p.670, para. 98.

65) Pedrozo, 전계 논문, p. 91.

66) Pedrozo, 전계 논문, pp. 83-84.

67) Pedrozo는 독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변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미국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간주하였으나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에는 중립적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이

Pedrozo가 인용하는 자료는 그 진위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로서 사실을 검증하고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sup>68)</sup>

Pedrozo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의 페드라 브랑카 사건에서 밀레이시아가 1850년부터 1세기 이상 페드라 브랑카에 대해 아무런 행위도 취하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1880년대와 1900년대에 한국이 취한 행위들과 일본이 취한 주권 행사를 비교하면서 일본의 주장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본이 취한 구체적인 입법, 행정, 사법 등 광범위한 주권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Sibbett의 논문의 핵심은 국제재판소가 영토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국가권한의 행사(effectivités)에 초점을 맞춘 것에 착안하여 한국이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서 국가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이 일본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의 주장이 주로 한국과의 다양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독도가 원래 한국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이 주권의 현시를 통하여 시원적 권원을 완성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국제사법기관이나 제3자는 한국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sup>69)</sup> 그러나 국제사법기관은 영유권

---

고 양자 혹은 제3자 개입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독도 문제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 일본과 조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독도와 관련한 불협화음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역에서 중국의 공세에 대해 연합전선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된다고 Pedrozo는 판단하고 있다. Pedrozo(1), 전계 논문, p. 135.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독도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 우리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한 미국무성 대변인의 발표에서도 확인된다. Daily Press Briefing, Marie Harf, Deputy spokesperson, US Dept. of State(Feb. 13, 2014), <http://www.state.gov/t/pa/prs/dpb/2014/02/221643.htm#SOUTHKOREA> (2019.1 0.1. 방문)

68) Pedrozo가 한국의 주장을 비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것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있는 Japanese Territory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index.html>) 와 <http://www.dokdo-takeshima.com> 이다.

69) Sibbett, 전계 논문, p. 1646.

분쟁사건을 다룸에 있어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한 시점, 즉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이후의 국가권한의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저자가 예시하는 한국의 행위들이 시행된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자들 대부분이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규정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 바위섬에 해당하고 해양경제계획에서 완전한 효과를 갖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협약 제121조3항에 규정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섬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협약을 성안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섬에 관한 제도를 논의한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크기가 작은 섬에 해양관할수역을 제한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면적 기준은 사라지고 현재와 같은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sup>70)</sup> 인간의 거주 기준은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거주 가능성으로 판단한다.<sup>71)</sup> 즉 현재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섬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기준이나 거주 기간, 거주민의 규모, 거주민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sup>72)</sup> 그리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정도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독자적이라는 것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도서 주변에서의 어로행위 등 경제활동도 고

70) 박찬호(1), 「국제법상 바위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국제판례와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4권 제2호, 2013, 3-8면 참조.

71) B. Kwiatkowska and A.H.A Soons, “Entitlements to Maritime Areas of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s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NYIL』, Vol. 21, 1990, p. 161.

72) 박찬호(2), 「섬의 국제법상지위 - 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2호, 2002, 31-32면 참조.

려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여 거주와 경제활동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sup>73)</sup> 일찍이 Arvid Pardo는 인간이 거주하지 않고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주위에도 200해리 해양수역이 설정된다면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공간관리의 효율성의 훼손을 지적한 바 있다.고, Vukas 재판관도 볼가(Volga)gh 사건에서 항구적인 거주민이 없어 연안어업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부인하였다.<sup>74)</sup>

그러나 일본은 동경으로부터 대략 1700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크기가 큰 침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고, 해양경계획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상당 수 국가들이 섬과 바위섬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하여 경계획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sup>75)</sup> 이런 맥락에서 독도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바위섬이고, 해양경계획정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독도는 그 자체로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무인암석으로서 현상황에서는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설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통해 반분 효과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sup>76)</sup>

73) 필리핀과 중국간의 남중국해 중재판정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para. 500.

74) The “Volga” Case, Declaration of Vice President Vukas, para. 6; L.Diaz, B.H.Dubner and J.Parent, “When is a “Rock” an “Island”? - Another Unilateral Declation Defies “Norms” of International Law“, 『Michigan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2007, p. 546.

75) 박찬호(1), 전개논문, 15-17면.

76) 김부찬, 「해양법상 도서의 지위」, 『법과 정책』, 창간호, 1995, 142-143면 참조.

#### 4. 맺음말-전망

외국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발표하는 독도관련 연구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깊이가 있거나 이론이 정연하지는 않는 것 같다. 또한 학술지에 발표되는 연구의 양도 그리 많지 않은데,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대체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 입장이나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과 같은 연구자들은 심도있는 분석을 하지 않고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대체로 한국에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위안거리라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는 동일한 국제재판소 사건을 인용하면서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Schrijver and Prislán은 페드라 브랑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시원적 권원이 인정되었지만, 말레이시아가 상당 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또한 자국의 영유권을 부인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을 무시하지 않고 권원이 싱가포르로 이전된 것을 인용하면서 국제재판소는 일본이 태정관 지령 등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인한 것도 무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본의 주장에 근거하여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우월하다고 한 Pedrozo는 리기탄 시파단 사건과 페드라 브랑카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취한 기준에 따를 때 그러하다고 하면서 국제재판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Pedrozo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잘못 인용하거나 판례의 내용을 독도 영유권문제에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한국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와 일본의 1877년 태정관 지령과 것에 대한 언급이 없

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논문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한국의 주장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Perdozo는 한국이 일본의 1905년 독도 편입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편입조치가 강박에 의해 행해졌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sup>77)</sup> 이는 사실과 다른 기술이다. Sibbett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의 하나로 20세기 한국과의 협정으로 증명되는 역사적 기록과 국제법을 들면서 일본 학자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으나<sup>78)</sup> 인용된 논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Sibbett의 이런 내용은 Fern,<sup>79)</sup> Haas<sup>80)</sup>의 논문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외국 연구자들은 한글로 된 자료 보다 영어로 된 자료 특히 인터넷 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영문 인터넷 자료에 대해 분석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된 경우에는 수정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한글로 발표된 연구 결과물을 영문으로 소개하거나 해외학술지에 영문으로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발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77) Perdozo, 전계 논문, p. 89.

78) Sibbett은 Korea Observer 제28권에 게재된 Hori의 논문 "Japan's Incorporation of Takeshima into Its Territory in 1905" 511-25면을 인용하고 있다. Sibbett, 전계 논문, 1633.

79) Fern, 전계 논문, p. 78.

80) Haas, 전계 논문, p. 19.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박찬호, 「섬의 국제법상지위 - 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2호, 2002.
- 박찬호, 「국제법상 바위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국제판례와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4권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김부찬, 「해양법상 도서의 지위」, 『법과 정책』창간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1995.

2. 외국문헌

- Bowman, G., “Why Now Is the Time to Resolve the Dokdo/Takeshima Dispute”, 『Case W. Res. J. Int'l L.』, vol. 46, 2013.
- Castellino, J., Redondo, E.D., “The Title to Dokdo/Takeshima: Addressing the Legacy of World War II Territorial Settlements/Finding the Right Settlement of Dispute Mechanism”, 『Int'l J. on Minority & Group Rts.』, vol 22, 2015.
- Elferink, A.G.O., “The Law and Politics of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Part 1”,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1, 1996.
- Fern, S., “Tokdo or Takeshima? The International Law of Territorial Acquisition in the Japan-Korea Island Dispute”, 『Stanford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5, 2005.
- Feron, H., “The Philippines v. China Jurisdictional Award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Colum.J.Asian L.』, vol. 29, 2016.
- Haas, P., “Status and Sovereignty of the Liancourt Rocks: The Dispute between Japan and Korea”, 『Gonzag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5, 2011.
- Nasu, H. and Rothwell, D.R., “Re-Evaluat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 2014.
- Pedrozo, R., “International Law and Japan’s Territorial Disputes”,
- Pedrozo, R., “Sovereignty Claims over the Liancourt Rocks (Dokdo/Takeshima)”, 『Chinese(Taiw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Affairs』, Vol. 28, 2010.
- Pedrozo, R., “International Law and Japan's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Law

- Studies』, Vol. 92, 2016.
- Pollman, M.E., “The Politicization of the Liancourt Rocks Dispute: Its Effect on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Issues & Insights』, Vol. 15, No. 10, 2015.
- Prescott, V. and Schofield, C., “Undelimited Maritime Boundaries of the Asian Rim in the Pacific Ocean”, 『IBRU Maritime Briefing』, 2001.
- Schrijver, N.J., and Prislán, V., “Cases Concerning Sovereignty over Islands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Dokdo/Takeshima Issu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46, 2015.
- Sibbett, B.K., “Tokdo or Takeshima?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dham Int'l Law Journal』, Vol. 21, 1998.
- Van Dyke, J.M., “Legal Issues Related to Sovereignty over Dokdo and Its maritime Boundar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8, 2007.
- Van Dyke, J.M., “The Republic of Korea's Maritime Bounda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8, No. 4, 2003.

<Abstract>

## **A Comment on the Studies of Legal Status of Dokdo in Foreign Law Journals**

**Park, Chan-Ho**

Studies of the legal status of Dokdo published by foreign scholars are not deep and well-organized in theory as generally expected. They have examined the dispute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or the legal status of Dokdo in the law of the sea. In other words, they deal with maritime jurisdiction of Dok do and the effect of Dokdo in the maritime delimitation. Concerning the sovereignty of Dokdo, some scholars are to support the Korea's claim to Dokdo, the others support the Japanese position.

Their arguments are based on the official positions of these States, Korea and Japan, and the research of their scholars. And some researchers like law students are not doing any in-depth analysis and just tend to follow the arguments of leading researchers. Fortunately they are generally making arguments in favor of Korea in sovereignty dispute. In the meantime, they have argued that legal status of Dokdo in the law of the sea are so restricted that Dokdo generally seems not to be entitle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not to have any effect in the maritime delimitation of the East Sea between Korea and Japan.

Foreign researchers are doing research with materials from the web site in English. Scholars to support the Japanese position are tend to cite Japanese government's arguments but those scholars in favor of Korean position have used the documents in the web site operated private researchers. Therefore

it is highly recommended to develop web site concerning Dokdo in English for the Korea's position about Dokdo to be widely known to the world. And it is also required to publish articles dealing with the legal status of Dokdo including its sovereignty in foreign language including English.

**Key words:** Dokdo, sovereignty, maritime jurisdiction, maritime delimitation, status of Dokdo in the law of the sea

이 논문은 2019년 11월 2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의 함의와 독도\*

이 해 영\*\*

## 〈목 차〉

1. 서론
2. 침략의 범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역사적 배경
3. 2010년 침략범죄 개정조문: 범죄의 정의와 ICC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4. 2017년 ICC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ICC 관할권 행사의 범위
5. 결론에 같음하며: 독도에 주는 함의

## 〈국문초록〉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던 날을 기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설립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형사처벌한 이래 70여 년 만에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ICC의 당사국임을 고려할 때, 두 국가는 모두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는 규범적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변화가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

\* 이 논문은 독도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총서(단행본)인 『독도 영토주권의 국제법』(비매품)의 일부로 출간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 hylee125@scourt.go.kr

을 억지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ICC에서 채택된 침략범죄의 정의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기에, 이 글은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C에서의 침략범죄에 관한 규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가 침략범죄에 대한 규범적 발전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함으로써, 이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침략범죄, 국제형사재판소, 침략범죄 정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독도

## 1. 서론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규정’이라 한다)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던 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라 한다)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sup>1)</sup> 이 결정은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형사법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설립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처벌한 이래 70여 년 만에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하게 되었다.<sup>2)</sup> 그런데 ICC에서 2010년 채택된 침

1) Assembly of States Parties, “Activa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2017. 12. 14.) (“The *Assembly of State Parties*,... 1. *Decides* to activate the Court’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as of 17 July 2018;...” [hereinafter 2017 Activation Resolution].

2) Michael J. Glennon, “The Blank-Prose Crime of Aggression”, pp.74-75; Mark A. Drumbl, “The Push to Criminalize Aggression: Something Lost Amid the Gain?”, p.298; Dapo Akande & Antonios Tzanakopoulos, “The Crime of Aggression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p.829.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7월 17일에 120개국에 의해 채택된 ICC 로마규정이 60개국

략범죄 개정조문과 관할권 행사개시를 선언한 2017년 결정문을 보면, 침략범죄의 정의가 매우 좁게 채택된 데다가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조건 및 범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ICC가 사실상 개입할 수 있는 무력행사의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적인 평가도 따랐다.<sup>3)</sup>

대한민국과 일본은 모두 ICC의 당사국이다. 즉, 두 국가는 모두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는 규범적 변화의 영향으로 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변화가 양 국가의 독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에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기본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는 반면,<sup>4)</sup>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sup>5)</sup> 이렇듯 독도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는 것이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억지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

---

에 의하여 비준된 2002년 7월 1일에 공식 설립되었다. 로마규정은 ICC 관할범죄로 집단학살(the crimes of 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 침략범죄(crimes of aggression)를 정하였으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만큼은 당사국총회의 추후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미루어져 왔었다.

- 3) Alex Whiting, “Crime of Aggression Activated at the ICC: Does It Matter?” (2017. 12. 19.).
- 4) 외교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2019. 11. 3. 확인).
- 5) 관련해서, 일본의 한 국회의원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토)도 정말로 교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반도 유사시(전쟁이나 무력 충돌 등 비상사태)를 포함해 ‘우리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점거자들을 쫓아내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바 있다[「일본의원, 독도 “전쟁으로 되찾아야 한다”」, 《한겨레》 (2019. 9. 1.)].

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ICC에서 채택된 침략범죄 개정 조항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기에, 이 글은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6)</sup>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먼저 ICC에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개시 결정이 있기까지 역사적 배경으로서, 침략의 범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과정을 개관한다(제2장). 다음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실로서 2010년에 채택된 ICC의 침략범죄에 관한 개정조문을 검토하는데, 이 개정조문이 정하는 범죄정의와 ICC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제3장). 이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14일에 채택된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의 함의를 살펴본다(제4장). 마지막으로, 한국은 침략범죄에 관한 ICC에서의 규범적 변화로부터 어떠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제5장).

## 2. 침략의 범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침략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경험한 국제사회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일국이 타국에 대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크게

---

6) 독도와 같이 국가 간의 대립하는 영유권 주장이 있는 도서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 어떤 종류의 중대한 무력사용이 있으면 침략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이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개시를 둘러싼 최근의 규범적 변화를 소개하고, 이러한 규범적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이 무관한 지역에 아닐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에 제한됨을 고려할 때, 독도에 대한 어떤 종류의 중대한 무력사용이 향후 침략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에 관한 개별적인 판단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가지의 상호 관련성 있는 노력을 전개하였다.<sup>7)</sup> 첫째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하고 일국의 타국에 대한 불법적 무력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채택된 유엔 헌장으로 실현되었다. 즉, 헌장 제2조 제3항이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선언하였으며, 이어서 제2조 제4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였다.<sup>8)</sup> 둘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가 헌장 제7장에 따라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을 결정할 때 돕기 위하여 ‘침략’(aggression)의 정의를 채택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1974년에서야 유엔 총회 결의 제 3314호에서 침략의 정의가 채택됨으로써 실현되었다.<sup>9)</sup> 셋째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침략을 범죄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뉘른베르크와 동경에 설치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 ‘평화에 반한 죄’(crimes against peace)란 죄목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sup>10)</sup>

이 중 침략범죄의 전신인 ‘평화에 반한 죄’는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인도에 반한 죄’나 ‘전쟁범죄’와 같은 다른 국제범죄와는 구별되는 ‘최상위 국제범죄’(supreme international crime)로 여겨졌는데, 이는 국제형사법을 고안한 초기 창시자들이 당시 집단안보와 군비축소 등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의 전쟁을 근절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을 국제법의

7) Oscar Solera, *Defining the Crime of Aggression*, p.44.

8) U.N. Charter, art. 2, paras. 3-4.

9) G.A. Res. 3314 (XXIX) (Dec. 14, 1974), annex, arts. 1 & 3.

10) Michael J. Glennon, “The Blank-Prose Crime of Aggression”, p.74.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sup>11)</sup> 다른 국제범죄에 관한 규범이 대개 인도주의에 반하는 잔혹범죄(atrocity crimes)에 대한 처벌을 통한 정의 구현과 인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평화에 반한 죄는 애초에 국가 간에 무력사용을 개시한 것을 처벌함으로써 전쟁을 근절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뉘른베르크 재판소 규범을 고안하였던 국제형사법의 창시자들은 ‘평화에 반한 죄’가 다른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등의 잔혹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창설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모든 범죄의 어머니’(mother of all crimes) 격인 범죄로 보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의 기소 실행에서도 쉽게 확인된다.<sup>12)</sup> 즉,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다른 국제범죄는 주로 평화에 반한 죄에 동반하여 자행된 것으로서 기소됨으로써 평화에 반한 죄에 대하여 부차적인 범죄로 취급되었다.<sup>13)</sup>

그런데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국제군사재판소에서의 실행 이래 침략 범죄에 대한 규범적 발전은 급격하게 쇠퇴한 반면, 다른 국제범죄에 관한 규범적 발전은 급격하게 발전하였다.<sup>14)</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탈식민지 시대를 지나 탈냉전을 거치면서 국가 간 대규모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나 국제사회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즉 한 국가 내에서 인종, 종교 등의 차이를 이유로 한 잔혹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에 관한 규범적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평화 시에도 자행될 수 있는 범죄로서 ‘인도에 반한 죄’와 ‘집단학살’에 대한 규범적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규범적 변화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개념을 재정의 해온

11) Frédéric Mégret,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s a Peace Project”, pp.837-842.

12) Frédéric Mégret, *Ibid*, p.840.

13) Frédéric Mégret, *Ibid*.

14) Frédéric Mégret, *Ibid*, pp.842-849.

것에서도 확인된다. 즉, 전통적으로 국가 간의 심각한 무력사용만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던 안보리는, 점차적으로 일국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잔혹범죄가 자행된 경우에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시작하였다.<sup>15)</sup>

제2차 세계대전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지도자에 대한 국제재판소에 서의 형사처벌이 있는 이래 수십 년간 침략범죄에 관한 규범적 발전은 정체되어 있었으며, 이를 관할범죄로 재판하는 국제적 실행도 부재하였다. 침략범죄에 관한 실체적 규범적 발전의 정체는, 국제사회가 ‘침략’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수십 년간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사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런던헌장이 ‘평화에 반한 죄’를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전개한 것”(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or waging of a war of aggression)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침략전쟁”(war of aggression)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연합국들이 각국의 고도의 정치적 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침략의 정의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sup>16)</sup> 침략범죄의 대상이 되는 ‘침략전쟁’ 또는 ‘침략’의 정의의 부재는 이후 50여 년간 지속되었다. 1974년 유엔 총회에서 ‘침략’의 정의가 채택되었으나, 해당 정의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전제가 되는 불법행위로서 ‘침략 행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안보리의 결정을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형사책임의 근거로서 ‘침략범죄’를 정의하기 위한 정황에서 채택된 것은 아니었기에 해당 정의가 침략범죄를 정의하는 목적으로도 원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었다.

15) Frédéric Mégret, *Ibid.*, pp.845-847.

16) Matthias Schuster, “The Rome Statute and the Crime of Aggression: A Gordian Knot in Search of a Sword”, pp.5-6.

또한, 1990년 이후 세워진 다양한 국제형사재판소 중 어디에서도 침략범죄가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국제형사법의 현대적 발전 과정에서 침략범죄가 배제되어왔음을 보여준다. 즉,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SCSL), 캄보디아특별재판부(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ECCC) 규정 어디에도 침략범죄는 관할범죄로 포함되지 않았다.<sup>17)</sup> 이렇듯 50여 년간 지속된 침략범죄에 대한 기소 및 처벌 관행의 부재는 침략범죄가 사실상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법으로서 형해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이르렀고, 이에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 채택 논의에 침략범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국제사회는 강한 의지를 공유하였다.

ICC 로마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로마회의(Rome Conference)에서 침략범죄를 관할범죄로 포함할 것인가에 관하여 크게 3가지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첫째, ICC 관할범죄로 침략범죄를 포함시킬 것인가, 둘째, 침략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셋째,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논의되었다.<sup>18)</sup> 당시 당사국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기에, 소위 “성문화된 교착상태”(codified impasse)에 만족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데, 즉 침략범죄를 관할범죄로 포함하되, 추후에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요건 및 범위에 대한 합의된 규정을 채택하기까지 ICC의 관할권 행사를 미루기로 하였다.<sup>19)</sup>

17) Mark A. Drumbl, “The Push to Criminalize Aggression: Something Lost Amid the Gain?”, p.298. 예외적으로 Iraqi High Tribunal (“IHT”) 규정이 침략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국제범죄로서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18) Major Kari M. Fletcher, “Defining the Crime of Aggression: Is There an Answe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Dilemma?”, p.241.

19)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The Working Group on Aggression at the

침략범죄의 정의 및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요건에 대한 개정조문이 채택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2010년 6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개최된 로마규정 재검토회의에서 실현되었다.<sup>20)</sup> 그러나 2010년, 캄팔라에서 침략범죄에 대한 개정조문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CC 당사국들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개시시기를 7년 이후로 재차 미루는 결정을 하였다.<sup>21)</sup> 즉, 개정조문 제15조의2의 제2-3항과 제15조의3의 제2-3항에 따라, 침략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 행사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당사국들이 결정한 시점이나 침략범죄 개정을 수락하는 국가들의 3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개시되도록 정하여졌다.<sup>22)</sup> 이 조건은 2016년 6월 26일, 팔레스타인이 침략범죄 개정조문을 30번째로 비준하면서 성취되었고,<sup>23)</sup> 이로써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이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6월 26일 이후에 당사국들이 결정하는 시점에 개시되게 되었다.

2017년 12월에 열린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589. 이것은 당시 채택된 로마규정 제5조 제2항에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라 침략범죄를 정의 하고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조건을 정하는 조항이 채택된 후, 재판소는 침략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표현되었다(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 5, para. 2).

- 20) 캄팔라에서 채택된 개정조문은 침략범죄에 대한 정의 조항인 제8조의2와,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요건을 정하고 있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포함하고 있다. Review Conference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mendment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n the Crime of Aggression” (June 11, 2010) [hereinafter 2010 Kampala Amendments].
- 21) 2010 Kampala Amendment, annex I, art. 15 *bis*, paras. 2-3 & art. 15 *ter*, paras. 2-3. 캄팔라 개정조문은 로마규정 제5조 제2항을 삭제하는 한편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침략범죄 정의 조항을 도입하였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신설하여 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였다.
- 22) 2010 Kampala Amendment, annex I, art. 15 *bis*, paras 2-3 & art. 15 *ter*, paras 2-3.
- 23) ICC Assembly of State Parties, “State of Palestine Becomes the Thirtieth State to Ratify the Kampala Amendments on the Crime of Aggression” (2016. 6. 29.).

개시 결정을 채택할지가 논의되었고, 회의 마지막 날인 2017년 12월 14일 자정을 넘긴 시각에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는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sup>24)</sup> 이제 국제사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침략범죄에 대한 합의된 정의 조항에 기반하여 이를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여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침략범죄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규범 발전의 정체 과정을 고려한다면, 침략범죄가 ICC 로마규정에 포함되고 ICC가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는 것의 의미가 단지 ICC가 관할하는 범죄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일국 내에서 발생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의 잔혹범죄에 관한 규범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현대 국제형사법에게 초기 국제형사법이 애초에 가장 중요한 규범의 목적으로 의도했던 것, 즉 국가 간에 정당화되기 힘든 심각한 무력행사를 저지른 책임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까지 다시 요구하게 되었다는 함의가 있는 것이다.<sup>25)</sup> 클라우스 크레스(Claus Kreß)는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개시 결정을 한 것은 침략전쟁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중요성에의 호소를 인류 양심에 보냄으로써 세계 평화 보존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성취로 평가하였다.<sup>26)</sup>

### 3. 2010년 침략범죄 개정조문: 범죄의 정의와 ICC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24) 2017 Activation Resolution 참조.

25) Frédéric Mégret,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s a Peace Project”, p.836[“The challenge of including aggression is...[중략]... the challenge of understanding the extent to which pacification is a go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what sort of pacification and what cost.”].

26) Claus Kreß, “On the Activation of IC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p.17.

한편,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상으로 하는 침략범죄의 정의가 매우 좁게 채택된 데다가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조건 및 범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정해진 까닭에,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이 국가 간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사실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sup>27)</sup>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ICC 침략범죄 개정조문이 침략범죄 정의와 ICC 관할권 행사 요건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 1) 침략범죄의 정의(제8조의2)

개정조문 제8조의2에 정의된 침략범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개인의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의 전제조건으로서 국가의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의 ‘침략행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적 완전성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유엔 헌장에 위반되는 기타의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8)</sup> 둘째, 국가의 ‘침략행위’는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로 제한되는데, 즉 불법적 무력 사용 중 오직 그 “성질, 중대성, 규모”가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만이 침략범죄의 목적상 침략행위로 간주된다.<sup>29)</sup> 셋째, ‘침략

27) Alex Whiting, “Crime of Aggression Activated at the ICC: Does It Matter?” (2017. 12. 19.).

28) 2010 Kampala Amendment, annex I, art. 8 *bis*, para. 2(“act of aggression” means the use of armed force by a State against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other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9) 2010 Kampala Amendment, annex I, art. 8 *bis*, para. 1(“...of an act of aggression which, by its character, gravity and scale, constitutes a manifest violation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범죄'는 오로지 “한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지도자만이 저지를 수 있다.<sup>30)</sup> 마지막 넷째, 이 지도자는 국가의 ‘침략행위’를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실행”함으로써 ‘침략범죄’를 저지르게 된다.<sup>31)</sup>

상기한 요건 중에서 첫째의 ‘침략행위’의 정의는 유엔 총회 결의 제 3314호(1974년)의 ‘침략’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한 것인데, 이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에 바탕을 둔다.<sup>32)</sup> 셋째와 넷째 요건은 침략범죄의 전신인 뉘른베르크 재판소 런던현장의 ‘평화에 반한 죄’의 정의 조항으로부터 일부 변용하여 차용된 것이다.<sup>33)</sup> 그런데 위 4가지 요건 중 두 번째 요건, 즉 오직 그 “성질, 중대성, 규모”가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는 불법적 무력사용만이 침략범죄의 목적상 침략행위로 간주된다는 요건은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나 뉘른베르크 재판소 런던현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건이 추가된 것으로서, 이 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침략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생겼다. 관련해서 유념해야 할 것은, “명백한 위반” 구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3가지 기준, 즉 “성질, 중대성, 규모”는 모두 충분히 충족되어야 하며, 이 중 한 개의 기준이라도 결여될 경우에는 “명백한 위반” 구성요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4)</sup> 이 3가지 판단기준

30) 2010 Kampala Amendment, annex I, art. 8 *bis*, para. 1 (“crime of aggression” means the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or execution, by a person in a position effectively to exercise control over or to direct the political or military action of a State,...”).

31) 2010 Kampala Amendment, annex I, art. 8 *bis*, para 1 (“crime of aggression” means the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or execution,... of an act of aggression which,...”).

32) G.A. Res. 3314 (XXIX) (Dec. 14, 1974), annex, art 1; U.N. Charter, art. 2, para 4. 유엔 총회 결의 제 3314호(1974년)의 ‘침략’의 정의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을 조금 수정한 내용으로 채택되었다. “force”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armed”가 추가되었고, 보호 이익으로서 “sovereignty”가 추가되었다.

33) Noah Weisbord, “Judging Aggression,” p.91.

34) 이에 따라, “border skirmishes, cross-border artillery, armed incursions, and similar situations should not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aggression.”[Silvia Fernández de

요소 중에서 “중대함과 규모”(gravity and scale)가 ‘양적’ 판단요건이라면, “성질”(character)은 ‘질적’ 판단요건으로서, 침략행위의 성질이 법적으로 모호하고 논란이 있는 경우인 회색지대를 배제하기 위하여 포함된 요건이다.<sup>35)</sup> 즉, 국제사회에서 정당성 논란이 있는 유엔 헌장 상 요건을 벗어난 자위권의 행사나 인도적 개입을 위한 무력사용이 그 “성질”상 법적으로 모호하고 논란이 있는 것이어서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해석될 경우, 이러한 무력사용이 침략범죄의 전제가 되는 침략행위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침략범죄에 대한 개정조문은 국가의 무력사용이 정당한 무력사용으로 여겨질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엔 헌장이 정하고 있는 2가지 예외 사유, 즉 헌장 제51조에 따라 무력공격 발생 시의 자위권의 행사나, 헌장 제7장에 따라 안보리가 승인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사용은 불법적인 무력사용이 아니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sup>36)</sup> 다만, 유엔 헌장 제51조의 요건을 벗어난 자위권 행사의 경우와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의 승인 없는 일방적인 인도적 개입의 경우, 이들을 어떤 경우에는 침략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보고,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는 무력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이견들이 존재한다.<sup>37)</sup> 유엔 헌장이 허용한 무력사용이 아닌 경우, 그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캄팔라 개정조문에 명시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위 “성질”상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는 무력 사용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 ICC 재판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다만, 일국의 정책결정권자들로서는

---

Gurmendi, “The Working Group on Aggression at the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597].

35) Claus Kieß, “Time for Decision: Some Thoughts on the Immediate Future of the Crime of Aggression: A Reply to Andreas Paulus”, p.1138.

36) Lori F. Damrosch et al., *Interna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5<sup>th</sup> ed.), p.1219.

37)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함의」, 132-133면.

현재까지 확립된 국제법상 원칙에 따른 경우에 자위권의 행사는 “필요성이 긴급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나 숙고할 시간이 없을 때”에 한하여 더 이상의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상응한 정도로 행사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비례성의 원칙을 지킬 것이 요구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sup>38)</sup> 또한, 안보리의 승인 없는 일방적인 인도적 개입에 대해서도 그 적법성을 보장해 줄 만큼 해당 영역에서의 국제적 규범이 성숙하지 않았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sup>39)</sup>

## 2) ICC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제15조의2와 제15조의3)

ICC는 다음의 3가지 경우에 관할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안보리가 사태를 재판소에 회부하거나, ICC 당사국이 사태를 회부하거나, ICC 검사(소추관)가 독자적으로(proprio motu)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sup>40)</sup> 그런데 로마규정은 제소주체에 따라서 관할권 행사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즉, ICC 당사국이 범죄사태를 ICC에게 회부한 경우 또는 ICC의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영토국가 또는 범죄혐의자의国籍국이 ICC의 관할권을 수락했을 때만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sup>41)</sup> 반면, 안보리가 사태를 회부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관련국의 동의 없이도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sup>42)</sup> 침략범죄 개정조문도 기본적으로 로마규정

38) Robert Cryer et al.,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 pp.323 & 327.

39) 침략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 행사 개시가 향후 인도적개입에 따른 무력사용에 줄 영향에 관해서는 Tom Ruys, “Criminalizing Aggression: How the Future of the Law on the Use of Force Rests in the Hands of the ICC”, pp.887-918 참조.

40)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 13.

41)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 12. 범죄가 발생한 영토국가 또는 범죄혐의자의国籍국이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방법은, ICC 당사국이 되거나, 로마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별도로 수락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제소주체에 따라 관할권 행사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이원화한 것을 따르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제조건과 절차에 있어서는 침략범죄에만 적용되는 특칙을 개정조문으로 정하고 있다.

먼저, ICC가 가장 광범위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안보리가 회부한 경우이다. 이 경우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은 개정조항 제15조의3에 따르며, 이 경우 ICC는 관련국의 동의 없이도 해당 사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ICC 당사국이 회부한 경우 또는 ICC 검사가 스스로 수사개시를 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는 보다 제한적이다. 이 경우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은 개정조항 제15조의2에 따르는데, ICC는 오로지 침략범죄 개정안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의 지도자가 저지른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비당사국의 국민이 저지른 침략범죄나 비당사국의 영토 위에서 발생한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sup>43)</sup> 여기서 유념할 것은, ICC가 자국민과 관련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개정조항 제15조의2에 따라서 미리 배제선언(opt-out)을 사무국에 기탁하여 ICC의 관할권을

42)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48면.

43) 2010 Kampala Amendment, annex I, art. 15 *bis*, paras. 4 & 5. 한편, 개정조문은 유엔 안보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ICC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이 사태를 회부한 경우 또는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검사는 먼저 안보리가 당해 행위를 침략행위로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보리가 그러한 결정을 한 경우에 검사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조문에서 가장 유의미한 규정 중 하나는, 안보리가 6개월 이내에 침략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는 ICC 전심부(Pre-Trial Division)의 승인을 얻어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개정조문은 “침략행위에 대한 재판소 외부 기관의 결정은 이 규정에 따른 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재판소의 독립성을 재확인하였다(2010 Kampala Amendment, annex I, art. 15 *bis*, paras. 6-9).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그러한 배제선언을 미리 하지 않은 다른 모든 ICC 당사국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ICC의 당사국이면서도 아직 침략범죄 개정조문을 비준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배제선언을 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sup>44)</sup> 이러한 해석은 ICC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침략범죄 개정조문을 비준하지 않는 당사국의 국민이 저질렀거나 그 영토 위에서 자행된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을 의미하므로 향후 독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가 있다.

사실, 2010년 침략범죄 개정조문 채택을 위한 논의를 할 당시에, ICC 당사국 중 침략범죄 개정안을 비준·수락하지 않은 국가가 ICC의 관할권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국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일본은 2010년 캄팔라 재검토회의 채택 과정에서 침략범죄 개정조문을 비준하지 않은 당사국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을 강하게 반대했다.<sup>45)</sup> 따라서 2010년 재검토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조문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일본과 같이 미비준 당사국에까지 ICC 관할권이 미치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들과 이를 찬성하는 국가들 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채택된 것으로, 양 진영 간 타협의 산물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sup>46)</sup>

이를 염두에 두면서 먼저 침략범죄 개정에 대한 재검토회의의 의지를 표현한 2010년 결의문 제1항을 읽어보면, 침략범죄 관련 조항은 로마규

44) 2019. 10. 15. 기준으로, 현재까지 침략범죄 개정조문을 비준한 국가들의 명단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VIII-10-b&chapter=18&dang=en](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VIII-10-b&chapter=18&dang=en).

45)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합의」, 124-125면.

46)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개시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과 다양한 국가 간의 의견의 대립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laus Krefß, “On the Activation of IC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pp.7-17 참조.

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발효한다고 정하면서도, 어떠한 당사국도 개정 조문의 비준·수락에 앞서 개정조문 제15조의2에 규정된 ICC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선언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sup>47)</sup> 결의문 제1항이 언급하고 있는 로마규정 제121조 제5항을 살펴보면, 제5항의 1문은 로마규정 제5조(재판소의 관할범죄), 제6조(집단살해죄), 제7조(인도에 반한 죄), 제8조(전쟁범죄)에 대한 개정은 “그 개정을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지 1년 후에 발효한다”고 하면서, 2문에서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에 의하여 또는 그 국가의 영역에서 개정으로 포함된 범죄가 범해진 경우, 재판소는 그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sup>48)</sup> 이 중 특히 제121조 제5항 2문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는데, 즉 2문이 제121조 제5항상 개정일 경우에 당사국들은 개정에 따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선택적으로 수락(opt-in)을 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sup>49)</sup>

한편, 결의문 제1항의 후단은 ICC 당사국은 개정조문의 비준·수락에 앞서 개정조문 제15조의2에 규정된 ICC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선언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선언은 개정조문 제15조의2의 제4항에

47) 2010 Kampala Amendment, para. 1[“*Decides* to adop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2,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reinafter: “the Statute”) the amendments to the Statute contained in annex I of the present resolution, which are subject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and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paragraph 5; and *notes* that any State Party may lodge a decla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5 *bis* prior to ratification or acceptance.”];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침략범죄에 관한 최근 논의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제1호(2009), 17면.

48)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 121, para. 5(“Any amendment to articles 5, 6, 7 and 8 of this Statute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 amendment one year after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In respect of a State Party which has not accepted the amendment, the Court shall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regarding a crime covered by the amendment when committed by that State Party’s nationals or on its territory.”).

49)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함의」, 135면.

서 언급하고 있는 관할권의 수락배제 선언(opt-out)을 의미한다. 즉, 개정 조문 제15조의2의 제4항은 “당사국이 사전에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사무국에 기탁하지 않은 한, 로마규정 제12조에 의해서, 당사국에 의해 자행된 침략행위로 인한 침략범죄에 대하여 ICC가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사국에게 선택적 배제(opt-out)를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sup>50)</sup> 이 선택적 배제 선언권은 일견 상기한 캄팔라 결의 제1항 상의 선택적 수락의 권리와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침략범죄 성안 과정에서의 대립되는 의견을 표명한 국가들 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개정조문 제15의2의 제4항이 도입되었음을 이해할 때, 양자의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실 개정조문 제15조의2의 제4항이 제시하는 선택적 배제 선언은, 침략범죄에 대해서도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의 변형 없이 재판소의 관할권을 보장할 것을 선호하는 국가들과, 관련된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경우 ICC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국가동의를 기반한 관할권 체제를 선호하는 국가들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타협의 산물로 채택된 것이었다.<sup>51)</sup> 즉, “침략국의 협의를 받는 당사국의 비준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국가의 ‘회피권’을 인정함으로써 ‘완화된 동의를 기초로 하는 체계’를 완성하는 것인데, 이는 양 극단의 중간점에 위치하여 그림으로써 합의를 이루기에 적절한 기초가 되었다.”<sup>52)</sup> 달리 말하면, 당사국은 개정조문 제15조의2의 제4항에 따라 침략범죄에 대한

50) 2010 Kampala Amendment, annex I, art. 15 *bis*, para. 4(“The court ma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exercise jurisdiction over a crime of aggression, arising from an act of aggression committed by a State Party, unless that State has previously declared that it does not accept such jurisdiction by lodging a declaration with the registrar. The withdrawal of such a declaration may be effected at any time and shall be considered by the State Party within three years.”); 최태현, 같은 논문, 135면.

51) Claus Kress & Leonie von Holtendorff(김영석 역), “The Kampala Compromise on the Crime of Aggression[침략범죄에 대한 캄팔라 합의]”, 385면.

52) Claus Kress & Leonie von Holtendorff(김영석 역), 같은 논문, 385면.

ICC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선택적 배제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ICC의 관할권의 대상으로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sup>53)</sup> 이는 당사국의 적극적 동의가 없더라도, 수락배제를 하지 않는 한 수락을 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당사국의 동의 여부를 보다 유연하게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조문이 채택 후에도 로마규정 제121조 제5항 제2문의 관련성과 개정조문 제15조의2의 제4항의 해석에 대하여 첨예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었고, 이 문제는 2017년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 개시 결정을 채택하기 위한 당사국총회 회의에서도 계속되었다. 특히 일본은 캄팔라 개정조문이 채택되기 직전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정조문의 법적 완전성(legal integrity)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고, 조문의 법적 혼란은 로마규정과 재판소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개정조문이 컨센서스(consensus)에 의해 채택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sup>54)</sup>

#### 4. 2017년 ICC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ICC 관할권 행사의 범위

53)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합의」, 135면.

54) William A. Schabas, “Success!!!” (2010. 6. 12.) (“Christian Wenaweser brought the meeting back to order at about midnight. He explained that his goal had always been to obtain agreement by consensus. He briefly reminded delegates of the content of the amendments, then said: ‘Do I take it there is consensus on the adoption of this text.’ We all held our breaths. Japan asked to take the floor. ‘The delegation of Japan has serious doubts about the legal integrity of the amendment’, said the head of delegation in his eloquent English. He spoke harshly about what he described as the legal confusion in the texts, saying it undermined the credibility of the Statute and the Court. ‘It is with a heavy heart...’ he began, and we all thought that we were headed for a train wreck. But he concluded that Japan would not stand in the way of a consensus. Christian noted that there were no other requests for the floor. ‘I declare the amendments adopted’, he said. And that was it.”).

2017년 12월 14일, ICC 당사국총회 회의에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개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ICC가 2018년 7월 17일자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음은 상기한 바와 같다.<sup>55)</sup> 그런데 이 결의는 단순히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의 개시를 선언한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에 관한 개정조항 제15조의2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함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 1) 논의 과정

2010년 캄팔라 개정조문 채택 이후에도, ICC 당사국에게 침략범죄 개정조문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반된 두 가지의 법적 견해가 계속해서 대립하였다. 먼저 첫 번째 입장은, ICC 당사국이라 할지라도 침략범죄 개정조문에 대하여 별도의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의 영토나 그 국가 국민이 침략범죄로 추정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 ICC는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적 입장’이다.<sup>56)</sup> 이는 로마규정 제121조 제5항 2문의 내용, 즉 개정을 수락하지 않은 당사국의 국민에 의하여 또는 그 국가의 영역에서 범죄가 범해진 경우 재판소는 그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경우, 범죄가 발생한 영역국이나 범죄혐의자(가해자)의国籍국 중 어느 한 당사국이라도 침략범죄에 관한 개정조문을 비준·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은 캄팔라 개정조문을 비준한 당사국이 관련된 경

55) 2017 Activation Resolution 참조.

56) Claus Kreß(김영석 역), “On the Activation of the IC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개시에 관한 고찰]”, 229면.

우라면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이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관련국이 ICC 당사국이기만 하면 캄팔라 개정을 비준하지 않았어도 개정조문 제15조의2의 제4항에 따른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지 않은 한은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보다 관용적인 해석’이 허용된다.<sup>57)</sup> 즉, 침략국이 개정조문을 비준·수락하지 않은 당사국이어도 피침략국이 이를 비준·수락하였다면,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의 관할권 체제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ICC의 관할권이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는 캄팔라회의에서 도입된 개정조문 제15조의2의 제4항에 따른 관할권 배제선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로마규정 제12조에 따라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8)</sup>

2017년 12월, ICC 당사국총회 회의에서 국가들은 서로 대립하는 견해를 고수하였고, 상충하는 견해 간 논쟁은 반복되었다. 즉, 일본을 비롯하여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은 전자의 ‘제한적 입장’을 고수했지만, 리히텐슈타인, 아르헨티나, 보츠와나, 사모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 다수의 국가는 ‘보다 관용적인 입장’을 지지하였다.<sup>59)</sup>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서 좀처럼 타협책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보다 관용적인 입장을 지지해 온 스위스와 30개가 넘는 다수 국가의 대표단들은 우선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고 법적 의문점이 있는 경우 재판소가 결정하도록 하는, ‘단순 개시 접근법’을 제안하였다.<sup>60)</sup> 그러나 ‘제한적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소수의 국가는 재판소가 관할권 개시 이후에 보다 관용적인 입장을 채택할지도 모르는

57) Claus Kreß(김영석 역), 같은 논문, 229면.

58) 최태현, 「국제법 현안 Brief」 침략범죄에 대한 ICC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2면.

59) Claus Kreß(김영석 역), “On the Activation of the IC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개시에 관한 고찰]”, 230-231면.

60) Claus Kreß(김영석 역), 같은 논문, 231면.

위험성을 수용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개시 결정에 동반하는 결의로 제한적 입장이 명시적으로 확인되기를 원하였다.<sup>61)</sup> 당시 제한적 입장의 지지국들의 의사가 강경하여서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양 입장의 초안을 투표에 부쳐서 결정하는 것이 로마규정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sup>62)</sup> 당사국총회는 ICC가 설립된 이래 컨센서스에 의한 결의 채택을 강하게 선호해 왔기에, 당시 총회에 참여하였던 당사국들은 투표에 부치는 것을 가능한 선택지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sup>63)</sup>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개시 결정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기에, 당사국들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개시라는 역사적 결정을 포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는 공유된 이해를 보였다.<sup>64)</sup> 마지막 돌파구는 두 명의 부의장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부의장들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병렬적으로 드러내는 마지막 타협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up>65)</sup>

당사국 총회는...

2. 캄팔라재검토회의에서 채택된 침략범죄관련 개정조문은, 로마규정에 따라, 이 개정조문을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 그들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는 것과 당사국 회부의 경우 또는 독자적인 수사개시의 경우 ICC는 이러한 개정조문을 비준하지 않거나 수락하지 않은 당사국의 국민이 행하거나 그러한 당사국의 영역에 대해서 행해진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61) Claus Kreß(김영석 역), 같은 논문, 231면.

62) Claus Kreß(김영석 역), 같은 논문, 233면.

63) Nikolas Stürchler, “The Activation of the Crime of Aggression in Perspective” (2018. 1. 26.).

64) Nikolas Stürchler, *Ibid.*

65) Claus Kreß, “On the Activation of IC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p.12. 국문 번역상 표현은 최태현, 「[국제법 현안 Brief] 침략범죄에 대한 ICC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2면 참조.

는 것을 확인한다.

3. ICC 재판관의 사법적 독립성과 관련하여 로마규정 제40조 제1항 및 제119조 제1항을 재확인한다.

위 타협안의 제2항은 ‘제한적 입장’의 지지국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 반면, 제3항은 스위스 등의 보다 관용적인 입장을 지지한 국가들에 의하여 제안된 ‘단순 개시 접근법’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었다.<sup>66)</sup> 즉, 제3항의 표현은 당사국총회가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기관으로서 재판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재판소는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제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독립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 2) 결의문의 해석

최종 결의문은 채택되었고, 이제 이 결의문에 대한 해석이란 과제가 남았다. 결의문 제3항이 확인하고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권한은 ICC 재판관에게 있다. 다만 재판관의 해석 재량에 대한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영국대표단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다포 아칸데(Dapo Akande) 옥스퍼드 교수는, 결의문 제2항을 최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이 의미하는 국가들의 ‘후속합의’(subsequent agreement)로 보아서, 재판소는 캄팔라 개정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7)</sup>

이에 반하여, 스위스 외교관인 니콜라스 슈튀르힐러(Nikolas Stürchler)

66) Claus Kreß(김영석 역), “On the Activation of the IC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고찰]”, 234면.

67) Dapo Akande, “The ICC Assembly of States Parties Prepares to Activate the ICC’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But Who Will be Covered by that Jurisdiction?”(2017. 6. 26.).

는 당사국총회 회의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보다 관용적인 입장’에 기반을 둔 ‘단순 개시 접근법’을 선호한 데 반해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의 국가가 ‘제한적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였음을 강조하면서, 당시 당사국총회 마지막 날 밤 9시를 이미 넘긴 상황에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개시 결정이 무기한 연기될 것을 막고 컨센서스를 이뤄내야만 했던 상황이 이 결의문을 해석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논변하였다.<sup>68)</sup> 즉, 당시 결의문이 채택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의문 제2항이 확인하는 ‘제한적 입장’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상 ‘후속합의나 관행’(subsequent agreement or practice)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sup>69)</sup> 이에 대한 논거로, 결의 제2항은 침략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에 관한 ‘제한적 입장’이라는 일방의(하나의) 법적 입장을 확인하였을 뿐 회의에 참가한 다수 당사국의 실제 견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제시되었다.<sup>70)</sup> 다자적 외교 교섭에서 자국이 지지하는 해석 가능성을 포섭하기 위한 일종의 거래로서 동의하지 않는 타국의 입장을 수락하는 경우는 흔한 관행이며, 실제 다수의 당사국은 결의가 채택된 후에도 제2항의 제한적 입장과는 다른 자국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표현하였음을 고려할 때 제2항의 내용과 다수 당사국의 실제 법적 확신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총회가 결의 제2항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캄팔라 개정조문 제15조의2의 제4항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인 결의문 제2항을 캄팔라 개정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개정조문을 개정할 의도로 결의문을 채택되었다고 보기에 결의문이 로마규정 개정 규정에 따라 개정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71)</sup> 이를 참작할 때 결의문

68) Nikolas Stürchler, “The Activation of the Crime of Aggression in Perspective” (2018. 1. 26.).

69) Nikolas Stürchler, *Ibid.*

70) Nikolas Stürchler, *Ibid.*

71) Nikolas Stürchler, *Ibid.*

제3항이 ICC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선언한 것은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는데, 즉 이에 따르면, ICC 재판관에 의하여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의 범위는 사실상 미확정 상태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sup>72)</sup>

### 3) 함의

침략범죄 개정조항을 비준하지 않은 ICC 당사국에 대하여도 관할권이 미칠지는 궁극적으로 ICC 재판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일 텐데, 그 함의에 대한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케빈 존 헬러(Kevin John Heller)는 결의문 제3항에 따라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ICC 재판관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만약 ICC 재판관들이 제2항의 너무도 명확한 문구를 무시하면서까지 침략범죄 개정조항을 비준하지 않은 ICC 당사국에까지 관할권이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는 사법 적극주의를 발휘할 경우, 제한적 입장을 선호한 국가들이 재판소로부터의 탈퇴를 고려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73)</sup> 더불어서, 주요 국가들의 탈퇴를 초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ICC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재판소로 남지 못하도록 하는 현명치 못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제2항의 제한적 입장을 따르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논변하였다.<sup>74)</sup>

제니퍼 트라한(Jennifer Trahan)은 2017년 관할권 개시 결정이 침략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안타까운 결정이기는 하

72)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미확정 상태에서 개별국가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행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캄팔라 개정조문 제15조의2의 제4항에 따라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는 것일 것이다.

73) Kevin Jon Heller, "The Draft Resolution's Curious Paragraph 3" (2017. 12. 15.).

74) Kevin Jon Heller, *Ibid.* 나아가서, 당사국총회에서 제3항을 포함함으로써 재판관의 판단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은 ICC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었다고 비판하였다.

였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는 국가들이 컨센서스에 의한 결의 채택을 막고 있었던 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수의 당사국이 투표가 아닌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양보를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였다.<sup>75)</sup> 즉, 국제법은 많은 경우 완벽하지 않은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침략범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평가 하였다.<sup>76)</sup>

한편, 알렉스 와이팅(Alex Whiting)은 다른 국제범죄(인종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와 달리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요건 및 범위가 유난히 제한적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의 침략범죄에 대한 소추는 거의 안보리의 회부에 의한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77)</sup> 이는 결국 ICC가 국제사회에서 정치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연루된 재판만을 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그 동맹국들과 같은 주요 강대국들에는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sup>78)</sup> 또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개시됨으로써 ICC는 이제 침략범죄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할 것인데, 사실상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요건 및 범위가 이토록 제한적인 까닭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재판소의 명성과 정당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sup>79)</sup>

---

75) Jennifer Trahan, “Activa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 Challenges Ahead” (2018. 7. 18.).

76) Jennifer Trahan, *Ibid.*

77) Alex Whiting, “Crime of Aggression Activated at the ICC: Does It Matter?” (2017. 12. 19.).

78) Alex Whiting, *Ibid.*

79) Alex Whiting, *Ibid.*

## 5. 결론에 같음하며: 독도에 주는 함의

지금까지 2010년 ICC 침략범죄 개정조문 상의 범죄 정의 조항과 ICC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에 관한 조항들, 그리고 2017년 ICC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문의 내용 및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는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는 것이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무력행사의 가능성을 억지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선행적 이해를 다지는 것으로서 유의미하다.

침략범죄의 시초이자 전신인 ‘평화에 반한 죄’가 채택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범죄를 고안한 국제형사법의 초기 창시자들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함으로써 국가 간의 전쟁을 근절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을 국제형사법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침략범죄가 ICC 로마규정에 포함되고 ICC가 늦게라도 이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한 것은, 지난 30여 년간 일국 내에서 발생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의 잔혹범죄에 관한 규범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현대 국제형사법에 초기 국제형사법이 애초에 가장 중요한 규범의 목적으로 의도했던 것, 즉 국가 간에 정당화되기 힘든 무력행사를 저지른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목적의 수행까지 요구하게 되었다는 함의가 있다. 이는 ICC의 당사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즉 독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요청되며, 이를 위반하여 국제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형사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규범적 변

화로부터 어떠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ICC가 현실적으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침략범죄 개정조문을 비준하지 않은 ICC 당사국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독도와 같이 국가 간의 대립하는 영유권 주장이 있는 도서의 경우, 어떤 종류의 중대한 무력사용이 있으면 침략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다양한 경우의 수에 관한 개별적인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 즉,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개시를 결정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한반도를 둘러싼 도서에서의 무력도발을 억지하고 평화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침략범죄에 대하여 합의된 법적 정의가 부재하였고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제재판소가 부재해 온 지난 역사와 앞으로의 역사는 같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무엇이 침략행위이며, 어떤 경우에 국가의 지도자는 침략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침략전쟁 발발 시에 이에 대한 안보리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이 침략범죄의 법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지에 대한 담론이 정치적 수준이 아닌 법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개시된 이상 이른 시일 내에 빈번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ICC는 언젠가는 침략범죄를 이유로 국가 지도자를 기소하여 재판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침략범죄에 대한 법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ICTY와 ICTR, ICC가 관할범죄로 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죄에 대한 법리적 발전에 지대한 이바지를 한 것처럼, 앞으로 국제사회는 ICC를 통한 침략범죄에 관한 법리의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침략범죄의 규범적 지위는 향상될 것이며, 이는 분명 국제관계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국제형사법이 금지하는 방식의 무력행사를 억지하

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침략범죄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적 발전을 한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침략범죄에 대한 규범적 발전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ICC의 침략범죄 개정조항을 가능한 한 빨리 비준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2007년 제정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침략범죄 개정조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규범적 근거가 되어줄 것이며, 세계 역사가 증명하듯이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많은 경우 “자기실현적 예언”(self fulfilling prophecy)이 되어서 지역 평화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침략범죄에 관한 최근 논의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2009).
-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 외교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http://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http://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 (2019. 11. 3. 확인).
- 조기원(도쿄 특파원), 「일본의원, 독도 “전쟁으로 되찾아야 한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7936.html> (2019. 9. 1.).
- 최태현, 「[국제법 현안 Brief] 침략범죄에 대한 ICC관할권 행사개시 결정」, 『대한국제법학회』 (2018. 3. 30.).
-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관련 조항의 채택과 합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2010).
- Claus Kreß(김영석 역), “On the Activation of the IC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개시에 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8).
- Claus Kress & Leonie von Holtzendorff(김영석 역), “The Kampala Compromise on the Crime of Aggression[침략범죄에 대한 캄팔라 합의]”,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2011. 3.).

2. 외국문헌

- Alex Whiting, “Crime of Aggression Activated at the ICC: Does It Matter?”, *Just Security*, <https://www.justsecurity.org/49859/crime-aggression-activated-icc-matter/> (2017. 12. 19.).
- Assembly of States Parties, “Activa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ICC-ASP/16/Res.5 (2017. 12. 14.).
- Claus Kreß, “On the Activation of IC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16 *J. Int’l Crim. Just.* (2018).
- Claus Kreß, “Time for Decision: Some Thoughts on the Immediate Future of the Crime of Aggression: A Reply to Andreas Paulus”, 20(4) *Eur. J. Int’l L.* (2010).

- Dapo Akande & Antonios Tzanakopoulos, “The Crime of Aggression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29 *Eur. J. Int’l L.* (2018).
- Dapo Akande, “The ICC Assembly of States Parties Prepares to Activate the ICC’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But Who Will be Covered by that Jurisdiction?”, *Blog of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EJIL: Talk!)*, <https://www.ejiltalk.org/the-icc-assembly-of-states-parties-prepares-to-activate-the-iccs-jurisdiction-over-the-crime-of-aggression-but-who-will-be-covered-by-that-jurisdiction/> (2017. 6. 26.).
- Frédéric Mégret,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s a Peace Project”, 29 *Eur. J. Int’l L.* (2018).
- G.A. Res. 3314 (XXIX), U.N. Doc. A/9631 (Dec. 14, 1974), annex.
- ICC Assembly of State Parties, “State of Palestine Becomes the Thirtieth State to Ratify the Kampala Amendments on the Crime of Aggression”, ICC Press Release, <https://www.icc-cpi.int/Pages/item.aspx?name=pr1225> (2016. 6. 29.).
- Jennifer Trahan, “Activa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 Challenges Ahead”, *Opinio Juris*, <http://opiniojuris.org/2018/07/18/33604/> (2018. 7. 18.).
- Kevin Jon Heller, “The Draft Resolution’s Curious Paragraph 3”, *Opinio Juris*, <http://opiniojuris.org/2017/12/15/the-curious-paragraph-3/> (2017. 12. 15.).
- Lori F. Damrosch et al., *Interna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5th ed.)* (West Academic Publishing, 2009).
- Major Kari M. Fletcher, “Defining the Crime of Aggression: Is There an Answe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Dilemma?” 65 *A. F. L. Rev.* (2010).
- Mark A. Drumbl, “The Push to Criminalize Aggression: Something Lost Amid the Gain?”, 41 *Case W. Res. J. Int’l L.* (2009).
- Matthias Schuster, “The Rome Statute and the Crime of Aggression: A Gordian Knot in Search of a Sword”, 14 *Crim. L. F.* (2003).
- Michael J. Glennon, “The Blank-Prose Crime of Aggression”, 35 *Yale J. Int’l L.* (2010).
- Nikolas Stürchler, “The Activation of the Crime of Aggression in Perspective”, *Blog of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EJIL: Talk!)*, <https://www.ejiltalk.org/the-activation-of-the-crime-of-aggression-in-perspective>

/ (2018. 1. 26.).

Noah Weisbord, “Judging Aggression,” 50 *Colum. J. Transnat’l L.* (2011).

Oscar Solera, *Defining the Crime of Aggression* (Cameron May, 2007).

Review Conference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mendment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n the Crime of Aggression”, ICC Res. RC/Res.6 (June 11, 2010).

Robert Cryer et al.,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Procedure*(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uly 17, 1998, UN Doc. A/CONF. 183/9; 37 ILM1002 (1998); 2187 UNTS 90.

Silvia Fernández de Gurmendi, “The Working Group on Aggression at the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5 *Fordham Int’l L. J.* (2001-2002).

Tom Ruys, “Criminalizing Aggression: How the Future of the Law on the Use of Force Rests in the Hands of the ICC”, 29 *Eur. J. Int’l L.* (2018).

William A. Schabas, “Success!!!”, *The ICC Review Conference: Kampala 2010*, <http://iccreviewconference.blogspot.com/2010/06/success.html> (2010. 6. 12.).

<Abstract>

## **Implications of the Activation of the ICC'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and Dokdo**

**Lee, Hye-Young**

On July 17, 2018, on the 20<sup>th</sup> anniversary of the founding treat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ICC'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was finally activated after many years of tense negotiations. Since war-making leaders of Germany and Japan were tried for aggression at the Nuremberg and Tokyo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s following World War II, this was the first time in 70 years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possessed the opportunity of prosecuting a political/military leader of a state for aggression committed against another state. Considering that both Korea and Japan are state parties to the ICC, the activation of the ICC'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okdo, the easternmost island in East Sea of Korea. With political tension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Dokdo in min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adopted amendment on the crime of aggression that defines the crime and sets 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ICC can exercise its jurisdiction, and explore both direct and indirect war deterrent effects, which the activation of the ICC jurisdiction over aggression could have over Dokdo.

**Key words:** Crime of Aggressi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finition of the Crime of Aggression, ICC'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Dokdo

이 논문은 2019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일본 독도정책의 특징과 딜레마

## -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박 창 건\*\*

### 〈목 차〉

1. 머리말
2. 정치 행위로서의 항의
3. 일본의 독도정책
4.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에 대한 특징과 딜레마
5. 맺음말

### 〈국문초록〉

일본의 독도정책은 정치 행위로서 항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제도화된 법규 혹은 규범보다 정치적 가치에 따라 단순한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권리보전을 위한 소극적인 행위 차원에서 이익을 제기하는 행동이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정책 시책들을 '고유영토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사료와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영유권 주장을 위한 공세적 논리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정치화,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관제화, 독도 영토교육의 확산화 등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러한 특징들은 정부 주도의 해양정책에 예측된 독도정책, 우경화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구성원, 노골적으로 편향된 독도교육의 강화 등과 같은 딜레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차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6S1A5B8A0 2929224)을 받아 수행된 논문임.

\*\*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럼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으로 항의한 영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현존하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항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독도정책,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일본, 정치 행위로서 항의, 시마네현

## 1. 머리말

본 연구는 일본의 독도정책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논의는 영토 문제를 둘러싼 정치 행위로서의 ‘항의(protest)’로 표출되고 있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에 대한 특징과 딜레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기에서 항의란 자신의 반대 입장과 의사를 전달하는 전형적인 국가의 대외적 행위 또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의 관련 시책들은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으로 항의한 영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이 국가 행위로서 항의라기보다는 ‘단순히 반대 의사 표현으로 권리보전’을 위한 소극적인 지방자치 차원의 정치적 대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1)</sup> 이처럼 독도 문제에 대한 시마네현의 항의가 국제사회에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 행위로 인정되려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가 행위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항의는 대부분 정치적 행위로 법적 성격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5년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竹島)<sup>2)</sup>의 날’ 제정 시기와 맞물린다. 이를 계기로 시마네현의 총무과에서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설치해서 독도

1) I. C. MacGibbon, 1953, “Some observations on the part of protest in international law.” *The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30, p. 298.

2)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獨島)의 표기이다.

를 일본의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료 발굴과 논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인용하여 ‘현민회의’ 등의 지방압력 단체들이 독도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 정책에 영유권 주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으며, 초·중·고 교육현장에서의 독도교육은 현 교육위원회와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연구회와 학습회 등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널리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목할 것은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정치적 행위로서 항의를 넘어서 한국을 향한 정치적 행위로서 항의의 측면으로 고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시마네현은 독도 관련 시책들을 지방 정치의 논리로 결합시켜 한일 간의 문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치 행위로서 항의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시마네현이 만든 이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만 치부하고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의 문제로 선을 그으려고 했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최전방에 있는 시마네현을 내세워 한일관계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대변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를 게재하면서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과 보조를 맞추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공세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3년 2월 내각부에 기존의 ‘독도문제대책준비팀’을 개조하여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내각부 홈페이지와 수상관저 홈페이지에 ‘독도 문제에 대하여’라는 문건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정책 기조를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sup>3)</sup> 이처럼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정책 시책들을 국가 행위로서의 항의로 이어져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국내 여론을 환기하는 동시에 해외에

3) 領土・主權対策企画調整室, <https://www.cas.go.jp/jp/ryodo/torikumi/torikumi.html>, (검색일: 2019/04/30).

도 일본의 입장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본의 독도 정책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된 정치 행위로서 항의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독도정책을 국가의 영역에 중점을 두고 국가 행위로서 항의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이 어떠한 궤적을 그려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책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전체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 2. 정치 행위로서의 항의

해방 직후 태동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마찰은 점차 갈등 수준을 넘어 분쟁의 형태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역사적 관점은 독도의 실효적 근거에 대한 인식과 기억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sup>4)</sup> 둘째, 지리적 관점은 독도의 근접성을 둘러싼 정보수집, 교류, 전파를 초월하여 문화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sup>5)</sup> 셋째, 국제법적 관점은 해양법협약의 규범을 기반으

- 
- 4) 정성화. 1993, 「전후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의 기원」, 『인문과학연구논총』, 10; 玄大松. 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 「独島/竹島問題」の政治学』,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Hong Nack Kim. 2009, “The U.S. and the Territorial Dispute on Dokdo/Takeshima between Japan and Korea, 1945-195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3(2); 박병섭·나이토 세이쥬(지음) 호소카 유지(옮김). 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역사자료를 통한 고찰』, (서울: 보고사); 정병준. 2010, 『독도 1947: 전후 독도 문제와 한미일 관계』, (파주: 돌베개);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1952-1969 독도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6권』,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5) 大西俊輝. 2003. 『日本海と竹島—日韓領土問題』, (東京: 東洋出版).

로 해양영토 분쟁과 관할권에 대한 논의<sup>6)</sup>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정책을 정치 행위로서의 항의(protest)로 간주한 연구는 거의 없다. 여기에서 ‘항의’는 어느 다른 국가의 행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반대할 의도로 행하는 일방적인 선언이다. 항의의 목적과 법적 효과는 항의를 한 국가가 상대국의 이러한 행위 또는 조치를 승인(recognition), 수락(accept), 묵인(acquiesce)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sup>7)</sup>

일본의 독도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는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정치행위자들의 단발적인 영토 전략이나 개별 쟁점 혹은 사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는 전후 일본의 독도정책 추이를 시계열적 파악하여 그 궤적을 분석한 연구;<sup>8)</sup> 둘째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독도정책의 성격을 관계사적으로 분석한 연구;<sup>9)</sup> 셋째는 정책결정자가 정 권 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독도정책 향방을 분석한 연구;<sup>10)</sup>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 일본의 독도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차원으로 그 논의를 확대해 한일 관

- 
- 6) Hideki Kajimura. 1997, “The question of Takashima/[Dokdo], *Korean Observer*, 28(3); 이석우. 2003, 『일본의 영토 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인천: 인하대학교 출판사); 김명기. 2007, 『독도의 영유권과 대일 평화조약』, (서울: 우리영토); 이창휘. 2018, 「독도 문제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의의 전개」, 『서울법학』, 26(1).
- 7) Antonio Cassese. 2001,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49-150.
- 8) 김명기. 2014, 「일본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위 주장의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59(3); 현대송. 2014,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48(4).
- 9) 박창건. 2010, 「한일어업레짐의 변화와 일본의 독도협상 정책: 복합적 확산전략」, 『국가전략』, 16(3); 内藤正中. 2000,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韓關係史』, (東京: 多賀出版); 현대송. 2013, 「아베 내각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 『독도연구저널』, 21; 이성환. 2015, 「일본의 독도 정책과 한일관계의 균열: 2012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 10) 김재한·조윤수·임지혜. 2013, 「민주정치와 일본의 독도정책」, 『한국정치학회보』, 47(5).

계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도 존재한다.<sup>11)</sup> 이들 연구는 2005년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기점으로 독도 관련 시책들을 문헌자료, 신문자료 등을 위주로 영토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시마네현 어민들의 급격한 증가와 어장의 축소를 둘러싼 어업 문제에서 파생된 지방 정치과정을 다루기보다는 해양영토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마네현의 독도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일본 정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독도정책은 정치 행위로서의 항의로 간주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 항의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의 하나로 그 개념과 정의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된 견해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비록 2006년 유엔국제법위원회(UNILC)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을 채택했지만,<sup>12)</sup> 이러한 노력 역시 항의하는 국가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보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예컨대 2006년 UNILC는 일방적 선언과 관련된 10가지 지도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1974년 ICJ의 핵실험 사건 판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sup>13)</sup> 이러한 원칙 중에서 일부 원칙은 항의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항의와 무관한 것이다. 특히 일방적 선언이 이를 선언한 국가의 의무 발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항의의 주된 목적이 항의한 국가의 권리를 보전하

11) 박창건. 2008,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 ‘다케시마의 날’과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4); 김수희. 2011,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이케우치 사토시의 ‘석도’ 논의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10; Yoshihito Nagai. 2012,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akeshima day in Shimane Prefecture.” *Hiroshim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8(1); Alexandwe Bukh. 2014, 「죽도의 날’에의 길: 시마네현과 도쿄와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의 분석」, 『독도연구』, 17; 송희영. 2015, 「일본 시마네현 독도정책의 동향과 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12) UNILC의 58차 회의보고서, pp. 161-165.

13) Nuclear Tests Case (Australia v. France), ICJ Report 1974, pp. 267-270.

기 위한 것이므로 일방적 선언에 관한 지도원칙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서로 다르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일괄된 규칙을 법전화하려는 UNILC의 노력은 사실상 실패했다. 엄밀히 말하면, 일본의 독도정책은 자국의 권리를 보존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묵인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상대국에게 알리기 위한 정치 행위로서의 향의로 비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일본은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실지 회복주의(irredentism)에서 비롯된 외교적 도발의 형태로 독도정책을 펼치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도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적시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왜곡,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일본 각료들의 독도 관련 무분별한 의회 발언 등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외교적 논평과 성명으로 항의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독도 관련된 한국의 실효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항의는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 항의 수단을 총동원하였고, 외교 공한을 통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합의 제소와 교환각서에 따른 공동조정위에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의 극렬한 항의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은 오랫동안 어려워졌고 일본 내의 반한감정이 고조되어 협한세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치 행위로서의 항의는 다음과 같은 일본의 독도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

첫째는 독도 관련 이론·자료의 축적(accumulation)이다. 여기에서 축적이란 독도에 관한 개념설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표출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일본은 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를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각종 이론·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자체 웹사이트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의 팸플릿을 확대 게재하면서 본격적인 독도 도발

을 강행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의 허락 없이 독도 주변의 해양조사·해저탐사·과학실험조사 등을 실행하여 노골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행위로서의 항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항의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더욱이 2007년 시마네현은 마쓰에(松江)시에 현립박물관으로 쓰던 건물을 ‘다케시마 자료실’로 개조하여 독도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이 자료실을 설치한 목적은 단순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홍보·선전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일본 측 연구자들이 한국 측 논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내어 자신들의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내도록 돕기 위한 연구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는 독도 관련 교육의 강화(consolidation)이다. 2008년부터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사실상 초·중·고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중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과 4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다’라는 왜곡된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내용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시행시점을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이행조치 공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도 관련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같은 맥락에서 시마네현은 초·중·고의 학교 교육뿐 아니라 현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 접근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토관(領土館)을 설치하여 독도 체험교육을 병행하는 동시에 시범교육을 통한 향토애를 배양하는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렴하여 지리와 공민 등 다양한 시각에서 생활사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4)</sup>

14) 박창진. 2018, 「한일관계에서 영토교육의 현재적 의미: 경상북도와 시마네현

셋째는 독도 관련 홍보의 확산(diffusion)이다. 여기에서 확산이란 독도에 대한 영토 인식이 이전부터 존재하는 규범과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규범 간의 갈등에서 파생된 공격적 변화가 정치적 행위로 표출되는 과정이다.<sup>15)</sup> 2013년 2월 일본 정부는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독도와 센카쿠열도, 북방4도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홍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달 22일 아베 내각은 차관급 정부대표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에 참석시켜 사실상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흥미롭게도 2013년 10월부터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이란 제목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으로 퍼뜨리고 있다.<sup>16)</sup> 더욱이 매년 일본 정부가 출간하는 『외교백서』와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독도 관련 홍보에 대해 명료한 일본의 입장을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시마네현은 1930~1950년대 독도에서 일본인들이 강치 사냥을 하는 사진 등과 함께 일본과 독도를 억지로 연결하는 내용의 리플렛 자료를 발간했다. 자료는 독도를 ‘갈 수 없는 섬 다케시마’라고 소개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논리로써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홍보의 확산에 활용되고 있다.

---

의 독도교육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24, pp. 217-221.

15) Amitave Acharya. 2004, “How ideas spread: whose norms matter? norm localiz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Asian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1), pp. 242-44.

16) 『동아일보』, 2013년 10월 24일 참조.

### 3. 일본의 독도정책

현대송은 전후부터 현재까지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어 일본의 정책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7단계로 시기 구분을 하고 있다. 첫째, 독도 문제의 태동기(1945-1952)는 해방 이후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까지; 둘째, 독도 문제 탄생기(1952-1965)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일기본관계조약 체결까지; 셋째, 독도 문제 잠복기(1965-1977)는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영해법 개정까지; 넷째, 독도 문제 소강기(1977-1996)는 영해법 개정에서 UN해양법협약 비준까지; 다섯째, 분쟁 전환기(1996-2005)는 UN해양법협약 비준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까지; 여섯째, 독도 분쟁기(2005-2012)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민주당 노다(野田) 내각까지; 일곱째, 분쟁 확산기(2012- 현재)는 자민당 아베(阿部) 2차 내각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다.<sup>17)</sup>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독도정책 변화는 냉전체제의 붕괴, 국제해양레짐의 변화, ‘55체제’의 붕괴와 같은 구조적 변동과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일련의 영토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독도정책은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수세적인 입장에 비해 공세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이 공세적인 독도정책으로 한국을 자극해서 그 반응을 정치화하여 양국의 갈등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8)</sup> 일본의 독도정책은 독도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정치 행위로서의 항의를 통해 현상변경을 시도하려

17) 현대송. 2014, pp. 52-53.

18) Mark Selden. 2011, “Small islets, enduring conflict: Dokdo, Korea-Japan colonial legacy and the United State.” *Asia-Pacific Journal*, 9(2).

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의 독도정책은 ‘고유영토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라는 두 가지 축에서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해법과 UN해양법협약의 비준, 영토교육과 해외 홍보의 강화, 영토문제 전담기구의 설치 등과 같은 일련의 ‘전후체제의 탈각’이라는 구조변동과 상호 연동되어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도정책은 서서히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사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영토 내셔널리즘으로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독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sup>19)</sup> 이러한 일본의 독도정책은 국제 구조와 국내 규범의 상호작용에 의해 ‘대내적 갈등 현상의 대외화’가 ‘구조적 침투성, 정치적 반응성, 인식적 변형성’이라는 정치동태적 특성이 복합적 확산전략으로 표출되고 있다.<sup>20)</sup> 이는 국제 구조의 전환기에서 일본이 영토정책을 국익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협상 전략인 동시에 특정 정치세력을 무마시키거나 결집시키는 도구로 삼으려는 국내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정책결정자가 주어진 정치체제와 선거제도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독도정책을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외정책의 국내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독도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성 체계 변수의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는 정치지도자의 인식 변화이다. 일본의 독도정책이 영토에 대한 실질회복주의에 기반 한 ‘도발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주로 정치지도자 개인 단위의 분석이다. 이러한 접근은 아베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아베 증조부 아소 다키치(麻生太吉),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보수우경화 성향이 아베 정권의 독도정책에 그대

19) Rlaf Emmers. 2010, “Japan-Korea relations and the [D]okdo/Takashima dispute: the interplay of nationalism and natural relations.” *RSIS Working Paper*, Singapor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20) 박창진. 2010, pp. 71-73.

로 반영되었다는 담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은 현대 한일관계사 속에서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의 문제가 분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변칙적 주기 곡선을 그리며 단계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아베 정권이 외부의 독도 자극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독도 도발을 통해 한일관계를 악화일로로 길로 내몰기보다는 현상유지 수준에서 독도 분쟁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한일관계에서 독도 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쟁점-이슈는 정치지도자의 개인 성향보다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 추진방향이 절대적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이익과 정책적 선호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시스템에서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를 고려하면, 독도에 대한 정책 기조는 국내정치적 환경과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결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결정 기구의 역할 확대이다. 일본의 독도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앙정부 조직은 외무성, 문부과학성, 내각관방, 총리관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2007년 4월 일본 정부는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내각관방에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여 해양 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개편을 단행했다.<sup>21)</sup>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관저 주도의 해양 정책을 통해 독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토문제 전담기구의 설치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외무성은 독도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아시아대양주국을 중심으로 국장-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심의관-모리 다케오(森健良), 외무차관-아키바 타케오(秋葉剛男), 외무대신-고노다로(河野太郎) 등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는 독도와 관련된 교육 홍보를 담당하고, 관저의 내각관방-스가 요시히데(菅義偉)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독도정책에 관련된 간담회를 통해 결과물을 각의 결정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법

21) 笹川平和財団海洋政策研究所. 2018, 『海洋白書2018』, (東京: 成産堂), p. 128.

화 과정에서 자민당은 독도의 정책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자민당 내의 정무조사회 하부 기관인 외교조사회는 외교정책 입안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의 위원장인 신도 요시다카(新藤義孝)를 중심으로 독도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렴이다. 2019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마쓰에(松江) 시에서 제14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이 행사에 차관급인 안도 히로시(安藤裕)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당일 미조구치 겐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는 개회사에서 ‘한국이 독도의 점거를 기정 사실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외교 교섭에서 독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2)</sup> 같은 맥락에서 시마네현은 내각부에 오래 전부터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에 관한 홍보 계발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과 ‘독도 영토 문제와 국경 이도(離島)가 하고 있는 역할 등을 국민에 계발하는 시설을 오키노시마초(隱岐の島町)에 설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독도정책에 대한 시마네현의 노력은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언을 중앙정부가 수렴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제기한 독도 영유권의 논리를 외무성이 수렴하여 국내외 홍보함과 더불어 교육현장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문부과학성이 독도 교육을 전파하고 있다. 즉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정책 제언, 외무성의 국내외 홍보, 문부과학성의 교육이라는 트라이앵글 속에서 에스카레트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중앙정부가 수렴하는 형태로 독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2) 『조선일보』, 2019년 2월 22일 참조.

#### 4.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에 대한 특징과 딜레마

‘한일 우정의 해’ 40주년을 맞이한 2005년, 시마네현은 1905년 ‘현 고시 40호’ 선포의 100주년을 명분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2월 22일)하고 공포(3월 25일)하였다. 같은 해 6월 6일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설치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료 발굴과 논리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다케시마의 날’을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은 1987년 8월 치바 현(千葉県) 출신의 이시바시 가즈야(石橋一彌) 자민당 의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1977년 12월 한국이 영해법을 제정한 이후 독도 12해리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이 한국 경비정에 의해 쫓겨난 사건을 계기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공연히 정치행위의 항의로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sup>23)</sup> 이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좌장인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 대학 교수에 의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구체화 되었다.

주목할 것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로 시마네현이 독도 관련 시책들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마네현은 조례 제정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5년 6월 6일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설치했으며, 2006년 4월 독도 문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전임직원을 배치했다. 2007년 4월에는 시마네현의 구현립박물관 2층에 20평 남짓한 ‘다케시마자료실’을 개설했고, 9월에는 현의 홈페이지에 ‘웹(Web) 다케시마문제연구소’를 개설했다.<sup>24)</sup> 더욱이 2007년 3월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시마네현에 제

23) 최장근, 2003,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논리」, 『국제·지역연구』, 12(2), p. 99.

24) Web 竹島問題研究所,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index.html>, (검색일: 2019/04/30).

출한 ‘독도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는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기본 논리로 채택되었고, 외무성 홍보용 홈페이지에 ‘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로 게재되어 10개 국어로 번역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5)</sup> 이처럼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지방정부의 정책을 중앙정부가 수렴하여 정치적 행위로서의 향의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특징과 딜레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특징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영토의 ‘실지(失地)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행위로서의 향의로 표출되고 있다. 그 출발점인 ‘다케시마의 날’ 제정 공포는 시마네현이 한국을 향한 독도 반환을 위한 실질 회복주의에서 비롯된 영토 수호 의지라기보다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정치적 향의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시마네현은 독도와 관련한 한일 간의 문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을 개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이 가져올 한일관계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각한 염려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제지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방의회는 정치적 결정을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음’을 명분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의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등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3년부터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정부 인사가 참석

25) 外務省,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검색일: 2019/04/25).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 행사로 승격하는 것을 유보하겠다는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원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독도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이 설치되었고, 궁극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움직임까지 일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 11월 8일 시마네현의 미조구치 켄베에(溝口善兵衛) 지사는 독도 영유권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면서 ‘다케시마의 날’을 각의에서 정식 결정해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촉구했다. 이처럼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사료와 자료를 찾아내는데 방점을 두는 동시에 영유권 주장을 위한 공세적인 전략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째,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정치화이다. 2006년 2월 22일부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시작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어디까지나 지방정부의 행사에 불과했지만, 2012년 12월 26일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로 임명되면서 중앙화되기 시작했다. 아베 신조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차원에서 시마네현이 조례로 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승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입장은 한 달 후 총리로 임명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013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차관급 정부 대표인 시마자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킴으로써 사실상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시켰다.<sup>26)</sup> 이후 아베 정권은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 주최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중앙정부 차관급 인사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 오고 있다. 2019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마쓰에(松江) 시에서 제14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이 행사에 지난 7년 연속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 왔고, 이번 행사에는 안도 히로시(安藤裕)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둘러싼 정치적 행위의 향의를 반영하여 시마네현은

26) 『경향신문』, 2013년 2월 22일 참조.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둘째,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관제화이다. 일본의 독도정책 수립의 중심에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있다. 이 연구회는 시마네현을 넘어서 일본의 독도 관련 시책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연구회, 강습회, 전시회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연구 성과와 최신 연구 정보를 공개한 ‘Web다케시마연구소’를 현의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근거가 되는 논리를 알리는 대국민 계몽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제1기(2005.06~2007.03)와 제2기(2009.10~2012.03)의 활동을 거쳐 제3기(2012.10~2015.6)의 활동을 마쳤다. 연구회는 2권의 중간보고서와 3권의 최종결과보고서, 그리고 ‘平成20년도 조사연구보고서’와 ‘다케시마문제 100문 100답’이라는 2권의 연구 성과 발간했다. 이러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노력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강조하여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에 대해 영토정책을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영토의식을 고취시켜 관제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셋째, 독도 영토교육의 확산화이다.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래, 시마네현은 지속적으로 초·중·고교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기술을 정부나 교과서 출판사 측에 요청해 왔다. 더욱이 시마네현 교육위원회는 교직원의 영토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초·중·고별 학교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핸드북을 제작해 시마네현 뿐만 아니라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 문부과학성에도 보내 공격적이고 치밀한 독도 영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시마네현의 교육위원회는 2009년 5월부터 현 내 모든 초·중·고교의 사회과 자료로 사용할 독도를 소재로 한 부교재와 DVD, 지도안 등을 제작·보급해 ‘독도교육에 관한 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마네현의 의도를 살펴보면,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을 통해 일본의 영토성을 강조하는 국민의 국가의식과 영역

의식을 고취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여 국민적 호응을 받기 위한 지방정치의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2) 딜레마

전후부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이전까지 시마네현은 식민지 시기에 지배하였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하는 진정서를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지만,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다.<sup>27)</sup> 예를 들면 시마네현 지사와 의회의장 명의로 ‘다케시마 영토권 확보 요망서’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현 의회가 중심이 되어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및 안전조업의 확보’에 대한 결의를 하기도 했으며,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해결 촉진협의회’를 설립하는 등과 같은 독도에 대한 영토 수복의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시키는지 100년 되는 2002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였고, 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을 연구하고 홍보하기 위해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설치하였다.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주장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논리의 기본 구조가 일본 외무성의 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연구, 정책대응 및 홍보, 교육 및 개발이라는 체계로 정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에는 국가전략실, 국가안전보장국, 국제홍보 및 종합해양정책본부를 관할하며 내각과 총리대신을 보좌하고 있는 내각부, 해상보안청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성, 총리관방실까지도 일본의 독도정책을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더욱이 시마네현의 ‘Web 다케시마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임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토 문제를 국가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의 외교 노력으로서 문제의 평

27) 송휘영, 2013, 「일제강점기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인식: ‘울릉도 우회보’의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pp. 266-267.

화적인 해결과 영토권의 조기 확립을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 점거와 영토권의 고착화를 위한 움직임 등과 같은 현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독도가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의 고시에 의해 ‘본현 소속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이지만, 해방 이후, 한국의 독도 경비대원의 상주와 한국민의 주민등록지 이전 등, 50년 이상에 걸쳐서 불법으로 점거되어 어업권 등과 같은 일본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과 한국이 우편 포스트의 설치, ‘독도 우표’의 발행, 독도의 이용에 관한 신법의 제정과 민간인의 이주, 독도방어훈련 등 영토권의 기정 사실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구도에서 ‘고유영토론’이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마네현의 독도관련 시책들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정부 주도의 해양정책에 연속된 독도정책이다. 2007년 4월 말 일본은 초당파 의원입법으로 해양기본법이 제정됐다. 해양기본법의 제1조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해서 해양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을 증진함과 동시에 해양과 인류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여기에는 종합적인 해양시책에 관한 법제의 정비방침과 독도를 포함한 낙도의 보전관리 등 중요한 해양시책의 정비방침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기 해양기본계획(2008년-2012년)에는 EEZ 등 주변 해역에 대한 관리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고, 제2기 해양기본계획(2013년-2017년)에는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표방하면서 국경 낙도의 보전 및 진흥 등에 대처함으로써 ‘바다를 지키는 국가’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15일 제3기 해양기본계획이 각의 결정을 통해 해양안보에 염두를 두는 방향으로 영해에서의 국익 확보,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28) Web竹島問題研究所,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index.html>, (검색일: 2019/08/21).

이용 확보, 해양 이용의 자유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해양정책은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정책 기조들의 변화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독도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정부 주도의 해양정책에 예속되어 ‘고유영토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우경화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구성원이다. 2006년 6월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시마네현 내외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이 연구회의 원래 목적은 독도의 역사에 관한 연구, 고찰 그리고 문제점을 정리해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논리 개발과 더불어 현의 독도정책을 독려하고 국민에게 영토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연구회의 위원들은 모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구회의 좌장인 다쿠쇼쿠(拓植)대학 교수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대표적인 극우 학자로서 역사 편향을 기반으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논리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sup>29)</sup> 그는 2011년 7월 31일 자민당 보수우파 의원 3명의 울릉도 기획 방문을 추진하여 인천공항에서 강제 출국당한 인물이기도 하다.<sup>30)</sup> 이처럼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구성원들이 우경화된 경향이 강하다. 사실 제1기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시마네현립대학교(島根県立大学) 교수 후쿠하라 유지(福原裕二)를 중심으로 한 지한파 학자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독도 연구에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 했지만, 시모조 마사오를 중심으로 한 극우 위원들의 강한 저항 때문에 연구회는 현의 독도정책을 제공하는 싱크-탱크 역할만을 했다.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것처럼 보였고, 후쿠하라 유지 교수는 제2기 위원회가 발족된 이후부터 실질적인 위원회 활

29) 송경호. 2017, 「죽도문제연구회의 실상과 허상: 좌장 시모조 마사오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73권.

30) 『한겨레신문』, 2011년 8월 1일자 참조.

동을 하지 않고 있다.<sup>31)</sup> 그 결과 제2기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위원을 19명 체제로 증원하였고, 제3기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위원을 16명으로 축소해서 발족했다.<sup>32)</sup> 이러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활동 과정에서 시모조 마사오는 줄곧 좌장을 맡았고 쇼토쿠(松徳)학원 고등학교 교사인 사사키 시게루(佐々木茂)가 부좌장을 담당했다. 이들은 일본 외무성과 문부과학성과 연계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우경화된 논리와 홍보를 계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셋째, 노골적으로 편향된 독도교육의 강화이다. 다케시마 현의 독도교육은 현재 일본의 교과서보다 더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교과·조례 시간을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립고교 입학시험에는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당연시하는 문제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5년 8월에 발간된 제3기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사(史)A/B 학습지도안은 독도교육을 일본사 연간 지도계획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학습 목표도 독도 영토 편입 당시 한국의 대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료를 토대로 영토 편입 목적과 경과를 이해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

31) 일본 시마네현립대학교 북동아시아연구소 교수 후쿠하라 유지(福原裕二)와 인터뷰, 2019년 7월 16일.

32) 제3기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위원의 구성원은 좌장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타쿠쇼쿠(拓植)대학 국제학부 교수, 부좌장 사사키 시게루(佐々木茂) 쇼토쿠(松徳)학원 고등학교 교사, 우사미 아사시(宇佐美朝士) 시마네현립 마츠에기타(松江北)고등학교 교사, 우치다 후미에(内田文恵) 마쓰에시교육위원회 문화재와 주입편찬관, 츠카모토 타카시(塚本孝) 토카이(東海)대학 법학부 교수, 츠네즈미 사토시(常角敏) 치부무라립(知夫村立) 치부(知夫)중학교 교장, 나카노 테츠야(中野徹也) 간사이(関西)대학 법학부 교수, 노츠 코우이치(野津浩一) 오키노시마초 총무과 과장보좌, 후쿠하라 유지(福原裕二) 시마네현립대학 종합정책학부 부교수, 후지이 켄지(藤井賢二) 히메지(姫路)시립 히메지고등학교 교사, 하라다 타마키(原田環) 현립히로시마(県立広島)대학 명예교수, 마스다 유우(升田優) 시마네현정촌회(島根県町村会) 상무이사, 야마구치 슈우지(山口修司) 이즈모시립(出雲市立) 이노(伊野)초등학교 교장, 야마자키 요시코(山崎佳子) 민간회사 사원, 소다 카즈히코(曾田和彦) 시마네현교육위원회 의무교육과 지도주사, 이토 나오후미(伊藤尚史) 시마네현교육위원회 고교교육과 지도주사이다.

행 일본 교과서 기술과 달리, 일본과 한국의 주장을 견주어 비판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시마네현 교육위원회는 2014년 처음으로 지역 공립고교 입학생 선발 학력검사에 독도 문제를 출제했다. 이 문제에는 일본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묻는 말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정답으로 정하고 학생 93.3%가 맞추도록 유도하는 노골적으로 편향된 것이었다. 2015년 문제에는 일본의 영토 분쟁 중재 희망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를 정답으로 유도하는 문제를 내기도 했다. 또한 시마네현 교육위원회는 교직원의 영토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초·중·고교별로 학교 수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핸드북을 제작해 시마네현 뿐 아니라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 문부과학성에도 배포하는 등 공격적이고 치밀한 독도교육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시마네현은 교과·조례시간은 물론 학급 활동, ‘다케시마의 날’ 기간을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독도 교육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시마네현은 영토 편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왜곡되고 편향된 독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5. 맺음말

일본의 독도정책은 정치 행위로서 항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제도화된 법규 혹은 규범보다 정치적 가치에 따라 단순한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권리보전을 위한 소극적인 행위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정책 시책들을 국제사회에서 독도 분쟁화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의 관련 시책들은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으로 항의한 영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현존하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항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실지회복주의에서 비롯된 외교적 도발의 형태로 독도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독도 관련 이론·자료의 축적, 교육의 강화, 홍보의 확산 등을 통해 자국의 권리를 보존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묵인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상대국에게 알리기 위한 정치 행위로서의 항의란 맥락에서 독도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는 ‘고유영토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라는 두 가지 축에서 영해법과 UN해양법협약의 비준, 영토교육과 해외 홍보의 강화, 영토문제전담 기구의 설치 등과 같은 일련의 ‘전후체제의 탈각’이라는 구조변동과 상호 연동되어 독도정책이 한층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일본 정치지도자의 인식 변화, 정책결정 기구의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렴 등과 같은 국내정치적 메커니즘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독도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시마네현은 독도와 관련한 한일 간의 문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로 시마네현은 독도 관련 시책들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마네현은 조례 제정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설치했으며, 2007년 4월에는 ‘다케시마자료실’을 개설했고, 9월에는 현의 홈페이지에 ‘웹(Web) 다케시마문제연구소’를 개설했다. 이처럼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사료와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영유권 주장을 위한 공세적 논리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정치화,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관제화, 독도 영토교육의 확산화 등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고유영토론’이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정부 주도의 해양정책에 예속된 독도정책, 우경화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구성원, 노골적으로 편향된 독도교육의 강화 등과 같은 딜레마가 표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독도정책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과거에 비해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의했다. 아베 정권은 영토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했고,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홍보를 본격화하는 등 중앙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독도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방정부 차원의 행사로 국한하면서 중앙정부의 관여를 피하고, 국회에서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지배를 불법 점거라 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는 형태로 지배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정무차관을 파견하면서 그 방침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공하고 있는 근간은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지방정부 차원의 정치적 행위로서 항의를 넘어서 일본 정부 차원의 정치적 행위로서 항의로 점점 더 변질하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명기. 2007, 『독도의 영유권과 대일 평화조약』, 서울: 우리영토.
- \_\_\_\_\_. 2014, 「일본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위 주장의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59(3).
- 김수희. 2011,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이케우치 사토시의 ‘석도’ 논의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10.
- 김재한·조윤수·임지혜. 2013, 「민주정치와 일본의 독도정책」, 『한국정치학회보』 47(5).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1952-1969 독도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6권』,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박병섭·나이토 세이쥬(지음) 호소카 유지(옮김). 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역사 자료를 통한 고찰』, 서울: 보고서.
- 박창진. 2008,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 ‘다케시마의 날’과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4).
- \_\_\_\_\_. 2009,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 상응적 대응의 유효성과 딜레마」, 『한국과 국제정치』 25(3).
- \_\_\_\_\_. 2010, 「한일어업레짐의 변화와 일본의 독도협상 정책: 복합적 확산전략」, 『국가전략』, 16(3).
- \_\_\_\_\_. 2018, 「한일관계에서 영토교육의 현재적 의미: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독도교육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24.
- 송경호. 2017, 「죽도문제연구회의 실상과 허상: 좌장 시모조 마사오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73.
- 송휘영. 2015, 「일본 시마네현 독도정책의 동향과 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 \_\_\_\_\_. 2013, 「일제강점기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인식: ‘울릉도우회보’의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6.
- 이석우. 2003, 『일본의 영토 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인천: 인하대학교출판사.
- 이성환. 2015, 「일본의 독도 정책과 한일관계의 균열: 2012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 이창휘. 2018, 「독도 문제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의의 전개」, 『서울법학』, 26(1).
- 정병준. 2010, 『독도 1947: 전후 독도 문제와 한미일 관계』, 파주: 돌베개.

정성화. 1993, 「전후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의 기원」, 『인문과학연구논총』, 10.  
최장근. 2003,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논리」, 『국제·지역연구』, 12(2).  
현대승. 2013, 「아베 내각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 『독도연구저널』, 21.

\_\_\_\_\_. 2014,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48(4).

Bukh, Alexandwe. 2014, 「‘죽도의 날’에의 길: 시마네현과 도쿄와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의 분석」, 『독도연구』, 17.

『조선일보』, 2019년 2월 22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2/201902220059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2/2019022200598.html), (검색일: 2019/04/29).

『동아일보』, 2013년 10월 24일, <http://news.donga.com/3/all/20131024/58421398/1>,  
(검색일: 2019/04/30).

玄大松. 2006, 『領土ナシヨナリズムの誕生: 「独島/竹島問題」の政治学』, 東京: ミネ  
ルヴァ書房.

大西俊輝. 2003, 『日本海と竹島—日韓領土問題』, 東京: 東洋出版.

内藤正中. 2000,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韓関係史』, 東京: 多賀出版.

笹川平和財団海洋政策研究所. 2018, 『海洋白書2018』, 東京: 成産堂.

領土・主権対策企画調整室, <https://www.cas.go.jp/jp/ryodo/torikumi/torikumi.html>,  
(검색일: 2019/04/30).

Web竹島問題研究所,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index.html>, (검색일: 2019/04/30).

Bukh, Alexander. 2015, “Shimane prefecture, Tokyo and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Takeshima: regional and national identities in Japan.” *The Pacific Review*, 28(1).

Cassese, Antonio. 2001,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mmers, Rlaf. 2010, “Japan-Korea relations and the [D]okdo/Takashima dispute: the interplay of nationalism and natural relations.” *RSIS Working Paper*, Singapor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Kajimura, Hideki. 1997, “The question of Takashima/[Dokdo], *Korean Observer*, 28(3).

Kim, Hong Nack. 2009, “The U.S. and the Territorial Dispute on Dokdo/Takeshima between Japan and Korea, 1945-195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3(2).

- MacGibbon, I. C. 1953, "Some observations on the part of protest in international law." *The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30.
- Nagai, Yoshihito. 2012,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akeshima day in Shimane Prefecture." *Hiroshim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8(1).
- Nakajima, Kendaro. 2007, "Is Japanese maritime strategy changing? An analysis of the Takeshima/Dokdo issue." *USJP Occasional Papers*, Cambridge, M.A: Program on US-Japan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 Selden, Mark. 2011, "Small islets, enduring conflict: Dokdo, Korea-Japan colonial legacy and the United State." *Asia-Pacific Journal*, 9(2).
- Weinstein, Michael. 2006, "South Korea-Japan Dokdo/Takeshima Dispute: Toward Confrontation."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accessed at <https://apjif.org/-Michael-Weinstein/1685/article.html> (2019/March/02).
- Wiegand, Erista E. 2015, "The South Korea-Japanese security relationship and Dokdo/Takeshima islets dispute." *The Pacific Review*, 28(3).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and Dilemma of Japan's Dokdo Policy** - focusing on Shimane Prefecture

**Park, Chang-Gun**

Japan's Dokdo policy has a feature as the protests of political action. It is a simple opposition by political values than the institutionalized laws or norm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it is to make an objection on the basis of passive action for the preservation of rights. The Japanese government is focused on informing effectively Shimane Prefecture's policy measures related to Dokdo, "distinguished territory order" and the need to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eyond finding historical sources and data, Shimane Prefecture of policy measures related to Dokdo is showing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 politicization of "Takeshima Day's" event for the offensive logic of claiming sovereignty, government-inspired controlment of "Takeshima Study group" and the spread of Dokdo territorial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se characteristics have dilemma at the same time such as Dokdo policy under the control of government-led maritime policy, members of right-winged "Takeshima Study Group" and the strengthening of blatantly biased Dokdo education. Like this, the Shimane Prefecture of policy measures related to Dokdo as a guiding principle applied to a unilateral declaration could be seen as a part of a protest to prevent existing conditions from sticking in order to preserve the rights of the protested territory.

**Key words:** Dokdo policy, “Takeshima Study Group”, Japan, protests of political action, Shimane Prefecture

이 논문은 2019년 11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문학작품에 나타난 독도와 안용복

김 권 동\* · 김 병 우\*\*

### 〈목 차〉

1. 머리말
2. 독도에 대한 일본의 환상
3. 안용복과 그 인물형상화
4. 맺음말

### 〈국문초록〉

독도는 지금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돌섬이다.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그 섬이 장소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섬이다. 독도에 대한 서사, 즉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독도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인물을 형상화하기에는 너무 소재 중심적이지 않은가 하는 회의가 든다. 반면에 문학적 형상화가 잘 드러난 소설의 경우, 독도를 지킨 역사적 인물 안용복에 대해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사회적 상상력을 펼치기가 용이하다. 한 민족이나 한 나라의 이상적 인간상은 역사적 전통 속에서 다듬어져 내려온 인간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품처럼 필요에 의해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거나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정체성으로는 대치되거나 수입될 수는 없는 일이다.

문학에서의 실제성은 과거와 현재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학은 미래의 전망을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 kimsiin@dhu.ac.kr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부교수(교신저자) / ulkim@dhu.ac.kr

제시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차용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작가의 역사적 해석이자 미학적 창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이 반드시 역사적 기록과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문학은 역사적 사료를 넘어 작가들의 직관력과 상상력으로 사실 이상의 진실을 찾아낼 수가 있다. 작가의 해석이 개인의 독단적 편견이 아닌 동시대인의 관점을 반영할 때, 그때의 문학은 다시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막연한 바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노력을 담는 그릇이 될 때, 문학적 이야기가 또다른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독도와 안용복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도는 실존 공간이다. 실존 공간은 하나의 문화 집단 속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다.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화와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일인 것이다.

**주제어:** 독도, 안용복, 문학작품, 문화, 인물형상화

## 1. 머리말

지금까지 일본은 독일과 달리 제국주의 시절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없던 일로 치부하고 있다. 그나마 1990년 5월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일본의 아키히토 일왕이 과거사에 관련해서 “痛惜의 念”이라는 표현을 썼던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은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강행했다. 이렇듯 위안부 판결에 대한 극력 반대는 일본의 역사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도 문제지만 그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한국인의 역사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방정국에 어린 아이들이,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자. 일본 놈 일어선다, 조선 놈 조심하자.”라는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한다.

요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자면, 이와 같은 인식은 여전히 필요하리라. 특히 “조선 놈 조심하자.”라는 부분에서 “조선 놈”을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조선 사람 모두가 주변 국가를 경계하자는 뜻이겠지만, 부분적으로 보자면 조선 사람 중에 경계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역사 갈등 중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식민지 여성들을 동원하였다. 이에 대해 1993년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반성을 촉구한 담화를 발표했을 뿐, 그 이후에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일본 고교생들이 2018년부터 배우는 교과서 7종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영했고, 이 중 4종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강조하였다고 한다.<sup>1)</sup> 일본은 왜 이러한 교과서를 만들고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문화의 기초로써의 언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역사는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사실에 근거하여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내려는 작업은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는 궁극적으로 해석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나 작가는 자기 나름의 식견과 확고한 주관에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내보이고,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효율적

1) 『경향신문』, 「일본 교과서 “위안부 문제 최종적 해결”」, 2017.03.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324222301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3242223015)  
2019.10.09. 검색

인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며 역사적 진실에 접근해 간다. 역사에 가정을 대입하여 추론하는 논리적 접근 방식은 사론<sup>2)</sup>이 사학(史學)과 멀어지는 지점이며 문학(文學)에 가까워지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역사가 선대의 자취나 무늬를 따라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옛것을 새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발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철학적 물음이고, 그 물음을 보다 쉽게 풀어 형상화하는 것이 문학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독도와 안용복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에드워드 렐프는, “지리적 능력이란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개인이며, 동시에 광범위한 환경적·사회적 힘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우리 삶의 직접성을 깨닫는 능력<sup>3)</sup>”이라고 했다. 독도는 실존 공간이다. 실존 공간은 하나의 문화 집단 속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다.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화와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 문화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일인 것이다.

## 2. 독도에 대한 일본의 환상

흔히 말하는 ‘교육(教育)’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가치관 등을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지식과 문화를 전수하고 발전시켜 왔다. 맹자의 “천하의 영재를 교육한다.”(得天下英才而教育之)라는 글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유

2) 김병우 편역, 『한국이 기억하는 안용복』, 지성사, 2015.

3) 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7면.

래하였다. 교육(敎育)의 한자 기원을 살펴보면, 먼저 가르칠 교(敎)는 본받을 효(爻)와 아들 자(子) 그리고 칠 복(支, 卜+又)이 결합한 글자이다.<sup>4)</sup> 풀이하면, 아들이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본받고, 어른은 손에 막대기(卜)를 들고 지도한다는 의미다. 즉 한 손에 회초리를 잡고 어린이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형상이다. 아울러 육(育)은 어머니가 따스한 몸(肉)으로 젖먹이(云)를 안아 키운다는 뜻이다. 敎가 엄하게 다스리는 면이라면 육은 따스하게 감싸는 면이다.

아울러 서양에서는 교육을 뜻하는 단어로 ‘pedagogy’와 ‘education’이 있다. ‘pedagogy’는 그리스어의 ‘pedagōge’에서 유래하는데, ‘paidos(어린이)’와 ‘agōge(이끌어가다)’의 결합어이다. 즉 어린이에게 신체를 단련하는 체육관, 연극을 보여주는 극장 그리고 삶을 익혀주는 시장 등으로 데리고 다니는 가정교사의 직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education’은 ‘e(밖으로)’와 ‘꺼낸다(duco)’의 결합으로, 안에서 지니고 있는 소질을 밖으로 키워준다는 뜻이다. ‘pedagogy’가 한자어 敎에, ‘education’은 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자어 교육에 해당하는 우리말로 ‘가르치다’가 있다. ‘가르치다’는 ‘갈다’와 ‘치다’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갈다’는 논밭을 갈거나 솥들을 가는, 즉 새것으로 갈아치우는 경작이나 연마, 또는 갱신(更新)이다. 아울러 ‘치다’는 “소를 치다.”나 “하숙생을 치다.”, 그리고 “떡매를 치다.”와 같이 양육이나 보육, 또는 형성을 의미한다. 즉 갈다는 달구어 다듬는 敎에, 치다는 보살피 키워주는 육에 해당한다. 그러면 일본말은 어떠할까. 이에 알맞은 말로 ‘오시에루(おしえる)’는 형용사 ‘오시(愛)’이 동사화로, 사랑하고 타일러 이끈다는 뜻이다. 그리고 막대를 옆에 박아 어린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지주목, 보살핌(오이소우:おいそう)이라는 뜻도 있다고

4) 支를 ‘아비’이거나 ‘아비의 베품, 아비의 보여줌’으로 보아 ‘윗사람이 보여주는 것[支]을 아랫사람[子]이 본을 받음[爻]’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우석영, 『날말의 우주』, 궁리, 2011, 500면 참조.

한다.)

이처럼 일본은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자기합리화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올해 2월에 후쿠시마 현은 피난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주민 수를 42,104명(현 내 9,323명, 현 외 32,768명, 기타 13명)으로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피난자 수가 제일 많았던 2012년 5월의 164,865명에 비해 약 4분의 1로 감소한 셈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면, 초기에 해제된 다무라시 미야코지 지구에서 80%를 넘은 것을 빼고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15%대, 적을 경우에는 3-4%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sup>6)</sup> 그 이유는 무엇보다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불안과 돌아가도 생업인 농업을 재재하기가 어렵고, 재개하더라도 농작물을 제대로 팔 수 없는 생활기반과 공동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0만 엔(약 100만 원) 상당의 지급해온 정신적 배상을, 피난 지시 해제에 따라 2018년 3월에 모두 종료하였다.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수단은 갈수록 축소되면서도 일본 정부와 행정당국은 더욱 더 후쿠시마 안전·안심 캠페인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도쿄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에서 경기도 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도시락으로 후쿠시마를 향한 세계의 잘못된 시선을 바꾸고 싶다.”<sup>7)</sup>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등은 오염수를 정화했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100만톤 이상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야당인 유신회는 “법률의 기준 내에서 처리한 다음 바

5) 김정환, 『한국교육이야기 백 가지』, 박영사, 2007, 12면.

6) 오히라 츠나키, 「후쿠시마는 지금(2)」, 『탈핵신문』, 2019.03.02.

<http://nonukesnews.kr/1404> 2019.10.09. 검색

7) 『JTBC』, 「안전 홍보 열올리는 일, 올림픽 관광객에 ‘후쿠시마 도시락?’」, 2019.08.2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73401](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73401) 2019.10.09. 검색.

다에 방출하는 것이 타당하다.”<sup>8)</sup>라는 권고 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 간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공동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렇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 후쿠시마 현지 어민 합의 ㉡ 방사능 오염수 내 세슘·삼중수소 등 방사성핵종 제거 ㉢ 국내사회 비난 해결 ㉣ 배수 중 배출관리 기준 충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관련 연구원은,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할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보인다.” “지금 지점에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배출했을 때 국제 사회 비난여론과 이것이 도쿄올림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sup>9)</sup>라고 언급했다. 한편 환경단체 그리피스(Greifis)의 원자력 선임전문가 손 버니는 “오염수 111만 톤을 바다로 흘려보내려면 17년에 걸쳐 물 7억 7천 만 톤을 쏟아 부어 희석해야 한다”면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아베 내각은 오염수 위기에 대해 한 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고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해명하기를 포기하고 아예 침묵한다.”라고 비평했다.<sup>10)</sup>

한·일 간에 이러한 시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이라든가 “내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라는 말이 있다. 자기 자신이 평가하면서 주관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객관적일 수가

8) 『KBS NEWS』, 「일본 유신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바다에 방출 타당”」, 2019.10.0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97913&ref=D> 2019.10.09. 검색.  
 9) 『전자신문』, 「원자력안전기술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사회 비난부터 해결해야”」, 2019.10.09. <http://www.etnews.com/20191008000168> 2019.10.09. 검색.  
 10) 『YTN사이언스』, 「日, 방사성 오염수 100만t 방류 계획...한국 위협」, 2019.08.08.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908081103351123](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908081103351123) 2019.10.09. 검색.

있겠는가. 아울러 ‘기분 나쁜 소리’를 어떻게 기분 나쁘게 듣지 않을 수 있던 말인가. 여기에는 요즘 시쳇말로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이 있다. 자신과 타인을 다른 시선으로 봐서 “나에게는 관대하게, 남에게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자리한 것이다. 세상을 밖에서 바라본다면 모를까,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훈수(訓手)’가 필요하고 ‘문구멍 들여다보기’가 필요한 것이다.

일찍이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자기만 알고 남들이 모르는 것이 ‘이명(耳鳴)’이고, 자기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것을 ‘코골이’에 비유했다. 이명은 남들은 듣지 못하지만 자신에게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괴로운 소리로, 코골이는 자신은 못 듣지만 타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괴로운 소리이다. 내가 괴롭냐 아니면 남이 괴롭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그것을 바라보거나 해결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특히 그 사건이 자신과 관련한 사안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령은 일본의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그리고 우리와 다른 문화가 바로 모든 행위를 양식화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마음이 있어서 어떤 양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으로, 일정한 형식으로 정형화하는 일종의 틀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양식과 의식화에서 생겨나는 것이 이른바 ‘신화’라는 것이다. 일본 문화에서 ‘신화 만들기’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본은 현실과 신화를 완전히 혼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아주 세속화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 두드러져 있다.<sup>11)</sup>

그 실례로 「한 그릇 메밀국수」<sup>12)</sup>를 들고 있는데, 동화 첫머리에 “이

11)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이후』, 기린원, 1994, 81-97면 참조.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12월 31일 삿포로 시에 있는 소바집 북해정에서 생긴 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도입문에서 사실이나 허구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그런데 ‘내가 그 소바집 주인’이라고 하며 나타난 사람은 작가인 구리 료헤이(栗良平씨)로부터 속았다는 야마오카 고오조 씨였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작가 구리 씨는 북대의학부의 소아과 의사이지만 뜻이 있어 병원을 그만두고 동화 작가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노라고 하며, 자신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다. 그런데 가짜 의료 행각 등이 발각되자 자신의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사람이 바로 「한 그릇 메밀국수」의 작가 구리 료헤이라는 고발이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인에게도 낯익은 임진왜란 때 악명 높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무용담은, 일본 신화 만들기의 대표적인 표본이다. 가토 기요마사는 임진왜란 때 고니시(小西行長)보다 용맹을 떨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체는 우리의 정규군과는 거의 맞붙어 싸운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검객에 대한 무용담이라는 것은 대개가 일본의 신화만들기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일본 문학사에서 가장 특이한 현상이 ‘와타쿠시 소설(私小説)’이라는 개념이다. ‘사소설’이란, 작가가 직접 자기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런 사소설이 지금도 일본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사실과 허구 사이의 갈등에서 나아가 허구를 사실로 만들려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허구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문화가 아닌가 한다. 이를테면 연극이나 영화, 또는 드라마에서 관객이 악역을 맡은 배우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허구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런데 그것을 집단적으로 기획하는 대표적 작업이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분명 역사적으로 ‘독도(獨島)’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12) 이 동화는 『우동 한 그릇』으로 번역되었다. 구리 료헤이, 최영혁 옮김, 『우동 한 그릇』, 청조사, 2010.

알고 있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도를, 시네마현을 중심으로 자신들은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이를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2014년에 개정된 ‘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2015년 이후에 검정을 통과하여 간행된 교과서들은 일본 정부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sup>14)</sup> 특히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주장인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의 교과서 기술은 상호모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일본인의 상상력은 자신의 외계를 향해서 초월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확산작용보다는 거꾸로 그것을 자기 안으로 불러 끌어들이는 수축작용의 경향이 더 짙다는 것이다.<sup>15)</sup> 이를테면 남는 땅이 있는지 보고 남은 땅이 있다면, 그쪽 땅덩어리를 잘라내어 밧줄로 끌어와서 자기네 땅에 붙이는 신화를 가진 문화이다. 그러다보니 밖의 것을 안으로 끌어오는 철부태(扇)형의 축소지향이 되고 만다. 다음의 이즈모노구니노 후도끼(出雲國風土記)의 신화가 그것이다.

오우(意宇)라고 부르는 까닭은 나라를 끌어다 붙인 야쓰카미즈오미쓰노미고토(八東水臣津野命)가 말하기를 “많은 구름이 일어나는 이즈모 나라는 폭이 좁아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진 나라이다. 그래서 꺾매어 (붙이듯이 다른 토지를) 갖다붙여야 한다.”고 하였다.

- 
- 13)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인에 의해 언급한 최초의 기록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를 비롯하여 「울릉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1696),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1785),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1877),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1901) 등이 있다.
- 14) 이와 관련한 내용은 「박지영, 「일본 중학교 독도교육의 실태, 『獨島研究』 제26호, 2019. 6.」와 「송취영, 「한국 양국 정부의 독도 홍보사이트의 비교검토, 『獨島研究』 제18호, 2015. 5.」, 그리고 「곽진오, 「독도 홍보현황 고찰-시네마현을 중심으로, 『韓日軍事文化研究』 第22輯, 2016. 1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15) 李御寧, 『축소지향의 일본인』, 甲寅出版社, 1983, 57면.

(그러면서) “시라기(志羅紀)의 미사키(三崎)에는 여분의 땅이 있다고 본다면 남는 땅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날이 넓은 가래로 고기를 푹 찢러 나누듯이 땅을 갈라 떼내어, 견고한 밧줄에 걸어서 천천히 슬슬 끌어당기면서 “땅이여 오너라 땅이여 오너라” 하며 끌어다 붙인 곳이 조즈(去豆) 해안의 가장 깊숙한 곳(奧地)에서 야호니키즈키(八穗爾支豆支)의 갑(岬)에 이르는 땅이다. 이리하여 견고하게 만들어 박은 말뚝(배를 매기 위한 것)은 이하미국(石見國)과 이즈모국(出雲國)의 경계가 되었고, 사히메산(佐比賣山)이 이것이다. 또 끌어당겼던 밧줄은 소노의 긴 해변(蘆長濱)이다.

또 “북쪽 입구의 사키국에 여분의 땅이 있다고 본다면 남는 땅이 있다”고 하면서, 날이 넓은 가래로 고기를 푹 찢러 나누듯이 땅을 갈라 떼내어, 견고한 밧줄을 걸어서 천천히 슬슬 끌어당기며 “땅이여 오너라 땅이여 오너라” 하여 끌어다 붙인 곳이 다쿠노오리타에(多久折絶)에서 사다국(狹田國)에 이르기까지의 땅이다.

또 “북쪽 입구의 누나미국(農波國)에 여분의 땅이 있다고 본다면 남는 땅이 있다.”고 하면서, 날이 넓은 가래로 고기를 푹 찢러 나누듯이 땅을 갈라 떼내어, 견고한 밧줄을 걸어서 천천히 슬슬 끌어당기며 “땅이여 오너라 땅이여 오너라” 하여 끌어다 붙인 곳이 다시미노오리타에(宇波折絶)에서 쿠라미국(闇見國)에 이르기까지의 땅이다.

또 “고시(高志)의 쓰쓰(都都)의 미사키(三崎)에 여분의 땅이 있다고 본다면 남는 땅이 있다”고 하면서, 날이 넓은 가래로 고기를 푹 찢러 나누듯이 땅을 갈라 떼어내어, 견고한 밧줄을 걸어서 천천히 슬슬 끌어당기며 “땅이여 오너라 땅이여 오너라” 하여 끌어 붙인 곳은 미호(三穗)의 사키이다. 끌어당겼던 밧줄은 요미섬(夜見嶋)이 되었다.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말뚝(배를 매기 위한 것)은 하하키국(伯耆國)인 히노카미타케(火神岳)이다.

“이제 땅을 끌어 당기는 것은 끝났다”고 하면서, 오우의 모리(意宇社)에 지팡이를 꼽으며 “오에”라고 했다. 그러므로 오우(意宇)라고 한다.<sup>16)</sup>

16) 김화경, 『일본의 신화』, 문학과지성사, 2002, 156-157면.

문화의 확대가 ‘가르치는 것’이라면, 문화의 축소는 ‘배우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다른 나라에 자신의 문화를 가르쳐주기를 좋아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다른 나라에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라기보다는 배우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망요슈(萬葉集)」에는 지상의 꽃을 읊은 시는 많은 데 비해 별을 노래한 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꽃과 같이 바로 발밑에 있는 것이나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 즉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금시 탐내고 잘 알지만 별처럼 높고 먼 하늘의 확대 공간에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독도를 넘보다가 마침내는 자신들의 신화처럼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일본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동해바다  
3월이 가고  
4월이 오는구나  
일본의 야욕은 100년 전 그대로인데  
자꾸 찢고 찢기는 나의 조국  
일본은 또 무슨 생각으로 칼을 가는가  
독도가 우리 땅인 줄 몰라서 다케시마라고 하는가  
우리가 한국인인 줄 몰라서  
우리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놨던가  
그리고도 우리가 원했다고  
너살 좋은 사람들  
말 못하는 독도를 위협하는 일본의 창시개명  
침략의 근성을 버리지 않는 한  
또 언제 우리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놓을지 모른다

동해바다

3월이면 떠오르는 불쾌한 먹구름

‘오등등은 자랴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の 자유민自由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동포여!

기다란 독립선언서를 읽기 전에

독도를 읽어라

독도는 낭만이 아니다

이생진의 「독도는 낭만이 아니다」 전문<sup>17)</sup>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은 왜 ‘다케시마’라고 부르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시인은 꿰뚫고 있다.<sup>18)</sup> 지난 100년 전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일본의 야욕을 꾸짖으며 기미년 “독립선언서”를 읽기 전에 바로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에서 “독도를 읽어라”고 시인은 강조한다.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한 일본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곧 불행이다. 그들이 칼을 갈고, 말 못하는 독도를 위협하는 한 결코 독도는 낭만이 아닌 것이다.

도망칠까봐 아니면 끌려갈까봐

콘크리트에 철근을 박은 영토

안개가 사방으로 길을 막아도

울지 않는 감금監禁이 가없어

17) 이생진, 『독도로 가는 길』, 우리글, 2007, 130-131면.

18) 독도교육과 관련한 논문 상당부분에서 우리가 부르는 독도(獨島)와 일본이 부르는 ‘다케시마(竹島)’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우리는 ‘독도(獨島)’라고 쓰고 ‘독도’라고 읽는다면, 일본은 ‘竹島’라고 쓰고 ‘다케시마’라고 읽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독도교육’과 ‘다케시마(竹島)교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내가 대신 올려준다

이생진의 「독도·도망칠까봐」 전문<sup>19)</sup>

우리나라 섬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는 첫 번째 섬이 독도이다. 그 형상은 행여나 도망치거나 어디론가 끌려갈까봐 콘크리트에 철근을 박고 있다. 그리고 안개가 사방으로 길을 막아서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좀처럼 닿을 수 없는 서정적 자아는 자신이 오히려 감금당하고 만다. 동도와 서도가 손을 잡지 않은 것은 고독을 지키려는 고집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섬과 섬 사이 거리는, ‘외로움’으로 재기 때문에 홀로된 섬, ‘독도’로 남고 만다. 역설적으로 외로운 만큼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형상으로, 누구도 ‘감금’하지 않기에 차라리 감금조차 모르는 것이 태고의 그 신비를 지닌 것이 나으리라.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서정적 자아는 대신 올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으로, 우리는 허구를 만들 수 있다. 이럴 경우, 허구는 인간이 추구하는 보다 진실함을 찾기 위한 방편이 된다. 하지만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허구는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왜곡된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한때 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교육의 인위성이나 강제성을 지시했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일제의 유산인 군사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 훈육기풍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일본에 대응하는 교육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교육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그 존재가치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일상에서 흔하게 봐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낯설게 또는 친숙하게 여겨질 때에는 이미 그 존재에 대한 의

19) 이생진, 앞의 책, 140면.

미를 새롭게 한 것이다. 다만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른 물음이 달라질 수 있다. 사물에 대한 존재가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사유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방식에 응대하여 그것을 초연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행위이다.

차라리 절망을 배워 바위 앞에 섰습니다  
 무수한 주름살 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니다  
 바위도 세월이 아픈가 또 하나 금이 갑니다

이호우의 「바위 앞에서」 전문

진정한 서정적 표상은 주체의 내면이 반드시 의탁해야 하는 표상이지, 주체의 바깥에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표상이 아니다. 시조시인 이호우(李鎬雨)의 「바위 앞에서」<sup>20)</sup>는 작은 고난이나 현실을 피하고자 하는 나약한 삶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지나간 역사적 경험들이 그러했듯이 바위를 통해 절망과 체념을 숙명적으로 끌어안고 비와 바람을 이기고자 한다. 이때의 바위는 곧 시인 자신의 모습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극복해야 할 실체적 존재로 바라본 것이다. 전통 서정시를 지탱하는 데에는 말의 질료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율격을 위해 시인의 독자적인 발언을 희생하는 것,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 주체의 개입을 가능한 한 차단함으로써 중성화된 이미지에 대한 편향, 그리고 어스듯 비슷한 대상과 구문에서 가능한 한 일탈하지 않음으로써 시적 관습에 대한 존중이 있다.<sup>21)</sup> 이호우는 시조의 형식을 고수하면서 현대적인 느

20) 이 작품은 이호우의 첫 시집 『爾豪愚時調集』(영웅출판사, 1955)에서는 「바위 앞에서」로 발표되었고 1968년 『휴화산』(중앙출판사, 1968)에서는 그 제목이 「금」으로 바뀌었고 내용은 그대로이지만 장별 배행에서 구별배행으로 변화를 주었다.

21)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1, 136-137면.

김과 생활의 정서를 담은 현대시조를 창작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시조 시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작품이 비록 독도를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서 “적을 피하고 먹이를 구하는 기술(避敵捕餌術)”<sup>22)</sup>을 가르치는 것이 더 이상 교육의 근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데 보탬이 된다. 독도는 한민족의 땅이자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다르다.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다케시마, 곧 대나무 섬이라는 뜻에서 죽도(竹島)라고 부르며, 그들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인은 그들의 말로 일본 안의 섬을 부를 때에는 반드시 ‘시마(島, しま)’로, 외국의 섬은 ‘도(島, とう)’라고 부른다고 한다. 또 배의 명칭에서도 자국 배의 이름을 부를 때는 ‘xx마루(丸, まる)’라고 하고,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xx고(號, ごう)’라고 부른다고 한다.<sup>23)</sup>

이러한 주장은 일본인들의 문화와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국어(일본어)교육과 함께 더 나아가 그들의 문화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일본인은 가게를 닫고도 밖으로 태연히 ‘준비 중’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벽에 걸린 시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수리 중’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패전이 아닌 종전(終戰)이 있을 뿐이며, 점령군이 아닌 진주군(進駐軍)이 있을 따름이다.<sup>24)</sup> ‘침략’이 ‘진출’이 되어버리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이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 일본인들

22) “教育이란 ‘避敵捕餌術’을 主로 할 것이다. 이말이 구식 귀에는 甚히 野卑하게 들릴는지 모려지니와 이것이 人生生活의 中心인 것이 事實이기 때문에 따라서 教育의 中心問題가 될 것이다.” 「民族의 經綸 (五) 教育 産業 政治의 關係」, 『東亞日報』, 1924. 1. 6.

23) 이어령, 「한국과 일본의 거리」, 『韓國과의 만남 - 韓國과 日本과의 거리』, 삼성출판사, 1987, 214면.

24) 이어령, 위의 책, 76면.

은 그들 자국 내에서는 ‘와(和, わ)’를 강조하지만 국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다음은 기존의 목소리, 즉 언어유희를 끌어와 자신의 목소리로 삼아 패러디한 작품이다.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다께시마 다께시마 부르고 자기네 것이라고 한다  
 다 화가 난다 왜 줄기차게 그러는지 화가 난다 그 이유를 잘 모르다가  
 거꾸로 다께시마를 불러보니 알겠다. ‘마시께다!’ ‘맛있겠다!’

(가이드의 언어유희)

VS

외롭다 독도! 독도! 부르니까 외롭다 이 외로운 날 웬까 거꾸로 독도를  
 불러보니 알겠다. ‘도독!’ ‘도독!’

오남구의 「외롭다, 독도 - 패러디 쓰기」 전문<sup>25)</sup>

이 작품과 같이 진지한 문학형식이나 예술형식을 익살스럽게 흉내 내는 것을 벌레스크(burlesque)라고 한다. 즉 벌레스크는 진지한 주제를 가볍게 다루고 시시한 주제를 진지하게 다루며, 순수한 감정을 감상적으로 다루고 시시한 감정을 고귀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특징이 있다. 독도를 일본 사람들은 ‘다께시마’라고 부르면서 자꾸 자기네 것이라고 하니 시인은 화가 났다. 왜 줄기차게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것일까. 시인의 기지는 여기서 발견된다. 아니 어쩌면 가이드가 알려준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 사람이 부르는 ‘다께시마’를 거꾸로 불러보니 ‘마시께다’, 즉 ‘맛있겠다’가 된다.

여기에 대비하여 독도(獨島)는 외로운 섬이다. 그래서 “외롭다 독도!

25) 오남구, 『오남구 시전집 노자의 벌레』, 글나무, 2010, 63면.

독도! 부르니까 외롭다” “이 외로운 날 웬까 거꾸로 독도를 불러보니 알겠다.”라고 고백한다. 거꾸로 불러보니 ‘도독!’에서 ‘도독!’이 되었다. ‘마시께다’가 ‘맛있겠다’로 바뀐 것처럼 ‘도독’이 ‘도독’이 된 것이다. 가이드의 언어유희를 시인은 ‘패러디’로 만든 것이다. 패러디는 문학작품의 ‘수법’이나 ‘사상’에서의 허점을 사정없이 폭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독도를 ‘다께시마’로 부르는 일본 사람들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마침내 그것을 거꾸로 불러보니 ‘마시께다’가 되고 만다. 이것을 ‘맛있겠다’로 바꾸는 언어유희는 ‘독도’를 거꾸로 불러보니 ‘도독’이 되는데, 이것은 곧 ‘도독’으로 변하는 이치를 시인이 이끌어내는 것이다.

아빠가 태어나기도 전  
 머언 먼 그 옛날에  
 할배가 심으셨다는  
 들팍한 매화 한 그루,  
 올해도 할배의 숨결인 양  
 봄을 지레 머금었다.

올타리 가장 자리를  
 지켜 온 그 매화를  
 목 빼고 자주 넘보는  
 이웃집 할아버지가  
 괜스레 수상쩍어 보인다  
 때가 때라서 그런지.

독도가 저네 거라고  
 또 우기는 저 섬나라.  
 바다 건너 불어 닥친  
 생트집에  
 멀쩡한 이웃 할아버지조차

못 미더운 이 꽃샘철

박경용의 「독도」 전문

일본은 1996년 2월 10일 총리대신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가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공개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독도에 배를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접안시설(接岸施設)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 외무대신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는 “일본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한 것이다.<sup>26)</sup> 이후에도 일본은 2005년 3월 16일에, 일본의 시마네켄(島根縣) 의회에서 다케시마라는 이름 아래 시마네켄에 편입시킨 (19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즉시 발효시킨 것이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선포한 후로 한·일 간에는 첨예한 외교적 대립을 가져왔다.

박경용의 「독도」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감정표현이나 주장 없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행태가 부당하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동시이다. 이 동시의 직접적인 배경은 우리 집 뜰에 있는 매화 나무이다. 마치 한 편의 동화를 읽는 듯한 묘사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할배의 숨결’을 머금은 ‘매화 한 그루’는 오랫동안 동해 끝에서 우리 국토의 경계를 지키고 있는 독도를 연상하게 한다. 그리고 “목 빼고 자주 넘보는 / 이웃집 할아버지”는 일본을 은유하고 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수상쩍은 이유는, “때가 때라서 그런지”라는 구절처럼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 추워지는 꽃샘추위와 무관하지 않다.

차마 내 상황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처지를 달리하면서 보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노자는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夷)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희(希)라 하며,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26) 동북아역사재단 편,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 모음전(전2부)』, 동북아역사재단, 2009, 873-877면 참조.

미(微)라 한다.”<sup>27)</sup>라고 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기서 ‘보는 것’과 ‘알아보는 것’은 다르다.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이 감각과 관련 있다면,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지각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안용복과 그 인물형상화

‘형상화’라는 용어는 사물의 형상이 이데아의 모방이라는 플라톤의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물의 형상화를 이데아의 그림자로 보고 이데아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플라톤의 철학은,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사물의 언어적 재현에 관심을 가졌던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형상화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문학 작품은 문학적 표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구체적 표현을 획득해가는 과정이 곧 ‘형상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인물은 작품에서 행위나 사건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인물과 그 인물이 지닌 기질과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성격을 포괄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가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시인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sup>28)</sup>라고 하여 시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역사가가 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는다면, 그 기록에 대한 해석은 결국 후대 사람들의 몫이 되고 만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역사가들이 공정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역사를 쓰려다가 죽은 뼈다귀의 이름만을 적어놓고 말았나?”<sup>29)</sup>라는 함석헌의 언급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사학을 비판한 것이다. 역사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여기’에 처해진 상황을 기반으로, 그

27) 『道德經』, “視之不見,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博之不得, 名曰微”

28) 아리스토텔레스, 이상섭 옮김, 『시학』, 문학과지성사, 2005, 37면.

29) 함석헌, 『뜻으로 본 韓國歷史』, 한길사, 1995, 36-37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자의 몫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은 그것을 후대의 학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든 간에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가미카제였던 오누키 겐이치로, 야마구치 테루오씨의 인터뷰와 책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sup>30)</sup>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이다.

어머니!

언젠가 우리 모두 야스쿠니 신사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믿어도 될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 가미카제라는 특별부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전투기 한 대로 적의 항공모함을 침몰시키는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50kg의 폭탄을 싣고 미군의 항공모함으로 수직강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적의 함대에 명중하는 가미카제는 약 10%뿐, 나머지는 바다에 그냥 곤두박질하는 것이지요. 이미 수많은 전우들이 폭탄이 되어 떠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곧 그 길을 뒤따르겠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면, 입 안이 씹쓸해 집니다.

하지만 명령에 불복종 할 수는 없습니다. 가미카제 임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더욱 지독한 전투에 투입되어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될 테니까요.

국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남아 있는 가족들은 평생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야할 테니까요.

어머니,

저는 내일아침 출격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멧진 사나이로 부르며, 손을 흔들겠죠. 대일본제국을 위한 천황을 위한 위대한 희생이라며 추켜

30) 오오누키 에미코 저, 이향철 역,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모멘토, 2004 참조.

세우겠죠.

그리고 아마 그들은 제가 죽음 앞에서 “어머니, 야스쿠니 신사에서 다시 만나요”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것이라 믿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어린애처럼 크게 어머니를 부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sup>31)</sup>

이상의 편지글을 통해 가미카제는 일본인에게도 아픔이자 상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미카제(神風)’라는 말은 ‘신의 바람’이라는 뜻으로, 원래는 1281년 몽골(원나라)이 일본을 침공했을 때 우연히 들이닥친 태풍을 일컫는 말이다.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몽골 침공군은 침몰되었다. 이를 따서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함에 충돌하여 자살 공격한 일본의 결사 특공대이다. 아울러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전통적 다신교 신앙에 따라, 죽은 자들도 신이 된다고 생각하여 단순한 제사가 아닌 합사된 자들을 신으로 숭앙하는 곳이다. 위 편지에서 젊은이가 외친 것은 역사적 대동아공영이라는 허상도 나라를 위한 애국심도 아닌 바로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편안함과 같은 모성애는 행복의 최고 전형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물형상화도 허구를 사실처럼 꾸미는 그들의 수사학에서 허구와 사실을 분간하기는 쉽지가 않다.

조선의 안용복에 대한 인물 형상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현실에 실재했거나 실재하는 구체적 실물과 사건 등을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재현하는 방법이 ‘형상화’이다. 즉 ‘형상화’는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성덕의 『울릉도』는 안용복에 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인물을 그려낸다.<sup>32)</sup> 그리고 권오단은 『안용복』에서 안용복을 영웅이 아닌, 누구보다 이 땅을 사랑한 가슴 뜨거운 사람이었으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힘없고 평범한 민초로 그리고 있다.<sup>33)</sup>

31) EBS 지식채널@지음, 『지식@ season2』, 북하우스, 2012, 172-175.

32) 권오단, 『안용복』, 산수야, 2010.

33) “개성 상단의 오충추(吳忠秋)다. 오충추는 경성 사람으로 안용복이 농로군을

북한소설 『울릉도』<sup>34)</sup>나 권오단의 『안용복』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형상은 ‘숨은 영웅’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북한문학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사회주의 낙원 건설을 위한 목표와 마땅히 같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사회에서 숨은 영웅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소임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개인이 된다.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안용복은, 조정과 관리를 대신하여 이룬 과업의 결과가 징벌로 이어졌다. 역사소설은 역사 속의 인물을 재현함으로써 체제의 신념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안용복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북한사회 및 체제가 희망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전 령의정이었던 령중추부사 남구만과 윤지완은 안용복이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조정에서도 풀기 어려워하던 일을 성사시킨 공로가 없지 않고 또 왜인들이 스스로 잘못을 사죄해 오는 이때에 와서 그를 처형하는 것은 그림직한 계책이 못된다는 것을 령설하였다. 그러나 형조와 비변사의 관리들은 한사코 법조문에 따라 죄를 주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사형죄를 론단하고 있었다. (559-560면)

‘어째 이 나라에는 주인이 없소이까. 이 나라 백성은 어째 나라를 사랑해도 사랑하노라 가슴 펴고 말할 수가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소연할 데가 없소이까! 거치른 남의 나라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에도 의지할 품이 없었으니 이 나라 백성은 어찌하여 부모 잃은 고아처럼 되었습니까! (561면)

“아무렴 그렇겠지……. 세상은 빼돌어져도 천도는 무심치 않은 법이

---

그만두고 나왔을 때 상단의 일꾼으로 거두어들이는 상인이었다.” 권오단, 위의 책, 18면.

34) 리성덕의 대표작 장편소설 『울릉도』(문예출판사, 1990)는 원본을 따른다는 취지에서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만을 바꾸어 북한 저작권사무국과의 독점 계약으로 (주)자음과모음에서 2006년에 『독도 지킴이 안용복』으로 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텍스트로 삼았기에 인용 자료의 면수는 이에 따른 것이다.

야. 그런데 임자는 그 안용복이라는 사람을 잘 아나?”

“잘 알지요.”

“그래 어떻게 생긴 젊은인가?”

“어떻게 생길 게 있나요? 그저 나처럼 생겼지요.”

“에끼, 그렇게 말할 법이 어디 있나? 일본 관백의 항복을 받아온 사람  
인데 용모인들 범상할 텐가?” (564-565면)

리 생원은 안용복을 ‘포의지사’로 형상화한다. 주인이 없는 나라인줄 알았는데, 나라를 지킬 주인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탄식한다. 특히 “임자는 그 안용복이라는 사람을 잘 아나?” “그래 어떻게 생긴 젊은인가?”라는 물음에 “그저 나처럼 생겼지요.”라는 대답은, “인민 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라는 북한의 철학적 원리에 충실한 표현이다.<sup>35)</sup>

아울러 권오단의 『안용복』에서 안용복은 양반도, 정치가도 아닌 조선 시대에 살았던 평범한 어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확인 문서를 가져온 인물이다. 이를 통해 이 땅에 제2, 제3의 안용복과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음은 그의 작가 서문의 일부이다.

이 책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땅을 사랑한 민초들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다. 안용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힘없고 평범한 민초일 뿐이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 땅을 사랑한 뜨거운 가슴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겪어야 했다. 일이 성사된 이후에 조선 조정에서 받게 될 죄과도 생각했을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앞날이 뻥히 보

---

35) 이는 남상권이 언급했듯이 북한 체제가 희망하고 고양하는 역사 속의 ‘숨은 영웅’ 찾기와의 관련이 있다. 남상권, 「북한 역사소설로 만난 안용복」, 『문학, 독도 그리고 안용복』, 지성사, 2017, 135-139면.

이는 고행의 길을 그는 무엇 때문에 극구 가려 했던 것일까? 도해의 주체가 안용복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행의 길을 갔던 민초들 역시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가는 후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다.<sup>36)</sup>

최근에 출간된 『강치』<sup>37)</sup>는 역사적 기록이 미비한 상황을 고려하여 “1693년 4월 17일 늦은 축시(丑時)”에서부터 시작하여 “1697년 3월 27일 사시(巳時)”에 이르기까지 인물 안용복의 심리와 감정, 고뇌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 마치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듯이 기술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은 대체로 위정자가 아니었다. 평상시에는 도를 논하다가도 실제로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일쑤가 아니었던가. 이 작품에서도 이상룡이라는 인물이 그러하다. 초량에서 왜인들의 행동과 횡포에 협력해서 동래 밀무역은 물론이고 살인교사와 안용복의 의붓동생 선화 납치에 가담하는 인물이다. 제목이 ‘강치’이기는 하지만 소설의 주인공은 안용복이다. 그런데 왜 ‘강치’라는 제목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단지 왜인들이 등잔에 쓸 기름과 고기, 그리고 가죽을 얻기 위해 독도에 사는 강치를 마구잡이로 살육하는 행동에 놀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부재(不在)하는 대상에 대해서 현존시키는 힘이 ‘상상력(想像力)’이라면, 현존하는 대상의 비실체성 혹은 환각성을 깨닫게 하는 힘, 우리는 그것을 ‘파상력(破像力)’이라 할 수 있으리라.<sup>38)</sup>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보기가 싫어졌다. 그것은 자신의 상상을 깨뜨릴만한 어떤 사실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소설은 경험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가 융합된 양식으로, 사실성과 상상성이라는 이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36) 권오단, 「작가 서문」, 『안용복』, 산수야, 2016.

37) 전민식, 『강치』, 마시멜로, 2019.

38) 김홍중, 「파상력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79-212면 참조.

특이한 서사문학 형태이다.<sup>39)</sup>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에서 새로운 자료에 대한 발굴은 그 역사소설의 상상을 깨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sup>40)</sup>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소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지금-여기’에서 역사소설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기록에만 의존할 수가 없다. 기록에만 의존할 경우, 역사소설에서 어느 인물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이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동래인 안용복은 흥해인 유일부, 영해인 유봉석, 평산포인 이인성, 낙안인 김성길과 순천 승려 뇌현, 승담, 연습, 영률, 단책과 연안인 김순립 등과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가서 일본국 백기주로 들어가 왜인과 서로 송사한 뒤에 양양현 지경으로 돌아왔다(東萊人安龍福, 興海人劉日夫, 寧海人劉奉石, 平山布人李仁成, 樂安人金成吉, 順天僧雷憲, 勝淡, 連習, 靈律, 丹責, 延安人金順立等, 乘船往鬱陵島, 轉入日本國白耆州, 與倭人相訟後, 還到襄陽縣界).<sup>41)</sup>

나림(那林) 이병주(李炳注)는 “하나를 희생시켜 다수를 위한다.”라고

39) 공임순, 「역사소설의 개념과 장르적 유형론」, 대중서사학회 저,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3, 9면.

40) 일본의 오카지마 마사요시의 『竹島考』(1828)에는 1693년 안용복이 차고 있는 호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안용복은 ‘서울에 사는 오충추의 私奴用卜’이라고 하여 일본과 한국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안용복을 노비로 본다. 하지만 김호동은 “동래의 역관들이 물화를 팔고자 할 때 서울에 사는 私奴로 핑계하여 왜인으로 하여금 역관의 물건임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肅宗實錄』三十六年(庚寅年)三月二十九日(甲午))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안용복을 역관출신으로서 서울에 사는 오충추의 사노에 가탁하여 왜인과 사사로이 무역을 하는 潛商이었다고 주장한다. 김호동, 「조선 숙종조 영토분쟁의 배경과 대응에 관한 검토 - 안용복 활동의 새로운 검토를 위해」, 『대구사학』 94호, 대구사학회, 2009 참조.

41) 『肅宗實錄』二十二年(丙子年)八月二十九日(壬子)

할 때, 언제나 희생되는 사람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위함을 받는 다수는 연한 존재라고 했다.<sup>42)</sup> 리성덕의 『울릉도』나 권오단의 『안용복』은 위에서 언급한 인물에 대해 독자가 충분히 공감할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안용복에 대해서는 연구자나 작가가 많은 관심을 가진 반면, 이상의 인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단지 김하기의 『海帝 어둔』의 경우,<sup>43)</sup> 박어둔을 중심에 두고 ‘바다의 제왕’이라는 호칭과 함께 그의 생애를 그리고 있다. 울산상단의 우두머리로 짐작되는 박어둔의 일대기를 사실과 창작을 혼합한 팩션(fact+fiction)의 양식으로 소설화함으로써 세계적인 국제무역항과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울산의 위상을 구현한 작품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일부·유봉석·이인성·김성길과 승려 뇌헌·승담·연습·영률·단책 그리고 김순립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물연구나 되지 않은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계속 진행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오늘날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안용복과 같은 인물을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안용복의 실천적 행위를 오늘날의 처지에 맞게 그려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제2의 안용복이나 제3의 안용복을 얻을 수 있다. 이름 없는 백성은 분수를 지켜야 하고, 망하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라는 고정된 양상에서 “이름 없는 백성이라도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망하는 나라를 구출해야 한다.”<sup>44)</sup>라는 고정된 양상을 파괴함으로써 생활 속의 작은 영웅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42) 이병주는 “태양이 아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繼於日光則爲歷史, 染於月色則爲神話)라고 했다.

43) 소설가 김하기가 『경상일보』가 2013년 7월 8일부터 총377회에 연재하던 『해제 어둔』을 모아 『독도전쟁』을 발간하게 된다. 김하기, 『獨島戰爭 1·2』, 쌤앤파커스, 2016.

44)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출판부, 1994, 396면 참조.

#### 4. 맺음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라고 본다. 이때의 교육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개발해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조건과 상황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방식으로 예술을 즐기고,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미적 교육을 하는 것이다. 진보를 주장하는 철학자나 사회학자, 또는 지식인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대중에게 전하고 교육함으로써 사회를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구분하고자 한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려는 행위 그 자체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의 지식의 전수는 제한적이며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평등은 끝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sup>45)</sup>

독도는 지금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돌섬이다.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그 섬이 장소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섬이다. 독도에 대한 서사, 즉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sup>46)</sup> 아무래도 독도에 대한

45) 주형일, 『자크 랑시에르의 해방된 주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34-40면 참조.

46) 이규희 글, 최정인 그림, 『내 이름은 독도』, 밝은미래, 2013. 이 글은 동화로 독도를 주인공으로 하여 동해 바다에 우뚝 서게 된 이야기부터, 우산국이 섬이 되었다가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을 거치는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가슴에 담두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글이다. 동화이고 오랜 세월을 걸친 이야기를 기술하고 그림을 가미하여 환상성을 더욱 자아낸다.

체험을 바탕으로 인물을 형상화하기에는 너무 소재 중심적이지 않은가 하는 회의가 든다. 반면에 문학적 형상화가 잘 드러난 소설의 경우, 독도를 지킨 역사적 인물 안용복에 대해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사회적 상상력을 펼치기가 용이하다. 한 민족이나 한 나라의 이상적 인간상은 역사적 전통 속에서 다듬어져 내려온 인간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품처럼 필요에 의해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거나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정체성으로는 대치되거나 수입될 수는 없는 일이다.

1979년부터 1985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1980년에서 1992년에 걸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방대한 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자료집 82책, 부록 3책)에는 안용복과 관련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 대체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영웅적 인물은 “이름 없는 백성은 분수를 지켜야 하고, 망하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라는 고정된 양상에서 “이름 없는 백성이라도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망하는 나라를 구출해야 한다.”라는 고정된 양상을 파괴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sup>4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그를 민중의 영웅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어떤 결핍의 요소가 있어야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당시에는 민중의 영웅이 될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많았을지도 모른다.<sup>48)</sup> ‘숨은 영웅’의 이야기는 구비문학에서는 좀처럼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든 이야기에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보다 쉬운 당시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47)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출판부, 1994, 396면 참조.

48) 李源命, 『東野彙輯』卷四, 「吹鶴脛丹山脫禍」에서 양주 백정으로 기술된 임격정은 벽초(碧初) 洪命憲의 역사소설 「林巨正」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문학에서의 실제성은 과거와 현재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학은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차용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작가의 역사적 해석이자 미학적 창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이 반드시 역사적 기록과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문학은 역사적 사료를 넘어 작가들의 직관력과 상상력으로 사실 이상의 진실을 찾아낼 수가 있다. 작가의 해석이 개인의 독단적 편견이 아닌 동시대인의 관점을 반영할 때, 그때의 문학은 다시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막연한 바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노력을 담는 그릇이 될 때, 문학적 이야기가 또다른 현실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道德經』

『東亞日報』

『東野彙輯』

『肅宗實錄』

공임순, 「역사소설의 개념과 장르적 유형론」, 대중서사학회 지, 『역사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3, 9면.

권오단, 『안용복』, 산수야, 2016.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1, 136~137면.

김병우 편역, 「한국이 기억하는 안용복」, 지성인, 2015.

김정환, 『한국교육이야기 백 가지』, 박영사, 2007, 12면.

김하기, 『獨島戰爭 1·2』, 쌤앤파커스, 2016.

김호동, 「조선 숙종조 영토분쟁의 배경과 대응에 관한 검토 - 안용복 활동의 새로운 검토를 위해」, 『대구사학』 94호, 대구사학회, 2009.

김홍중, 「파상력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79~212면.

김화경, 『일본의 신화』, 문학과지성사, 2002, 156~157면.

남상권, 「북한 역사소설로 만난 안용복」, 『문학, 독도 그리고 안용복』, 지성인, 2017, 135~139면.

동북아역사재단 편,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 모음전(전2부)』, 동북아역사재단, 2009, 873~877면

리성덕, 『독도지킴이 안용복』, ㈜자음과모음, 2006.

오남구, 『오남구 시전집 노자의 별례』, 글나무, 2010, 63면.

우석영, 『날말의 우주』, 궁리, 2011, 500면.

이규희 글, 최정인 그림, 『내 이름은 독도』, 밝은미래, 2013.

이생진, 『독도로 가는 길』, 우리글, 2007.

李御寧, 『축소지향의 일본인』, 甲寅出版社, 1983, 57면.

이어령, 「한국과 일본의 거리」, 『韓國과의 만남 - 韓國과 日本과의 거리』, 삼성출판사, 1987, 214면.

이호우, 『爾豪愚時調集』, 영웅출판사, 1955.

이호우, 『휴화산』, 중앙출판사, 1968.

- 전민식, 『강치』, 마시멜로, 2019.
-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출판부, 1994, 396면.
- 주형일, 『자크 랑시에르의 해방된 주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34-40면.
- 함석헌, 『뜻으로 본 韓國歷史』, 한길사, 1995, 36~37면.
- 구리 료헤이, 최영혁 옮김, 『우동 한 그릇』, 청조사, 2010.
- 아리스토텔레스, 이상섭 옮김, 『시학』, 문학과지성사, 2005, 37면.
- 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7면.
- 오오누키 에미코 저, 이향철 역, 『사쿠라가 지다 짧음도 지다』, 모멘토, 2004.
- EBS 지식채널©지음, 『지식© season2』, 북하우스, 2012.
- 오하라 츠나키, 「후쿠시마는 지금(2)」, 『탈핵신문』, 2019.03.02.  
<http://nonukesnews.kr/1404> 2019.10.09. 검색
- 경향신문, 「일본 교과서 “위안부 문제 최종적 해결”」, 2017.03.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324222301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3242223015)  
2019.10.09. 검색
- 전자신문, 「원자력안전기술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사회 비난부터 해결해야”」, 2019.10.09. <http://www.etnews.com/20191008000168> 2019.10.09. 검색.
- JTBC, 「안전 홍보 열올리는 일, 올림픽 관광객에 ‘후쿠시마 도시락?’」, 2019.08.2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73401](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73401) 2019.10.09. 검색.
- KBS NEWS, 「일본 유신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바다에 방출 타당”」, 2019.10.0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97913&ref=D> 2019.10.09. 검색.
- YTN사이언스, 「日, 방사성 오염수 100만t 방류 계획...한국 위협」, 2019.08.08.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908081103351123](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908081103351123) 2019.10.09. 검색.

<Abstract>

## **A Study on *Dokdo* and *An Yong-bok* in literary works**

**Kim, Kwon-Dong · Kim, Byung-Woo**

*Dokdo* is a stone island that was still there, as it is now. The change of name does not mean that the island, which was in the past and is now, has lost its place. However, depending on how we cope with the present based on the history of the past, the future can be different. There is no narrative about *Dokdo*, that is, no story, but there is a doubt that it is too material-centered to shape the figure based on the experience of *Dokdo*.

Reality in literature is not limited to the past and the present. Rather, literature borrows from the past and the present to present future prospects. Although based on the facts of the past, it is, after all,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aesthetic creation of the artist. Therefore, literary works do not necessarily have to match the historical records, and literature can go beyond the historical source and find the truth beyond fact by the intuition and imagination of the writers. When the author's interpretation reflects his contemporaries' perspectives, not individual dogmatic prejudice, then literature can be part of history again. Literary narrative becomes another reality, at least when the wind is a vessel of effort, not at least a vague dream. Let's take a look at *Dokdo* and *An Yong-bok* in literary works.

*Dokdo* is a space of existence. Existing space is meaningful only in one cultural group. Unless you try to understand the culture, communication with other cultures and members will be impossible. In order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today, we need an eye for culture. This is, of course,

assuming that our culture is subjectively viewed.

**Key words:** *Dokdo, An Yong-bok*, Literature, culture, figuration of character

이 논문은 2019년 11월 2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안용복 형상화에 대한 구전적 상상력

남 상 권\* · 박 영 식\*\*

### 〈목 차〉

1. 머리말
2. 울릉도와 안용복에 대한 기억의 교차
3. 안용복 서사에 투영된 영웅주의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7세기 말, 안용복이 일본으로 납치된 사건과 그가 재도일하는 사건에서 나타난 성과가 오늘날 우리 영토로서의 울릉도와 독도를 각인시키는데 기여한 사실을 역사적 관점과 문학적 관점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안용복이라는 평민이 벌인 대담한 행적이 지배층의 무관심 속 방치된 울릉도, 독도를 우리의 국토로 각성하게 하는 매개가 되었다는 점을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어촌의 능로군, 어부로 각인된 그가 남긴 자취에서 영웅적인 면모를 발견한 몇몇 조선 사대부들의 인식이 그러한 안용복의 행적과 의의를 뒷받침해 주고 있음을 밝혀보았다. 하지만 이들이 부여한 영웅호걸이란 명칭과 달리 안용복의 활약상이 민간전승으로 전해지지 않는 이유를 조선의 수도정책과 연관해 찾아보았다. 그리고 근대 이후 안용복의 본격적인 재발견과 그가 이룬 쾌거를 유포하는 일이 확산되었다는 사실과 그를 영웅으로 소환하려는 바탕에 구전적 상상력이 작동하였다는 사실을 문학적 관점에서 그 의의를 밝혀보았다.

\* 제1저자, 영남대학교 강사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강사

주제어: 안용복, 형상화, 구전적 상상력, 영웅, 울릉도, 독도

## 1. 머리말

성호 이익은 안용복을 영웅호걸이라 하였다.<sup>1)</sup> 최근 들어 안용복을 영웅에서 나아가 장군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노군 또는 능로군’ 등으로 알려졌던 한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최상의 명예를 더하고 있다. 안용복에게 영웅과 장군의 지위를 부여한 이유와 목적의 타당성을 따지는 경우는 드물다.<sup>2)</sup> 이렇게 상찬한 명칭에 불만을 가진다면 17세기 말, 역사 무대에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이내 사라진 안용복은 루카치가 지적하는 ‘문제적 인물’임에는 분명하다.<sup>3)</sup> 이 문제적 인물은 서사 문학에서는 주인공이자 다른 말로 영웅이다. 서사문학에서의 영웅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충실히 복무하여 이념의 정점에 서게 될 수 있고 자기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가운데 드러난 모순을 폭로하는 데 서 있을 수도 있다. 안

- 1) 안용복의 도일 사건 직후부터 이익으로부터 안용복을 영웅으로 인식하고 높이 평가한 글은 다음과 같다. 安龍福者, 東萊府戰船櫓軍也, 出入倭館, 善倭語. 『星湖僊說』/ 安龍福者, 東萊人也. 隸戰紅櫓軍, 自幼善倭語. 『春官志』/ 安龍福者, 東萊漁戶子也. 長隸戰船能櫓軍, 性勁悍有機識, 解文字習倭語. 勤於漁業, 衣食亦裕. 『和國志』
- 2) 김병우는 안용복 관련 문헌 자료인 『한국이 기억하는 안용복』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안용복의 허상을 강조하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자료’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실증주의적 입장은 나름대로 타당하다. 하지만 김병우가 지적한 ‘경계’해야 할 지점에서 허구적 진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역사가 메울 수 없는 역사적 욕망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복원한 것이라 할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폭넓게 유포된 상황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완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대중적 갈망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지점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해야 할 사실이 아닐까 한다. 김병우, 『한국인이 기억하는 안용복』(문헌자료집성), 지성인, 2015, p.28.
- 3) 근대 소설의 주인공으로서의 안용복을 예로 들면 해겔의 지칭한 자기 계급의 성격을 대표하는 ‘세계사적 개인’이다 아울러 루카치가 ‘문제적 인물’로 변형한 안용복은 조선 지배층과의 인식의 크나큰 차이 때문에 자기 집단이 요구하는 신념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조선 지배층의 현실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게 한다.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욱 옮김), 『역사소설론』, 기림신서27, 1987.<참조>

용복이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에서든 대개 이러한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영웅이나 장군이란 명칭은 흥미의 고조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꾼이 자의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설화나 무가, 소설을 포함하는 서사문학 관점에서의 영웅은 담대한 모험 속에서 갖은 역경을 이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귀환한다. 귀환한 영웅은 자신이 추구한 과업 완수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든 받는다. 그 보상은 대개 해피엔딩이지만 죽음과 같은 불행한 결말을 맞기도 한다. 이는 역사적, 민족적 관점에서 부여받는 영웅과 일면 같으면서도 다른 점도 있다.<sup>4)</sup> 그것은 진실성 문제이다. 소설의 진실성은 작품의 전망에 속하지만 역사적 진실성은 공정성과 객관성, 사실성에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주관과 편견으로부터 거리 문제가 발생한다.<sup>5)</sup> 오늘날 우리는 역사적인 의미의 영웅 안용복과 허구화된 영웅 안용복을 동시에 만난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허구적으로 확장한 가운데서 보게 된 현상이다.<sup>6)</sup>

---

4) 문학에서 영웅은 고귀한 출신과 미천한 출신 등으로 서사화된다. 미천한 출신 영웅은 역사식이 충만하고 진취적이다. 따라서 주체적 성격을 지니며 윤리적 제약을 적게 받는다. 고귀한 출신 영웅은 집단성과 역사성, 진취성과 주체성을 상실하고 개인적인 면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영웅은 역사적 영웅에서 비역사적 영웅으로 영웅의 상이 바뀌는 현상에서 나타난다. 건국 영웅이 역사적 영웅이라면 홍길동이나 유충렬 등은 비역사적인 인물이다. 고귀한 영웅은 개인적 행복에 귀결하는 서사구조임에 비해 미천한 영웅은 주로 현실에서 패배하는 결말을 보인다. 허구화된 홍경래나 전봉준 같은 인물이 이리하다. 이러한 결말은 역사적 진실의 반영이기도 하며 자기가 속한 세계의 변화를 갈망하는 현실주의에 의해 형상화된다.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민중 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pp.36-59.

5) “역사의 기록만 가지고서 역사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사실(史實)이 문학적 성향을 띠게 되는 주요동인(動因)이 되는 것”이라고 한 김권동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지닌다. 김권동, 「문학 속에 나타난 상상의 공간」, 『동아인문학』37, 2016, p.260.

6) 강상희는 역사소설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 전사로서 현실의 당면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를 지닌다고 한다. ‘즉 역사는 과거를 서술하고 소설은 현재적 삶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역사소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적 삶을 문제 삼는다’

안용복은 두 번의 도일 행위로 말미암아 잠자던 조선 정부의 영토의 식을 일깨운 바가 크다. 한 일간 독도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 한 안용복은 계속 이야기될 것이다.<sup>7)</sup> 17세기 말, 안용복이 감행한 대담한 모험담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일깨우고 있다. 안용복에 대한 역사적 소환과 재조명이 지속되는 현재에도 안용복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유포되고 있다.

이 글도 안용복을 둘러싼 모호한 담론을 걷어내려는 시도로 출발한다. 안용복은 어둡고도 불우했던 역사 속의 주인공이다. 구전적 상상력은 불우한 역사의 주인공을 위로하기 위해 허구로 감싸기도 한다. 안용복을 영웅으로 소생시키고 장군으로 소생시켜 신원하는 행위도 따지고 보면 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짊어진 소명이다. 오늘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제어하려는 입장에 서면 과거 안용복을 엄벌하려는데 입장을 같이 했던 무수한 주장은 무지한 권위주의였고 선조로서 후세에 대한 무책임했던 맨얼굴을 드러냈던 것이다. 안용복을 영웅의 반열에 올리려는 문학적 작업은 결국 오늘의 부당함을 미래에 알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 2. 울릉도와 안용복에 대한 기억의 교차

### 1) 망각의 섬 울릉도와 안용복

---

는 것이다. 안용복 등장 역사소설은 이와 같은 현상의 반영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강상희, 「대중적 역사소설의 약사」, 『대중서사연구』7, 2002, p.43.

- 7)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에 따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1950-1980년대까지는 주로 국제법 중심으로 분쟁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온 경향이 있었고 역사적 관점에서 논의할 때는 주로 안용복의 활동을 기록한 사료에 기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독도 영유권과 안용복을 둘러싼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화되고 2000년대부터는 독도 및 안용복 연구소 등이 설립되어 관련 학술 연구가 다각적이면서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용복은 울릉도에 대한 조선 조정의 오랜 쇠퇴정책의 후유증을 일본 어부들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각성했던 인물이다. 어부로, 농로군으로 알려진 안용복이 두 번에 걸쳐 일본에 다녀왔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도 그가 자각시킨 영토의식은 오랫동안 기념될 것이다. 안용복이 살았던 시대의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장기간의 평화가 왔지만 당쟁이 심화되고 기근이 장기화되어 백성의 생활은 궁핍하였다. 긴 평화를 얻은 덕에 인구는 늘었지만 바닷가 척박한 땅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어민들이 주목한 곳이 울릉도와 독도였다. 이 시기 일본도 화평을 틈타 오랫동안 노렸던 울릉도와 독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고 조선 조정은 이러한 사실을 방관하고 있었다.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방기와 무관심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울릉도는 조선 초기 강력한 쇠퇴정책으로 섬이 비워졌고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고려 때에 이미 여진족의 침범으로 폐쇄된 바가 있고 조선 태종 때에도 왜구가 침략하였다.<sup>8)</sup> 고려시대 여진족의 침략으로 우산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후 울릉도는 요역을 피하거나 숨어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잠입하였다.<sup>9)</sup>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은 왜적 침입의 빌미가 된다는 판단 때문에 태종 때부터 세종 조에 이르기까지 쇠퇴정책을 강력히 실행하였다. 이 시기 울릉도로 무단 잠입하였다가 교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다.<sup>10)</sup>

8) “왜적이 우산도·무릉도에서 도둑질하였다.” 『조선왕조실록』, 태종17년(1417) 8월 6일자 기사.

9) “저 사람들은 일찍이 요역을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만약 토공을 정하고 주수를 둔다면 저들은 반드시 싫어할 것이니, 그들을 오래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김인우를 그대로 안무사로 삼아 도로 우산·무릉 등지에 들어가 그곳 주민을 거느리고 육지로 나오게 함이 마땅하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1417) 2월 8일자 기사.

10) 「강릉도의 무릉도[울릉도] 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하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3년(1403) 8월 11일자 기사. / 「형조에서 함부로 무릉도에 들어간 김범, 귀

이런 가운데 울릉도에 대한 쇄환정책이 옳은 방향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가 세조 때까지 계속되었다. 세조 3년(1457) 4월 16일 기사에서 울릉도에 다시 사람을 살게 할 것인가 물으로 불러들일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울릉도에 읍(邑)을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강릉 사람의 말에, ‘우산도와 무릉도의 두 섬에는 읍을 설치할 만하니, 그 물산의 풍부함과 재용의 넉넉함은, 저목(楮木)·저상(苧桑)·대죽(大竹)·해죽(海竹)·어교목(魚膠木)·동백목(冬栢木)·백자목(栢子木)·이목(梨木)·시목(柿木)과, 아골(鴉鵲)·흑색산구(黑色山鳩)·해의(海衣)·복어(鰻魚)·문어(文魚)·해달(海獺) 등의 물건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토지가 비옥하여 화곡(禾穀)의 생산이 다른 지방보다 10배나 된다. 동·서·남·북이 상거가 각각 50여 리나 되니 백성이 거주할 수가 있으며, 사면이 험조하여 절벽이 천 길이나 서 있는데도 또한 배를 정박할 곳이 있다. 수로는 삼척에서 섬에 이르는 데 서풍이 곧바로 불어온다면 측시에 배가 출발하여 해시에 도착할 수가 있지만, 바람이 살살 불어도 노를 사용하면 하루 낮 하루 밤에 도착할 수가 있으며, 바람이 없어도 노를 사용하면 또한 두 낮 하루 밤이면 도착할 수가 있다.<sup>11)</sup>

조선 전기는 지배층 일부와 동해안 사람들 가운데서 울릉도 거주자에 대한 쇄환을 반대하고 읍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울릉도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 많았다. 그럼에도 조정은 울릉도 지리에 익숙한 바닷가 사람들을 동원하여 울릉도에 잠입한 사람을 쇄환하여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쇄환정책이 공고해졌다. 세조 시대에 들어 쇄환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병조의 반대로 원래대로 유지되고 말았다.<sup>12)</sup> 세조 때부터 안용복이 등장했던 숙종 때까지 울릉도

---

생 등을 교형에 처할 것을 아뢰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1(1439) 2월 7일자 기사.

11) 「유수강이 영동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조목을 갖추어 상언하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1457) 4월 16일자 기사.

12) 우산도와 무릉도의 두 섬에 현읍(縣邑)을 설치하는 일은 두 섬이 수로가 험하

또는 무릉도에 대한 실록 기사가 드문드문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sup>13)</sup> 조선 초기의 엄격한 쇄환정책의 영향으로 조선 중기에 이르면 지배층조차도 울릉도가 그저 동해 밖의 아득한 섬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다.<sup>14)</sup>

세조 3년 이후의 실록에서는 울릉도에 현장 답사기록은 거의 없다. 또 울릉도 관련 기록이 숙종 때까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5)</sup> 이런 이유에선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조선 지배층의 울릉도에 대한 인식 역시 지극히 추상적으로 나타난다. 조선 중종 때 태어나 선조-광해조까지 상신으로 활동했던 이산해의 「울릉도설」은 조선의 중신들조차 울릉도가 미지의 세계임을 드러내게 한다.

울릉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 육지와와의 거리가 몇 백 리가 되지 않는지 모른다. 매년 가을과 겨울이 교차할 즈음 흐릿한 기운이 말끔히 걷히고 바다가 청명할 때, 영동으로부터 바라보면 마치 한 조각 푸른 이내가 수평선 저편에 가로놓여 있는 것과 같다. 유독 진주부(眞珠府)가 이 섬과 가장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인들 중 소공대(召公臺)에 오른 이들은 터러 이 섬의 숲과 빛부리의 형상을 명료하게

---

고 멀어서 왕래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바다 가운데의 고도(孤島)에 읍(邑)을 설치하면 지키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1457) 4월 16일자 기사.

- 13) 조선 전기는 울릉도보다 무릉도라는 명칭이 압도적이다. 태종-세종까지 무릉도가 36회, 울릉도가 8회로 나타난다. 세조 때 1회, 성종 때 9회(울릉도 1회, 이하 숫자), 중종 때 4회(1)로 나타나지만 명종 이후부터 울릉도라는 명칭이 고착된 듯하다. 명종 때 울릉도가 언급된 이후, 광해 때 1회를 끝으로 성종 때까지 무릉도나 울릉도에 대한 기사는 숙종 때 갑자기 나타난다.
- 14) 방기혁, 정영미의 경우 17세기 말에 이르면 조선 정부의 울릉도에 대한 인식이 망각에 가깝다고 하였다. 방기혁, 정영미 공저, 『울릉도·독도 사수 실록』, 비봉출판사, 2007, pp.53-57.
- 15) 태종-세종 시기를 정점으로 하여, 실록에서 울릉도 또는 무릉도에 관한 기사가 광해군까지 드문드문 나타나다가 숙종 때까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숙종 때 울릉도, 자산도가 갑자기 언급된 것은 안용복의 도일 때문이다. 이후 실록에서는 울릉도가 꾸준히 언급된다.

볼 수 있으니, 이로써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성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루나 사슴, 갈대, 대나무 따위가 왕왕 바닷가 백사장에 떠밀려 오고,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서 바다를 건너 해변까지 와서는 그만 힘이 빠져 날갯죽지를 드리운 채 떨어져 아이들에게 잡힌 적도 많다. 그리고 어부나 뱃사공 가운데에는 혹 표류하여 섬 가에 당도했다가, 채소 뿌리와 나물 잎이 물결에 이리저리 떠밀리는 것과 사면이 모두 검푸른 암벽뿐이되 오직 덩굴풀을 더위잡고 들어갈 수 있는 동문(洞門)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으나,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어 그냥 주위를 서성델 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노를 저어 돌아온 자도 있었다.” 하였으니,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이들이란 말인가. 어찌면 부역을 피하거나 죄를 짓고 도망쳐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혼인을 맺어 점점 인구가 불어났을지도 모를 일이고, 아니면 오랑캐 종족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섬을 점거하여 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과연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한 번쯤 배를 타고 육지를 왕래한 적이 없겠으며, 어찌 다른 곳과 물건 하나 교역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지만 결론을 얻지 못하여 끝내 이 섬을 모호하고 흐릿한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으로 남겨두고 마니, 이 어찌 한퇴지가 이른바 “무릉도원에 관한 이야기는 참으로 황당하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신선에 대한 말들이 있어온 지 이미 오래이나, 이른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란 것들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곤륜산(崑崙山)의 현포(玄圃)를 본 사람은 또한 누구란 말인가. 가령 신선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이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섬이 봉래나 곤륜 중 하나로 이인(異人)과 선객(仙客)이 살고 있는 곳일지 어찌 알겠는가. 한 폭의 돛을 순풍에 높이 달면 불과 하루 밤낮 사이에 이 섬에 당도할 수 있을 것이며 세상의 번다한 의혹들을 이로써 깨뜨릴 수 있을 터인데, 이 섬에 가보지 못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한갓 목을 빼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속절없이 몽상과 시편 속에서나 그려보게 한다. 슬프다!<sup>16)</sup>

16) 이산해, 「울릉도설」, 『국역 아계유고』 3권(「기성록」 소재)

이산해가 생존했던 시기에는 울릉도에 대한 명칭만 기억할 뿐 기실은 울릉도에 대한 수도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산해가 도가의 입장에서 울릉도를 선계로 비유할 정도라면 그간 울릉도에 대한 조선 조정의 인식은 ‘망각’의 수준이라 할 수밖에 없다. 행여 어부들이 표류하여 울릉도 근처에까지 가보았다 하더라도 일종의 두려움 때문에 접근하지 못할 곳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조선 전기 때처럼 부역을 피하거나 죄를 짓고 도망쳐 온 사람이 있거나 오랑캐가 점유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산해의 추론에서 보듯 울릉도에 상륙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만큼 쇄환정책의 후유증이 울릉도를 ‘모호하고 흐릿한 무하유지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명종 11년(1556) 2월 3일 “강원도 울릉도에 검은 새가 하늘을 뒤덮고 연해 등처로 날아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늘 있는 일이 아니고 보면 어떤 기에 몰려서 그런 듯합니다.”라는 실록 기사의 내용은 이산해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울릉도는 명종조에 1회 등장한 이후 광해 6년(1614) 9월 2일자 기사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 기사는 상당히 놀라움을 준다. 태종 때 대마도주가 울릉도로 옮겨 가서 살겠다고 허락을 요청했던 일이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울릉도에 왜노의 왕래를 금지하라는 뜻으로 전일 예조의 서계 가운데 이미 사리에 근거하여 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마도의 왜인이 아직도 울릉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여 또 서계를 보내었으니 자못 놀랍습니다. 본도가 우리나라에 소속되었음은 『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데, 방물을 거두기도 하고 도민을 조사 정리하기도 한 전고가 명확히 있습니다. 이 일을 회답하는 서계 가운데 갖추어 기재하고 의리에 의거하여 깊이 꾸짖어서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막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경상 감사와 부산의 변신(邊臣)에게 공문을 보내 온배에 특별히 유시를 하고 이 글을 전적으로 맡아 싸가지고 속히 돌아가 도주에게 보고하여 조정의 금약을 준수하도록 하소서.”<sup>17)</sup>

광해조에 왜란 뒷수습과 더불어 흥기하는 후금과와 외교 문제 등이 어수선할 때 위와 같은 대마도주의 돌연한 울릉도에 대한 야욕은 오늘날에도 일본을 경계해야 할 나라로 생각해 한다. 태종 이후 잠잠했던 관심은 이 시기에 다시 드러났다는 사실은 울릉도에 대한 대마도인들의 침탈 야심이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의 쇄환정책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연안과 도서 지역, 심지어는 내륙 깊은 곳까지 왜구의 노략질에 시달려 온 조선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기도 하다. 왜란 후유증으로 인해 시름이 깊었던 광해 조의 조선은 태종 때보다 더 강경하게 ‘왜노’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태종 때는 대마도인의 울릉도 이주를 그리 나쁘게 보지 않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마도수호(對馬島守護) 종정무(宗貞茂)가 평도전(平道全)을 보내와 토물을 바치고, 잡혀 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정무가 무릉도를 칭하여 여러 부락을 거느리고 가서 옮겨 살고자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이를 허락한다면, 일본 국왕이 나더러 반인(叛人)을 불러들였다 하여 틈이 생기지 않을까?”

하니, 남재가 대답하기를,

“왜인의 풍속은 반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따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상사로 여기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계책을 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 경내에서는 상사로 여기지만, 만일 월경해 오게 되면 저쪽에서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다.”<sup>18)</sup>

위의 기사에서 보듯 남재는 대마도인이 본국을 배신하고 오면 반드시 조선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태종이 일본 통치자와의 관계가

17) 『조선왕조실록』, 광해 6년(1614) 6월 9일자 기사.

18) 『조선왕조실록』, 태종 7년(1407) 3월 16일자 기사.

어긋나는 것을 꺼려하여 대마도인의 울릉도 이주를 거부하였다. 조선 초기 태종의 결정은 후일 광해 조가 강경하게 거부할 전고(典故)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태종 시대에 대마도인과 광해 시대에 대마도인이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된다. 대마도는 조선의 답서에 형식상 수공을 하였지만 1618~25년부터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무단으로 출입하기 시작하였다.<sup>19)</sup> 이는 조선 조정이 알고도 방관하는 상태에서 지속된 일이다. 이 시기에 들면 조선 어민 역시 조정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희미해짐을 틈타 울릉도에 관심을 새롭게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대마도인의 울릉도 출입은 어떤 면에서든 조선 어부들을 자극했을 것이 분명하다.

계유년 봄에 울산의 고기잡이 40여 명이 울릉도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 안용복 2인을 띄어내 잡아서 가버렸다. 그 해 겨울에 대마도에서 정관(正官) 굴진중(橋眞重)으로 하여금 박어둔 등을 거느려 보내게 하고는, 이내 우리나라 사람이 죽도(竹島)에 고기잡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는데<중략>

신여철은 아뢰기를,

“신이 영해의 어민에게 물으니, ‘섬 가운데 큰 물고기가 많이 있고, 또 큰 나무와 큰 대나무가 기둥과 같은 것이 있고, 토질도 비옥하다.’고 하였는데, 왜인이 만약 점거하여 차지한다면 이웃에 있는 강릉과 삼척 지방이 반드시 그 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남구만의 말을 들어 써서 전일의 서계를 돌려오도록 명하였다.<sup>20)</sup>

세조 이후부터 숙종대인 1693년에 발생한 일본 어부들에 의한 안용복, 박어둔의 납치 사건까지는 조선 어부들이 어로를 목적으로 울릉도에 갔다는 사찬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에 들어 안용복 일행이 울릉도

19) 방기혁, 정영미, 같은 책, pp.56-57.

20) 『조선왕조실록』, 숙종 20년(1694)2월 23일자 기사.

에서 어로활동을 하다가 일본 어민에게 납치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이후 실록을 비롯한 각종 사서에서 울릉도가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다. 안용복의 납치와 귀국, 재도일과 귀국으로 인해 조·일 간의 울릉도와 죽도의 명칭 문제 및 영유권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신여철과 영해 어민과의 대화에 대한 기사는 동해안 어민들이 울릉도에 대한 지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에 앞선 시기에 이미 울릉도에 다녀온 어부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안용복의 도일 사건이 발생한 직후, 조선 조정에서 울릉도에 대한 대책과 울릉도 관련 정보는 신여철의 위의 진술과 같은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실록에서조차 울릉도 기사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만큼 도해금지에 대한 연안 지방 수령들의 방임이 어민들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나아가 안용복의 도일 사건으로 인해 조선 조정이 울릉도에 대한 수토작업을 활발하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 2) 안용복 전승의 부재 현상

안용복은 타의와 자의로 두 번이나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이를 계기로 조선 조정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인과 수토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숙종 이후 고종 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울릉도에 대한 수토(搜討) 행위는 안용복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sup>21)</sup> 이

21) 장한상이 9월 갑신에 배를 타고 갔다가 10월경에 삼척으로 돌아왔는데, 아뢰기를, “왜인들이 왔다 갔다 한 자취는 정말 있었지만 또한 일찍이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땅이 좁고 큰 나무가 많았으며 수종이 또한 평탄하지 못하여 오고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토품(土品)을 알리고 모맥(麩麥)을 심어놓고 돌아왔으니 내년엔 다시 가보면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납구만이 입시하여 아뢰기를, “백성이 들어가 살게 할 수도 없고, 한두 해 간격을 두고 수토(搜討)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숙종20년(1694) 8월 14일 기사.

후 고종조인 1882년 울릉도 개척령과 함께 각지에서 이주민들이 울릉도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독도가 조선의 행정구역이 된 것도 안용복 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안용복의 이야기는 울릉도에 수토 작업을 통해 얻은 수확과 더불어 제한적으로 유포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안용복 관련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청성잡기』, 『증정교린지』, 『만기요람』, 『각사등록』 같은 관찬 사서류나 『성호집』, 『순안집』, 『강옹집』, 『연경재전집』 등의 개인 문집류를 통해 전해져 음을 볼 수 있다.

“저는 본디 동래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울산에 갔다가 마침 중 뇌헌 등을 만나서 근년에 울릉도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섬에 해물이 많다는 것을 말하였더니, 뇌헌 등이 이롭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같이 배를 타고 영해 사는 뱃사공 유일부 등과 함께 떠나 그 섬에 이르렀는데, 주산인 삼봉은 삼각산보다 높았고, 남에서 북까지는 이틀길이고 동에서 서까지도 그러하였습니다. 산에는 잡목·매·까마귀·고양이가 많았고, 왜선도 많이 와서 정박하여 있으므로 뱃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아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솥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싣고서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하여 옥기도(玉岐島)에 이르렀는데, 도주가 들어온 까닭을 물으므로, 제가 말하기를,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의 서계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자, 마땅히 백기주(伯耆州)에 전보(轉報)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완을 금하지 못하여 배를 타고 곧장 백기주로 가서 울릉자산양도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장차 사람을 시켜 본도에 통고하려 하는데, 그 섬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어 맞이하므로, 저는 푸른 첩리(帖裏)를 입고 검은 포립을 쓰고 가족신을 신고 교자를 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을 타고서 그 고을로 갔습니다.<sup>22)</sup>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안용복에 대한 사실 대부분은 숙종 22년(1696) 안용복이 월경죄를 입고 취재를 당할 때 진술한 부분에서 비롯된다. 안용복이 금기를 위반하고 울릉도에 들어가서 어로 활동 중에 왜인을 발견하고 꾸짖는 장면을 실록은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안용복이 일본 어부를 울릉도에서 몰아낸 후 그 뒤를 좇아 일본까지 가게 된 사실을 진술한 이 장면은 안용복 이야기의 본령이다. 안용복의 용맹함과 영웅다운 기개를 보여준 이 진술은 안용복 등장 소설의 주요 모티브이기도 하다. 이 일로 울릉도에 대한 수토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안용복은 사형을 면하고 귀양에 보내졌다는 사실에서 안용복 이야기는 멈춘다.<sup>23)</sup> 그럼에도 안용복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당시 주류 지배층과는 다소 먼 위치에 있었다.

안용복은 곧 영웅호걸인 것이다. 미천한 일개 군졸로서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하여 강적과 겨루어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22) 『조선왕조실록』, 숙종 22년(1696) 9월 25일자 기사.

23) 남구만은 숙종 때의 재상으로서 안용복 문제를 실제 다루었던 인물이다. 그는 안용복의 공적을 인정하고 극형에 처하자는 주장을 만류하였다. “안용복이 비록 외람되어 사단을 만들었다고 하나 사람됨이 녹록하지 않은 듯하니, 위급할 때에 혹 쓸 만”하다고 한 것은 안용복으로 인해 조선의 해양 영토의식을 일깨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구만, 「답유상국 병자시월오일」, 『약천집』 31권.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토지를 회복했으니 부개자(傅介子)와 진탕(陳湯)에 비하여 그 일이 더욱 어려운 것이니 영특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형벌을 내리고 뒤에는 귀양을 보내어 꺾어버리기에 주저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울릉도가 비록 척박하다고 하나, 대마도도 또한 한 조각의 농토가 없는 곳으로서 왜인의 소굴이 되어 역대로 내려오면서 우환거리가 되고 있는데, 울릉도를 한 번 빼앗긴다면 이는 또 하나의 대마도가 불어나게 되는 것이니 앞으로 오는 양화를 어찌 이루 말하겠는가? 이로써 논하건대, 용복은 한 세대의 공적을 세운 것뿐이 아니었다.<sup>24)</sup>

이처럼 안용복의 도일의 결과를 이익은 한 세대의 공적을 세운 것 이상이라 했다. 대마도를 잃음으로써 남해안이 우환이 되었는데 울릉도를 잃으면 동해 연안이 편안할 리가 없다. 안용복의 행위로 말미암아 동해에 대마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았으니 영웅호걸이라는 명칭을 기꺼이 부여하였다. 이름 높은 재야의 사대부로서 이러한 평가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숙종 시기 안용복으로부터 촉발된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조선 조정의 재인식은 소수의 한문 식자층으로부터 조명을 받았지만 정작 안용복이 속한 민중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은 것 같지 않다. 이 일로 말미암아 조정이 갑자기 울릉도에 대한 수토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였고 어민들에 대한 도해금지가 다시 본격화되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영조, 정조 때에 이르면 이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어민들의 울릉도 잠입을 단속하였다는 기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sup>25)</sup> 이때부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수토활동을 하였고 틈틈이 사람을 보내어

24) 이익, 「울릉도」, 『성호사설』 권3.

25) “울릉도에 대한 일은 이제 이미 명백하게 한 곳으로 귀착되었으니, 틈틈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하고 단속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2년 간격으로 들여보내도록 명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3년(1697) 4월 13일자 기사.

단속을 하였다.<sup>26)</sup> 결국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을 몰아낸 것만 아니라 조선 어부들도 법적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안용복과 그 일행이 조정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고 포상이라도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안용복의 용기와 기지를 널리 알리고 금의 환향했을 터이다. 더불어 동해안 어민들에게 제한적이거나 울릉도에 대한 어로 활동까지 허락했다면 어민들로부터도 떠들썩한 환대를 받았을 터이다. 고향 사람들과 어민들은 안용복 일화를 오래도록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쯤 이들의 후손들이 과거 자기 선조들이 행한 일을 자랑스러워할지 모른다. 이러한 가정은 조선 지배층의 드넓은 포용력과 시대를 읽는 훌륭한 안목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안용복은 관리 참칭죄와 월경죄를 얻어 귀양을 갔다는 기록과 함께 민간에서의 한때 떠들썩했던 안용복 이야기도 전승할만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문헌 자료를 제외한 안용복 이야기는 근대에 들어 재생산되어 민간에 전승되고 있다. 홍경래나 전봉준 같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인물 설화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포된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안용복 이야기는 실록에서 ‘귀양 보내다’에서 수세기 동안 거의 고착되어 있었다.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되찾은 데 기여한 지대한 공로에 비하면 그가 거주했던 동래로부터 울산, 영해 등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일대의 민간전승으로 몇 편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안용복으로 인해 울릉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부각된 만큼 그의 공적이 민간전승을 통해 이야기되어야 마땅할 터이다.<sup>27)</sup> 무엇보다 공보다 과를 질책하여 귀양을 가

26) “강원도 월송 만호 전회일이 울릉도를 수토하고 대풍소로 돌아왔다. 본도의 지형을 그려 올리고, 겸하여 그곳 토산인 황죽(皇竹), 향목(香木), 토석(土石) 등 수종의 물품을 진상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5년(1699) 7월 15일자 기사.

27) 1984년 정음사에서 출간된 여영택의 『울릉도의 전설·민요』 역시 울릉도 개척사 이후에 생성된 설화를 채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설화 자료에는 안용복을 장군으로 표현한다. 채록자의 의도가 실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

게 된 비극의 주인공이 아닌가. 하물며 그와 운명적으로 함께 했던 박어둔, 뇌현, 유일부, 유봉석, 이인성 등의 이야기조차 남겨져 있지 않다. 이들의 일본 모험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동시대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용복 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울릉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구전 문학으로 채록되어진 바가 없다.<sup>28)</sup>

당시 승려 뇌현, 이인성 등이 안용복과 함께 울릉도에 이익을 취하려 갔지만 여기서 다시 일본까지 가게 될 줄 알았을까? 가정이지만 안용복으로 말미암아 조선으로 돌아온 후 겪게 된 고초를 각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어쩌면 안용복과 함께 울릉도 독도에서 왜인을 몰아낸 공로를 인정받고 포상을 받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조선 조정은 울릉도를 수토할 때, 일본 어부뿐만 아니라 조선인 어부도 출입을 엄격히 단속하였다.<sup>29)</sup>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숙종 19년 이후 울릉도 수토 정책의 확립으로 그간 조정의 무관심을 틈타 울릉도를 출입했던 조선 어부들이 받은 타격은 상당했을 것이다.<sup>30)</sup> 일본이 안용

---

자료에서 안용복을 장군으로 호칭한다. 단순히 안용복을 대마도주와의 갈등 관계로 설정하였고 대마도주의 굴복을 받고 귀환한 안용복이 죽음을 당했다고 서술한다. 이야기꾼의 이야기로 질감 있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안용복에 대한 지식을 재구성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런 까닭에 민간에서 안용복 시대로부터 지속적으로 전승해 온 설화로서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28) 울릉도에서 1980년대에 채록된 설화가 있기는 하지만 울릉도 개척 이후에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새롭게 생성된 것으로 엄밀하게 구비전승된 설화라고 보기 어렵다.

29) 당초 갑술년에 무신 장한상을 파견하여 울릉도의 지세를 살펴보게 하고, 왜인으로 하여금 그곳이 우리나라의 땅임을 알도록 하였다. 숙종 24년(1698) 4월 20일자 기사.

30) 안용복의 1, 2차 도일에서 참여한 인물들은 영.호남을 비롯한 조선의 연안 어민과 상승(商僮)들이다. 이들의 도일은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주권 수호를 위해 조선의 어민과 상승집단이 연대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때 참여한 사람을 현재의 행정 단위로 구분하면, 부산 동래의 안용복, 울산의 박어둔, 경남 평산포의 이인성, 경북 흥해의 류일부, 경북 영해의 류봉석, 전남 낙안의 김성길,

복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해금지를 엄하게 하고 방치된 울릉도를 다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조선 어민들 역시 안용복을 원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안용복과 그 일행은 조선 조정에 울릉도를 재발견하게 하였지만 오히려 처벌을 받았다. 나아가 울릉도에서 나는 다양한 특산물에 대한 조정의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아지고 그 이익을 어민들과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래에 연해의 선상들이 본도(本島)를 보물단지(寶物丹地)로 여겨 금령을 무릅쓰고 몰래 들어가는 폐단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번 수색하는 기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어곽(魚藪)을 채취하고 황죽(篁竹, 왕대)을 마구 베어내며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인삼을 몰래 채취한 자취가 이치럼 낭자하였으니, 변방의 금령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사실에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본영(本營)에서 경상, 전라, 함경 세 도에 공문을 보내 연해의 선상 중에서 울릉도의 금령을 범한 자들을 각별히 엄하게 조사하여 기어이 잡아서 울문대로 엄히 감처하도록 하고, 도내 연해의 각 읍에도 관문을 보내 특별히 엄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까.<sup>31)</sup>

정조조의 이 기사는 ‘울릉도의 금령을 거듭 밝히고 연해의 선상(船商)을 추적해서 체포하는 일은 시행하지 말며 해당 지방관은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여 감죄(勘罪)하라고 명’하는 데서 드러난다. 숙종 이후 울릉도에 관심은 정조에서 고종으로 이어지는 동안 관심이 커졌다. 실록에 등장하는 횡수로 그렇다. 정조 당시에 조선 어부들은 관리들의 눈을 피해 울릉도를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금령이 먹혀들지 않아 놀라웠다’는

---

전남 순천 흥국사의 뇌현을 비롯한 승려들, 황해도 연안 사람 김순립 등이다. 이를 보아 조선 조정의 쇠퇴정책과 달리 조선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울릉도가 중요한 생업의 터전으로써 왜구에게 빼앗길 수 없는 우리 영토로 분명히 각인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안용복 등의 출신지는 『숙종실록』권26, 숙종 20년 2월 23일자 기사와 『숙종실록』권30, 숙종 22년 8월 29일자 기사에 실려 있다.

31) 『조선왕조실록』, 정조 19년(1795) 8월 21일자 기사.

사실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지만 생계가 막연한 어부들에게는 울릉도는 ‘보물단지’로 여길만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안용복 이야기는 당시 어민들이 칭송할 만한 이야기로 창조되어 민간전승으로 구전되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안용복 이야기를 채록한 전승된 자료가 박약하다는 사실은 이에 관심을 가지고 따로 채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874년 흥해 군수를 역임했던 성대중(1732~1812)의 『청성잡기』에서 울릉도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안용복 전」을 어렵게 구한 사실을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내가 울진의 수령이었을 적에 마침 함부로 섬에 들어가 산삼을 캐는 부정한 백성들이 많았는데, 일이 발각되자 관찰사와 수령들이 모두 죄를 받게 되었다. 조정에서 울릉도 사건의 시말을 강원도 감영에 물었으나 강원도 감영에도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이에 영동(嶺東) 지역의 여러 군현에 탐문하였는데, 안용복 전이 있기는 하였지만 내가 그 전을 내놓으면 나만의 공이 되어 이명휴의 깊은 뜻이 없어질 터였다.<sup>32)</sup>

안용복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 뒤에 태어난 성대중의 기록을 보면 18세기 중반기 이후에는 조선의 관리조차 어느새 안용복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대중은 이 『청성잡기』에서 이명휴의 『춘

32) 『青城雜記』第3卷, 「安龍福」 “嘯齋金公用謙, 嘗言春官志之善於余, 求諸禮曹而見之, 乃李孟休所編也. 上卷載祀典, 下卷載事大交鄰之節, 而未乃載安龍福傳. 龍福東萊氓也, 因爭鬱陵島於倭而傳焉. 鬱陵, 本我地也, 倭之漁者, 闖據之, 我人之以漁入者, 反被其拘辱. 龍福憤甚, 乃結漁丁以往逐之, 入倭, 與伯耆守抗, 奮氣強辯, 倭不能屈, 卒以島返, 其事誠壯偉. 然於交鄰則無與也, 孟休乃編之末, 其必有深意也. 余故寫其傳貯之. 及宰蔚珍, 適奸民闖入島採蔘者衆, 事發, 道臣守宰, 皆被罪, 廟堂乃問鬱陵事始末於關東營, 營亦無有也. 問之嶺東郡縣, 龍福傳故在, 出之自我, 則猶爲吾功, 而孟休之深意泯矣. 乃匿其傳, 第報於營曰, 事由安龍福, 具載李孟休所編春官志之末, 可覆視也. 事於是顯, 孟休之深慮, 人皆奇之, 而吾亦免掠美之愧也. 龍福事, 編入『文獻備考』.”

관지』에 실린 「안용복 전」을 ‘베껴서 보관하다가’ 감영에 소개함으로써 이 전이 『문헌비고』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거문도에서 채록된 울릉도 관련 뱃노래는 구전자료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술- 비- 여- /헤- 헤-에- 술비여어 어라- 에헤에라- 술비여- 에야라  
 술비야 에야디아라 술비야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 에-야-라- 술비-  
 야 / **울릉도로 나는 간다** / 에-야-라- 술비-야/ 오도-록만 기다-리소/  
 에-야-라- 술비-야 /이번 맞고 같이 노세 / 에-야-라- 술비- 33)

이 「술비소리」는 뱃노래이다. 조선시대 거문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왕래하며 불렀던 노래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려 있다. 이 자료집에서 거문도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고급 목재를 구하여 와서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울릉도산 나무로 홍두깨를 만들어 사용하다 울릉도 박물관에 기증하였다는 이야기 등, 해상을 통한 어민들의 활동을 구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남해와 서해 도서지방에서도 울릉도에 드나들었다는 것은 안용복 시대나 그 다음 시대에까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sup>35)</sup> 또 울릉도,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여

33) 「술비노래」는 진도와 거문도 등 전남 연안 지역에서 다양하게 채록되고 있다. 여기에 언급한 거문도 「술비노래」는 『한국구비문학대계』 증보 사업으로 채록된 민요로 한국학중앙연구회에서 지원하는 자막과 음성지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https://gubi.aks.ac.kr/web/TitleList.asp>) 이 노래는 삼산면지발간추진위원회에서 간행한 『삼산면지』(2000) 26쪽에도 실려 있다. 김수희,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38, 2011, p.216. 참조.

34) 김수희는 거문도 민요 「술비노래」와 함께 「거미노래」를 언급하면서 정조조인 “1787년 프랑스 라페루즈 탐험대가 울릉도에서 조선인의 선박 건조 과정을 목격”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토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에도 남·서해안 어민들조차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울릉도 도해를 감행하였음을 보여준다. 김수희,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38, 2011, p.216.

35) 이와 같은 사실은 이규원의 「오주연장전산고」에 “가난한 전라도 해민이 역시

거문도 주민들이 부유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담은 이야기도 전승하고 있다.<sup>36)</sup> 이처럼 구술적 노래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시대의 생의 단면을 유포하는 것에도 역사적 문화적 현상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민간전승 자료에서 안용복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까닭은 어민들이 울릉도 출입으로 감수해야 할 위험과 함께 안용복 이야기를 구전시킬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015년 울릉도에서 채록되어 『한국구비문학대계』 경상북도 울릉도 편에 수록된 단 3편은 근대에 재창조된 설화로 볼 수 있다.<sup>37)</sup> 1970년부터 진행된 『한국구비문학대계』 편찬 사업은 편찬 과정에서부터 해당 지역별, 마을별로 제보자를 확보하여 구술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성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안용복 설화는 근대에 들어 울릉도 개척 이주를 한 이후 1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록된 것이기 때문에 울릉도 개척사와 관련된 지식이 반영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안용복이 이야기가 설화로서의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니다. 안용복 이야기가 새롭게 형성되고 유포된다는 것은 그가 울릉도 개척사를 여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다.

---

들어와 소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고 미역과 전복을 따고 대나무, 칩덩굴을 베어 가득히 싣고 온다”는 기록과 부합된다. 김호동, 「울릉도·독도 수호활동에서의 울산의 역할과 박어둔 재조명」,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2010, pp.50-52<재인용>

- 36) 이 제보자는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모두 울릉도 독도에 자유롭게 다녔다고 진술한다. 당시에 국가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문도 사람들이 울릉도 독도를 다니면서 강치나 물개를 잡아서 만든 어유(魚油)를 마포 강경, 영산강 등지로 팔면서 치부를 했다고 했다. 전승적 요소가 강한 부분이지만 일제강점기의 어로활동이 주된 내용이다.
- 37) 이 자료 역시 채록자의 선입견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 「울릉도를 지키러 간 안용복」의 경우 채록자는 제보자에게 안용복 장군이라는 명칭으로 질문을 하였고 제보자는 안용복이 장군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이 제보자(양요산)은 「울릉도를 지킨 안용복의 최후」를 포함 두 편을 제보하였고, 같은 울릉도 주민인 제보자(최헌식)는 「울릉도를 지키러 일본에 간 안용복」이라는 설화를 구술하였다.

### 3. 안용복 서사에 투영된 영웅주의

#### 1) 민중 영웅에서 역사적 영웅으로

민중의 욕망에서 탄생하는 영웅은 억압된 대중 심리를 업고 등장한다.<sup>38)</sup> 민중이 영웅서사에서 민중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려는 현상은 스스로 이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대리만족 욕구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안용복의 영웅화는 이러한 요인과 결합되어 허구 서사로 재현되고 있다. 안용복은 동시대 민중으로부터의 기억에서 이내 사라졌지만 지금은 안용복에 기대어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안용복이 남긴 역사적 징표는 민족사의 과거 문제와 더불어 미래의 나아갈 길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안용복 시대의 모험적인 어민들은 1693년, 울릉도라는 금지된 구역으로 어로활동을 나아갔다.<sup>39)</sup> 이 모험 과정에서 일본 어부들과 충돌로 인해 안용복과 박어둔은 일본으로 납치되었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안용복은 일본에서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확인<sup>40)</sup>을 받고 돌아왔지만 지배층은 범월(犯越) 죄를 물었다. 안용복이 일본에서 벌인 담판의 의미보다 울릉도에 무단으로 갔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안용복의 입장에서 울릉도를 무단 침범한 일본 어민에 대해 눈감은 조정의 일 처리

38) 서영철, 「영웅서사의 현대적 변용」, 『한국말글』34, 한국말글학회, 2017, 12, pp.56-57.

39) 이 시기 동해안 어민들이 먼바다(울릉도)에 나아가는 것을 법으로도 쉽게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좌부승지 이현기가 말하기를 ‘동해 가에 사는 백성들은 전토가 척박하여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므로 오직 고기잡이만 합니다. 비록 날로 엄하게 타일러 경계시키더라도 먼 바다로 나가지 않을 리가 만무합니다.’” 『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 3월 3일자 기사. <김호동, 『안용복』, 대구한의대 안용복연구소 학술총서5, 2016, p.16<재인용>.

40) 안용복이 일본 호키주(伯耆州)에서 ‘울릉도가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을 받고 증물도 받았고 쓰시마에서 공문과 증물을 빼앗겼다’는 진술을 조정은 믿지 않았다. 『숙종실록』(숙종22년, 1696)10월 23일자 기사.

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귀국 후에 당한 일이 억울할 수 있다.<sup>41)</sup>

안용복은 1696년 울릉도에 다시 들어가서 울릉도에 잠입하여 어로활동을 하는 일본 어부를 쫓아 일본으로 다시 갔다. 조선 어부에게조차 출입을 금하는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어로활동을 가로막았다. 또 이들을 추격하여 일본 백기주로 가서 담판을 벌였다. 이 도일은 당시 조선 지배층의 무관심 속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어부들의 어장이 된 사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다. 안용복이 일본에서 감세장이라고 참칭했다지만, 이는 무명의 조선 백성이 취할 수밖에 없는 트릭(trick)이다.

트릭스터(Trickster)는 나쁜 말로 사술로도 해석되기도 하지만 신화학에서는 석탈해나 주몽이 경쟁자에게 자신의 ‘옛 집터’를 허위로 제시하여 빼앗는 행위를 통해 지혜로운 영웅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문학, 특히 설화적 인물인 트릭스터는 탐욕적인 강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이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여 지혜롭게 위기를 벗어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인물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조선 지배층이 안용복에게 관리를 ‘참칭’했다고 벌을 주었지만 안용복의 이러한 속임수는 일본 막부 변신을 상대할 때 약자로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울릉도 도해 금지를 엄격히 해온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의 후원 하에 울릉도를 무단출입하는 일본 어부 사이에 놓인 가련한 조선 어부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sup>42)</sup>

안용복의 영웅다움은 지혜와 용기에 있다. 안용복 이야기는 영웅서사

41) 일본 쓰시마 번주 중의륜[소 요시치쿠(宗義倫)]이 백기주(伯耆州)를 통해 쓰시마로 온 안용복을 억류하였다가 조선으로 돌려보낼 때 일본 측으로서는 ‘죽도’라 명명한 울릉도에 대해 조선인들의 출입을 금해달라는 서간을 보냈다. 이때 조정은 죽도와 울릉도가 같은 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빌미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김호동, 『안용복』, 대구한위대 안용복연구소 학술총서5, 2016, pp.15-16.

42) 트릭스터의 실존적 인물로는 김선달, 정수동, 방학중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상층계급에 대한 대립 내지 저항의식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조희웅, 『설화학 강요』, 새문사, 1989, pp.132-138. 참조.

의 관점에서 볼 때 민중영웅의 모습을 지닌다. 조동일은 민중영웅을 3개의 단락으로 특징 짓는다.<sup>43)</sup>

1. 미천한 신분을 지닌 인물이다.
2. 범인과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3.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이러한 세 개의 특징은 안용복의 일생 구조와 유사하다. 동래부 전선에 예속된 노군으로 왜어에 능숙했다. 『성호사설』, 『춘관지』, 『만기요람』 등은 안용복의 신분이 미천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화국지』에서 안용복은 동래 ‘어부집안의 아들로 장성한 후에 전선의 능로군에 속하였다. 성품이 굳세고 사나우며 기지와 식견이 있었고 한문을 읽고 쓸 줄 알며 왜어(倭語)에 익숙함을 이야기한다. 이는 안용복의 탁월한 능력을 말한다. 나아가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이후의 삶이 불행했음을 암시한다. 이는 3번의 비참한 죽음과 다르지 않다. 남구만의 편지에 “사람됨이 녹록하지 않은 듯하니, 위급할 때에 혹 쓸”까 했지만 귀양을 가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은 알 수 없게 되었다. 민중영웅의 비참한 결말에 해당한다.

안용복 관련 일화나 사적을 기록한 한문 문헌도 대개 민중영웅이라는 관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이 시행된 이후, 안용복이 민중의 영웅에서 역사의 영웅으로 재발견되어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애국계몽기(1900-1910)에 이르러서다. 안용복의 역사적 재등장은 결국 국가적 위기를 가져온 지배층의 무능과 안일을 비판하면서 국권회복을 위한 민중 영웅의 역량을 부각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옛적에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범할제 고구려 대장 을지문덕의 휘하에 도승 일곱이 있어서 청천강물을 말려 평지를 만들고 수나라군사 일

43) 조동일, 같은 책, p.55.

백 삼십만명이 반쯤 건너올 때 물을 줄지에 내려오게 하니 수나라 군사가 무수히 빠져 죽은지라 이렇고로 당시에 인민들이 이 일곱 도승을 활불로 존봉하였다더니...<중략>...**대저 동양척식회사법이 반포된** 후로 전국이 떠들고 그 모호한 구절과 이롭지 못한 조건에 대하여 정부 관인은 수수방관하고 유지자는 함구 결설하더니 거연히 열 두 사람이 척식 위원의 직임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두 나라 위원회에서 힘써 반대한 결과로 그 회사법의 설명서를 얻었는데..<중략>...이것을 볼진대 그 회사에서 토지 매매와 빌어쓰는데 억지로함이 없을지며 한국사람은 다른 곳에 억지로 옮기지 아닐지며 또 민유토지는 그 회사의 침해를 당치 아닐지니 장하다 열 두 사람이여. **속묘(속종, 저자 주)시절에 일본 대마도주가 울릉도를 침탈하거늘 조정에서 겹을 내어 버려주고자 하는데 홀로 동래 수영병졸 안용복씨가 단신으로 대마도에 건너가서 기묘한 계책으로 대마도주를 굴복케하고 울릉도를 보전하더니** 이제 열두 사람은 그 일의 어려움과 그 공이 큼이 안씨보다 지나는도다. **저 혼천동지하던 전일 혼척대신들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 아니 하였을 지며 벼슬이 높고 권리가 중한 지금 정부대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라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아니 하리로다.**<sup>44)</sup>

안용복을 언문으로 소개한 이 기사는 일제 동양척식회사의 토지 수탈과 관련이 있다. 러·일전쟁(1904-1905) 이후, 통감정치로 인해 일제의 침탈이 노골화된 시점에서 일제의 토지 수탈에 저항한 12명의 조선 민중을 활불로 비유하여 그 공이 안용복에 지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 시기에 들어서 비로써 안용복의 공적이 폭넓게 인정되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

44) 「한국에 열두 활불」(논설, 『대한매일신보』, 1908.10.17. 이 기사는 1909년 1월 동양척식회사가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같은 해 5월 9일 동대문 밖 둔전을 접수하면서부터 민중적 저항을 받은 사실을 다룬다. 또 전국적인 토지 수탈 작업에 대해, 황해도 김영탁, 오영근 평안남도의 백순흠, 오형근 평안북도의 이운실, 이택원 전라남도의 감형욱, 박원규 함경남도의 조근호 박희중 함경북도의 손서현, 한홍석 같은 열두 명이 <동양척식회사 위원>이라는 직임으로 일본에 가서 부당성을 역설하고 온 결과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속종 때 안용복의 도일 사건과 유사함을 드러내고 이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다.<sup>45)</sup> 안용복 이야기가 신문과 잡지류에 한글로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안용복의 행적에 영웅주의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투영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권회복운동을 위한 계몽지식인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영웅주의 역사관을 독자에게 호소함으로써 외세에 대한 응전에 동참하도록 계몽하였던 것이다.<sup>46)</sup>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서도 안용복은 민중의 영웅에서 역사적 영웅으로 소개되었다. 안용복이 난세의 영웅으로 재소환되는 것은 망국의 역사, 위기의 역사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욕망이 담겨 있다.

## 2) 안용복 등장 역사소설의 구전적 상상력

안용복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안용복의 도일 행위를 영웅화하는 상당수의 문헌이 존재하지만 원중거(1719-1790)의 『화국지』를 제외한 대개의 안용복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출신지와 신분 정도만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sup>47)</sup> 원중거는 영조 39년(1763), 성대중(成大中), 김

45) 다음 줄 친 부분은 구전을 채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안용복 일화를 현장에서 채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큰 사람이라 하니 어떠하여야 큰 사람인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성명이 사기에 빛나고 비석을 무덤 앞에 높이 세우며 몇 권 연보가 찬란하고 십여 권 문집이 난만하여 전국 사람들이 만구 입담으로 높혀 가로되 큰 사람이라 하면 이것이 과연 큰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탄하여 십삼도 산하를 두루 유람하며 소위 그 사람을 구하더니 천추에 큰 기운이 죽지 아니하고 만인의 공범된 입이 오히려 있어서 허다한 영웅의 참 그림자가 저들 늙은이와 촌 할미의 입에 붙어 있다. 동래 사람의 전래하는 말로 증거하건대 변방에 일개 농부로 조정의 약함을 한탄하여 국도가 삭탈됨을 통분하여 의연히 왕명을 꾸며 범의 입 같은 이웃나라 추장을 꺾어 굴복케 하였던 안용복 씨는 외교계의 큰 사람이오.” 「입으로 유전하는 큰 사람 큰 사람이라」(서사적 논설, 『대한매일신보』, 1909.2.9.

46) 이 시기 신채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신채호가 이순신, 을지문덕, 최도통 등의 영웅의 사적을 소개함으로 ‘과거의 영웅을 씌으로써 미래의 영웅을 부른’다는 강렬한 애국계몽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 영웅의 소환에 민중의 영웅으로서의 안용복도 재발견되었다. 또한 외국의 영웅을 소개하여 국란 극복의 지혜를 함께 배우려고 하였다. 김병민, 「신채호 문학연구」, 『아침』, 1989. pp.82-83<참조>.

인겸(金仁謙) 등과 함께 통신사 서기에 발탁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성대중, 유득공, 홍대용 등과 교류했던 원중거는 당대의 실학적 사유와 더불어 문학적 소양이 높았던 인물이다. 원중거의 「안용복 전」은 안용복의 영웅다움을 다각적으로 재현한 기록문학으로서 의미가 있다.

조선조 후기 ‘人物傳’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대체로 당대 사회가 구축한 도덕적 규범을 따르고,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 그 가치를 확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안용복은 상대를 도덕적 규범으로 설득하기보다 함께 간 일행을 권모술수로 속이는가 하면, 심지어 일행을 협박하여 원하는 계획을 실행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원중거는 규범과 가치를 확인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용복의 개성과 인물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시선을 할애한다. 더욱이 상대를 압도하는 안용복의 성격을 끄집어내거나, 앞으로 닥칠 상황을 미리 계획하고 나침반까지 준비하며 왜선을 기다리는 등 안용복의 주도면밀한 모습을 강조하여 그의 개성과 인물 성격을 끄집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시선과 서사수법은 두 번째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관복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을 울릉도 감세관이라고 백기주의 사람을 속

- 
- 47) 진재교는 안용복의 삶을 전으로 남긴 문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안용복이 간교한 책략에 맞서, 목숨을 무릅쓰고 두 번이나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의 소유를 확인한 안용복의 활약과 이후 조선조정과의 대응양상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인작자가 안용복의 삶을 포착한 ‘傳’과, 사건을 사실대로 파악한 ‘記錄’의 경우 서술 방식과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원중거의 「안용복 전」을 비롯하여 이경민의 회조일사와 20세기 초에 나온 宋炳華(1852~1916)의 「안용복 전」 등은 ‘전’의 형식으로 포착한 바 있다. 대체로 안용복의 삶을 에도막부와 대마도를 상대로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시켜 서술하였다.” 진재교, 「원중거의 <안용복 전> 연구-안용복’을 기억하는 방식」, 『진단학보』108, 진단학회, 2009, p.241.; 진재교, 「조선 후기 문헌 기록으로 본 안용복의 기억과 변주」, 『한국한문학연구』60, 2015, pp.274-301.<참조>; 김병우 편역, 『한국이 기억하는 안용복-문헌자료 집성-』(대구한의대 안용복연구소 학술총서4), 지성인, 2015<참조>.

이는 것과, 자신을 조선이 파견한 정식 관원으로 자처하여 일본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에서도 보이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자가 안용복의 이러한 행동과 성격을 특기한 것은 자국민과 타국 관리를 속이는 반규범적이고 불법적인 행동과 모습을 주목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不義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문제를 타개하려는 노력을 드러내 고자 한 것이다.<sup>48)</sup>

원중거의 『화국지』에 나타난 「안용복 전」을 분석한 진재교의 이 글은 트릭스터로서의 안용복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몽 신화와 석탈해 신화에서 보여준 트릭스터로서의 영웅과 흡사한 면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49)</sup> 이는 구전적 상상력으로서 민중적 영웅 안용복을 형상화한 것이다. 원중거의 「안용복 전」 이후, 안용복이 문학적으로 본격적으로 재현된 것은 애국계몽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다. 이 자료들은 원중거를 비롯한 조선의 지식인들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안용복을 재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 상상력보다 역사적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50)</sup> 안용복 이야기의 허구적 유포는 안용복이 역사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대개

48) 진재교, 「원중거의 <안용복 전> 연구-‘안용복’을 기억하는 방식,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2009, p.251.

49) 이러한 트릭은 속임수에 속임수를 더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 즉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 입증을 위해 부득이한 위장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안용복의 영웅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주몽신화, 탈해신화 등에서 보이는 트릭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들 신화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트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김기호, 「건국신화의 창조 원리」, 『한민족어문학』39, 2001, pp.227-228.

50) 일제강점기의 안용복 이야기는 1922년 장지연의 『일사유사』의 「안용복」, 1926년 『동광』1,2호에 게재된 이운재의 「쾌걸 안용복」, 1933년 『별건곤』 65호에 수춘산인의 「三寸舌로 鬱陵島 奪還한 海上의 快人勇士 安龍福」, 1934년 『별건곤』 70호에 최운생의 「눈속에 파묻힌 雪禍의 鬱陵島秘史」, 1934년 12월 16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김양기의 「안용복과 울릉도」 등이 있다.

‘역사가 진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면 소설은 허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하고자 한다. 안용복의 행위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그가 걸어온 거의 모든 것이 삭제된 사실 앞에서 소설은 허구를 통해 안용복의 삶의 가치, 즉 진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sup>51)</sup>

안용복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은 생애에 대한 기록의 공백을 구전적 상상력에 의해 복원하려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인다. 귀족적 영웅의 일생이 아닌 민중적 영웅의 일생으로 재현함으로써 동시대 권력이 지닌 무능과 무기력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한 기득권적 삶을 향유하는 동시대 지배층의 모순과 무관하지 않다. 안용복을 통해 부조리한 시대에 대한 민중적 자각을 일깨우고 민중적 삶의 역동성을 재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소설은 역사소설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구전적 상상력의 과잉으로 인해 안용복 생애의 본질적인 것조차 왜곡하는 경향도 있다.<sup>52)</sup>

구전적 상상력이 집약된 문학이 동화이다. 장르상으로 동화와 민담은 혼용되기도 하고 민중적 의미에서 알레고리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다.<sup>53)</sup>

51) 김재국, 「애국계몽기의 역사소설 고찰」, 『대중서사연구』7, 대중서사학회, 2002, p.71. 참조

52) 김하기의 『독도전쟁』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을 소재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작가의 낭만적 상상력을 최대한 투영한 로망스에 그치고 만다. 『해제 어둔』에서 박어둔을 역적의 아들이 되어 밀고한 노비의 업둥이가 되었다고 설정했다. 또 노론의 영수 송시열에게 학문을 배워 문과에 급제하기까지 설정은 신분 상승 모티브에 기댄다. 이는 박어둔의 이름과 조선이라는 공간만 빌린 것일 뿐이다. 박어둔이 독도에서 해상전쟁을 치루는 모습과 해외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역사소설의 본질과 먼 통속소설로서 안용복 시대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포기하고 서구 기사도 소설의 인물구조를 모방하고 있다. 김하기, 『독도전쟁』 1:2, 쌤앤파커스, 2015.

53) ‘민담이 오랜 구전의 역사를 거치면서 변화를 겪어 온 것처럼, 그 민담을 뿌리로 하는 동화는 작가에 의한 글쓰기와 인쇄라는 역사를 거치면서 더 활발한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에 의해 교훈이라는 도덕적·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 권혜경, 「서구 민담에서 동화로, 동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의 변용 과정에 나타나는 정치적 전유」, 『새한영어영문학』49, 새한영어영문학회,

안용복을 주인공으로 한 허구적 문학이 완결성을 띠고 처음 등장한 것은 이주홍이 1981년에 내놓은 동화 『바다의 사자』이다.<sup>54)</sup> 이 동화는 안용복을 본격적으로 허구화하여 근대 문학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안용복을 역사적 영웅으로 묘사한 본격 장편 역사소설이 북한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북한 작가 리성덕의 『울릉도』(1990)이다. 이 소설은 북한에서 역사적 ‘숨은 영웅 찾기’의 일환으로 기획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과 북한 사회에 안용복의 삶을 알림으로써 체제에 부응하는 인물상을 제시한 것이다.<sup>55)</sup> 남한에서의 안용복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 역사소설은 2005년 2월에 발표된 김래주의 『대조선인 안용복』이다. 그 후, 권오단의 『안용복』(2014), 황인경의 『독도』(2015), 전민식의 『강치』(2019)가 나왔다. 여기서 주목할 작품으로 『바다의 사자』, 『울릉도』, 『대조선인 안용복』이다.

이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1963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한찬석의 「독도의 비사 안용복 소전」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sup>56)</sup> 이주홍의 『바다의 사자 안용복』은 한찬석의 「독도 비사 안용복 소전」을 그대로 차용하여 장편동화로 창작하였다. 김래주의 『대조선인 안용복』도 안용복의 이웃집 처녀이자 애인으로 유유를 설정했는데 이는 한찬석의 「독도의 비사 안용복 소전」의 유유 처녀와 같은 인물이다. 표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또 리성덕의 북한 역사소설 『울릉도』도 한찬석의 「독도의 비사 안용복 소전」에서 주요 모티브를 차용하였다. 다만 유유가 박어순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 박어둔의 사촌 동생으로 설정된 유유는 안용복의 이

---

2007, p.3. 참고.

54) 이주홍은 소설가이자 아동문학가이다. 이주홍이 1981년에 발표한 장편 동화집인 『바다의 사자』는 1996년 우리교육에서 『바다의 사자 안용복』으로 재출간하였다.

55) 박태상, 『북한 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1, pp.71-72.

56) 『동아일보』, 1963.2.16.-1963.2.19(4회 연재).

웃집 처녀이자 연인이다. 유유의 대마도로의 인신매매는 안용복의 도일 행위의 발단이 되기 때문에 사료적 사실에 나타난 소명의식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상상력이 부가될 수밖에 없다.<sup>57)</sup>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주홍과 리성덕, 김래주 모두 「독도의 비사 안용복 소전」을 사료로 착각했다기보다 구전설화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sup>58)</sup> 한찬석의 「독도의 비사 안용복 소전」은 『화국지』 이후 등장한 안용복의 역사적 행적에 허구를 생애를 담은 영웅서사담 형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역사소설은 역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허구화했지만 등장인물의 성격 창조는 구전적 상상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독도의 비사 안용복 소전」, 「바다의 사자」의 유유처녀는 대마도로 팔려가는 것으로 설정되었

57) 1963년 『동아일보』에 3회 연재된 바 있는 한찬석의 야담 「독도의 비사 안용복 소전」의 전반부 “청소년 시대”는 북한 역사소설 『울릉도』의 1장 “왜도적들”과 제2장의 ‘해상의 맹장’은 『울릉도』의 제2장 “울릉도”의 전체 줄거리와 유사하다. 안용복이 유유처녀[『울릉도』에서의 박어순]라는 정혼녀를 찾기 위해 울산에서 울릉도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서 목격한 왜인의 도적 행위 등도 그대로 재현된다. 또 “해상(海上)의 맹자(猛者)”로서의 안용복의 전투 장면을 제시하는데 『울릉도』 역시 이 부분을 확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두 자료는 모두 울릉도에서 왜적과 전투를 치루는 장면을 설정하고 1차 싸움의 승리 후, 2차 싸움에서 왜구의 기습으로 안용복과 박어순이 일본으로 납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자료는 안용복의 1차 도일 과정을 물리적 충돌로 비화하여 허구화한 것이다. 남상권, 「북한 역사소설 <울릉도>의 안용복 재현 양상」, 『Journal of Korean Culture』3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7, pp.12-15. 참조.

58) 한찬석의 「독도의 비사 안용복 소전」은 안용복을 허구화한 근대 야담류인 단형서사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허구물은 1900년대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경향신문』과 같은 신문이나 『장학월보』, 『태극학보』 등의 학회지에 게재된 허구적 단형서사체와 유사하다. 특히 학회지의 “소설” 또는 “소설”란이나 “잡보”란에 게재된 단형서사물은 한자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한찬석의 「독도의 비사 안용복 소전」은 특이하게도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형서사물을 북한에서 유의미하게 허구화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런 점에서 『울릉도』는 남한의 야담류 단형서사물을 역사적 사실로 신뢰했을 가능성보다 흥미를 가미한 이야기로서의 유포 가능성 때문에 주요 모티브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남상권, 앞 글, pp.12-13.

다. 『울릉도』의 박어순과 『대조선인 안용복』의 유유는 다대포 외삼촌 집에서 일하다 왜구에게 납치당하도록 설정하였다. 안용복의 길 나섬은 연인을 찾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서 악당을 퇴치하고 연인을 구출하는 모티프는 최치원 설화와 같은 괴물 또는 악당 퇴치담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안용복이 유유 처녀나 박어순이라는 연인 찾기 과정에서 사건이 확장되고 공간이 확장된다. 울릉도와 일본으로의 여로를 따라 영토 문제로 사건이 확대되고 안용복의 소명의식도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된다.

이처럼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역사적 과업에 직면하면서 대의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 대의는 모험을 통한 소명의 완수가 필연적이다. 안용복 등장 소설로서 권오단의 『우리땅 독도를 지킨 안용복』(2010), 차상찬의 『해상의 쾌인 안용복』(2013), 황인경의 『독도』(2015)도 ‘영웅의 일생담’에 바탕하여 창작되었다. 최근 발표한 전민식의 『강치』(2019)에서 안용복은 역적의 자손으로 설정하였다. 고귀한 신분에서 비천한 신분으로 하강한 가계의 자손으로 태어나 민중적 영웅으로 발전하는 형식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안용복 등장 역사소설은 대개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를 극복하려는 역사심리적 동인에 의해 창작되고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알레고리를 다분히 드러내고 있다.

안용복 등장 역사소설의 영웅주의는 개인 안용복이 아닌 공적 사명을 완성하는 데서 부각된다. 안용복이 소명을 띠고 길을 나서는 여로에는 적들의 세계로 연결된다. 그가 지닌 자격은 무심한 조선 지배층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안용복의 도일과 일본 막부와의 만남을 당대 조선의 어부와 민중의 대표로서의 공적 자격이라고 옹호한다. 따라서 ‘관리참칭’이라는 지배층의 시각을 트릭스터라는 면모로서 일축하고 조선은 지배층만의 나라가 아니라 안용복과 같은 이름 없는 백성의 나라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한다. 안용복의 영웅적 모험과 진실 추구를 위한

탐색은 이름 없는 백성도 영토주권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승화시키며 독자로부터 공감을 이끈다.

####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역사적 인물 안용복이 문학 속에서 재현되고 재해석되는 현상을 논의했다. 안용복의 역사적 소환과 문학적 재현 현상은 그 시대의 필연성 때문이다. 조선 후기로 들면서 조선 지배층으로부터 울릉도는 망각의 섬이 되었지만 조선 연안의 어민들은 울릉도가 위협하지만 경제적인 기회의 섬으로 인식되었다. 인구가 늘고 어로 활동의 범위가 커졌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의 쇄환정책으로 인한 울릉도 도해 금지가 지속되는 동안 일본 대마도나 백기주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탐욕의 섬이 되어갔다. 조선의 국력이 쇠약해짐을 틈탄 이들은 울릉도에 대한 조선 조정의 무관심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안용복에 의해 밝혀졌다. 안용복의 도일 사건은 숙종 조에 조일 외교 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조선 지배층의 울릉도에 대한 무관심을 각성하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지만 문학은 진실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데 있다. 오늘날 우리는 안용복으로부터 역사적인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왔던 불편부당한 시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영웅으로서의 대우를 문학으로써 갖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외침으로부터 백성의 안전을 구하고자 쇄환정책을 시행한 조선 초기 이후 점차 망각의 섬이 되었던 울릉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가 된 사실은 전적으로 안용복의 의로운 행동에 말미암은 바가 크다. 그럼에도 안용복은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았고 동시대 동류의 사람들로부터 빠르게 잊혀 갔다. 조선 조정이 수토 정책을 시행하면서 울릉도로부터 이익을 구했지만 이러한 이익은 백

성들과는 나누지 않았던 사실은 또한 안용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조정은 울릉도에서 나는 산물에 관심을 가졌지만 안용복을 복권하지는 않았다. 또한 울릉도 도해 금지를 어기며 울릉도를 오갔던 당대 민중들은 도해로 인한 처벌이 안용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용복 이야기가 민중들 사이에서 흥미롭게 전승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안용복이 민중 영웅으로 재인식되는 것은 안용복의 불우한 처지를 목격한 당대 비주류 지식인의 기록에서 비롯된다. 안용복과 시대를 함께한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언급한 재인식은 『춘관지』, 『화국지』 등의 후대 지식인의 글에서도 안용복이 재발견되고 재평가된다. 하지만 민중의식에서 떨어져 간 안용복은 국권 상실의 위기 속에서 재발견되어 다시 민중을 일깨우려 하였다. 안용복의 재등장은 위기의 시대에 위대한 민중 영웅의 출현을 소망하는 역사적 기대감과 관련이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자행된 일본의 도발로 인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지속되는 한 안용복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계속 이야기될 것이다.

안용복의 서사화는 곧 역사적 영웅의 삶으로 구체화된다. 역사적 탐구를 통해 안용복의 삶의 조각이 조금이나마 드러났지만 그가 걸어간 위대한 여정은 문학을 통해 재현되고 유포됨으로써 독자와 함께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이 재현 과정은 구전적 모티브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소명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안용복의 역사적 존재 의의는 일본의 해양 영토에 대한 침탈 의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영토 수호의 상징으로서 안용복은 꾸준히 재발견되고 이야기되는 데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동아일보』(1962.2.16~19)  
북한 『로동신문』(2005.3.3.~20)  
『승정원일기』(숙종조)  
『조선왕조실록』(선조조 및 숙종조)  
권오단, 『우리땅 독도를 지킨 안용복』, 산수야, 2010.  
\_\_\_\_\_, 『안용복』, 산수야, 2014.  
김래주, 『대조선인 안용복』 1-2, 늘푸른 소나무, 2005.  
김병우 편역, 『한국이 기억하는 안용복』(번역총서 4), 대구한의대학교 안용복연구  
소, 2015.  
김하기, 『독도전쟁』 1-2, 쌤앤파커스, 2015.  
김호동 외, 『희생과 고난으로 독도를 지킨 조선 백성 안용복』(학술총서 5), 대구한  
의대학교 안용복연구소, 2016.  
리성덕, 『울릉도』, 평양: 문예출판사, 1990.  
이산해, 「아계유고」, 『한산문헌총서』, 1981.  
이주홍, 『바다의 사자』, 갑인출판사, 1981.  
전민식, 『강치』, 한국경제신문, 2019.  
차상찬, 『해상의 쾌인 안용복』, 이프리북스, 2013.  
翠雲生, 「눈속에 파묻힌 雪禍의 鬱陵島秘史」, 『별건곤』 제70호, 1934.2.1.  
황인경, 『독도』, 북스타, 2015.

## 2. 논문 및 단행본

- 강상희, 「대중적 역사소설의 약사」, 『대중서사연구』7, 2002, pp.42-64.  
김기호, 「건국신화의 창조 원리」, 『한민족어문학』39, 2001, pp.217-239.  
김수희,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38,  
2011, pp.197-229.  
권오엽, 「안용복의 호패」, 『일본문화학보』 64, 한국일본문화학회, 2015. pp.219~240.  
권혜경, 「서구 민담에서 동화로, 동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의 변용과정에 나타나는  
정치적 전유」, 『새한영어영문학』49, 새한영어영문학회, 2007, pp.1-27.  
김구중, 「현진건 고향의 배경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 한국문학과이론비

- 평학회, 1997, 8, pp.89-119.
- 김권동, 「문학 속에 나타난 상상의 공간」, 『동아인문학』37, 2016, pp.255-284.
- 김병민, 「신체호 문학 연구」, 『아침』, 1989.
- 김재국, 「애국계몽기의 역사소설 고찰」, 『대중서사연구』7, 대중서사학회, 2002, pp.65-91.
- 김현선, 「英雄이야기의 歷史的 認識 考察 - 民衆意識의 展開를 中心으로」, 『경기어문학』3, 경기대학인문대학국어문학회, 1982, pp.183-197.
- 김호동,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사람들」, 『대구한의대학교 안용복연구소 학술총서』 1, 지성인, 2012, pp.83-162.
- 남상권, 「북한 역사소설 <울릉도>의 안용복 재현 양상」, 『Journal of Korean Culture』3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7.5-44.
- 박지영, 「<죽도기사>를 통해 본 쓰시마의 안용복」, 『일본이 기억하는 조선인 안용복』, 대구한의대학교 안용복연구소 학술총서 4, 지성인, 2015, pp.44-71.
- 박태상, 『북한 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통일교육원, 2011.
- 방기혁·정영미, 『울릉도·독도 사수 실록』, 비봉출판사, 2007.
- 서영칠, 「영웅서사의 현대적 변용」, 『한국말글』34, 한국말글학회, 2017,12, pp.55-79.
- 유미림, 「한국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술과 그 계보에 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52, 동북아역사재단, 2016, pp.231-285.
- 조동일, 『민중 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 여영택, 『울릉도의 전설·민요』, 정음사, 1984.
- 장순순, 「17세기 후반 안용복의 피랍·도일 사건과 의미」, 『이사부와 동해』, 한국이사부학회, 2013, pp.161-196.
- 정훈식, 「조선 후기 일본론에서 대마도와 안용복」, 『역사와 경계』 89, 부산경남사학회, 2013, pp.149~175.
- 조희웅, 『설화학 강요』, 새문사, 1989.
- 진재교, 「원증거의 <안용복 전> 연구-‘안용복’을 기억하는 방식」, 『진단학보』108, 진단학회, 2009, pp.231-261.
- \_\_\_\_\_, 「조선 후기 문헌 기록으로 본 안용복의 기억과 변주」, 『한국한문학연구』 60, 2015. pp.274-301.
-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욱 역), 『역사소설론』, 기림신서27, 1987.

<Abstract>

## Oral Imagination about the Embodiment of Ahn Yong-bok

Nam, Sang-Kwon · Park, Young-Sik

In this study, the fact that Ahn Yong-bok's abduction into Japan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and his second stay in Japan contributed to imprinting Ulleungdo and Dokdo as our territory today is analyze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a cultural perspective. This fact that bold acts of Ahn Yong-bok, a commoner, became a mediator to awaken the importance of Ulleungdo and Dokdo while they had been left in negligence of the ruling class is examined with historical facts and literary imagination.

The cognizance of nobility of the Joseon Dynasty, found heroism in the trace of Ahn Yong-bok, a fisherman, proved and supported the performance and significance of Ahn Yong-bok.

However, it is explored why heroic acts of Ahn Yong-bok did not spread and transmit as a folklore despite the fact that he was considered a hero, in relation to the prosecution policy of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re-discovery of Ahn Yong-bok and dissemination of his works were started in the modern age and oral imagination played a role in finding him as a hero are explored from a literary perspective.

**Key words:** Ahn Yong-bok, Embodiment, Oral Imagination, Hero, Ulleungdo, Dokdo.

이 논문은 2019년 11월 2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독도교육을 위한 음악교과 활용

- 초등학교 6학년 8종 음악교과서 독도관련 노래와 국악곡을  
중심으로 -

박 정 련\*

### 〈목 차〉

1. 머리말
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내용
3. 초등학교 6학년 독도교육을 위한 독도노래 및 국악과의 연계성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범교과 주제로서 독도교육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를 극복해 보는 차원에서 독도교육과 음악교과와의 연계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초등음악교과서 내의 독도관련 노래와 국악곡을 중심으로 독도교육과의 연계가능성을 개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8종 음악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악곡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보았고, 있다면 그 악곡의 구체적 내용과 독도교육에 맞는 통합교육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독도교육의 내용요소에 맞는 키워드를 설정하여 음악교과서 내의 국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특히 8종의 음악교과서에서 국악과 관련하여 1회 정도는 독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보면서 학교현장에서 음악교과를 통한 독도교육의 연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진주교육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강사.

**주제어:** 2015년 개정교육과정, 독도교육, 독도통합교육, 독도노래, 독도국악교육, 독도 음악

## 1. 머리말

교육부에서는 ‘범교과 학습’을 “미래 사회 변화를 전망하여 국가 및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학습 내용이자, 여러 교과와 경계를 가로지르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주제”<sup>1)</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범교과 학습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기본사항에서 10개<sup>2)</sup>의 대주제로 범주화 되었는데, 이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39개<sup>3)</sup> 범교과 학습주제와 비교해보면 대단히 심플해 졌다고 볼 수 있다. 39개였던 범교과 학습주제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10개로 범주화된 배경에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부담 문제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는 어쩌면 학교현장에서 범교과 학습주제의 무게감과 가치가 사실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독도교육은 2009년과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범교과 학습의 대주제로 선정됨으로 인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

1) 교육부, 「2015개정교육과정총론해설」, 55쪽.

2) 범교과 학습주제 10개는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이다. 교육부, 「2015개정교육과정총론해설」, 55쪽.

3)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정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청렴·반부패교육, 물 보호교육, 지속가능 발전 교육, 양성평등교육, 장애인이해교육, 인권교육, 안전·재해대비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대비교육, 여가활용교육, 호국·보훈교육, 효도·경로·전통윤리교육, 아동·청소년 보호교육,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농업·농촌이해교육, 지적재산권교육, 미디어교육, 의사소통·토론중심교육, 논술교육, 한국문화사교육, 한자교육, 녹색교육, 독도교육 등.

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서도 지도해야 하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른 독도에 대한 직접적 내용은 초·중학교의 사회교과서, 고등학교의 지리와 역사, 기술·가정교과서에 보이며<sup>4)</sup> 그 내용이 확대된 것도 확인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교육은 범교과의 학습주제이므로 독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된 과목 이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과의 내용을 통해 독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곧 통합과 통섭의 커리큘럼으로 독도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논자는 독도교육관련 학술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희망하는 일관된 주장과 독도교육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수업시간 내에 각 교과의 내용을 통해 독도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곧 범교과 본연의 성격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독도교육이 다양한 교과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각 교과의 특수성과 독도교육의 통합적 학습내용이 전무하거나 또는 그 내용이 다양하지 않을뿐더러, 교사들의 독도교육 의지의 부족 등에서 문제와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논자는 범교과 주제로서 독도교육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해 보는 차원에서 독도교육과 음악교과와의 연계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초등음악교과서 내의 독도관련 노래와 국악곡을 중심으로 독도교육의 내용요소<sup>5)</sup>와의 연계가능성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8종 음악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악곡이 있

4) 고등학교의 지리와 역사, 기술·가정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만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5) “학생들로 하여금 국토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 「2015개정교육과정총론해설」, 61쪽.

는지 우선 검토해보고, 있다면 그 악곡의 구체적 내용과 독도교육의 내용요소에 맞는 적합한 통합교육으로의 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더불어 독도교육의 내용요소에 맞는 소주제를 설정하여 음악교과서 내의 국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검토해보는데, 앞서 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재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sup>6)</sup> 교과서만 국악과 관련하여 1회 정도 독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보겠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음악교과를 활용한 독도교육과의 연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내용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토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독도교육의 목적을 각 교과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음악교과와 독도교육과의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학습하는 사회교과서에서 독도교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에서 다루는 독도교육에 대한 중요 내용을 음악교과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독도교육에 대한 일관성을 지닐 수 있고, 또 집중과 반복학습을 통한 효과적인 독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독도교육은 사회과목에서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6) 예를 들어 8종의 음악교과서 중 2종의 음악교과서에 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재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6종의 교과서에서 국악과 독도교육을 연계해 보고자 한다.

(표 1) 2015년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과’의 내용<sup>7)</sup>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초등학교 5-6학년
정치·문화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나라는 남북통일과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 해소를 통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위한 노력</li> <li>• <u>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독도</u></li> </ul>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사회교과의 <정치·문화사> 영역에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에 놓여 있는 독도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교과학습내용으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의 ‘(1) 국토와 우리생활’,<sup>8)</sup>과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sup>9)</sup> 두 단원에 독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보인다.

우선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1) 국토와 우리 생활’ 단원은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국토관을 세우고 나아가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과 바람직한 국토 발전에 대한 관심, 이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되었다.<sup>10)</sup> 특히 (1)단원의 성취기준 해설 [6사01-01]에서는 “국토의 위치와 영역 특성을 탐색하도록 되어있고, 독도 관련 내용은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단원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sup>11)</sup>라고 기술하면서 (8) 단원에서 상세히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8) 단원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7)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12쪽.  
 8)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32-33쪽.  
 9)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55-57  
 10)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32쪽.  
 1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33쪽.

(인용 1)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sup>12)</sup>

[6사08-01] 독도를 지키려는 조상들의 노력을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독도의 위치 등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영토주권 의식을 기른다.

[6사08-02]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 본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단원은 크게 2개의 내용이 골격을 이룬다. 그것은 ‘독도교육’과 ‘남북통일교육’ 관련된 내용이다. 이 단원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을 기르며,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과 과제를 살펴봄, 지구촌의 다양한 갈등 사례와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의 과제를 탐색함으로써 통일 한국의 미래를 구상하고 지구촌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르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독도를 지키려는 그동안의 노력과 독도의 지리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과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모습을 살펴본다. 아울러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이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건설하기 위한 과제를 탐색한다.”<sup>13)</sup>는 내용이다.

특히 [6사08-01]에서 독도와 관련된 학습 요소는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특성, 독도를 지킨 조상들의 노력”<sup>14)</sup>을 아는 것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기준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영토주권 의식을 기르는 것”<sup>15)</sup>이다. 즉 “우

1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56-57쪽.

1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55쪽.

14)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56쪽.

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56쪽.

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과 독도를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영토주권 의식을 기르고, 이웃 나라의 역사 왜곡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sup>16)</sup>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다. 이 내용을 (표 2)로 정리해 보았다.

(표 2)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에서 독도교육의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학습요소	성취기준
√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특성 √ 독도를 지킨 조상들의 노력	√ 고유 영토인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 파악 √ 독도를 지키려는 조상들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 영토주권 의식을 기림 √ 이웃 나라의 역사 왜곡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기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독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 및 학습 방법으로는 ①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 관련 역사적 자료와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토 수호 의지와 영토주권 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주변국과 영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독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하여 아름답고 소중한 국토로서의 독도의 가치를 인식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③ 지리적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 속에서 독도의 의의를 넘어 현재에도 우리 영토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도록 한다.<sup>17)</sup>

더불어 독도교육에 대한 평가방법으로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지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논술형 평가를 실시한다. 또 독도의 아름다움과 독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독

16)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56쪽.

17)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56쪽.

도를 소개하는 글쓰기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sup>18)</sup> 그런데 평가방법에 대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논술형 평가 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역사적인 사실이나 지리적 특성 등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sup>19)</sup>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표 3)으로 정리해 보았다.

(표 3)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에서 독도교육의 학습방법 · 평가방법 · 유의사항

교수 및 학습방법	평가방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 영토인 독도 관련 역사적 자료,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li> <li>√ 국토 수호 의지와 영토주권 의식을 함양</li> <li>√ 주변국과 영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li> <li>√ 독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하여 아름답고 소중한 국토로서의 독도의 가치를 인식하게 지도함</li> <li>√ 지리적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함</li> <li>√ 현재에도 우리 영토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작성 (독도를 지키기 위한 조상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지리적 특성을 조사)</li> <li>√ 논술형 평가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li> <li>√ 독도소개 글쓰기 (독도의 아름다움, 독도의 역사를 중심으로)</li> </ul>	<p>논술형 평가 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역사적인 사실이나 지리적 특성 등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함.</p>

지금까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학습되어지는 독도교육에 대한 내용과 평가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해보았다. 긴 서술형으로 이루어진 독도교육 관련 모든 내용들을 (표 4)에서 알기 쉽게 키워드와 주제로 묶어 정리해 보았다.

18)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58쪽.  
 19)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58쪽.

(표 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 독도교육에 대한 키워드와 주제

독도교육 내용 키워드	주제
① 국토의 위치, 독도의 영역, 자연환경, 인문환경, 지리적 특성, 고유 영토, 역사적 특성, 역사적 자료, 독도의 아름다움	독도에 대한 이해
② 조상들의 노력, 역사적 사실, 독도를 지키려는 그동안의 노력	독도 수호에 대한 노력
③ 국토관,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바람직한 국토 발전과 관심, 실천하는 태도, 영토주권의식, 아름답고 소중한 독도의 가치 인식, 우리 영토로서의 위상, 역사 갈등 해소와 노력, 역사왜곡의 합리적 대처, 국토수호 의지, 능동적 대처	영토주권의식

(표 4)에서 독도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키워드로 정리하여 이를 다시 주제화 하여 분류해 보았다. 논자가 임의로 기재한 (표 4)에서의 ①은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하는 내용으로 독도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 독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역사적 특성이 해당되고, ②는 독도 수호에 대한 노력으로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의 독도수호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그 노력들을 말한다. ③은 과거를 넘어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영토의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사항을 교육내용으로 하는데, 독도의 가치를 인식하고 역사 갈등 상황 하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국토수호에 대한 의지와 능동적 실천을 다루고 있다.

논자가 정리한 (표 4)의 독도교육에 대한 주제와 키워드는 이후 음악교과서에 내재된 독도관련 노래나 국악곡과 연계하기 위해 활용할 것이다.

### 3. 초등학교 6학년 독도교육을 위한 독도노래 및 국악과의 연계성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5-6학년 8종 음악교과서는 금성출판사·동아출판·미래엔·비상·와이비엠·(주)천재교육·천재교과서·지학사에서 출간된 음악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들의 6학년 연간 음악수업내용에서 독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노래나 독도교육과 국악의 통합교육 활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 1)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래

우선 8종의 6학년 음악교과서 중에서 동아출판과 (주)천재교육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동아출판의 <독도는 우리 땅><sup>20)</sup>과 (주)천재교육의 <독도잡자리><sup>21)</sup>가 그 제재 곡인데, 이는 여타 6종의 교과서<sup>22)</sup>와는 달리 독도교육과 음악과의 통합교육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동아출판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는 “우리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음악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sup>23)</sup>으로 이 단원을 개관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을 제시하였다.

20) 석문주 외 5인, 『초등학교 음악 6학년』(서울: 동아출판(주), 2019), 26-27쪽.

21) 김애경 외 9인, 『초등학교 음악 6학년』(서울: (주)천재교육, 2019), 65-67쪽.

22) 다만 와이비엠 출판사의 5학년 음악교과서에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6학년에서 독도교육이 사회과목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6학년 음악교과서만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23) 석문주 외 5인, 『초등학교 음악 5-6학년 지도서』(서울: 동아출판(주), 2019), 307쪽 참조.

(자료 1) 동아출판의 초등학교 6학년 음악교과서 <독도는 우리 땅>의 악보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음악의 역할을 알 수 있다.

① 노랫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노래 불러 볼시다.

**독도는 우리 땅**  
 조갑 제복재 작곡, 박관호 편곡, 박관호 작사, 박관호 작곡  
 송풍도-동남쪽 뱀질파도이덕리 외포은-섬하나 새들의고향  
 그누가-이무리 자개새 땅이되고우겨도 죽도는우리-땅

② ‘독도의 날’ 행사의 의미를 조사하고 발표해 봅시다. (책도 읽어보기)  
 0279 독도http://doddo.mofa.go.kr

**평화 통일 뮤지컬**  
 김수영 작사·유영희 작곡  
 새 동 다 의 뮤지컬은 새로서로갈 은 밭  
 우리 갈 산 화 나로 이 어 주-기 보  
 당대적은해사의땅 - 해 나 의 민족 -  
 먼 마음- 한곳으로- 평화통일이우려 요 말 할 까

③ 통일과 관련된 노래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위 악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통해 독도가 지니는 현재적 의미와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교육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주권의식을 갖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독도는 우리 땅>을 통한 주요 학습내용은 ① “노랫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노래 부르기”와 ② “‘독도의 날’ 행사의 의미를 조사하고 발표하기”로 구성된다. 즉 노래를 부르는데 머무르지 않고 ‘독도의 날’ 행사의 의미를 조사하고 발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독도를 이해하기 위한 능동적 활동으로까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동아출판 6학년 음악교과지도서<sup>24)</sup>에는 ‘독도의 날’ 행사의 의미를 조

사하고 발표하기 위해 독도의 역사 및 중요성을 조사하고 발표하며, 독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발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백과사전, 독도의 동식물 관련 책, 독도 사진, 독도 누리집 등을 참고하며,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누리집(<http://dokdo.mafa.go.kr>)에서 독도와 관련된 우리정부의 입장과 지리적 및 역사적 근거, 독도 기본 정보<sup>25)</sup>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까지 이어진다. 더불어 선택학습으로 <독도는 우리 땅>을 주제로 다양한 표현하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5) <독도는 우리 땅>을 주제로 다양하게 표현하기<sup>26)</sup>

<p>1. 독도는 우리 땅 콜라주</p> <p>① 독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온다.</p> <p>② 8절(또는 4절) 도화지에 관련 자료를 붙인다.</p> <p>③ 작품을 완성하고 내용을 발표한다.</p> <p>2.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 몹</p> <p>① 누리망에서 독도와 관련된 플래시 몹을 검색하고 동영상 자료를 참고한다.</p> <p>② 친구들과 함께 플래시 몹을 기획하여 발표해 본다.</p>
---

동아출판 6학년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독도는 우리 땅>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독도교육의 중요내용을 함의한 제재곡을 선택함으로써 (표 4)에서 제시한 독도교육에 대한 주제, 즉 ‘독도에 대한 이해’, ‘독도수호에 대한 노력’, ‘영토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을 ‘노래 부르기’와 ‘독도의 날’ 관련 활동을 통해 표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학생들의 독도관련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과 다양한 활동이라는 행위 자체에도 의미가 있겠으나 6학년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독도교육의 중요

24) 석문주 외 5인, 『초등학교 음악 5-6학년 지도서』(서울: 동아출판(주), 2019), 307-3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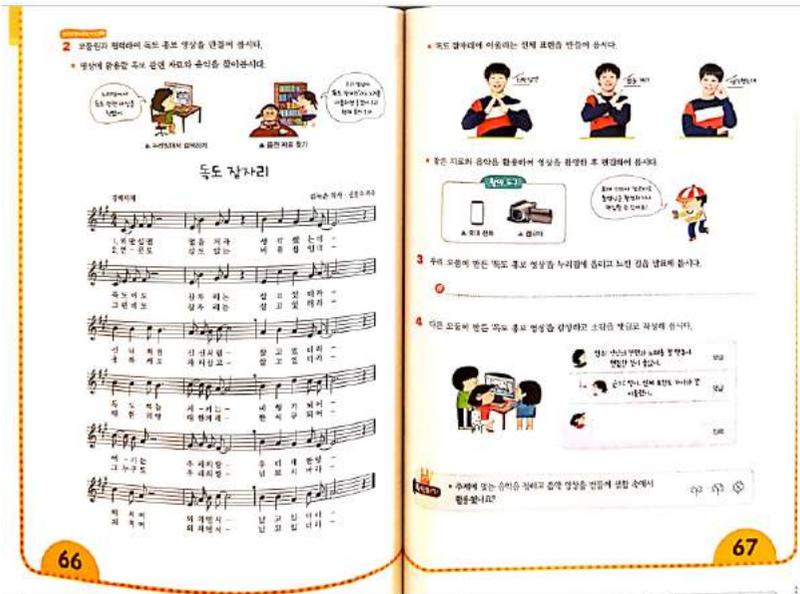
25) 석문주 외 5인, 『초등학교 음악 5-6학년 지도서』, 308쪽.

26) 석문주 외 5인, 『초등학교 음악 5-6학년 지도서』, 308쪽.

핵심을 교사가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여겨진다.

두 번째, 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래가 수록된 (주)천재교육의 6학년 음악교과서 <독도잠자리>는 총2차시로 구성되었는데, 1차시에는 음악을 활용하여 영상 만드는 과정을 알고 영상 제작 계획 세우기와, 2차시에는 <독도잠자리>를 활용하여 독도 홍보영상 만들기가 주요내용이다.

(자료 2) (주)천재교육의 초등학교 6학년 음악교과서 <독도잠자리> 의 내용



총 2차시 중 1차시 <도입>에 독도관련 노래를 들어본 경험을 이야기 하고, 독도관련 노래에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을 확인한다. 여기에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와 정당한 주장, 독도를 향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와 주장이 담겨 있음을 교육하게 된다. 나아가 독도관련 노래를 들어본 경험을 이야기하

면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땅이라는 인식을 가져 독도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sup>27)</sup>하게끔 한다. 이는 본시 수업을 들어가기 전 <도입>에서 교사에 의해 독도관련 내용이 간단히 설명되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동아출판의 노랫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노래 부르기와 ‘독도의 날’ 행사의 의미를 학생들이 스스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독도교육의 핵심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1차시 <도입>이후에는 모두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계획 세우기와 2차시에는 노래에 맞는 율동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되어진다.

다만 논자의 관점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독도교육 주요내용과 음악교과와의 통합교육을 위한 시각에서 이 제재곡을 바라보고 있기에, (주)천재교육 저자의 관점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천재교육 저자가 음악을 이용한 영상제작을 만드는 것을 이 단원에서 주요 학습내용으로 설정했다면 구지 <독도잠자리>라는 제재곡을 내세우지 않고 스토리가 있는 다른 곡을 제시했어도 가능한 학습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잠자리>를 제재곡으로 내세운 것은 독도를 지키는 잠자리처럼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교육하고 독도를 알리기 위한 관점에서 영상제작활동을 설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도교육에 대한 내용과 활동이 부실하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독도교육의 핵심인 ‘독도에 대한 이해’, ‘독도수호에 대한 노력’, ‘영토주권의식’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 본시 수업 전 <도입>에서 교사의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독도잠자리>를 통해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독도의 자연환경, 지리적 특성, 독도의 생태환경, 독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과 우선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27) 김애경 외 9인, 『초등학교 음악5-6학년 지도서』(서울: (주)천재교육, 2019), 365쪽.

나아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독도교육의 핵심내용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1차시 본시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독도교육과 국악의 통합교육을 위한 활용 가능성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 8종교과서 중 2종의 음악교과서에서 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래를 검토하고, 이것이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밝히는 독도교육의 핵심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초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 중 2종을 제외한 6종의 교과서에는 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래나 자료가 없으므로 독도교육과 음악교과의 통합교육을 위해 적절한 제재곡 선택이 필요하게 된다. 논자는 그 제재곡을 국악곡에서 찾아보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독도교육의 핵심내용을 국악곡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우선 금성출판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는 크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마음을 여는 음악, ② 세상을 만나는 음악, ③ 자연에 물드는 음악, ④ 희망을 나누는 음악이며, 국악곡과 주요 학습내용을 표로 나타내 보았다.

(표 6) 금성출판사 6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곡과 주요 학습내용

출판사	내용	단원	국악곡	주요내용
금성출판사	1. 마음을 여는 음악		진도아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김새 표현하기</li> <li>메기는 부분의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li> </ul>
			너영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릎장단으로 세마치장단 치며 노래하기</li> <li>신체 표현하기</li> </ul>
			북치고 장구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타악기 공연 감상</li> <li>주변의 소리나는 물건을 활용하여 북가락 연주하고 만들기</li> </ul>

	2. 세상을 만나는 음악	쾌지나칭칭 나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자진형식, 한배의 변화를 느끼며 노래하기</li> <li>• 받는 소리의 가락 바꾸어 부르기</li> </ul>
		풍구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도민요의 시김새에 유의하여 노래 부르기</li> <li>• 말붙임새에 유의하여 노랫말 만들기)</li> </ul>
		소금 운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금의 악기 구조 알아보기</li> <li>• 바른 제세와 운지법으로 소금 연주하기</li> </ul>
	3. 자연에 물드는 음악	통영개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진타령장단에 맞추어 노래부르기</li> <li>• 2부 합창으로 노래 부르기</li> </ul>
		놀부가 욕심낸 아름다운 화초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임새를 넣으며 화초장 타령 감상하기</li> <li>• 판소리 들으며 발림 하기</li> <li>• 판소리 요소에 대해 알아보기</li> </ul>
		풍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꼴 바꾸기</li> <li>• 소고춤 추가</li> </ul>
	4. 희망을 나누는 음악	하하 호호! 겨울철 민속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랫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노래부르기</li> <li>• 민속놀이를 주제로 한 노래 찾아 부르기</li> </ul>
		평시조 '태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조장단 익히기</li> <li>• 장단에 맞추어 초장 부르기</li> </ul>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성출판사 6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곡 중에서 <진도아리랑>, <너영나영>, <쾌지나칭칭나네>, <풍구타령>, <통영개타령>, <풍년가>, <평시조 '태산이'>는 각 지역의 민요 및 노래 부르기 위주이고, 여기에 장단과 시김새, 메기고 받기의 가창형식이 수업의 주요내용이다. 그리고 <북치고 장구치고>는 다양한 타악기 공연을 감상하고, 북가락을 연주하고 만들기를 위한 수업이며, <소금운지법>은 소금의 악기 구조와 연주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하하호호 겨울철 민속놀이>는 민속놀이와 관련 있는 노래와 놀이를 하고, <놀부가 욕심낸 아름다운 화

초장>은 감상과 판소리의 여러 요소를 학습하는 내용이다.

논자는 금성출판사의 11개 국악곡 중에서 독도교육과의 통합교육으로 적합한 제재곡으로 <놀부가 욕심낸 아름다운 화초장>을 선택해 보았다. 이 제재곡은 판소리 <흥보가> 중의 짧은 한 대목으로, 현대의 옷장과 같은 가구인 문판에 화초(花草)를 그려 장식한 화초장에 관한 익살스러운 노래이다. 주요 학습내용은 판소리의 구성요소인 추임새(흥을 돋우는 소리), 발림(동작), 아니리(말하기)를 경험하는 것이다. 특히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추임새, 발림을 할 때 제시된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학생들이 창작하게 하여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sup>28)</sup>라고 제시되어 있어 노래 자체에 치중되기 보다는 노래를 활용하여 판소리의 구성요소를 학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논자는 화초장을 ‘독도장’으로 바꾸어서 독도의 동도(東島)와 서도(西島)가 새겨진 그림을 장문으로 만들고, ‘독도장’을 짚어 보면서 판소리의 구성요소를 활용하는 수업활동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여기에 ‘독도에 대한 이해’, ‘독도 수호에 대한 노력’, ‘영토주권의식’이 담긴 노랫말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보도록 하고, 적절한 추임새와 발림, 아니리를 엮어서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이 제재곡은 ‘자연에 물드는 음악’ 단원에 속한 곡목이므로 우리나라의 자연, 좁게는 동해,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노랫말을 만들어 보거나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독도에 대한 이해’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미래엔 출판사, 천재교과서, 지학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는 공통적으로 <거문도 뱃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논자가 <거문도 뱃노래>를 독도교육과 연계하기 위한 제재곡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거문도와 울릉도·독도가 역사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거문도의

28) 김용희 외 7인, 『초등학교 음악 5-6지도서』(서울: (주)금성출판사, 2019), 315쪽.

어부들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배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미역과 약초를 채취하고, 선박을 건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독도에서 강치와 가제를 잡았다고 증언하거나, 일제강점기에도 거문도와 초도의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로 오고간 기록들이 신문기사 등에 오롯이 남아 있다.<sup>29)</sup> 심지어는 <거문도 뱃노래> 중 ‘술비소리’<sup>30)</sup>에는 거문도의 어부들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생활상에 큰 의미를 지닌 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거문도 뱃노래 전수회의 <거문도 뱃노래> 구성 소리들에서 그 전통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거문도 뱃노래>를 통하여 독도는 이미 1905년 이전부터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자국민에 의해 자연스럽게 왕래한 흔적을 드러내는 민요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교육현장에서 잘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미래엔 출판사, 천재교과서, 지학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거문도 뱃노래>의 학습현황을 살펴보고 하겠다.

29) 영남대독도연구소,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거문도·초도 사람들: 거문도·초도 사람들의 울릉도·독도 도항 관련 구술증언 자료집』(서울: 선인, 2019)에 자세히 나타난다.

30)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에이야아 술비야). 울릉도로 나는 간다 (에이야아 술비야). 고향산천 잘 있거라 (에이야아 술비야) ... 울릉도를 가서 보면 (에이야아 술비야). 좋은 나무 탐진 미역 (에이야아 술비야). 구석구석에 가득 찼네 (에이야아 술비야). 울고간다 울릉도야 (에이야아 술비야).

(자료 3) 미래엔 교과서의 <거문도 뱃노래>의 내용



미래엔 출판사의 <거문도 뱃노래>는 “일과 음악의 관계를 생각하고, 메기고 받으며 흥겹게 노래 부르면서 생활의 필요성으로부터 일노래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한다.”<sup>31)</sup>라고 개관하고 있다. 또 <거문도 뱃노래>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일대에서 멸치잡이를 할 때 부르는 일노래로, 1972년 전라남도 지방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술비소리’, ‘늦은늦소리’, ‘자진늦소리’, ‘올래소리’, ‘가래소리’, ‘썰소리’, ‘어영차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과서에는 ‘늦은늦소리’, 즉 ‘느린 노 젓는 소리’만 수록하고 있다”<sup>32)</sup>고 밝힌다. 주요 학습내용은 육자배기토리의 특징과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 노랫말과 장단에 어울리는 말 붙임새로 바꾸어 부르기이다. 더불어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우리 민요의 여러 일노래 중 바닷가의 어부들이 배

31) 장기범 외 8인, 『초등학교 음악5-6 지도서』(서울: (주)미래엔, 2019), 272쪽.

32) 장기범 외 8인, 『초등학교 음악5-6 지도서』, 272쪽.

에서 노래 저으며 부르는 노래에 대해 설명을 요하고 있다.

(자료 4) 천재교과서의 <거문도 뱃노래> 의 내용

천재교과서의 <거문도 뱃노래>의 주요 학습내용은 시김새를 살려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중중모리장단의 장단꼴을 장구로 연습하기, 노래 부르며 중중모리장단의 장단꼴을 장구로 연주하기,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 하며 노래 부르기<sup>33)</sup>이다. <거문도 뱃노래>에 대한 해설로는 전라남도 거문도 일대에서 멸치잡이를 할 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며 부르는 일노래이며,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는 굿거리장단으로 제시한 때도 있었지만 3소박 4박의 중중모리장단에 잘 맞고, 가창방식은 메기고 받는 형식, 본래는 자진모리장단의 ‘자진노젓는소리’가 이어나와서 경쾌하게 끝을 맺는 노래<sup>34)</sup>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거

33) 양종모 외 6인, 『초등학교 음악 5-6지도서』(서울: (주)천재교과서, 2019), 51쪽.

34) 양종모 외 6인, 『초등학교 음악 5-6지도서』, 374쪽.



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지켰으며, 현재도 거문도 뱃노래 전수관에서 지역의 음악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6학년 사회과의 일제 강점기 문화유산 보존 활동 수업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6학년 사회과 성취기준에 일제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들을 조사하는 활동이 나온다. 이들이 나라를 지키는 활동 중 대표적인 것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거문도 뱃노래> 역시 일제 강점기에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없어질 수 있었던 음악 문화유산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거문도 지역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거문도 뱃노래>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사례 중심으로 지도<sup>37)</sup>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엔 출판사, 천재교과서, 지학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 <거문도 뱃노래>의 주요 학습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미래엔, 천재교과서, 지학사의 <거문도 뱃노래> 주요학습내용

출판사	내용	제재곡	학습내용
미래엔		거문도 뱃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자배기토리의 특징과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li> <li>• 노랫말과 장단에 어울리는 말 붙임 새로 바꾸어 부르기</li> </ul>
천재교과서		거문도 뱃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김새를 살려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li> <li>• 중중모리장단의 장단꼴을 장구로 연습하기</li> <li>• 노래부르며 중중모리장단의 장단꼴을 장구로 연주하기</li> <li>•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 하며 노래 부르기</li> </ul>

37) 허정미 외 6인, 『초등학교 음악5-6학년 지도서』(서울: 지학사, 2019), 493쪽.

지학사	거문도 뱃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문도 뱃노래를 지켜 온 지역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보고, 노래 감상하기</li> <li>• 노래의 쓰임을 생각하며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li> <li>• 노 젓는 모습을 표현하며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 부르기</li> </ul>
-----	---------	--

미래엔 출판사, 천재교과서, 지학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 <거문도 뱃노래>에 대한 음악수업에서 지학사의 내용은 6학년 사회과의 ‘일제 강점기 문화유산 보존 활동’ 수업과 연계되어 있어 <거문도 뱃노래>가 일제 강점기에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없어질 수 있었던 음악 문화유산의 하나로 <거문도 뱃노래>를 지켜 온 지역민들의 노력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음악과 사회과의 통합교육을 위한 좋은 사례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나아가 <거문도 뱃노래>를 구성하는 ‘술비소리’에서 거문도와 독도, 울릉도와 의 관련성을 소개하고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자국민의 자유로운 왕래의 흔적이 노래로 남아있으며, 이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임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지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미래엔, 천재교과서에서도 <거문도 뱃노래>를 통해 공통적으로 독도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엔 교과서는 <거문도 뱃노래>를 통해 일과 음악의 관계, 생활의 필요성으로부터 일노래가 시작되었음을 개관하고 있으므로, 거문도 어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울릉도, 독도가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생활상이 <거문도 뱃노래>의 ‘술비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연결하여 설명한다면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한 이해나, 독도수호에 대한 선조들의 노력, 영토주권의식에 대한 독도교육의 핵심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천재교과서의 <거문도 뱃노래>의 구성은 미래엔, 지학사의 내용에 비

해 음악기능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는 편이지만 <거문도 뱃노래>를 위한 참고자료로 ‘술비소리’에 대한 소개가 있으므로 그 사설에 남겨있는 거문도와 독도·울릉도와의 관련성을 소개하고 독도교육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비상출판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국악 제재곡이 있다.

(표 8) 비상 출판사 6학년 음악교과서의 독도관련 노래 및 국악곡 주요 학습내용

내용 출판사	대단원	국악곡	주요내용
비상	1. 음악, 희망찬 첫걸음	널리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토리의 음악적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기</li> <li>굿거리장단의 장단꼬 바꾸어 장구로 연주하기</li> <li>국악 관악기 소리로 노랫말 바꾸기</li> <li>청무(淸舞)를 익히고 단소로 연주하기</li> </ul>
		동당기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자배기토리에 대해 알아보고, 노래 따라 부르기</li> <li>손으로 시김새 표현하며 받는소리 익히기</li> <li>중중모리장단에 맞추어 메기고 받으며 부르기</li> <li>메기는소리의 가락 바꾸어 부르기</li> </ul>
	2. 음악, 나누는 마음	도라지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마치장단에 맞추어 올명과 노랫말로 부르기</li> <li>소리의 어울림으로 느끼며 단소 2중주하기</li> <li>여러 가지 악기로 합주하기</li> </ul>
		“천년만세” 중 ‘양청도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을 감상하고, 곡의 분위기 이야기하기</li> <li>줄풍류에 사용되는 악기 알아보기</li> <li>거문고를 알아보고, 음색 구별하며 감상하기</li> <li>제제곡 일부를 올명으로 부르고,</li> </ul>

		노랫말 만들기
3. 음악, 향기로 운 자연	국악, 울림에 빛을 입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승되어온 국악의 모습 살펴보기</li> <li>다른 예술과 결합된 국악의 모습 살펴보기</li> <li>장단의 세를 표현하는 빛 음악 만들기</li> </ul>
	평시조 '태산이' 중 초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랫말 읽어보고, 시조의 형식 알아보기</li> <li>평시조의 5박 장단과 8박 장단 익히기</li> <li>손으로 가락선을 그리며 초장 따라 부르기</li> <li>초장을 짓고 가락에 맞추어 불러 보기</li> </ul>
	길 위에서 만난 국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답사 계획 세우고, 우리 지역의 음악과 관련된 인물 조사하기</li> <li>답사 결과 정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기</li> <li>답사한 후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 써 보기</li> </ul>
4. 음악, 함께하 는 세상	멀치 후리는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고, 일노래의 특징 이야기하기</li> <li>장단꼴 바꾸어 방구로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li> <li>이야기 만들어 노래 부르기</li> <li>노래에 어울리는 동작 만들어 표현하기</li> </ul>
	사진으로 만나는 음악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지역의 음악 축제 알아보기</li> <li>내가 참여하고 싶은 음악축제 조사하기</li> <li>음악 축제 홍보물 만들기</li> <li>친구들이 만든 홍보물 보고 느낀 점 발표하기</li> </ul>
5. 음악, 아름다 운 도전	만파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니리' 부분을 만들어 표현하기</li> <li>육자배기토리로 메기는 소리 만들어 노래 부르기</li> <li>악기와 주변 물체 이용하여 표현하기</li> <li>'만파식적'의 소리 상상하며 단소로 표현하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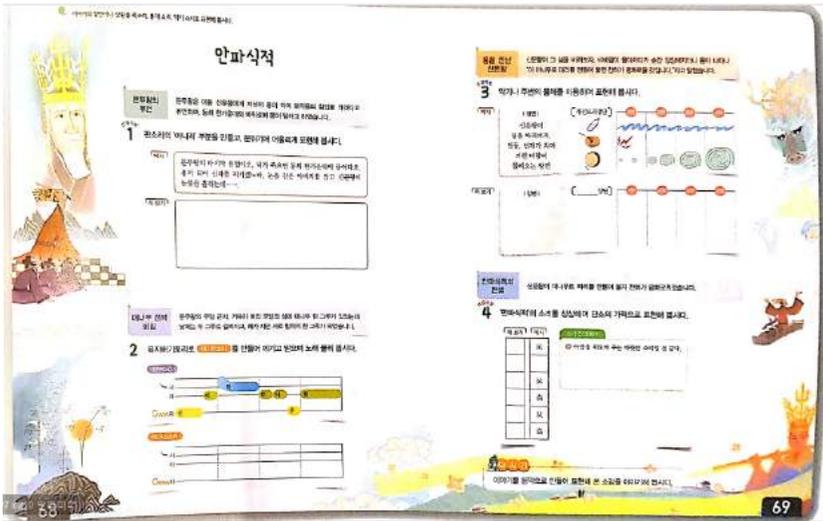
	6. 음악, 내일을 향한 성장	비단길 따라, 줄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해금과 비슷한 세계의 전통찰현악기 살펴보기</li> <li>• 우리나라의 비파와 비슷한 세계의 전통 발현악기 살펴보기</li> <li>• 해금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양 그려 넣기</li> </ul>
		금다래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랫말에 담긴 이야기를 생각하며 제재곡 듣기</li> <li>• 수심가토리에 대해 알아보고, 노래 부르기</li> <li>• 시김새를 익혀 노래 부르기</li> <li>• 수심가토리로 된 다른 민요 따라 부르기</li> </ul>
		가야금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배의 변화를 느끼며 가야금 산조 감상하기</li> <li>• 가야금 산조의 일부를 시김새를 살려 구음으로 따라 하기</li> <li>• 다양한 악기의 산조를 듣고, 느낌 이야기하기</li> </ul>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상출판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는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닐리리아>, <둥당기타령>, <도라지타령>, <양청도드리>, <평시조 ‘태산이’>, <멀치후리는 소리>, <금다래꽂>, <가야금산조>는 각 지역의 민요이거나, 기악곡명, 시조창으로서 구체적인 악곡을 이해하고 국악의 기능적 내용을 학습하는 부분이다. <국악, 울림에 빛을 입히다>는 퓨전국악, 크로스오버국악을 이해하는 내용이고, <사진으로 만나는 음악 축제>는 지역의 음악축제와 홍보방법, <비단길 따라, 줄 따라>는 국악기 해금과 같은 발현악기를 학습하는 내용이다.

논자는 비상출판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독도교육과의 통합교육을 위해 <만파식적>에 관한 내용을 선정해 보았다. <만파식적>은 뚜렷한 악곡을 노래하거나 이해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 그 장면이나 상황을 목소리, 물체의 소리, 악기의 소리를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을 판소리

의 아니리(사설형태), 민요 토리의 창법(육자배기토리)과 연주형태(메기고 받기), 소리 나는 물체나 악기로 표현해 보는 것이기에 다른 제재곡들에 비해 내용전개가 비교적 자유스럽다.

(자료 6) 비상출판사의 <만파식적>의 내용



비상출판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의 <만파식적>의 학습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만파식적의 전설을 4개의 스토리로 만들어, 그 스토리에 맞는 국악적 표현을 해보는 것인데 우선 스토리설정은 다음과 같다.

1장. <문무왕의 유언>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죽기 직전 아들 신민왕에게 자신이 죽어서 용이 되어 왜적들의 침범을 막겠다고 유언하며 동해 한가운데의 바위섬에 연못을 만들어 묻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 2장. <대나무 섬의 비밀>

어느 날 문무왕이 묻힌 수증 능 근처 거북이 머리 모양의 섬이 육지 쪽으로 떠오는데, 그 위의 대나무가 낮에는 갈라져 두 그루가 되고 밤에는 다시 합쳐져 한 그루가 되었습니다.

## 3장. <용을 만난 신문왕>

신문왕이 거북섬을 바라보자 대나무가 합쳐지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비바람이 잠잠해진 후 신문왕이 거북섬에 들어가니, 오색 구름 속에서 용이 나타나 “왕께서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4장. <만파식적의 탄생>

신문왕이 용의 말을 듣고 베어온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자 왜적이 물러나고, 질병이 사라졌으며, 가물 때는 비가오고 홍수가 날 때는 날이 개는 등 나라의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피리를 ‘만파식적’이라 부르며 국보로 삼았습니다.

4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각 장마다 적합한 판소리의 아니리를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국악의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육자배기토리창법으로 노래하며, 3장은 주변의 물체를 사용하여 국악의 장단과 효과음을 내고, 4장에서는 단소를 통해 가락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우선 <만파식적>을 독도교육과 관련하여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비슷한 주제를 공유해보는 것이다. 즉 나라를 지키고, 동해의 수호와 평화라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문무왕처럼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한 역사속의 인물, 동해를 수호하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 좁게는 독도수호에 애쓰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평화에 대한 내용 등을 스토리텔링화하여 모

특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도교육과 관련해서는 ‘신라장군 이사부 이야기’를 통해 독도가 신라의 영토로 시작된 것과, ‘조선 어부 안용복의 이야기’를 통해 울릉도·독도가 명확한 조선의 영토였음을 확인하고, 현재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의 역할 등<sup>38)</sup>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 국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와이비엠 출판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국악곡이 제시되어 있다.

(표 9) 와이비엠 출판사 6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곡 주요내용

내용 출판사	국악곡	주요내용
와이비엠	금다래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래말 이야기를 생각하며 감상하기</li> <li>가락선을 그리며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li> <li>‘가족 사랑’을 주제로 하여 노랫말 바꾸기</li> <li>내가 만든 노랫말로 친구들과 함께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li> </ul>
	쾌지나칭칭나 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li> <li>시김새를 살려 따라 부르기</li> <li>곳거리장단을 익혀 노래를 들으며 장구 연주하기</li> <li>긴자지 형식 알아보고 한배의 변화를 느끼기</li> </ul>
	리듬과 장단으로 놀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듬에 어울리는 노랫말을 만들어 표현하기</li> <li>주제에 어울리는 리듬 문답 놀이하기</li> <li>장단에 어울리는 말붙임새 만들기</li> <li>생활 속 이야기로 노랫말을 만들어 문답 놀이하기</li> </ul>

38) 구체적 스토리를 제시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위한 주제만 제시하였다. 각 학급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내용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도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랫말의 장면을 떠올리며 노래부르기</li> <li>• 굿거리장단의 다양한 장단고 연주하기</li> <li>• 장면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만들어 음악으로 표현하기</li> <li>• 모듬별로 발표하고 소감 이야기하기</li> </ul>
맑고 청아한 소금 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금의 구조와 운지법 알아보기</li> <li>• 바른 연주 자세로 소금 소리 내기</li> <li>• 정간보를 보며 소금 연주하기</li> <li>• 소금 연주곡 감상하기</li> </ul>
청성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을 들으며 가락의 느낌 표현하기</li> <li>• 대금과 단소의 음색 구별하기</li> </ul>
달빛가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랫말과 가락의 분위기를 느끼며 노래 부르기</li> <li>• 다양한 국악기의 구음을 알아보고, 일부 노랫말을 바꾸어 노래 부르기</li> <li>• 굿거리장단의 기본 춤 동작을 표현하기</li> <li>• 한배의 변화를 느끼며 산조 감상하기</li> </ul>
음악이 있는 그림 '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홍도의 '무동'을 보고 연주자들의 모습 이야기 하기</li> <li>• 삼현육각 편성 이해하기</li> <li>• 삼현육각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감상하고, 소리 탐색하기</li> <li>• 창작국악 동요 '싸름'을 감상하며 자진모리장단을 연주하기</li> </ul>
풍구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심가토리의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li> <li>• 자진모리장단의 세를 살려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li> <li>• 우리 지역에 전해오는 일노래를 찾아 발표하기</li> </ul>
수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을 듣고 국악 관악기의 음색을 구별하기</li> <li>• 음악에 나오는 악기의 특징과 쓰임 이해하기</li> </ul>
우리나라의 음악문화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유산 알아보기</li> <li>•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아리랑' 감상하기</li> <li>• 우리지역에 전해오는 음악문화유산을 조사하여 발표하기</li> <li>• 음악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하기</li> </ul>

	<p>평시조 '동창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시조 '동창이'를 김성혁, 특장 얼업허가</li> <li>• 평시조의 구성음을 알고, 초장을 듣고 따라 부르기</li> <li>• 평시조 '동창이'를 들으며 무릎장단 치기</li> <li>• 생활속의 이야기로 시조시를 지어 초장을 노래 부르기</li> </ul>
--	------------------	--

와이비엠 출판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국악제재곡은 대부분 국악곡, 국악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유산> 부분은 학습내용이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유산을 알아보기',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아리랑> 감상하기', '우리지역에 전해오는 음악문화유산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음악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하기'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제재곡들에 비해 주제가 다양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전개가 가능하다.

(자료 7) 와이비엠 출판사의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유산>에 관한 내용



(자료 7)에서도 확인되듯이 와이비엠의 6학년 음악교과서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유산>에는 <종묘제례악>, <강릉 단오제>, <판소리>, <진주검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양주 별산대놀이>, <예천 통명농요>, <거문도 뱃노래>가 대표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단원에서는 특히 음악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sup>39)</sup>을 가지도록 하기위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와이비엠 교과서의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유산>에서 독도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문도 뱃노래>를 통해서다. <거문도 뱃노래>가 1972년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제1호로 지정이 된 배경에는 그 이전부터 거문도 어부들이 여러 소리들로 이루어진 <거문도 뱃노래>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르고 계승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거문도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약초와 미역을 채취하고, 선박을 건조한 역사적 사료들과 신문기사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생생한 삶의 흔적이 <거문도 뱃노래> 중 ‘술비소리’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이런 노래들을 잊지 않고 지금도 거문도뱃노래 전수관에서 현재까지 전승하며 보호하고 있는 거문도지역민들의 음악문화유산이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로 우리 국민들의 오래된 활동의 흔적을 증명하는 것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음악문화유산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8종의 음악교과서에서 독도교육을 위한 음악교과와의 연계내용들을 살펴보았다. 8종 중 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래를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동아출판의 <독도는 우리 땅>과 (주)천재교육의 <독도잠자리>가 있었고, 나머지 6종 교과서에서는 독도교육과 국악의 통합교육을 위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개진해 보았다. 금성출판사에서는

39) 홍종건 외 9인, 『초등학교 음악5-6 지도서』(서울: (주)와이비엠, 2019), 417쪽.

국악곡 <놀부가 욕심낸 아름다운 화초장>을 통해 접근해 보았고, 미래엔 출판사, 천재교과서, 지학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는 <거문도 뱃노래>를 통해, 비상출판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는 <만파식적>에 관한 내용, 와이비엠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유산>을 통해 독도교육과 연관시켜 보았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표 10) 8종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독도교육을 위한 제재곡 일람표

출판사	독도교육을 위한 제재곡
동아출판사	<독도는 우리땅>
(주)천재교육	<독도잠자리>
금성출판사	<놀부가 욕심낸 아름다운 화초장>
미래엔	<거문도 뱃노래>
천재교과서	<거문도 뱃노래>
지학사	<거문도 뱃노래>
비상	<만파식적>
와이비엠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유산>

#### 4. 맺음말

본자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범교과 주제로 선정된 독도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각 교과를 통해 개진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와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해 보는 차원에서 독도교육과 음악교과와의 연계성을 위해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도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의 (1) 국토와 우리생활,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두 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요내용은 ‘독도에 대한 이해’, ‘독도수호에 대한 노력’, ‘영토주권의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8종 음악교과서는 금성출판사·동아출판·미래엔·비상·와이비엠·(주)천재교육·천재교과서·지학사에서 출간되었다. 여기서 독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악곡이 있는지 검토해보았고, 있다면 그 악곡의 구체적 내용과 독도교육의 내용요소에 맞는 적합한 통합교육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재곡이 없는 교과서에서는 국악곡 한 곡을 선정하여 통합교육 활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8종 중 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래를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동아출판의 <독도는 우리 땅>과 (주)천재교육의 <독도잡자리>가 있었다. 동아출판의 <독도는 우리 땅>은 노래를 부르는데 머무르지 않고 ‘독도의 날’ 행사의 의미를 조사하고 발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독도를 이해하기 위한 능동적 활동으로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천재교육의 <독도잡자리>는 음악을 활용하여 영상 만드는 과정을 알고 영상 제작 계획 세우기와, <독도잡자리>를 활용하여 독도 홍보영상 만들기가 주요내용이었는데, 홍보영상 만들기에 치중되어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독도교육의 핵심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악곡이 없는 6종의 교과서는 국악곡을 통해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독도교육의 주요내용과 연관시켜 보았다. 금성출판사에서는 국악곡 <놀부가 욕심낸 아름다운 화초장>, 미래엔출판사, 천재교과서, 지학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는 <거문도 뱃노래>, 비상출판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는 <만파식적>, 와이비엠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유산>을 통해서다.

첫째, 금성출판사의 <놀부가 욕심낸 아름다운 화초장>은 노래 자체에 치중하기 보다는 노래를 활용하여 판소리의 구성요소를 학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므로 화초장을 ‘독도장’으로 바꾸어서 독도의 동도(東島)와 서도(西島)가 새겨진 그림을 장문으로 만들어 보고, ‘독도장’을 짚

어저 보면서 판소리의 구성요소를 활용하는 수업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이 제재곡은 ‘자연에 물드는 음악’ 단원에 속한 곡목이므로 우리나라의 자연, 좁게는 동해,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노랫말을 만들어 보거나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독도에 대한 이해’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미래엔 출판사·천재교과서·지학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는 공통적으로 <거문도 뱃노래>가 수록되어 있었다. <거문도 뱃노래>는 거문도와 울릉도·독도가 역사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된 것이다. 거문도의 어부들이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배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미역과 약초를 채취하고, 선박을 건조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독도에서 강치와 가제를 잡았다고 증언하거나, 일제강점기에도 거문도와 초도의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로 오고간 기록들이 신문 기사 등에 오롯이 남아있다. 심지어는 <거문도 뱃노래> 중 ‘술비소리’에서 거문도의 어부들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생활상에 큰 의미를 지닌 섬이었다는 노랫말이 남아있고, 현재에도 거문도 뱃노래 전수회의 <거문도 뱃노래> 구성 소리들에서 그 전통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학습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거문도 뱃노래>를 통하여 독도는 이미 1905년 이전부터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자국민에 의해 자연스럽게 왕래한 흔적을 드러내는 민요라는 것을 교육현장에서 잘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와이비엠 출판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우리나라의 음악문화유산>에서도 <거문도 뱃노래>가 수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비상출판사의 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만파식적>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 장면이나 상황을 목소리, 물체의 소리, 악기의 소리를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독도교육과 관련해서는 ‘신라 장군 이사부 이야기’를 통해 독도가 신라의 영토로 시작된 것과, ‘조선 어부 안용복의 이야기’를 통해 울릉도·독도가 명확한 조선의 영토였다

는 것과 현재 ‘독도경비대’ 등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 국악적 요소와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논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현장에서 범교과 주제인 독도 교육이 음악교과를 통해 실현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글을 개진한 것이다. 이 글에서 밝힌 제재곡들이 학교현장에서 연간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혹여 독도교육과의 연관성을 바라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마음을 선뜻 내지 못한 교사가 있다면 오직 몇 여분의 설명이면 충분한 내용이라 여겨진다. 이 글이 독도교육을 위해 충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할지라도 차후 음악교과와 독도교육과의 통합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단초로 여겨주길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 「2015개정교육과정총론해설」.
- 김애경 외 9인. 『초등학교 음악 6학년』(서울: (주)천재교육, 2019).
- 김용희 외 7인. 『초등학교 음악 5~6지도서』(서울: (주)금성출판사, 2019).
- 석문주 외 5인. 『초등학교 음악 6학년』(서울: 동아출판(주), 2019).
- 양종모 외 6인. 『초등학교 음악 5~6지도서』(서울: (주)천재교과서, 2019).
- 영남대독도연구소.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거문도·초도 사람들: 거문도·초도 사람들의 울릉도·독도 도항 관련 구술증언 자료집』(서울: 선인, 2019).
- 장기범 외 8인. 『초등학교 음악5~6 지도서』(서울: (주)미래앤, 2019).
- 허정미 외 6인. 『초등학교 음악5~6학년 지도서』(서울: 지학사, 2019).
- 홍종건 외 9인. 『초등학교 음악5~6 지도서』(서울: (주)와이비엠, 2019).

<Abstract>

## **The Use of Music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Dokdo Education in 2015 Revised Curriculum**

-Focusing on Dokdo-related Songs and Korean Classical Music in 8  
Textbooks for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Park, Jeong-Ryen**

This paper aims to overcome the practical limitations and problems of Dokdo education as a subject of subject matter, and to link Dokdo education with music subjects, and more specifically to this article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linkage with. To this end, the eight music textbooks were reviewed for the 6th grade elementary school music to confirm the direct music contents related to Dokdo, and if so,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music and the direction of inclusive education suitable for Dokdo education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linkage and utilization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in music textbooks by setting keywords suitable for the content elements of Dokdo education.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help the connection of Dokdo education through the music subject at the school site by presenting the contents of Dokdo education about one or two times related to Korean music in eight music textbooks.

**Key words:** 2015 revised curriculum, Dokdo education, Dokdo integrated education, Dokdo song, Dokdo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Dokdo music.

이 논문은 2019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 현황과 문제점

심 정 보\*\*

### 〈목 차〉

1. 머리말
2.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 현황
3. 독도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4. 맺음말

### 〈국문초록〉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래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독도 도발은 끊이지 않았고,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됨에 따라 한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독도교육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그것은 첫째, 중학교 사회와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도 내용의 중복이 많고 계열성이 부족하다. 둘째, 이들 교과서의 본문 기술과 수록 지도에는 독도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이 정확하고 충실하도록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주제어:** 다케시마의 날, 독도, 사회과 교과서, 계열성, 독도교육

\* 서원대학교 교수 / ktxgut@naver.com

## 1. 머리말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집필자는 정치성을 띠는 독도 내용을 오랫동안 교과서에 반영해 왔다. 특히 독도교육이 한일 간에 정치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해방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전후 처리와 관련하여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한 것이 계기였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지리 영역의 교과서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심정보, 2019). 이후 20세기 후반까지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잡음은 있었지만, 독도문제는 크게 요동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과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 내용은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시마네현이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2008년 7월에는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에 독도를 최초로 명기하면서 다시 한일 간에 독도 문제가 불어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독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대부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 독도교육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전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부는 독도를 범교과학습의 주제로 설정했으며, 초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지리, 역사, 기술·가정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독도교육의 내용을 확대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실천 중심의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다(심정보, 2018a). 그리고 교과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학, 지리학, 국제법, 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독도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최근에 독도 관련 고지도와 고문헌의 발굴 및 연구는 주목할 만하며, 그러한 성과가 초중등학교 사

화과 교과서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집필자들은 초중등학교 학교급별 독도교육의 체계성에 주목하지 않고, 철저한 검정 없이 발굴된 사료를 사회과 교과서에 소개함으로써 독도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혼란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하여 송호열(2016)은 독도교육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역량 부재를 지적하면서 서둘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서둘러 교과서를 집필함에 따라 교과서 내용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심정보(2018b)는 독도주권과 동해표기를 다룬 고등학교 검정 한국지리 교과서 3종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개발한 독도 부교재 고등학교 독도 바로알기를 대상으로 동해표기 내용을 고찰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세기에 들어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문부과 학성이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가르치도록 검정함에 따라 한국의 독도교육도 양적으로 팽창했다. 그러나 독도교육의 기초·기본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간행된 현재의 초등학교 사회 국정 교과서, 중학교 사회와 역사 검정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검정 교과서 등 총 29종의 교과서를 종적·수직적, 횡적·수평적으로 고찰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 현황

교육과정(curriculum)이란 국가나 지방 정부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

시한 공식적인 문서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집필되며, 국정 및 검정으로 발행된다. 사회과 교육과정과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초중등학교 독도교육의 특성을 학교급별, 과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과 교육과정의 독도교육 성격

2015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독도가 기술된 과목은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와 역사,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이다(<표 1>).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독도는 고학년 사회 과목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5학년 1학기 ‘국토의 위치와 영역’이라는 소주제에서는 독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국토의 위치와 영역 특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독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내용은 6학년 2학기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이라는 소주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소주제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역사적 자료와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을 기르도록 했다. 초등학교 사회과에 있어서 독도교육의 목적은 독도에 대한 지식·이해 중심의 내재적 목적과 독도수호 의식의 육성을 기대하는 외재적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는 지리 영역의 사회와 역사 과목에서 학습하도록 했다. 중학교 사회는 ‘세계 속의 우리나라’라는 소주제에서 영역으로서 독도가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설정했다. 교수 및 학습 방법은 지도에서 영역 확인 및 그려 보기, 고지도와 문헌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영역 관련 현장 견학이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교육부, 2015). 반면 역사는 근대와 현대 부분에서 이원적으로 다룬다. 근대는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표 1〉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독도교육의 특성

학교급	성취기준	
고등학교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토의 위치와 영토문제</b>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도 주권,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독도와 간도</b>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을 통해 증명하고,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의 문제점과 간도 협약의 부당성을 이해한다.</li> <li>· <b>현대 세계의 변화</b>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하여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li> </ul>
중학교	<p style="text-align: center;"><b>【사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세계 속의 우리나라</b> 우리나라의 영역을 지도에서 파악하고, 영역으로서 독도가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역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b>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이해하고,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했음을 파악한다.</li> <li>· <b>공존을 위한 노력</b>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 등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사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토의 위치와 영역</b>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토 사랑의 태도를 기른다.</li> <li>· <b>한반도의 미래와 통일</b> 독도를 지키려는 조상들의 노력을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독도의 위치 등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영토주권 의식을 기른다.</li> </ul>	

자료: 교육부(2015)에서 작성

에서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한 사실, 그리고 현대는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고 갈등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중학교 사회과의 독도교육은 초등학교에 비해 다루는 내용이 폭넓고, 현장에서의 영역 체험 활동과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회과 지리 영역, 역사 학습을 바탕으로 한국지리와 한국사 과목에서 다루도록 했다. 한국지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특성 및 의미를 이해하고, 유의미한 지리적·역사적 자료를 통해 독도 주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에 대해 학생 수준에서 활동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했다. 반면 한국사는 중학교 역사와 동일하게 근대와 현대 부분에서 독도를 교육하도록 했다. 근대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현대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로서 독도 영유권을 다루고, 일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 의식을 확립하도록 했다.

## 2)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사회는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중학교 사회는 세계 속의 우리나라, 역사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 공존을 위한 노력,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지리는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 한국사는 독도와 간도, 현대 세계의 파악에서 다루도록 했다. 학교 급별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서는 한국 지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영해,

영토의 4극 찾기를 통해 독도를 처음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리고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를 지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라는 물음에 우리 땅 독도를 알아봅시다.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탐구활동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는 댓글 쓰기 등에서 독도 관련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표 2>).

이처럼 현재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양한 시각 자료와 활동 등을 통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독도교육은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 이후 문교부가 1955에 간행한 국민학교 3학년 2학기 사회생활 교과서에서 독도를 다룬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초등학교 독도교육은 매우 낮은 감이 있다. 한국인에게 독도는 국가적·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과 비교하면, 교육부가 독도 내용을 초등학교 6학년에 지정하여 아동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감금하고 있다. 향후 초등학교 중학년에서도 아동들이 독도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표 2>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 내용 개요**

교과서	학습 요소
사회 5-1	우리 국토의 위치로서 위도와 경도, 우리나라의 영해, 우리나라 영토 끝, 독도(화산활동, 천연기념물, 수산자원, 지하자원, 국토방위, 독도 사랑)
사회 6-2	동시 ‘독도에 가 봐’를 비롯하여 강치 이야기,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를 살펴보기, 독도의 옛 이름, 옛 지도로 팔도총도(1531)와 대일본전도(1877), 옛 기록으로 세종실록지리지(1454),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1900),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 677호(1946), 동도와 서도의 지형과 동식물,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저 지형도와 해양 생물, 안용복, 울릉도 도해 금지령(1696), 최종덕 씨, 독도 경비대원, 한국령 영토 표시, 반크, 활동(독도 홍보 포스터 그리기, 독도 캐릭터 만들기, 독도 홍보 동영상 만들기, 독도 단체 소개하기), 탐구 활동으로 태정관 지령

자료: 교육부(2019a·2019b)에서 작성

## (2) 중학교

중학교에서 독도는 사회와 역사 검정 교과서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진 다(<표 3>). 사회는 일반사회와 지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도는 지리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8종의 검정 사회 교과서에는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독도의 가치 등이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외에 독도를 지키거나 홍보와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다. 시각 자료는 고지도와 현대지도, 고문헌, 사진, 그림(만화)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조선의 팔도총도(1531)와 일본의 삼국접양지도(1785) 등의 고지도가 여러 교과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표 3> 중학교 사회와 역사 교과서의 독도 내용 개요

교과서	학습 요소
사회 2	독도의 위치, 독도의 구성, 독도의 기후, 독도의 명칭, 신라의 영토 편입, 영역적 가치,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지정학적, 환경·생태적, 경제적 가치, 해상 및 항공 교통의 주요 지점, 화산 지형, 독특한 동식물 다채로운 자연환경, 천연기념물, 천연 보호 구역, 한류와 난류 교차, 수산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양 심층수, 영토 주권 행사, 독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안용복, 독도 의용 수비대, 독도 경비대,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독도는 우리 땅 카드 뉴스 만들기, 독도 홍보 팸플릿 제작하기, 독도 체험관, 해양과학기지, 고유의 영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독도의 중요성
역사 2	독도의 위치, 화산섬, 신라 시대의 영토, 우산국, 삼국사기,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공도정책, 안용복, 에도 막부, 조선 후기 울릉도에 주민 이주, 대한 제국 관할, 대한 제국의 칙령 발표, 러·일 전쟁, 독도 망루 설치 계획, 나카이 요자부로, 시마네현 고시 및 편입, 태정관 지령, 박제순 지령, 카이로 선언, 전후 독도 반환, 연합국,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이승만 대통령,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국제 사법 재판소, 다케시마의 날, 학습지도요령, 일본의 교과서 검정 승인과 파장, 우리 고유 영토, 영토 주권 행사, 홍보 활동, 독도 신문 및 UCC 제작하기, 경비대원, 독도 의용 수비대

자료: 2019년 발행 사회와 역사 검정 교과서에서 작성

역사는 9종의 검정 교과서가 간행되었는데, 근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면서 삼국사기의 우산국, 조선 초기의 쇄환정책, 안용복, 전후 연합국과 독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1세기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교과서 문제, 독도 홍보 등 고대에서 현대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시각 자료는 고문헌과 고지도를 중심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기술하였다. 주요 자료는 사회 교과서와 동일하게 팔도총도와 삼국접양지도 등의 고지도, 그리고 태정관 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의 고문헌을 중점적으로 수록했다.

### (3)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한국지리와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진다(<표 4>). 고등학교 한국지리는 3종의 검정 교과서가 발행되었는데, 중학교 지리 영역의 사회 교과서와 유사하게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행정구역, 독도의 가치, 독도 홍보 활동 등이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외에 근대 전후의 역사적 내용도 담겨 있다. 시각 자료도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고지도와 현대지도, 고문헌, 사진, 그림(만화) 등의 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고지도는 팔도총도와 삼국접양지도가 여러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한국사는 7종의 검정 교과서가 간행되었는데,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유사하게 근대의 러일전쟁 전후 한국과 일본의 독도 정책과 인물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면서 삼국시대의 우산국, 전후의 연합국, 평화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리고 현대의 다케시마의 날,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명기, 우리의 영토 주권 행사와 홍보 활동 등을 다루었다. 시각 자료는 고지도와 현대지도, 고문헌을 통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설명하였다. 주요 자료는 중학교 사회와 역사,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와 동일하게 팔도

〈표 4〉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내용 개요

교과서	학습 요소
한국 지리	독도의 위치, 형성 시기, 화산섬, 기후, 조정수역, 행정구역, 거리, 부속도서, 거주와 숙소, 신라 지증왕, 조선 시대의 고문헌과 고지도, 영역적 가치(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해상 전진 기지), 경제적 가치(어족 자원, 메탄하이드레이트, 관광객), 생태적 가치(다양한 동식물, 천연 보호 구역), 독도 봉우리의 공식 명칭, 독도의 지리적 특징, 역사 속의 독도(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삼국점양지도), 조선시대, 안용복,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러일전쟁, 일본의 영토 편입, 광복과 독도 반환, 일본의 억지 주장, 독도를 지키고 알리기 위한 활동, 독도 홍보물과 영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응, 영토지킴이 독도, 독립성과 민족의 정체성
한국사	삼국 시대, 팔도총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가시일수, 울릉도의 부속도서, 쇄환정책, 안용복, 수토정책, 울릉도 도해 금지령, 주민 이주, 일본여지노정전도, 조선전도, 태정관 지령,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사다 하쿠보, 대한 제국, 고종, 울릉도 개척령, 김옥균, 러일 전쟁, 망루 설치, 해저 전선 부설, 나카이 요자부로, 시마네현 고시, 기모쓰키 가네유키, 내무성, 해군성, 무주지 선점, 울릉 군수, 심흥택, 중앙 정부 보고,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박제순 지령, 카이로 선언,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연합국 자료에 나타난 독도, 일본 법령에 나타난 독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승만, 평화선, 국제사법재판소, 독도 의용 수비대, 주민 등록, 독도 경비 대원, 다케시마의 날, 방위백서, 독도의 달, 학습지도요령 해설, 교과서 외곡, 관광선, 독도재단, 영토 주권 행사, 독도 경비대, 민간인 거주

자료: 2019년 발행 한국지리와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서 작성

총도와 삼국점양지도 등의 고지도, 그리고 태정관 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의 고문헌을 중점적으로 수록했다.

### 3. 독도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 그것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독도 내용의 계속성과 계열성, 독도 내용 기술의 오류 및 혼란, 본문에 수록된 지도의

오류 및 혼란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 1) 내용의 계속성과 계열성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초등은 국정, 그리고 중등은 검정으로 발행된다. 독도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 29종(초등 2종, 중학교 사회 8종+역사 9종, 고등학교 한국지리 3종+한국사 7종)이 있다. 이들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도는 주로 지리적, 역사적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 내용 및 시각 자료는 계속성과 계열성의 원리에 문제점이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서 계속성의 원리란 중요한 사실, 개념, 원리 등의 학습이 초중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다루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오는 독도 내용으로 동시 ‘독도에 가 봐’를 비롯하여 강치 이야기,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의 위치를 살펴보기, 독도의 옛 이름, 옛 지도로 팔도총도(1531)와 대일본전도(1877), 옛 기록으로 세종실록지리지(1454),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1900),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1946), 동도와 서도의 지형과 동식물,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저 지형도와 해양 생물, 안용복, 울릉도 도해 금지령(1696), 최종덕 씨, 독도 경비대원, 한국령 영토 표시, 반크, 활동(독도 홍보 포스터 그리기, 독도 캐릭터 만들기, 독도 홍보 동영상 만들기, 독도 단체 소개하기), 탐구 활동으로 태정관 지령 등의 내용이 중학교 사회와 역사,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성에 따른 계열성의 문제이다. 계열성이란 무엇을 어느 학년에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로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더해지는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학이나 역사

학이라는 모학문에서 핵심 개념이나 주제를 선택하여 그것의 복잡성과 깊이를 점증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즉 학년의 진전에 따라 단순하고 쉬운 내용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학교의 사회와 역사, 고등학교의 한국지리와 한국사에 나오는 독도 내용은 학교급별 종적·수직적 계열성이 미약하여 학생들은 쉽게 흥미를 잃을 수 있다. 이들은 내용 기술과 수록 지도를 학년별, 과목별로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먼저 내용 기술은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안용복, 태정관 지령, 대한제국 칙령, 러일전쟁 시마네현 고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승만의 평화선 등이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종적, 횡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예컨대 태정관 지령(기죽도약도)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회과 교과서에 나오지만, 계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표 5>).

한편 사회과 교과서에는 시각 자료로서 팔도총도, 삼국점양지도, 조선왕국전도, 동국대지도, 기죽도약도, 일본총도 등의 고지도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의 부속지도, 평화선 등의 현대 지도가 다수 수

<표 5> 태정관 지령(기죽도약도)의 내용 기술

학교급	교과서	내용 기술
초등학교	사회	“죽도(울릉도)와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교육부).
중학교	사회	“울릉도 외 1도(독도) 본국과 관계없음”이라고 밝힘(금성출판사).
	역사	울릉도 외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지학사).
고등학교	한국지리	죽도(울릉도)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천재교과서).
	한국사	울릉도 외 한 섬은 우리나라(일본)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금성출판사).

자료: 2019년 발행 교과서에서 작성

록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일본에서 제작된 삼국점양지도는 18종의 중학교 사회와 역사,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만, 역시 계열성을 확인하기 어렵다(<표 6>).

이와 같이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 기술과 수록 지도는 동일한 학습 요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지만,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지 않는 표면적 기술에 머무르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선행학습에 비해 고등학교의 후행학습 내용은 학습량이 보다 많아지고 그 수준도 높아야 하는데,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고 지루한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통합성의 원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횡적·수평적 원리로서 중학교의 사회와 역사, 고등학교의 한국지리와 한국사 사이에 독도 내용의 중복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따라서 각 영역의 고유한 내용이나 경험 및 능력들을 다른 영역의 그것들과 어떻게 상호 관련을 시킬 것인가를

<표 6> 삼국점양지도의 독도에 대한 내용 기술

학교급	교과서	내용 기술
중학교	사회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와 동일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선의 소유이다.”라고 적혀 있다(지학사).
	역사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 색인 노란색으로 채색하였다(비상교육).
고등학교	한국지리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그려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나타내었고, 섬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명기하였다(천재교과서).
	한국사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그려진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미래엔).

자료: 2019년 발행 교과서에서 작성

궁리해야 한다.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 내용의 계열성과 통합성의 부재는 학교급별, 과목별로 교과서 집필이 각각 달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2) 내용의 오류 및 혼란

### (1) 독도 내용 기술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독도 관련 내용 기술, 본문에 수록된 지도에서 독도 설명에 대한 사실 오류 및 혼란이 보인다. 먼저 본문에 기술된 독도 내용 오류를 지적하면, 안용복과 독도, 태정관 지령, 시마네현 고시, 울릉군수 심홍택, 강치 잡이, 독도의용수비대 등을 들 수 있다(<표 7>).

**<표 7>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내용 오류 및 혼란**

교과서	발행	주요 내용
초등 사회	교육부	일본 어부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강치를 잡았고, 결국 독도의 강치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p.92). 독도는 <b>동해 한가운데에</b> 자리잡고 있어...(p.93).
중학 사회	동아 출판	예전에는 독도 주변에 많은 강치(바다사자)가 살고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 때 무분별하게 남획하여 <b>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b> 강치를 볼 수 없게 되었어요 (p.195).
	금성 출판사	일본은 당시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과 같은 공식 기관에서조차 독도가 일본 땅이 <b>아니라고</b> 했다가 그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p.198).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독도를 시마네현 소관으로 영토 편입→관보나 <b>신문</b> 등 어디에도 실리지 않아 독도 편입을 비밀리에 진행했음을 알려줌(p.199).
	박영사	‘독도의용수비대’는 <b>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 30일</b> 국립 경찰이 수비 업무와 관련 장비를 맡을 때까지 독도를 수호하였다(p.197).

	미래엔	조선의 어부 안용복-왜 자꾸 <b>독도에서 고기잡이를</b> 하는 것이오(p.203). 울릉군수 심홍택-나는 일본 시마네현 관리들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b>편입하려는 것을</b>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했어요(p.203).
	비상교육	안용복-나는 조선 정부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울릉도와 <b>독도 주변에서</b> 고기잡이하는 일본 어민을 꾸짖다 일본으로 잡혀갔소(p.203).
중학 역사	미래엔	<b>동해 한가운데</b> 두 개의 섬을 그려 넣고...(p.101)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b>아니라고</b> 명시하였다(p.101).
	비상교육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2005),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한 <b>학습지도요령을 발간하는(2008)</b> 등 여전히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p.114).
	금성출판사	조선 숙종 때 <b>독도에 침입한 일본인을</b> 몰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어부 안용복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독도 수호 의지를 잘 보여 준다(p.42). 이들은 광복 이후에도 독도에 일본의 배가 자주 침입하자 이에 분개하여 독도로 건너가 <b>3년 8개월</b> 동안 독도를 자발적으로 지켰다(p.128).
	천재교과서	조선 태종 때에는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져 울릉도를 비우는 <b>공도(空島) 정책</b> 을 폈으나,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계속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였다(p.100).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에서도 <b>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를</b>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였다(p.101).
	교학사	1876년 일본 내무성은 전국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b>조선의 영토라고 결론지었다</b> (p.46).
고등 한국지리	-	-
고등 한국사	천재교육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시마네현에 보내, <b>일본 스스로 독도가 조선 영토라고 인정</b> 하였다(p.224).

자료: 2019년 간행 초중등학교 사회과 국정 및 검정 교과서에서 작성

17세기 후반에 안용복이 일본 어부들을 만나 국가 간에 영토문제를 야기한 장소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이다. 안용복이 울릉도에 불법 침입한 일본인을 호통치다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사회 미래엔 교과서 본문의 삽화에 기술된 “조선의 어부 안용복-왜 자꾸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오”, 비상교육 교과서에서 가상 인터뷰 “안용복-나는 조선 정부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고기잡이하는 일본 어민을 꾸짖다 일본으로 잡혀갔소”, 그리고 중학교 역사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본문에서 “조선 숙종 때 독도에 침입한 일본인을 몰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등의 기술은 재고해야 한다.

근대 일본의 태정관 지령 관련 내용은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한국이 주장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다룬다. 다수의 교과서 본문에는 기죽도(울릉도) 외 1도(독도)는 본방과 관련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학교 사회 금성출판사, 중학교 역사 미래엔, 교학사,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등이 발행한 교과서에서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다, 또는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다 등으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일본의 고문헌에서 태정관 지령처럼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내용은 있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다 또는 독도가 조선의 땅이다 라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과 관련하여 한국은 중앙의 관보가 아닌, 지방의 시마네현보에 고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모르도록 일방적이고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 사회 금성출판사 교과서에는 관보나 신문 등 어디에도 실리지 않아 독도 편입을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기술하였다. 일본이 독도 편입을 관보에는 게재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중앙 및 지방의 신문에는 작게 실렸으므로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예컨대 1905년 2월 24일 산인신문(山陰新聞)에는 오키의 신

도(新島)라는 기사에서 섬의 명칭과 소관, 그리고 현 지사가 고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3개월이 지난 1905년 6월 1일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에도 섬의 명칭과 소관 등에 관한 기사가 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이후 시마네현에서는 1906년 3월 선박에 관리를 태운 일행들이 독도 실지 조사를 하고, 울릉도를 방문하여 울도 군수 심홍택에게 독도 영토 편입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울도 군수 심홍택은 즉시 강원도 감찰사 이명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따라서 중학교 사회 미래엔 교과서의 만화 교재에 등장하는 “울릉군수 심홍택-나는 일본 시마네현 관리들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것을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했어요”라는 문장표현은 옳지 않다. 여기에서 ‘편입하려는’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 ‘편입한 것을’로 수정해야 한다.

20세기 초반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외할 수 없는 인물은 당시 강치 잡이에 눈을 뜬 어업가 나카이 요자부로이다. 독도에 수만 마리의 강치가 서식하다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학교 사회 동아출판 교과서에는 일본 어부들의 잔인하고 무분별한 남획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멸종되었다고 기술했다. 일본 어부들의 남획이 급감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멸종 시기는 교과서의 내용과 같이 20세기 중반 이후로 단정할 수 없다. 최근 필자가 울릉도 저동에서 평생 어업에 종사했던 고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독도에는 강치가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까지도 적지만 볼 수 있었고, 또 그들도 강치를 포획함에 따라 강치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전후 독도는 한국의 독립과 함께 한국령이 되었지만, 일본은 독도 침탈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독도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려 일본이 독도에 상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독도를 수호한 것은 울릉도 주민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이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시기와 관련하여 중학교 사회 박영사 교과서와 역사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각각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 30일, 3년 8개월

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 기간은 개인의 수기가 공식적 기록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2005년에 개정된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의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달성한 단체”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 독도관련 단체, 학계는 이의를 제기하여 논란을 초래했다. 연구책임자 이서행(2009)의 2009 치안정책연구소연구과제 I 연구보고서와 김윤배·김점구·한성민(2011)의 연구에 따르면,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기간은 1954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다. 사회과 교과서에서 논란이 되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기간은 올바르게 수정되어야 하며, 그 공적은 인정하여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역사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습관적으로 독도가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한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동해는 한반도, 러시아 연해주, 일본열도로 둘러싸인 녹해로 독도는 동해의 한가운데가 아닌 남서에 위치한다. 중학교 역사 천재교과서의 공도정책이라는 용어는 조선의 울릉도 주권의 포기과 관련이 있으므로 쇠퇴정책으로 바꾸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에서도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였다는 부분도 울릉도가 아닌 한반도가 옳은 표현이다. 그리고 중학교 역사 비상교육의 학습지도요령은 학습지도요령해설로 수정해야 한다.

## (2) 독도 관련 수록 지도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사진, 그림, 지도, 고문헌, 연표,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지도는 국가 간의 영역을 표시한 것으로 독도가 예부터 한국의 영토였다는 사

실을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본문에는 총 71개(초등학교 사회 2, 중학교 사회 20, 중학교 역사 23, 고등학교 한국지리 6, 고등학교 한국사 20)의 독도 관련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표 8>).

이들 사회과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 관련 지도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도의 간행 국가는 한국 18개(25.4%), 일본 34개(47.9%), 프랑스 4개(5.6), 러시아 1개(1.4%), 미국 14개(19.7%)로 일본 등 외국의 지도가 약 75%를 차지한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독도가 예부터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외국의 지도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시기별로는 전근대 41개(57.7%), 근대 8개(11.3%), 현대 초기 22개(31.0%)로 전근대에 간행된 고지도가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전후의 현대 초기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의 부속지도(1946)가 여러 교과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그 외에 일본영역도(1952),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선 지도(1952)가 소수 수록되어 있다.

<표 8>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 관련 지도

학교급	교과서	주요 지도
초등학교	사회	■ 팔도총도(1), ◆ 대일본전도(1)
중학교	사회	■ 팔도총도(4), 동국지도(2), 조선전도(1), ◆ 삼국점양지도(6), 대삼국전도(1), ● 조선왕국전도(1), 삼국총도(1), 조선동해안도(1), ★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부속지도(3)
	역사	■ 팔도총도(3), 해좌전도(1), ◆ 삼국점양지도(6), 조선전도(1), 기죽도약도(1), 일본영역도(3), ● 조선왕국전도(1), 중국전도(1), ★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부속지도(6)
고등학교	한국지리	■ 팔도총도(2), ◆ 삼국점양지도(3), 기죽도약도(1)
	한국사	■ 팔도총도(1), 평화선지도(3), ◆ 삼국점양지도(3),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 조선전도(1), 기죽도약도(1), 일본총도(2), 한국전도(1), 일본군사지도(1), 일본영역도(1), ★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부속지도(4), 맥아더라인(1)

주1: 괄호 안의 수는 교과서에서 등장 횟수

주2: 수록 지도의 ■는 한국, ◆는 일본, ●는 유럽, ★는 미국에서 간행

자료: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중등학교 검정 사회과 교과서에서 작성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지도는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점양지도(1785) 18개(25.4%),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의 부속지도(1946) 14개(19.7%),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1531) 11개(15.5%) 등이다. 삼국점양지도(1785)와 팔도총도(1531)는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다수 등장한다. 반면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의 부속지도(1946), 일본영역도(1952),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선 지도(1952)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중점적으로 실렸다.

한편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본문에 수록된 독도 관련 지도의 설명에 사실 오류 및 독도영유권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지도가 보인다. 이들 지도는 주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나며, 모두 근·현대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기술한 부분도 있다(<표 9>).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좋은책 신사고의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지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일본 육군참모국의 조선전도(1876)이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이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간주 또는 표시해 놓았다고 기술하는 오류를 범했다. 육군참모국의 조선전도(1876)에는 북위 38도 아래의 강원도 동쪽 바다에 다케시마(竹島), 그리고 그 동남에 마쓰시마(松島)가 표현되어 있다. 지도에서 두 섬의 위치와 형상으로 보아(<그림1>),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가 아닌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이며, 마쓰시마(松島)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이다. 따라서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조선전도(1876)에는 독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9> 중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 관련 지도와 설명의 오류

교과서	발행	지도	독도 관련 지도 설명의 오류
중학교 역사	좋은책 신사고	조선전도 (1876)	1876년 일본 육군참모국에서 발행한 지도이다. <b>울릉도와 독도를 지도 오른쪽 외곽선 근처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미루어</b> 두 섬을 조선 영토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p.41).
		기죽도약도 (1877)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라는 일본 최고 관청인 태정관의 지명문과 이에 포함된 지도로, 두 섬의 위치와 크기가 <b>확실하게</b>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두 섬이 일본의 영토가 <b>아님을</b>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p.41).
		일본영역도 (1951)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b>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근거하여</b>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이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였음을 잘 보여 준다(p.125).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조선전도 (1876)	1876년 일본 육군 참모국이 발행한 조선전도에는 <b>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b> 해 놓았다(p.269).
	금성출판사	한국전도 (1905)	러·일 전쟁 승전을 기념하여 일본 박문관에서 발행한 “일로전쟁실기”의 제76편 부록에 실린 한국 전도이다. 일본 내각 회의가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b>독도를 한국 전도에 포함</b> 하여 그렸다(p.420).
	동아출판	일본총도 (1877)	1887년 일본에서 발행한 것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사용되었다. 울릉도와 <b>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b> 되어 있다(p.322).
	리베르스쿨	일본총도 (1887)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한 근대 일본 교과서(p.256).

자료: 2019년 간행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서 작성



<그림 1> 조선전도(1876)의 울릉도와 독도  
자료: 정재정 등(2019)

둘째, 고등학교 동아출판과 리베르스쿨의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일본총도(1877)이다(<그림 2>). 이 지도는 근대 일본의 지리교과서로 오카무라 마쓰타로(岡村増太郎)의 신찬지지에 수록된 것이며, 지도에는 일본 열도 북서에 위치한 한반도, 만주, 중국 동부의 일부 지역이 그려져 있다. 한국의 교과서 집필자는 이 지도에서 한반도 동해안에 좌우로 빗금친 부분 내측에 울릉도와 독도가 두 점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일본총도(1877)에서 해안을 따라 가로로 빗금 표시한 것을 국경으로



<그림 2> 일본총도(1877)의 울릉도와 독도

자료: 왕현종 등(2019)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도에서 해안가나 바다에 빗금이나 채색을 표시한 것은 연안과의 거리 또는 수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도에서 국가 간의 영역 표시는 일반적으로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국가와 국가 간에 채색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셋째, 고등학교 금성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전도(1905)이다. 이 지도는 일본의 박문관이라는 출판사에서 러일전쟁의 승전을 기념하여 간행한 일로전쟁실기라는 잡지에 첨부된 것이다. 교과서 집필자는 “일본 내각 회의가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한국 전도에 포함하여 그렸다”고 기술하였다(<표 9>).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 이후에도 한국전도(1905)에 독도를 그려 넣었기 때문에 독도는 여전히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선

행 연구와 동일하다(밑줄은 필자).

일본의 박문관에서 「러일전쟁의 실기」를 출판하면서 그 부록에 수록된 것이다. 이전에는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죽도로, 독도를 송도로 표기하였는데 이 지도에서는 울릉도를 송도(松島)로, 독도를 죽도(竹島)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그러나 두 섬을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여 한국전도에 표시하였다(이상태, 2007).

博文館의 『日露戰爭實記』(1905.6)는 제 76편의 부록으로 「韓國全圖」(34.5×48.0cm)의 지도를 머리에 붙였는데, 이 지도에서는 右端 밖에 있는 독도를 무리하게 한국전도 안에 포함시켜서 그려넣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도의 명칭도 시마네 현보에서 고시한 ‘竹島’라고 표기하지 않고 이전대로 ‘리양코 岩’(Liancourt Rocks)이라고 표시하였다(신용하, 2018).

이와 같이 한국전도(1905)에 독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논리는 허술하다. 왜냐하면 한국전도(1905)에는 한국 이외에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일본의 쓰시마, 규슈지방이 지도에 표현되어 설득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필자가 이 잡지를 확인한 결과, 본문에는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독도수호 자료로서 일본의 독도관련 문헌(한국영토 표기)에서 일로전쟁실기의 한국전도(1905)를 고등학교 단계에서 다루도록 설정했다. 한국의 독도 연구자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독도수호 자료에 대한 해석과 선정을 잘못하여 이 지도는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된 것이다.



“일로전쟁실기”의 한국 전도 (1905) 러·일 전쟁 승전을 기념하여 일본 박문관에서 발행한 “일로전쟁실기”의 제76편 부록에 실린 한국 전도이다. 일본 내각 회의가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한국 전도에 포함하여 그렸다.

〈그림 3〉 한국전도(1905)의 울릉도와 독도

자료: 김종수 등(2019)

그 외에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린 좋은책신사고의 기축도약도(1877)와 일본영역도(1951)에 대한 설명에서 문장표현 및 역사적 사실 오류가 보인다. 기축도약도(1877)는 고지도이므로 두 섬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것이 ‘확실하게’ 그려져 있다고 설명한 점, 그리고 일본은 태정관 지령에서 두 섬이 일본의 영토와 ‘무관’하다고 했는데, 교과서 본문에서 두 섬이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기술한 것은 옳지 않다. 일본영역도(1951)의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작 경위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라고 설명한 부분도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일본영역도(1951)에서 독도를 한국

령으로 경계 표시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것이 아닌 당시 일본의 영토의식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 4. 맺음말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한일 간에 독도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분노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를 명기하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도록 검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은 초중등학교에서 독도교육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독도 이해의 기초·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한국의 독도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국토의 위치 학습에서 시작되어 6학년 2학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한국인에게 독도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과 비교하면, 교육부가 독도 내용을 초등학교 고학년에 지정하여 배우도록 한 것은 아동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감금하고 있다. 향후 초등학교 중학년에서도 아동들이 독도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에서는 사회와 역사,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지리와 한국사 교과서에서 독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내용 기술 및 수록 지도에 대한 독도 설명은 거의 유사하여 종적·수직적 원리로서 계열성이 미약하다. 후행학습이 선행학습보다 독도 내용의 질과 양이 달라야 하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걸쳐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신선함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중학교 사회와 역사, 고등

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내용도 중복이 많아 각 과목의 고유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과목 사이에 횡적·수평적 원리로서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고등학교의 독도 내용이 종적, 횡적으로 중복이 많으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문제점은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기술과 수록 지도의 독도에 대한 설명에 보이는 역사적 사실 오류 및 혼란이다. 초중등학교 국정 및 검정 사회과 교과서 총 29종을 분석한 결과, 17종(58.6%)의 교과서가 내용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등학교의 경우 총 16종의 오류 가운데 중학교 지리 영역의 사회가 5종(31.3%),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가 11종(68.7%)로 역사와 한국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과 교과서의 오류 및 혼란은 안용복과 독도, 태정관 지령, 시마네현 고시, 울릉군수 심홍택의 보고, 강치 잡이,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기간 등의 기술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 자의적인 해석 등이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현행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오류 및 혼란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충실한 독도교육을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교과서에 독도 내용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교과서 집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독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부정확한 역사적, 지리적 선행 연구를 의심없이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접촉하여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이나 언론 기사는 또 다른 사실 오류를 용이하게 양산하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과 교과서 검정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 내용체계』,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김윤배·김점구·한성민,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시기에 대한 재검토」, 『내일을 여는 역사』 제43호, 2011.  
송호열, 「한국 독도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새교육』 제739호, 2016.  
신용하, 「일제의 독도 해군 망루 설치와 독도 부근 러·일 대해전(I)」, 『독도연구』 제25호, 2018.  
심정보, 「초중등학교 독도교육실천연구회의 활동 분석」, 『독도연구』 제24호, 2018a.  
심정보,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동해 표기 내용의 개선 방향」, 『문화역사지리』 제30호 제3권, 2018b.  
심정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에 반영된 독도 인식」, 『문화역사지리』 제31호 제1권, 2019.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 경세원, 2017.  
이서행, 『2009 치안정책연구소연구과제I 연구보고서 대한민국 경찰의 독도경비사 연구』,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2009.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

- 교육부, 『초등학교 사회 5-1』, 지학사, 2019a.  
교육부, 『초등학교 사회 6-2』, 지학사, 2019b.  
구정화·한진수·정필운·설규주·장준현·정석민·박정애·엄정훈·허은경·김동환·김민수·옹진환, 『중학교 사회 2』, 천재교육, 2019.  
김덕수·이근명·서영희·엄정섭·윤선태·정기문·김민정·강진아·이은정·김병철·김효준·원유상·박상필·노현임, 『중학교 역사 2』, 천재교과서, 2019.  
김영순·박선미·황규덕·조수진·김부현·신현각·이은상·김세배·박찬정·이금란·김용걸·김웅·정지만·이수연, 『중학교 사회 2』, 동아출판, 2019.  
김중수·정승교·여호규·박종린·임화영·김용석·임명희·이종대,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2019.  
김진수·문대영·조성호·김숙·문승규·이강준·최영아·이희원·손영찬·오두환·김신정·이은주·박진만·양설·이상급, 『중학교 사회 2』, 미래엔, 2019.  
김형중·강중훈·노대환·허수·박진훈·김규대·김정희·조예진·김홍환·장문석·박범희·김정겸·김해용, 『중학교 역사 2』, 금성출판사, 2019.

- 도면화·이중서·이건홍·김향미·김동린·조한준·최태성·이희명,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9.
- 모경환·이윤호·강대현·김현경·이수화·황미영·조철기·승현아·김영일·서현정·윤민주·나유진, 『중학교 사회 2』, 금성출판사, 2019.
- 박형준·신정엽·이봉민·서현진·김현철·박서연·이정식·김봉수·조영매·이혜란·고인석·신정아·김찬미, 『중학교 사회 2』, 천재교과서, 2019.
- 박철용·김진수·조성호·강은희·이강준·김지현·백승진·최재희, 『고등학교 한국지리』, 미래엔, 2019.
- 신정엽·김명철·김봉식·김영화·양희경·유상철·이경희·최재영·홍석민, 『고등학교 한국지리』, 천재교과서, 2019.
- 양호환·최상훈·신성곤·김보람·신유아·김성자·심종석·김효정, 『중학교 역사 2』, 교학사, 2019.
- 왕현중·이인석·정행렬·박중현·박범희·이형우·임행만,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2019.
- 유성종·최병천·강성열·김덕일·우연섭·이우평·김시구·이훈정·엄주환·남길수·김차곤·이화영·이두현·강문철·윤정현·김진형·방완석, 『고등학교 한국지리』, 비상교육, 2019.
- 이문기·장동익·윤희만·김희곤·허종·강태원·유경아·이상분·정은주·김돈호·남정호·문경호·김영화·황대현·이성원·송영심·남한호·조한경·조영선·이은주, 『중학교 역사 2』, 동아출판, 2019.
- 이민부·조영달·김왕근·김기남·김도영·김태환·박세구·박찬선·박철용·이병인·정명섭·최종현, 『중학교 사회 2』, 박영사, 2019.
- 이진석·권동희·김경모·강정구·조지욱·나혜영·신승진·안효익·김경오·최정윤·이현진·박현진·이영경·김건태·최윤경, 『중학교 사회 2』, 지학사, 2019.
- 정선영·송양섭·이예선·이환병·이종대·한성욱·김지연·전병철·심원섭, 『중학교 역사 2』, 미래엔, 2019.
- 정재정·김태식·박근칠·최병택·강신태·구본형·장종근·박찬석·강성주·김종현·김지현, 『중학교 역사 2』, 지학사, 2019a.
- 정재정·김태식·강석화·최병택·장종근·박찬석·김태훈·박귀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19b.
- 조한욱·이병인·이중서·이건홍·안형주·최태성·최현희·신승원·권효신·안선미·이은석, 『중학교 역사 2』, 비상교육, 2019.
- 주진우·구난희·김인호·김성규·신주백·나인호·백유선·안효숙·박귀미·윤종배·박수

- 성·경규칠·오정현·윤세병, 『중학교 역사 2』, 천재교육, 2019a.
- 주진오·구난희·김인호·신주백·백유선·조동근·박수성·경규칠·오정현,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9b.
- 최성길·최원희·강창숙·박상준·최병천·조일현·권태덕·이수영·조철민·조성백·김상희·강봉균·정민정·김연주, 『중학교 사회 2』, 비상교육, 2019.
- 최준채·윤영호·안정희·남궁원·박찬영,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2019.
- 한철호·강승호·김나영·김정수·남종국·박진한·박효숙·방대광·송치중·왕홍식·전영준·조왕호, 『중학교 역사 2』, 좋은책 신사고, 2019a.
- 한철호·강승호·권나리·김기승·김인기·박지숙·임선일·조왕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9b.

<Abstract>

## **Current Status and Issues on Dokdo Contents in Social Studies Textbooks**

**Shim, Jeong-Bo**

Shimane Prefecture, Japan, enacted “Takeshima Day” in 2005, and the celebration has been held on February 22 every year. As a result, the provocation against Dokdo by Japan continued, and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ntensified. In particular, as Dokdo was described as Japanese territory in Japanese social studies textbook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backlash from Korea has intensified and Dokdo education was reinforced. However, Dokdo-related contents in Korean social studies textbook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have various problems. First, there are many overlaps and lack of sequence about Dokdo contents which are described i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and history textbooks and high school Korean geography and Korean history textbooks. Second, the descriptions and maps of these textbooks include inaccurate contents on Dokdo. Correction and revision are required to improve the contents of Dokdo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Key words:** Takeshima Day, Dokdo, social studies textbook, sequence, Dokdo education

이 논문은 2019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자료소개





##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 도항금지의 건 (朝鮮國蔚陵島二邦人渡航禁止ノ件)」

송 휘 영\*

### 〈목 차〉

1. 해제
2.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 도항금지의 건」의 한글 번역문
3. 원문 번각문

## 1. 해제

이 사료는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제14권에서 제16권까지에 수록된 「사항10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 도항금지의 건(朝鮮國蔚陵島二邦人渡航禁止ノ件)」(이하 ‘울릉도 도항금지의 건’)에 관한 기록이다. 1881년부터 1883년까지 조선의 항의에 의해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의 불법 벌목 등을 금지시키게 되고, 1883년 말까지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강제 귀국시킨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전에도 일본인의 울릉도도해와 울릉도도항금지는 두 번이나 있었다. 하나는 ①「겐로쿠 죽도도해금지령(元祿竹島渡海禁止令)」(1696.1.)이고, 다른 하나는 ②「덴포 죽도도해금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한일관계사, / hysong@ynu.ac.kr

령(天保竹島渡海禁止令)」(1837.2.)이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도 의도적으로 울릉도에 침입하여 불법행위를 일삼았고 조선정부의 항의로 결국 「울릉도도항금지령(蔚陵島渡航禁止令)」을 내리고 울릉도 체류 일본인을 철수시켰다.<sup>1)</sup> 「울릉도 도항금지령」은 메이지 초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그 배경, 이를 계기로 내려진 조선 정부의 「울릉도개척령」 발령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진출 야욕 속에서 「정한론」과 「죽도개척론」 등이 거론되었으며, 비워진 섬 울릉도는 그 전략적 교두보로서 주목을 받았다. 제3차에 걸친 ‘울릉도도항금지’의 외교적 과정은 오늘날 독도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

1881년 5월 울릉도 조사를 나간 수토관<sup>2)</sup>에게 일본인 벌목꾼 7명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발각되었다. 이 사실은 바로 강원감영에 알려져 강원도 관찰사 임한수가 통리기무아문에 보고하여 조정에 알렸다. 당시 조선조정의 대응은 신속했다. 1881년 6월(음5월) 통리기무아문은 예조판서 심순택(沈舜澤) 명의로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침입과 벌목행위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①제1차 항의 서한, <표1>을 참조). 이에 대한 외무경(外務卿)<sup>3)</sup> 대리 외무대보(外務大輔)<sup>4)</sup> 우에노 가게노리(上野景範)의 답서는 “우리 정부(明治政府)에 들어와서는 없었던 일이다. 조사를 하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1) 이것을 필자는 ‘제3차 울릉도도항금지령’이라 부르고자 한다. 겐로쿠(元祿) 시기의 불법 울릉도 도해는 어로 및 벌목 행위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덴포(天保) 시기의 울릉도 도해는 밀무역이었다. 그리고 메이지 초기의 울릉도 침입은 벌목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1881년 봄 울릉도에 수토관이 파견된 사실은 사료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원택(2018)은 그때의 수토관을 당시 삼척영장이었던 남준희(南俊熙)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원택, 「19세기 울릉도 수토제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이사부와 동해』 14호, 2018.12, 161쪽을 참조.

3) 지금의 외무성 대신(장관)에 해당함.

4) 지금의 외무성 차관에 해당함.

한편 통리기무아문은 울릉도를 비워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 부호군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사정과 정세를 조사하고 방수(防守)와 이민(移民)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5)</sup> 1882년 조선정부는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의 일기를 통하여 울릉도에 일본인들에 의한 불법 벌목과 출어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이규원은 일본인들의 불법 침입에 대하여 일본에 항의함과 동시에 조선정부에 조선인들을 울릉도에 거주시켜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고종은 기존의 1882년 수토정책을 폐지하고 1883년 울릉도 개척령을 내렸다. 조선정부는 수토정책을 폐지하고 울릉도에 조선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882년 7월(음6) 일본 내각에 울릉도에 일본인들의 도항을 금지토록 하는 항의서를 재차 보낸다(②제2차 항의 서한, <표1>을 참조). 항의서를 받은 일본 내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즉시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겠다고 조선 정부에 회답하였다.

<표1> 「제3차 울릉도도항금지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시 기	내 용	문서명	비 고
1881.5. (辛巳, 明治14, 高宗18)	수토관이 울릉도 수토를 하던 중, 불법으로 들어와 벌목하는 일본인 7명 적발. 강원감영을 통해 조정에 보고	외교문서 사항10 160(付屬甲)	
1881.6.	예조판서 심순택(沈舜澤)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울릉도 무단 침입 벌목에 항의 서한을 보냄	외교문서 사항10 160(付屬甲)	제1차 항의 서한
1881.8. 20	외무경대리 외무대보 우에노 가케노리(上野景範)가 예조판서 심순택(沈舜澤)에게 보낸 항의에 대한 답서	외교문서 사항10 160(付屬乙)	

5) 송휘영,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 『독도연구』제 19호, 2015.12, 84쪽을 참조.

1881.8. 20	기타자와(北澤正誠) 「竹島版圖所屬考」를 정리하여 외무성에 제출	외교문서 사항10 160	8.27일자 문서의 부속서
1881.8. 27.	조선국 울릉도에 우리 국민 입주.어 채한 건에 대해 상신한 건 (위의 사 실을 외무대보 우에노가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에게 보낸 문서)	외교문서 사항10 160	부속서: 1.예조판서 심순택(沈舜澤)이 일본 외무성에 보낸 항의 서한 2.우에노(上野) 외무대보(外務大 輔)의 답신
1881.10 .7.	조선국 울릉도의 건에 대해 조선정 부에 보내는 답신의 건 상신에 관한 건을 문의 (이노우에 외무경이 산조 (三條) 태정대신에게 보낸 문서)	외교문서 사항10 161	부속서: 1.조선에 보내는 서한(안) 2.기타자와 「죽도판도소속고」
1882.4. 29.-5.13	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에 파견되어 수토활동을 하고, 돌아와 울릉도 개 발을 상주함.	『檢察日記』	
1882.6.( 壬午, 明治15, 高宗19)	예조판서 이회정(李會正)이 이노우 에(井上) 외무경에 재차 도벌과 도항 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냄	외교문서 사항10 161	제2차 항의 서한
1882.12 .2	예조판서 이병문(李秉文)이 다케조 (竹添) 변리공사(辨理公使)에게 거듭 무단 벌목자를 처벌하도록 항의의 문서를 보냄	외교문서 사항10 159	제3차 항의 서한
1882.12 .16	방인의 울릉도 도항금지에 관해 상 신의 건 및 결제를 타진 (외무경 이 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에게 보낸 문서)	외교문서 사항10 158	부속서: 1. 1882.6. 예조판서 이회정의 서한[來翰] 2.유달안(諭達案)
1882.12 .19	방인의 울릉도 도항금지에 관한 건 (외무경 이노우에가 조선 주재 다케 조(竹添) 변리공사(辨理公使)에게 보 냄)	외교문서 사항10 159	부속서1: 한국 일본공사관 소에다(副田)의 답서 별지: 예조판서 이병문이 다케조에 공사에 보낸 서한
1883.1. 2(癸未,	일본 참사원(參事院)이 일본인의 「울릉도도항금지의 건」을 결정	參事院文書	

明治16, 高宗20)			
1883.1. 11	조선의 다케조에 공사가 “별목꾼을 해당 지방의 관리가 현지로 가서 조치하고 징벌하겠다”고 예조판서에게 답신한 것을 이노우에 외무경(外務卿)에 보고	외교문서 사항10 159	부속서
1883.2. 20	울릉도에 방인 도항금지 심사결의의 건의 및 결제를 상신(참사원 의장대리 마츠가타(松方) 참의원이 산조 태정대신 및 오오키(大木) 사법경(司法卿)에게 보낸 문서)	외교문서 사항10 125	
1883.3. 1	태정대신(太政大臣)이 내무경(內務卿)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에게 「울릉도도항금지」의 지령안과 내달안을 내림	指令文	
1883.3. 31	내무경 야마다(山田顯義)가 각 부현 장관(지사)에게 「울릉도도항금지」를 하급기관에 전하도록 내달함	內達文	
1883.5. 24	울릉도 방인 인양에 관한 건 (외무경대리 요시다(吉田) 외무대보(外務大輔)가 원산의 소에다(副田) 영사에게 보낸 문서)	외교문서 사항10 125	별지 甲: 내무성이 후쿠오카 현령에 보낸 달서(達書) 별지 乙: 후쿠오카 현령의 전신문
1883.9.	일본 외무성에 울릉도에 관리를 보내 불법 벌목꾼 254명을 체포하여 일본으로 데리고 나감		최종적으로는 1883년 연말이 되어서야 완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벌목은 계속되었다. 그해 12월 2일 예조판서 이병문(李秉文)이 다케조에(竹添) 변리공사(辦理公使)에게 거듭 울릉도도항금지의 문서를 보내어 무단 벌목꾼을 처벌하도록 항의하였다(③제3차 항의 서한, <표1>을 참조). 그리하여 이노우에는 조선 정부에 “울릉도에 일본인들의 도항을 금지하겠다”라는 답서를 보내고 이를 어기는 자는 엄하게 처벌하기로 하였다. 또한 울릉도가 예전부터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섬의 위치를 명시하여 일본인들이 도항하지 못하도록 일본의 각 부현에 전달하였다. 태정대신(太政大臣)이 내무

경(內務卿)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에게 보낸 지령문(指令文)과 내무경이 각 부현 장관(지사)에게 보낸 내달문(內達文)은 다음과 같다.

㉠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 도항금지의 건」 (1883.3.1.) 지령문 (태정관 ⇒내무경)

국금(國禁)을 위반하여 외국에 건너가 운운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 [正條]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밀무역[密商]을 행하는 자는 무역규칙에 경중의 죄를 범하는 자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것을 사법경(司法卿)이 각 재판소에 내훈(內訓)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반드시 지령을 내달해야 한다고 상신한다.

지령안(指令案)

상신한 취지를 접수할 것. 1883년(明治16) 3월 1일 (인)

내달안(內達案)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49분에 위치한 일본명칭 송도(松嶋) 일명 죽도(竹島), 조선명칭 울릉도(蔚陵島)의 건은 이전부터 우리 정부가 의정(議定)한 바도 있다. 일본 인민(人民)이 함부로 도항·상륙하지 않게 명심하여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장관(지사)에게 유달(諭達)해야 한다는 것을 담당 성(省)에서 지시해야 함을 내달한다.

1883년(明治16) 3월 1일 태정대신(太政大臣) 또는 사법경(司法卿)

내무경(內務卿)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 님<sup>6)</sup>

6) 「朝鮮國蔚陵島ニ邦人渡航禁止ノ件」 (1883.3.1.)指令文 (太政大臣⇒內務卿)

「國禁ヲ犯シ外國ニ赴キ云々シタル者ヲ刑スルノ正條ニ非サルニ似タリ然レハ密商ヲナス者ハ貿易規則ニ重輕罪ヲ犯ス者ハ我刑法ニ據リ處分可致旨司法卿ヨリ各裁判所ヘ內訓有之方妥當ナリト認視ス 右ニ由リ指令內達ニ可然哉上申候也

指令案

上申ノ趣聞届候事

明治十六年三月一日 (印)

內達案

內務卿

北緯三十七度三十分東經百三十度四十九分ニ位スル日本称松嶋一名竹島朝鮮

⑥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邦人) 도항금지의 건」(1883.3.31.)내달문(內達文)(내무경⇒각부현 지사)

북위 37도 30분, 서경 8도 57분에 위치한 일본명칭 송도(松島) 일명 죽도(竹島), 조선명칭 울릉도(蔚陵島)의 건은 이전부터 우리 정부가 의정(議定)한 바도 있다. 일본 인민(人民)이 함부로 도항하여 상륙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관하(管下)에 유달(諭達)해야 한다는 것을 내달한다.

1883년(明治16) 3월 31일 내무경(內務卿)  
각 부현(府縣) 장관(지사)에게 보내는 친진(親展)<sup>7)</sup>

우선, 1883년 1월 20일 울릉도도항금지의 문서를 확인한 일본 참사원(參事院)에서는 이를 통과시켜 법안으로 발의시켰다. 이를 ‘울릉도도항금지문’이라 한다. 이 문서의 주요 골자는 울릉도에 불법으로 들어가 매매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일한무역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처분하며, 불법으로 벌목과 어로 등을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일본 형법 제373조에 의거하여 처형한다는 것이다. 또한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를 근거로 제시하여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였다. 죽도판도소속고의 내용은 1596년에서 1614년 사이에 대마도주가 울릉도를 탈취하려 했던 사건과 1693년에서 1696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안용복의

---

称蔚陵島ノ義ハ從前彼我政府議定ノ義モ有之日本人民妄ニ渡航上陸不相成候條心得違ノ者無之様各地方長官ニ於テ諭達可致旨及其者ヨリ可相達此旨及内達候也

明治十六年三月一日 (印)

太政大臣 又 司法卿

內務卿 山田顯義 殿

7) 「朝鮮國蔚陵島二邦人渡航禁止ノ件」(1883.3.31.)內達文

「北緯三十七度三十分西經八度五十七分ニ位スル日本称松嶋一名竹島、朝鮮称蔚陵島ノ義ハ從前彼我政府議定ノ義モ有之日本人民妄ニ渡航上陸不相成候條心得違無之様其管下へ諭達可致此旨及内達候也

明治十六年三月三十一日 內務卿

各府縣長官宛 親展」

납치·도일 사건을 통해 울릉도 및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검토하여 작성된 것이다.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49분에 위치한 일본명칭 송도(松嶋) 일명 죽도(竹島), 조선명칭 울릉도(蔚陵島)의 건은 이전부터 우리 정부가 의정(議定)한 바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울릉도에 도항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이는 오래된 관습이며 일반 평민들은 울릉도가 정확히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처벌하지는 말아야한다는 관대한 것이었다.<sup>8)</sup>

1883년 3월 31일 일본 내무성은 태정대신에게 받은 「울릉도도항금지의 건」(문서)을 바탕으로 각 부현장관(府縣長官)에게 울릉도도항금지의 문서(훈령문)를 보내어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 자체를 철저히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와 체류는 그치지 않았다. 1883년 9월까지 일본 내무성은 관리를 보내 254명의 체류자를 체포하여 데리고 나갔다. 이들은 각기 지방재판소에 회부되었지만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모두 무죄로 석방이 되었다. 이것으로 일본인들의 울릉도 무단별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후에도 울릉도도항은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1890년대가 되면 도동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주자가 다시 늘어갈게 된다.

## 2.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 도항금지의 건」의 한글 번역문

### 사항10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 도항금지의 건

160 [메이지(明治)14년(1881)] 8월 27일 [경대리(卿代理) 우에노(上野) 외무대보(外務大輔)가 산조(三條) 태정대신(太政大臣)에

8) 이 처분은 울릉도로의 불법 도항·도벌의 주선자로 러시아공사(후일 해군경) 에노모토 다케야키(榎本武揚)가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침입시킨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함.

게 보냄

조선국 울릉도에 우리 국민이 들어가 어채(魚採)하는 건에 대한 상신(上申) 건

- 부속서 1. 신사(辛巳) 6월 심(沈)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보내온 서한
- 2. 8월 20일자 우에노(上野) 외무대보(外務大輔)의 답신

조선국 울릉도(蔚陵島)에 우리나라 국민이 들어가 어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별지(別紙) 갑호(甲號)와 같이 조선국 예조판서로부터 조회(照會)가 있었습니다. 이에 별지 을호(乙號)와 같이 회답을 하였으므로 왕복 서한의 사본을 첨부하여 상신(上申)합니다.

메이지(明治) 14년 8월 27일

외무경대리(外務卿代理)

외무대보(外務大輔) 우에노 가게노리(上野景範)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쵸 사네토미(三條實美) 전(殿)

(부속서1) 갑호(甲號)

대조선국 예조판서(禮曹判書) 심순택(沈舜澤)은 대일본국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각하에게 서찰을 보냅니다. 삼가 조회하는 바는, 우리나라 강원도 관찰사의 보고를 접하건대 울릉도의 수토관(搜討官)이 순검(巡檢)할 즈음 귀국 사람 7명이 그 섬에서 목재를 작별(斫伐)하여 쌓아 두고 곧 원산항(元山港)과 부산항(釜山港)으로 운송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울릉도는 삼한(三韓) 때부터 본국에 소속되어 있어 토지(土地)와 물산(物産)이 본국의 『여도(輿圖)』에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바닷길이 위험한 까닭으로 주민(居民)을 철수시키고 땅을 비워 봉식(封殖, 배양<培養>) 장양(長養, 크게 자라게 함)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순찰함을 해마다 상례로 삼았는데, 옛 번째(藩蔽, 울타리)를 중히 여기고 강계(疆界)를 튼튼하게 하는 도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백 89년 전인 계유(癸酉, 1693)년에 귀국인이 섬의 이름을 착인(錯認)한 일로 여러 차례 문서(文書)가 왕복하다가 마침내 귀정(歸正)이 되었고, 귀국에서는 어민에게 신칙하여 그 섬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영구히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문서가 아직도 장고(掌故)에 실려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국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작별한 것은 그 나라 경내에 들어가면 먼저 국금(國禁)부터 묻는다는 뜻에 흠결이 있는 일입니다. 또 교린(交隣)에는 성신(誠信)이 소중한 것인 만큼 양(梁)나라에서 초(楚)나라의 고미(菰米)에 물을 대주고 진(晉)나라에서 오(吳)나라의 사냥감을 돌려준 일은 어찌 오늘날 서로 권면(勸勉)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상과 같이 개진(開陳)하오니 바라건대 귀정부에서는 변금(邊禁)을 엄히 신칙하여 왕래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다시는 규정을 무시하고 잘못을 답습하지 못하게 하고 양국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여 영구히 침체됨이 없게 하기를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오로지 이로써 부치고 대지(臺社)를 겸하여 빕니다. 경구(敬具).

신사(辛巳, 고종18, 1881) 6월 일 예조판서(禮曹判書) 심순택(沈舜澤)

## (부속서 2) 을호(乙號)

무호(無號)

서한으로 아뢰입니다. 삼가 아뢰건대 귀국 울릉도에 우리나라 백성이 들어가 어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제(禁制)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도리에 어긋난 일입니다. 왕래 선박으로 하여금 앞으로 몽매한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의 진실됨을 한층 더 돈독히 할 것을 희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사년(辛巳年) 6월 일자로 귀국이 보내온 서한을 받고 그 취지를 자세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우리 정부에 들어와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

다. 곧바로 사실을 조사하여 요컨대 양국의 두터운 우호(厚好)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답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경구(敬具).

메이지(明治) 14년 8월 20일

일본(日本) 외무경대리(外務卿代理)

외무대보(外務大輔) 우에노 가게노리(上野景範)

조선(朝鮮) 예조판서(禮曹判書) 심순택(沈舜澤) 각하(閣下)

**(우(右)의 한역문(漢譯文))**

삼가 조복(照覆)한 바는 신사(辛巳, 1881) 6월 일의 귀함(貴函)을 접해보니 귀국의 울릉도에 우리 백성(民人)이 들어가서 어업과 벌채를 한 것은 남의 나라에 들어가면 맨 먼저 국금(國禁)부터 물어본다는 뜻에 흠결이 있으니 왕래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규칙을 모르고 과오를 답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양국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서의 사연은 모두 살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찍이 듣지 못한 일에 속하므로 즉시 사실을 조사하여 양국의 호의(好誼)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삼가 조복하고 아울러 대지(臺社)를 빕니다. 경구(敬具).

메이지(明治) 14년 8월 20일

일본 외무경대리(外務卿代理)

외무대보(外務大輔) 우에노 가게노리(上野景範)

조선 예조판서(禮曹判書) 심순택(沈舜澤) 각하

161. [메이지(明治) 14년(1881)]10월 7일 이노우에(井上) 외무경(外務卿) 이 산쥬(三條) 태정대신(太政大臣)에게 보냄

**조선국 울릉도 건에 관해 조선 정부에의 송한(送翰) 상신(上申) 건**  
부속서 1. 조선정부에 보내는 서한의 초안

2. 기타자와 마사노부(北澤正誠) 고(稿) 『죽도판도소속(「竹島版圖」所屬)』

조선국 울릉도에 우리 백성이 도항하여 어채(漁採)한다고 하기에, 별지(別紙) 갑호(甲號)와 같이 위 인원의 소환에 대한 조회(照會)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선 별지 을호(乙號)와 같이 회답서한을 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때 일단 상신(上申)했었습니다. 그런데 위 울릉도는 별책『죽도 판도 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에 확실하게 있듯이, 우리들이 이르는 바 죽도(竹島), 일명 송도(松島)로써 위 송도에는 작년부터 우리 인민이 도항하여 어채하는 자가 왕왕 있었습니다만, 차차 귀항할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통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선의 의심을 없애는 것이 오늘날 조선에 대한 우리들의 교제 방침상 필요한 절차이므로 새로 별지 병호(丙號)와 같이 통지할 것을 상신합니다.

메이지(明治) 14년 10월 7일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쥬 사네토미(三條實美) 전(展)

(주서<朱書>)

「상신한 대로

메이지 14년 11월 7일」 주(註) 생략(省略)

(부속서 1) 병호(丙號)

조선 정부에 보내는 서한 초안

조회하는 바는, 우리 백성이 귀국의 울릉도에 들어가서 목재를 작별(斫伐)하여 쌓아 두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조복(照覆)하였습니다. 다만, 처음 듣는 일이라서 한편으로는 서찰을 올리고 즉시 사핵(査覈)하여 보니 과연 그러한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철수하여 돌아갔

습니다. 다만 변민(邊民)이 법규에 어두워 자칫하면 잘못을 답습하는데 이 뒤로는 다시 금령을 신칙하여 양국의 신의(信義)을 돈독하게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조회하고 겸하여 대지(臺祉)를 빕니다. 경구(敬具).

메이지(明治) 14년 월 일

대일본국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대조선국 예조판서(禮曹判書) 심순택(沈舜澤) 각하

주(註): 위는 11월 중 소에다(副田) 속(屬)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회하였고, 다음과 같은 회답이 있었다.

“조회하는 바는, 본국 외무경의 훈령(訓令)을 받아보니 내용에, ‘우리 백성이 귀국의 울릉도에 들어가서 목재를 작벌(斫伐)하여 쌓아둔 사유를 알고 전에 이미 조복(照覆)을 하였으나, 다만 이는 처음 듣는 일 있어서 이제는 이미 철수하여 돌아갔습니다. 다만, 변민이 법규에 어두워 자칫하면 과오를 저지르나 이 뒤로는 다시 금령을 신칙하여 양국의 신의를 돈독하게 하겠습니다.’ 등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를 본관으로 하여금 조회하여 귀국에서 사조(查照)하게 하라 하여 이에 조회하고 아울러 대지(臺祉)를 빕니다. 경구(敬具). 14년 11월”

“조복하는 바는, 울릉도에서 작벌을 금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전(成典)인데 귀 정부에서 이와 같이 사핵하여 철수하여 돌아가게 하고 특별히 금령을 신칙하여 신의가 독실하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조복하고 대안(臺安)을 빕니다. 경구(敬具).

신사(辛巳) 12월 4일

경리사(經理事) 이재면(李載冕) (인)

외무2등속(外務二等屬) 소에다 세츠(副田節) 각하”

## 사항10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邦人) 도항금지의 건

158 12월 16일 [이노우에(井上) 외무경(外務卿)이 산조(三條) 태정대신(太政大臣)에게 보냄]

### 방인의 울릉도 도항금지에 관한 상신(上申)의 건 및 결제

부속서 1: 임오(壬午, 1882) 6월 예조판서 내한(來翰)

2: 유달안(諭達案)

공(公) 제272호

우리나라(일본) 사람이 조선국 소속 울릉도[우리나라 사람은 다케시마(竹島) 또는 마쓰시마(松島)라고 말함]에서 함부로 벌목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작년(客歲) 7월 중에 조선 정부로부터 조희가 있었습니다. 즉시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는데, 또한 이번 별지 갑호와 같이 조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앞으로 다시 도항자가 있을 경우 조선 정부에 대해 외교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금지령이 국민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조선정부에 대해서는 다케조에(竹添) 변리공사(辨理公使)를 내세워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내어, 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지침을 어기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을호(乙號) 초안으로써 내무경이 각 부현에 유달(諭達)하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이 유달의 건은 근래에 경성변란(京城變亂)<sup>9)</sup>으로 인해 조선 정부와 조약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어 현재 조선의 사정이 동경에 체재 중인데 그들에 대한 배려로 인한 것 같이 세상에 보이게 된다면 형편이 좋지 않으므로, 유달문 중에도 이 섬에 대해 조선정부와의 의정(議定)한 연월을 삽입해 둔다. 그리고 종래에 조선국에 속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오늘날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유달(諭達)의 뜻은 단지 이 섬의 위치를 명시하

9) 1882년 음력 8월에 일어난 임오군란(壬午軍亂)을 의미함.

여 도항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발령(發令)의 건도 조선 사절이 귀국한 뒤에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 건 말씀 드립니다.

메이지(明治) 15년 12월 16일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印)

태정대신 산쵸 사네토미(三條實美) 전

추후에 위의 유달(諭達)을 위반하여 이 섬에 들어가서 사적으로 매매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한무역규칙 제9칙에 의거하여 처분하고, 수목을 도벌(盜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일본) 형법 제 373조에 의거하여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사법경(司法卿)이 미리 각 재판소에 내훈(內訓)으로 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죽도판도고(竹島版圖考) 한 권을 참고로 제출함.

(이하 주서(朱書))

「상신의 취지를 허락할 것

메이지 16년 3월 1일(태정대신(太政大臣) 산쵸 사네토미(三條實美) 인)」

주: 죽도판도고(竹島版圖考) 1권(기타자와 마사노부(北澤正誠) 조사) 생략

(부속서1)

(갑호)

대조선국 예조판서 이회정(李會正) 정서(呈書)

대일본국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각하(閣下)

삼가 여기에 조회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울릉도는 양국의 경계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귀국 사람이 나무를 벌채하고 있으므로, 조

속히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의하여 귀 조정에서 허가를 금지하여 주  
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검찰 이규원(李奎遠)으로 하여금 섬에  
서 순찰하게 하여 벌채는 이전에는 없는 상태로 개조되었습니다.  
만약 귀 조정의 금지가 미치지 않거나 범법 행위가 없어지지 않  
으면 신의에 대한 의심이 커집니다. 서한으로 묻겠습니다. 바라는 바  
는 귀조정이 조사하여 법을 만들고 조용히 일러서 엄하게 막아주어  
서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삼가 인사드립니다.  
니다.

임오(1882)년 6월 일  
예조판서 이 회 정

**(부속서2)**

(을호)

유달안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49분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울릉도[우  
리나라 사람들은 죽도(竹島) 또는 송도(松島)라고 부름]는 조선국의 영  
역[版圖]라는 것은 겐로쿠 시기(元祿年間)에 이미 우리 정부와 조선국  
정부와의 사이에 의정한 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인민이 함부로 이 섬  
에 도항하는 자가 있다고 하므로 향후 지침을 어기지 않도록 관하의 인  
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그 취지를 전달합니다.

159 12월 19일 [이노우(井上)에 외무경이 조선국 주재 다케조에(竹添)  
변리공사에게 보냄]

**방인의 울릉도 도항금지에 관한 건**

부속서: 이노우에(井上) 외무경이 예조판서에게 보낸 답신안

부 기: 메이지(明治) 16년 1월 11일부로 다케조에(竹添) 공사에게 전달  
임오(壬午) 12월 2일부로 예조판서 답신

메이지 15년(1882) 12월 19일부

메이지 15년(1882) 12월 20일 전달 완료

공 제92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변리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전

조선국 울릉도에서의 우리나라 사람의 수목 벌채 금지와 관련한 조선 정부의 조회 건은 작년 11월 22일자 제 58호 공식 서한으로써 소에다(副田) 이등속(二等屬)에게 지시하였으며, 동관(同官)이 이미 조선 정부와 서신교환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차에 지난번 조선정부로부터 별지 갑호와 같이 저에게 조회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후 위반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우리 영사관에 압송하여 이에 상당하는 징벌을 내릴 것이며, 별지 을호 문안의 취지를 귀관으로부터 조선정부에 조회하도록 하십시오. 이건을 말씀 드립니다.

15년 12월 19일

(부전지)

「(저에게 조회하여 왔습니다)의 뒤를 부전지와 같이 정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대보(大輔)님이 예상하였지만, 경(卿)께서 원안을 검인하시고 즉 원안대로 시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전지 주서)

「하지만 차츰차츰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제 와서 답신(答翰)을 보낼 것까지도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 조선에서 거론(開談)할 경우에는 별지 문안의 취지로서 우선 구두(口上)로 대답해 두고자 합니다. 이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요시다(吉田)」

주: 부속서 갑호는 생략함. 전계문서 부속서 갑호 참조[參看].

### (부속서1)

별지 을호

삼가 조회 드립니다. 최근 본국 외무경의 훈시를 듣고 그에 준거하여 전 조선국 예조판서 이회정(李會正)이 임오(壬午, 1882)년 6월 조회하여 이르기를 ‘귀국 국민이 울릉도에 들어가 수목을 작별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당면 금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몽매한 변민(邊民)이 재차 전철을 밟아 이를 범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방의 관인(官人)이 현지에 가서 해결할 겁니다. 우리나라 영사가 추측하기를 양국 우호조약에 비추어 보아 또한 국법에 준하여 징벌하고 타일러 변리사로 하여금 그들을 조처하게 할 것입니다. 즉 귀정부에 순서에 따라 조회를 하겠습니다. 태지경구(台祉敬具)

(부전지 주서)

「발견하는 즉시 가장 가까운 우리 영사관에 인도해 주십시오. ‘행로에 있는 관아는 학대하지 않고 보살필 것.’ 이와 같이 한 구절을 삽입해 두면 상당한 은혜로 삼겠습니다.」

(부기)

메이지 16년 1월 11일부 다케조에 공사 보고(進達)

임오 12월 초 2일부 이 예조판서 답신(返翰)

제14호

작년 12월 19일부 공제 92호 귀 서신(貴信)으로써 조선국 울릉도에서 우리 인민의 수목작별의 건에 대해 당해 국 정부로부터 조회와 관련해서 하관(下官)이 회답해야 할 내용과 회답안을 첨부하여 보내주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는 보내주신 문안대로本月 9일부로서 예조판서 이병문 앞으로 조회를 하였던 바, 동 10일 동관(同官)으로부터 더욱이 별지사본과 같이 답신(照覆)이 있었기에 이번에 회답을 겸하여 보고합니다.

메이지 16년 1월 11일

재조선 변리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 (인)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전(展)

(별지) 삼가 답신(照覆)을 보시길 바랍니다. 귀국의 공문에서 우리나라 울릉도의 수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귀국인이 계속하여 별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며 해당지의 관리가 나가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귀국 영사관이 법에 따라 징벌하는 일은 삼가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전보의 문서를 보내므로 우리 정부는 이 답신으로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 번지경구(繁祉敬具)

임오(1882) 12월 초이튿날

예조판서 이 병 문

변리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각하(閣下)

### 사항10 조선국 울릉도에 방인(邦人) 도항금지의 건

125 2월 20일 [참사원 의장대리 마츠가타 참의원이 산조 태정대신, 오오키 사법경(大臣)에게 보냄]

### 울릉도에 방인 도항금지 심의 결의의 건 및 결제

상 제5호

별지 외무성 상신 조선국 부속 섬인 울릉도에 일본국민 도항금지(渡航禁止)를 심의 결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북위 37도 30분, 동경 30도 49분의 바다 가운데 위치한 하나의 도서 즉, 일본 명칭 다케시마(竹島) 혹은 마쓰시마(松島), 조선 명칭 울릉도(鬱陵島)의 건은 예로부터 어느 쪽의 영토(所領)로 확정하지 않았다고는 한다. 그러나 우리 게이쵸 연간(慶長年間)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조선 정부에 조회(照會)하여 소속론(所屬論)을 제출하였음에도 (일본의) 논지(論旨)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그 후 겐로쿠(元祿) 6년(1683)부터 동 12년(1689)에 이르기까지 7년간 수회에 걸친 (서한) 왕복을 거쳐 마침내 두 정부(政府)에서 그 소속론(所屬論)을 확정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책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에 기재된 것과 같다. 우리 인민이 이 섬에 도향한 일은 없었을 터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교활(狡黠)한 빈민(細民) 혹은 몰래 들어가서 어업을 하거나 혹은 벌목을 하는 자가 가끔 있었다고 추측되어진다. 이는 별지갑호(甲號)의 조회가 있었던 이유[所以]이다. 그렇기는 하나 그 지리적 위치(地位)를 보면 우리 오키국(隱岐國)과는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호칭하는 것은 흡사 우리의 지명과 다르지 않으므로 순전히 우리 영토(所領)라고 오인하는 경우 또한 깊이 책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무경(外務卿)이 신청하고 내무경(內務卿)으로부터 각 지방장관(地方長官)에게 고지(告諭)하여 인민이 주의사항을 듣지 않은 경우 타일러 훈계(告戒)하고자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다만 그 금령(禁令)을 어기고 밀상(密商)을 하는 자는 무역규칙(貿易規則) 제9칙에 의거하고, 수목을 도벌하는 자는 형법(刑法) 제373조에 비추어 처분하기를 바란다는 취지가 상신(上申) 추서(追書)에 있다. 위의 무역규칙에 의거하여 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형법 373조는 단지 죽목(竹木), 광물(鑛物), 강(江), 못(澤), 호수(湖), 바다(海)에서 다른 사람이 키우는 산물(産物)을 몰래 훔치는 것의 처벌(刑)에 그치고 있다. 우리 국금(國禁)을 어기고 외국으로 가서... 운운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조(正條)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밀상(密商)을 하는 자는 무역규칙에 중경죄(重輕罪)를 범하는 자는 우리 형법(刑法)에 의해 처분 가능하다는 것을 사법경(司法卿)으로부터 각 재판소에 내훈(內訓)을 보낸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우(右)에 의해 지령(指令) 내달안(內達案)은 아래와 같이 할 것인지 어떤지를 여쭙습니다.

메이지(明治) 16년(1883) 6월 20일

참사원 의장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대리 참의 마쓰가타 마사요시(松方正義)

사법경(司法卿) 오오키 교닌(大木喬任) 전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전

주 : 별지 외무성 상신은 메이지 15년 12월 16일부 이노우에 외무경 상신 제15권 165문서 참조

지령안

상신한 취지대로 허락할 것 메이지 16년 3월 1일

내달안

북위 37도 30분, 동경 30도 49분의 바다 가운데 위치한 일본 명칭 마쓰시마(松島), 혹은 일명 다케시마(竹島), 조선국 울릉도(鬱陵島)의 건은 예전부터 양국 정부의 의논도 있었다. 일본 인민이 함부로 도항하거나 상륙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어기는 자가 없도록 각 지방장관이 유달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각 성으로부터 시달하도록 하고 이 취지를 내달 하도록 할 것.

메이지 16년 3월 1일

태정대신(太政大臣)

내무경(內務卿)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 전

또

이번에 별지와 같이 내무경에게 시달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해당 섬에서 밀상을 하는 자와 일한무역규칙 제9칙을 어기고 중경죄를 범하는 자는 우리 형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는 뜻을 각 재판소장에게 내훈으로 알려줘야 할 것이다. 이 뜻을 내달한다.

메이지 16년 3월 1일

태정대신

사법경(司法卿) 오키 다카토(大木喬任) 전

따라서 위의 경도는 무엇을 근거로 조사한 것인지 이것도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하 주서)

「경도는 영국 그리니치를 기본으로 계산 한 것으로 경위도는 메이지 16년 아마기합의 승조원이 요시다 해군중위가 시행한 실측에 따른다.」

### 3. 원문 번각문

事項一〇 朝鮮國蔚陵島へ邦人渡航禁止ノ件

一六〇 八月二十七日[卿代理上野外務大輔ヨリ 三條太政大臣宛]  
朝鮮國蔚陵島へ我國民入往漁採候儀ニ付上申ノ件

附属書 一 辛巳六月沈禮曹判書來翰

二 八月二十日付上野外務大輔返翰

朝鮮國蔚陵島へ我國人民入往漁採候者有之ニ付別紙甲號ノ通同國禮曹判書ヨリ照會有之候ニ因リ別紙乙號ノ通り及回復候間則往復書翰寫相添及上申候也

明治十四年八月廿七日

外務卿代理 外務大輔 上 野 景 範

太政大臣 三 條 實 美 殿

(附属書一)甲號

大朝鮮國禮曹判書沈 舜澤 呈書

大日本國外務卿井上馨閣下 謹茲照會者 即接我江原道觀察使所報 則蔚陵島搜討官巡檢之際 有 貴國人士名 在其島伐木積置 將送于元山釜山港云 蓋此蔚陵島 粵自三韓 係在 本國土地物産 詳載於 本國輿圖 逮 我朝 以海路危險 撤其居 空其地 封殖長養 而 派官審檢 歲以爲常 重舊蔽固疆圉之道 不得不 然爾 前此一百八十九年癸酉 以 貴國人錯認島名事屢度往復 竟至歸正而自 貴國飭于海民 永不許入往漁採 其書尙載在掌故可 按也 令此 貴國人之懵然來研 有缺入境問禁之義 且交隣貴誠 信 梁灌楚菰 晋還吳獵 豈非今日之所相

勉者乎 茲庸開陳 望 貴政府嚴申邊禁 俾還往般船更舟得味例踵誤益  
篤 兩國之孚永久無替 深所幸也 崑此前付 順祈 臺社敬具

辛巳六月 日

禮曹判書 沈 舜 澤

(附屬書二) 乙號

無號

以書翰致啓上候陳者貴國蔚陵島ニ我國人民入往漁採候者有之境ニ入り  
禁ヲ問フノ義ヲ缺ク還往船舶ヲシテ更ニ味例誤ヲ踵ク事ヲ得ル勿ラシメ  
益兩國ノ孚ヲ篤クセン事ヲ欲セラル、旨辛巳六月 日貴函ヲ以テ御申越  
ノ趣委曲致了悉候然ルニ右ハ寔ニ我政府未曾聞ノ事ニ有之候得者即子事  
實ヲ調査シ要スルニ兩國ノ厚好ニ障碍無之様致シ可申候此段回答得貴意  
候敬具

明治十四年八月二十日

日本外務卿代理 外務大輔 上 野 景 範

朝 鮮 禮曹判書 沈 舜 澤 閣下

(右漢譯文)

謹茲照覆者 即接辛巳六月 日貴函 貴國蔚陵島有我民人入柱漁採  
者 缺入境問禁之義 俾還往般船 更勿得味例踵誤 益篤兩國之孚 書  
意具悉 此寔係我政府未曾聞之事 即當調查事實 要俾莫碍於兩國厚好  
也 謹茲照覆 竝頌 臺社 敬具

明治十四年八月廿日

日本外務卿代理 外務大輔 上 野 景 範

朝 鮮 禮曹判書 沈 舜 澤 閣下

朝鮮國蔚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ヘ送翰ノ儀上申ノ件

- 附属書 一 朝鮮政府ヘ送ル書翰案  
二 北澤正誠稿「竹島版圖」所屬

朝鮮國蔚陵島ヘ我人民ノ渡航漁採スル者有之由ニテ別紙申號ノ通右人數召還ノ儀照會有之當時事實不明了ニ付不取敢別紙乙號ノ通返簡差遣候儀ハ其節一應上申及ヒ置候事ニ有之候然ル處該島ノ儀ハ別冊竹島所屬考ニ明瞭ナルカ如ク我ノ所謂竹島一名松島ナルモノニシテ右松島ヘハ昨年來我人民ノ渡航シテ漁採スル者往々有之候得共追々歸航可致趣ニ相聞候果シテ然ラハ其旨及通知速ニ彼ノ猜疑ヲ消スルハ今日朝鮮ニ對スル我交際方略上必要ノ手續ニ付更ニ別紙丙號ノ通及通知候様致度此段上申候也

十四年十月七日

外務卿 井上馨

太政大臣 三條實美 殿

(朱書)

「上申ノ通

明治十四年十一月七日」

註 別紙甲乙號ハ前文附属書一、二同文

(附属書一) 丙號

朝鮮政府ヘ送ル書翰案

照會者。有我民人入 貴國蔚陵島。伐木積置者之由。前既經照覆。但以時係則聞。一面致函。隨即查覈。果有其事。而今既撤歸矣。但邊民味例。動輒踵誤。嗣後更當申禁。篤兩國之孚也。因此照會。順頌 臺祉敬具

明治十四年 月 日

大日本國

外務卿 井上馨

大朝鮮國 禮曹判書 沈 舜 澤 閣下

註 右ハ十一月中副田屬ヨリ左ノ如ク申入レラシ次ノ回答アリタリ「  
照會者 茲奉本國外務卿訓令 假有我民人入貴國蔚陵島 伐  
木積置者之由 前既經照覆 但以時係創聞一面致函 隨即查  
覈 果有其事 而今既徹歸矣 但邊民昧例 勤輒踵誤 嗣後  
更當申蒙 篤兩國之孚也 等語 飭令本官照會貴國查照因此  
照會 順頌臺祉敬具

十四年十一月

「照覆者蔚陵島禁斫係是我国成典而自貴政府又如是查覈俾即  
撤還另申後禁交孚彌篤處感斯尋籍此照覆順頌謬安敬具

辛巳十二月四日

經理事 李 載

免 印

外務二等屬 副 田 節 閣下

**事項一〇 朝鮮國蔚陵島ニ邦人渡航禁止ノ件**

一五八 十二月十六日 [井上外務卿ヨリ 三條太政大臣宛]

邦人ノ蔚陵島渡航禁止ニ関シ上申ノ件竝ニ決濟

附属書 一 壬午六月禮曹判書來翰

二 諭達案

公第二七二號

我邦人朝鮮國所屬蔚陵島 (我邦人竹島又ハ松島ト唱フ) ヘ渡航シ妄ニ  
伐木致候者有之趣客歲七月中朝鮮政府ヨリ照會有之候間即チ申禁可致旨  
相答置候處尙又今般別紙甲號之通り照會有之候就テハ今後尙渡航者有之  
候テハ彼政府ヘ對シ交際上不都合ノミナラス我政府ノ禁令人民ニ及ハサ

ルヲ示スノ嫌ナキ能ハス依テ朝鮮政府ヘハ竹添辨理公使ヲ以テ申禁可致  
旨返翰差遣ハシ可申候且此末心得違無之様乙號草案之意ヲ以テ内務卿ヨ  
リ各府縣ヘ諭達相成候様仕度候尤モ右諭達之義ハ近時京城變亂ニ付彼國  
政府ト条約交換有之際ニテ同國史節モ滯京中ノ事ニ候ヘハ其等ニ因緣候  
様ニ世上ヘ感觸ヲ来シ候テハ不都合ニ被存候間諭達文中ニモ該島ニ付朝  
鮮政府トノ議定セシ年月ヲ挿入致置從來朝鮮國ニ屬シ特ニ今日ニ定ムル  
モノニ非ラザルヲ引證シ諭達ノ意ハ單ニ該島ノ位置ヲ明示シ渡航ヲ禁ス  
ルニ止マルモノニ有之候右之次第ニ付御發令ノ義モ朝鮮使節歸國相成候  
上ニ有之候様仕度此段上申候也

明治十五年十二月十六日

外務卿 井上馨 (印)

太政大臣 三條實美殿

追テ右諭達ニ背キ該島ニ至リ私ニ賣買ヲ爲ス者有之時ハ日韓貿易規  
則第九則ニ據テ處分シ樹木ヲ盜伐スル者有之時ハ我刑法第三百七十  
三條ニ據テ處分スヘキモノト被存候間右之趣ハ豫メ司法卿ヨリ各裁  
判所ニ内訓有之候様 致度候

竹島版圖考壹册爲御參考差出候

(以下朱書)

「上申之趣聞届候事

明治十六年三月一日(太政大臣三條實美印)」

註 竹島版圖考一册(北澤正誠調)省略

(附屬書一)

(甲號)

大朝鮮國禮曹判書 李會正 呈書 大日本國外務卿井上馨閣下 謹茲照  
會者敝邦之蔚陵島 非間界也 頃因 貴國人斫樹伐木 早奉書契 籍蒙  
貴朝廷另許禁止 敝邦委遣檢察使李奎遠 周視島界歸 言 斫採仍前無

改. 豈 貴朝廷不及立禁而民猶冒犯否 疑深訝滋 耑函奉質 望  
貴朝廷照諒設法 婉諭嚴防 毋蹈前謬幸甚 敬問 台祉辰安 不宣

壬午年六月 日

禮曹判書 李 會正

(附屬書二)

(乙 號) 諭達案

北緯三十七度三十分東經百三十度四十九分ノ洋中ニ在ル蔚陵島 (我國人竹島又ハ松島ト唱フ) ハ朝鮮國ノ版圖タルハ元祿年中既ニ我政府ト朝鮮國政府トノ間ニ議定スル所ニ有之候處我國人民妄リニ該島ニ渡航スルモノ有之趣ニ付今後心得違無之様管下人民へ告諭可致此旨相達候事

一五九 十二月十九日 [井上外務卿ヨリ 朝鮮國駐劄竹添辦理公使宛]

邦人ノ蔚陵島渡航禁止ニ關スル件

附屬書 井上外務卿ヨリ禮曹判書へ答書案

附 記 明治十六年一月十一日付竹添公使進達

壬午十二月初二日付李禮曹判書返翰

明治十五年十二月十九日附

明治十五年十二月廿日達濟

公第九十二號

外務卿 井上馨

辦理公使 竹添進一郎 殿

朝鮮國鬱陵島於テ我人民樹木斫伐禁止之件ニ付該政府へ照會之義昨年十一月廿二日附第五拾八號公信ヲ以テ副田二等屬へ申入同官於テ既ニ該政府ト往復モ致候儀之處過般該政府ヨリ別紙甲號之通拙者へ照會有之候就テハ爾後犯者有之ニ於テハ就近我領事館へ押送之節相當之懲辦可致旨別紙乙號案文之旨趣ヲ以テ貴官ヨリ該政府へ御照會可被成此段申進候也

十五年十二月十九日

(下ヶ礼)

「(拙者へ照會有之候)之以下附箋之通訂正可致旨大輔殿之御見込ニ候處卿殿ハ原案へ御檢印相成候ニ付即原案之通り相達候事」

(下ヶ礼朱書)

「得共追々取締モ相立居候事故今更ニ答翰差遣候迄モ無之義ニ付此義ニ付彼方ヨリ開談有之節ハ別紙案文ノ意ヲ以テ先ツ口上ニテ答へ置カレ度比段申入候也 (吉田)」

註 附屬書甲號省略ス 前掲文書附屬書甲號參看

(附屬書一)

別紙乙號

謹茲照會者頃奉本國 外務卿訓示開准據前任朝鮮國禮判書李會正壬午年六月照會內稱貴國人民往鬱陵島斫採樹木等繇查此事當經申禁在案惟恐邊民蒙昧再蹈前轍嗣後倘有犯者由該地方一經查出應送交附近我國領事官處按照兩國修好條規並擬我國法律懲辦等因本辦理奉此遵即照會 貴政府查照可也爲此照會順頌 台祉敬具

(下ヶ礼朱書)

「見當リ次第其最寄之我領事館ニ御引渡可有候 官處在路得虐待按照 如此一句ヲ入レ置カバ余程ノ惠ミニ成ルベシ」

(附記)

明治十六年一月十一日付竹添公使準達

壬午十二月初二日付李禮曹判書返翰

第十四號

客年十二月十九日附公第九十二號貴信ヲ以テ朝鮮國鬱陵島於テ我人民

樹木斫伐之件ニ付該國政府ヨリ照會之末下官ヨリ回答可取計旨照覆案添御來示之趣致敬承候右ハ御差越之案文通り本月九日附ヲ以テ禮曹判書李秉文ヘ宛照會及候處同十日同官ヨリ更ニ別紙寫之通り照覆有之候間此段回答旁申進候也

明治十六年一月十一日

在朝鮮 辦理公使 竹添進一郎 (印)

外務卿 井上馨 殿

(別紙)

謹茲照覆者開准 貴函內稱我國鬱陵島樹木 貴國人民之嗣後犯斫者由該地方官查出應送

貴國領事官擬法懲辦事謹遵 委示轉報我政府茲以照覆順祈 繁祉敬具

壬午十二月初二日

禮曹判書 李秉文

辦理公使 竹添進一郎閣下

**事項一〇 朝鮮國蔚陵島ニ邦人渡航禁止ノ件**

一二五 二月二十日[參事院議長代理松方參議ヨリ三條太政大臣大木司法卿宛]

**蔚陵島ニ邦人渡航禁止審査決議ノ件竝ニ決濟**

上第五號

別紙外務省上申朝鮮國屬島蔚陵島ヘ日本人民渡航禁止ノ件審査決議如左

北緯三十七度三十分東經百三十度四十九分ノ洋中ニ位スルーノ島嶼即チ日本稱竹島或ハ松島朝鮮稱蔚陵島ノ儀ハ往古敦レノ所領タル確定

セスト雖モ我慶長年間宗對馬守ヨリ朝鮮政府ニ照會シ所屬論ヲ提出シタレトモ論旨徹セス其後元祿六年ヨリ同十二年ニ至ル迄七年間數回ノ往復ヲ經テ遂ニ兩政府ニ於テ其所屬論ヲ確定シタルコトハ別冊竹島版圖所屬考記載ノ通タリ付テハ我人民該島ニ渡航スル儀ハ無之筈ナレドモ悠久ノ歲月間狡黠ノ細民或ハ竊カニ往テ漁業ヲナシ或ハ伐木ヲナス者往々有之ト察セラレタリ是別紙甲號ノ照會アル所以ナリ然リト雖モ其地位タル我隱岐國ト距離甚タ相遠カラス如之我國ニ於テ稱呼スルコト恰モ我地名ト異ナラサルヲ以テ純然タル我所領ト誤認スルモ亦深ク咎ム可カラス故ニ外務卿ハ申請シテ內務卿ヨリ各地方長官ニ告諭シ人民心得違アル者ヲ告戒セシメントスルハ至當ノ事トス但其禁令ヲ犯シ密商ヲナス者ハ貿易規則第九則ニ照シ樹木ヲ盜伐スル者ハ刑法第三百七十三條ニ照シ處分セシメントヲ請フノ趣上申追書ニ有之右貿易規則ニ據リ處分スルハ當然ナリト雖モ刑法第三百七十三條ハ單ニ竹木礦物川澤湖海ニ於テ人ノ生養シタル產物ヲ竊取スルヲ刑スルニ止リ我國禁ヲ犯シ外國ニ赴キ云々シタル者ヲ刑スルノ正條ニ非サルニ似タリ然レハ密商ヲナス者ハ貿易規則ニ重輕罪ヲ犯ス者ハ我刑法ニ據リ處分可致旨司法卿ヨリ各裁判所ヘ內訓有之方妥當ナリト認視ス

右ニ由リ指令內達案左ノ通ニテ可然哉上申候也

明治十六年二月廿日

參事院議長山縣有朋代理 參議 松方正義

司法卿 大木喬任殿

太政大臣 三條實美殿

註 別紙外務省上申ハ明治十五年十二月十六日付井上外務卿上申第十五卷一六五文書參看

指令案

上申之趣聞届候事 明治十六年「三月一日」

内達案

北緯三十七度三十分東經百三十度四十九分二位スル日本称松島[一名竹島]朝鮮國蔚陵島ノ儀ハ從前彼我政府議定ノ儀モ有之日本人民妄リニ渡航上陸不相成候條心得違ノ者無之様各地方長官ニ於テ諭達可致旨其省ヨリ可相達此旨及内達候也

明治十六年「三月一日」

太政大臣

内務卿 山田顯義 殿

又

今般別紙ノ通内務卿ヘ相達候ニ付右ニ違反シ於該島密商ヲナス者ハ日韓貿易規則第九則ニ照シ重經罪ヲ犯ス者ハ我刑法ニ照シ處分可致旨各裁判所長ヘ内訓可致置此旨及内達候也

明治十六年「三月一日」

太政大臣

司法卿 大木喬任 殿

追テ右經度ハ何ニ基キ御調査相成候義ニ候哉是又御示シ有之度候也

(以下朱書)

「經度ハ英國綠威ヲ基本トシ起算シ經緯度ハ明治十一年天城艦乘員吉田海軍中尉ノ實測ニ由ル」

(END)

## 『독도연구』 제27호 편집위원회

### □ 제1차 편집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2019년 11월 27일(수) 15:00~16:00, 영남대 독도연구소
2. 참석위원: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운영위원4 총 6인(불참자 위임장)
3. 안건
  - 1) 심사 대상 논문: 20편
  - 2) 『獨島研究』 제27호 투고 논문 20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3) 논문 심사 기간: 2019년 11월 28일 ~ 12월 13일

### □ 제2차 편집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2019년 12월 16일(월) 15:00~16:00, 영남대 독도연구소
2. 참석위원: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운영위원3, 총 5인(불참자 위임장)
3. 안건
  - 1) 심사 대상 논문: 20편
  - 2) 『獨島研究』 제27호에 투고한 논문 20편을 심사결과에 따라 12편을 게재하기로 결정
  - 3) 각 투고자에게 <논문심사결과>발송 의결
  - 4)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의 경우 해당자에게 ‘수정요구사항’ 발송 의결
  - 5) 이번 호 게재율: 60% (총 20편 가운데 12편 게재됨)

## 논문투고 규정

### 1. 투고 방법

1. 『독도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홈페이지(<http://dokdo.yu.ac.kr/>) 오른쪽 중단의 논문 투고 사이트’ 또는 ‘<http://dokdo.dothome.co.kr/>’로 직접 들어가 투고하도록 한다.
2. 투고한 원고는 수령여부를 투고자가 확인해야 하며,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투고 논문은 다른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 1) 필자의 소속, 직위, 전공분야,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 2) 필자 이름의 한자 및 영문 표기
  - 3) 논문제목의 영문표기
  - 4) 한글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  
(요약문에 관한 사항은 원고 작성 지침의 6항 참조)
5.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해제를 비롯한 그 밖의 경우는 원고의 성격에 따라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가 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비용은 원고지 한 매당(소수점에서 반올림) 3,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 II. 원고 작성 방법

1. 논문의 본문에서는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문

- 1)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지명·사건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처음 나올 때에만 한자와 병기한다.
- 2) 한자의 경우 괄호 없이 한글음에 이어서 쓴다(併記). 단, 한자의 의미를 한글로 풀어썼거나, 의미는 같되 음이 같지 않을 때는 해당 한자를 한글 뒤에 괄호로 묶는다.

→ 독도獨島,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울진蔚珍

→ ‘죽도(竹島) 이나바와 호키(因伯) 상하이(上海), 가와카미 (川上), “천이 명한 성을 따른다(率性).”

☞ 단, 다음에서는 한자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 ① 본문에서 불가피하게 한문원전을 그대로 인용해야 할 경우.
- ② 본문의 괄호 속.  
→ 이황李滉(號, 退溪)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로서...
- ③ 각주 속.
- ④ 참고문헌란.

- 3)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① “ ” : 인용
- ②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 ③ 『 』 : 문헌이나 저서 이름
- ④ < > : 신문 이름
- ⑤ 「 」 : 논문이나 작품 이름
- ⑥ . : 동일사항의 나열

→ 백두산·한라산·지리산

- 4)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옆에 부기한다. 단 중국·일본 인명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한자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의 경우, 외국어나 한문은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용문은 본문보다 두 칸 들여 쓰되(왼쪽 2, 오른쪽 0), 첫 문장 들여 쓰기는 하지 않는다(들여쓰기 0).

#### 4. 각주

- 1) 단행본인 경우 동양서는 저자명(편찬주체), 역자명, 서명,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서의 경우 순서는 같이 하되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沈興澤, 『鬱島報告書』, 1쪽.

李能和, 김상익 옮김, 『朝鮮女俗考』, 250쪽.

Judy Van Zile, *Perspectives on Korean Dance*, pp.125-133.

- 2) 논문의 경우에는 필자명, 제목명,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어로 된 논문의 경우 순서는 같이 하되, 논문명은 “ ” 안에 넣어 표기한다.

→ 홍길동, 「조선시대 서얼제도의 연구」, xxx쪽.

Edward J. Shultz, “The Early History of Andong: Central or Peripheral”, p.6.

- 3) 세부적인 서지사항은 참고문헌란에 일괄 표기하고, 각주에서는 이를 표기하지 않는다.

- 4) 신문·잡지인 경우에는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형식으로 표기한다.

→ 「미주한인사회를 합동하자는 의견」, 《共立新報》 1907년 11월 29일자; 安自山, 「三國時代의 文學」, 《朝鮮日報》 1931년 4월 11일자.

- 5) 각주에서 같은 인용문헌이 연속되어 나올 경우, 동양서는 ‘저(편)자, 같은 책(같은 논문),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서양서는 ‘같은 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Ibid’로 표기한다. 단, 인용문헌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될 때마다 제목을 표기한다.

→ 홍길동, 같은 책, xxx쪽.

→ 홍길동, 같은 논문, xxx쪽.

→ Kant, Ibid, p.xxx.

#### 5. 참고문헌

- 1) 논문 뒤에는 반드시 참고문헌란을 붙인다.
- 2) 참고문헌란에는 각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만 표기한다.
- 3)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저(편)자, 역자, 서명, 총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 저자, 역자, 논문명, 게재지(간행처, 간행년도)

#### 6. 요약문

- 1) 언어 :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되, 주제 분야 3(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류표 참조), 주제어 5개를 명기한다.
- 2) 분량 : 한글의 경우, 200자 원고지 2-3매로 하고, 영문은 이 한글 요약문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 7. 기타

- 1) 괄호가 따옴표나 낫쇠와 같은 문장부호와 쓰일 때는 괄호를 이들 부호 밖에 둔다.
  - ‘자연과 인간(天人), 『말의 문화와 배의 문화』(馬の文化と船の文化)

##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독도연구소에서 간행되는 [독도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 제2조

#### 1. 간행시기

본 학술지는 6월 30일, 12월 30일의 년 2회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 2. 간행 시 필수기재 사항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한다.

대상		기재내용
대학소속	대학소속(전임/비전임)	성명/○○대학/ 교수*
	대학소속 강사	성명/○○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성명/○○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연락처

\* 교수 :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연구교수 등

\*\* 학생 : 학부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석·박사과정생 등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간행 목적에 맞는 학술지를 발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국내외 독도 연구자로 근래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총인원은 15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또한 투고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혔는지를 관리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집적, 관리하여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sup>2</sup>와 ‘게재 불가’<sup>1</sup>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간주하고, ‘수정 후 게재’<sup>1</sup>과 ‘게재 불가’<sup>2</sup>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2와 ‘게재 불가’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간주하고, ‘게재’1과 ‘게재 불가’2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3. 그 외,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 규정

#### 제5조 (게재료)

1.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심사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2. 모든 논문은 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게재논문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게재료를 청구하되, 연구비 지원 논문은 25만원을 청구한다.
3. 특별기고 형식으로 투고한 논문인 경우 게재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 제6조 (부칙)

1. 이 시행규칙은 2005년 9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시행규칙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獨島研究』 연구윤리 규정

2008년 2월 15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獨島研究』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여 건전한 연구활동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연구자의 의무)

- ① 연구자는 학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타인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거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⑥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⑦ 연구자는 표절 또는 저작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소에 보고해야 한다.
- ⑧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

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 ①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② 제소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는 제소 당사자와 혐의 해당자에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케 하고, 15일 이내에 그 답변과 상호 화해를 권장한다.
- ③ 제소자와 혐의 해당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종결하고,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6조 (연구윤리 협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①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한 때 연구윤리 협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확정 시행한다.



편집위원장 : 최재목(영남대)

편집위원 : 김명기(명지대)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손승철(강원대)

송취영(영남대)

심정보(서원대)

오상혁(제주대)

이성환(계명대)

정갑용(영산대)

제성호(중앙대)

정성일(광주여자대)

최장근(대구대)

편집간사 : 박지영(영남대)

## 獨島研究

제 27 호

---

2019년 12월 28일 인쇄

2019년 12월 30일 발행

---

발행인 서길수

편집인 최재목

발행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TEL (053) 810-3686

FAX (053) 810-4704

인쇄처 도서출판 동방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77

TEL : (053) 424-8557

FAX : (053) 422-4268

---

